2024.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III)

외 교 통 일 위 원 회
국 방 위 원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외 교 통 일 위 원 회

❖ 외교부 ····· 3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8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

Ⅱ. 사업별 검토 ····· 10

【총 괄】 ····· 10

1. 예비비: 연례적 예비비 사용 및 예비비 과다 배정 ····· 10

【일반회계】 ····· 14

<세 입> ····· 14

2. 건물대여료: 외교센터 내 민간임대 공간의 장기간 공실 문제 등 ····· 14

<세 출> ····· 23

3.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 국회 감액 사업의 증액 집행 부적정 ····· 23
4. 대중국 외교 사업 전반: 연례적 집행부진 부적정 ····· 26

5.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 전문직 인력 비자 쿼터 입법을 위한 노력 필요 ····· 30
6. 의전장실 기본경비 사업: 설계용역 완료 전 다음년도 공사계약 체결 및 예산 이월 부적정 ····· 34
7. 온라인 홍보 강화 사업: 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미추진 및 교체여비로의 전용 부적정 · 38
8.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 리모델링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방안 마련 필요 ····· 41
9.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준수 필요 ····· 45
10. 국가별 협력사업(ODA): 무상 ODA 실질적 집행정보 제공방안 모색 및 철저한 사업 관리방안 마련 필요 ····· 47
11. 소규모 무상원조(ODA) 사업: 수원국별 지원한도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59
12. 분쟁 및 취약국 지원(ODA) 사업: 2023년 신규사업 추진 지연 문제 및 국제기구 실집행을 고려한 사업관리방안 모색 필요 ····· 64
13. 현지 ODA 역량강화 사업: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확대 및 제도개선 필요 ····· 70
14. 해외긴급구호(ODA) 사업: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 보고 시기 단축 필요 · 74
15. 협력사업 지원(ODA) 사업: 결산잉여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76

❖ 통일부 ····· 79

Ⅰ. 개 관 ····· 79

1. 결산 개요 ····· 7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84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85

Ⅱ. 사업별 검토 ····· 86

【총 괄】 ····· 86

1.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 86

【일반회계】 ····· 89

<세 입> ····· 89

2.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자치단체 보조사업 정산관리 강화 필요 ····· 89

<세 출> ····· 92

3.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연례적인 연내 집행가능성이 미흡한 보조금 예산 교부 및 보조사업 집행관리 미흡 문제 ····· 92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부지변경 및 재설계로 인한 사업 지연 ····· 98

5.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상시 대응태세 구축 필요 ·· 100

6.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사업: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 개편 노력 필요 ····· 103

7.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강화 필요 ····· 106

【남북협력기금】 ····· 110

<총 괄> ····· 110

8. 남북협력기금의 적정 여유자금 규모 검토 필요 ····· 110

<수 입> ····· 113

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이자수입: 다각적인 회수 노력 필요 ····· 113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17

Ⅰ. 개 관 ····· 117

1. 결산 개요 ····· 11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20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20

Ⅱ. 사업별 검토 ····· 121

【일반회계】 ····· 121

<세 출> ····· 121

1.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 전체회의(국내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 ····· 121
2. 자문회의 운영 사업: 연례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목별 적정예산 편성 필요 ·· 125
3. 협의회 직무교육 사업: 지역회의 및 협의회 직원 대상 직무교육 강화 필요 ····· 128

❖ 재외동포청 ·····131

Ⅰ. 개 관 ····· 131

1. 결산 개요 ····· 13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34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4

Ⅱ. 사업별 검토 ····· 135

【총 괄】 ····· 135

1.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소관 업무 및 예산 정비 필요 ····· 135
2. 재외동포청 출범을 위한 예비비 과다 배정 및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개선 필요 ····· 139

【일반회계】 ····· 144

<세 출> ····· 144

3.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사업: 사업 지연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부적정 등 ···· 144
4. 자료실 운영 사업: 소장자료 보관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48

국 방 위 원 회

❖ 국방부 ····· 153

Ⅰ. 개 관 ····· 153

1. 결산 개요 ····· 15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58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59

Ⅱ. 사업별 검토 ····· 161

【일반회계】 ····· 161

<세 입> ····· 161

1.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채권 관리방안 마련 필요 ····· 161
2. 변상금: 미수납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165

<세 출> ····· 168

3. 민간조리원운영 사업: 민간조리원 운용률 제고 및 관리 규정 마련 필요 ····· 168
4. 기본피복 사업: 면밀한 추계에 의한 집행부진 개선 및 공정한 조달체계 확립 필요 ·· 172
5. 특수피복 사업: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 및 방탄물자 성능관리 철저 필요 ·· 179
6. 재해보상금 사업: 사망보상금 적정예산 편성 필요 등 ····· 183
7. 양성평등 운영 사업: 양성평등 등 상담의 효과성 제고 필요 ····· 189
8.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 면밀한 적금 가입률 등의 산정 필요 ····· 192
9.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사고 원인별 대응 강화 및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 필요 ····· 195
10.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필요 ····· 199
11. 병영생활관 사업: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 필요 ····· 202

12.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미등재 건축물의 조속한 양성화 필요 ····· 206
13. 공공요금 사업: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한 전기료 인상에 대응 필요 ····· 209
14.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 비상근예비군 제도 점검 필요 ····· 21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216

<세 출> ····· 216

15.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완전성 제고 필요 ····· 216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 219

<세 출> ····· 219

16. 부대개편 3차 사업: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양 필요 ····· 219
17.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이전 사업: 면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집행 필요 ····· 222

❖ 병무청 ····· 225

Ⅰ. 개 관 ····· 225

1. 결산 개요 ····· 22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229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30

Ⅱ. 사업별 검토 ····· 231

【일반회계】 ····· 231

<세 출> ····· 231

1. 병역판정검사 사업: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체계 개선 필요 ····· 231
2. 병역진로설계 사업: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필요 ····· 237
3.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면밀한 적금 가입률 등의 산정에 의한 집행부진 개선 필요 ····· 240

❖ 방위사업청 ·····243

※ 비공개 (243 ~ 288쪽)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89

Ⅰ. 개 관 ····· 289

1. 결산 개요 ····· 28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293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9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 행정안전부 ·····297

Ⅰ. 개 관 ····· 297

1. 결산 개요 ····· 29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301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02

Ⅱ. 사업별 검토 ····· 303

【총 괄】 ·····303

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법」 상 교부비율을 위반하여 미교부 후 불용한 문제 ····· 303
2. 관서운영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위반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 307

3.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 지연에 따른 개통 지연 문제 ····· 310
4. 전산망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 필요 ····· 314

【일반회계】 ····· 321

<세 입> ····· 321

5. 기타경상이전수입: 장기 미수납 국고보조금 최소화 노력 필요 ····· 321

<세 출> ····· 325

6.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사업: 전용(증)을 통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추진 부적정 ····· 325
7.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실집행 부진 문제 등 ··· 328
8.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 한국섬진흥원의 출연금 집행 부진 및 정산 부적절 문제 333
9.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사업: 일부 과제 실집행 부진 문제 등 ····· 338
10.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사업: 연례적인 사업 실적 부진 문제 ····· 342
1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사업의 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 부진 문제 등 ·· 346
12. 재난대책비 사업: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등 ····· 349
13.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지원 사업: 클라우드 전환 실적 저조 문제 ····· 354
14.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의무 소홀 문제 ····· 3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360

<세 출> ····· 360

1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는 차년도 예산 충당을 위한 이월 부적절 ····· 360
16.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신규): 사업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문제 등 ··· 364
17.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사업(신규): 시범사업 지연에 따른 순차적 사업 지연 우려 ····· 367

❖ 경찰청 ·····369

Ⅰ. 개 관 ····· 369

1. 결산 개요 ····· 36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373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74

Ⅱ. 사업별 검토 ····· 375

【총 괄】 ·····375

1.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 이·전용 등을 통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추진 문제 ····· 375

【일반회계】 ·····379

<세 입> ····· 379

2. 과태료: 연례적 미수납액 과다 발생 문제 ····· 379

<세 출> ····· 383

3. 차량관리 사업: 연례적 유류비 과다편성 및 타 사업 전용재원으로의 활용 부적정 · 383
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사업 효과분석 결과에 기반한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 386
5.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실적 저조 ····· 390
6.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사업: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비목 집행 문제 등 ····· 393
7. 경찰장비개선(R&D) 사업: 연구개발 지연에 따른 연구기관 단계 최종집행 저조 문제 ····· 397
8. 장비관리유지 사업: 제품 성능 등에 대한 검토 부족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 집행 문제 ·· 4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402

<세 입> ····· 402

9.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경찰병원): 자체수입 확보 위한 노력 필요 ····· 402

❖ 소방청 ·····406

Ⅰ. 개 관 ····· 406

1. 결산 개요 ····· 406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409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10

Ⅱ. 사업별 검토 ····· 411

【일반회계】 ·····411

<세 출> ····· 411

1.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실질적인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 411
2.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공사 추가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 415
3.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 적정 규모의 장비 구입 예산 편성 필요 ····· 418
4.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 미지급금 발생 주의 및 일부 지역 소방본부의 지원 활성화 필요 ····· 421
5.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 적정 비목 예산 편성 및 계획적인 비축물자 확보 필요 ·· 425
6. 소방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 투명한 계약 관리방안 마련 필요 ····· 429

❖ 인사혁신처 ·····432

Ⅰ. 개 관 ····· 432

1. 결산 개요 ····· 432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437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38

Ⅱ. 사업별 검토 ····· 439

【일반회계】 ····· 439

<세 입> ····· 439

1.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액 대비 수납률 연례적 저조 문제 ····· 439

2. 기타잡수입: 공직자 선물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 443

<세 출> ····· 447

3.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신규): 감리용역 미편성 및 전용을 통한 집행 ····· 447

【공무원연금기금】 ····· 450

<수 입> ····· 450

4. 연금기여금: 급여환수금의 수납률 저조 및 미수납 채권 누적 문제 ····· 450

<지 출> ····· 454

5. 퇴직급여, 퇴직수당 사업: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문제 ····· 454

6. 고덕 8단지 재건축 사업: 연례적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 문제 ····· 46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63

Ⅰ. 개 관 ····· 463

1. 결산 개요 ····· 46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467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67

Ⅱ. 사업별 검토 ····· 468

【일반회계】 ·····468

<세 입> ····· 468

1. 기타경상이전수입: 선거보전비용 반환금의 미수납액 과다 발생 문제 ····· 468

<세 출> ·····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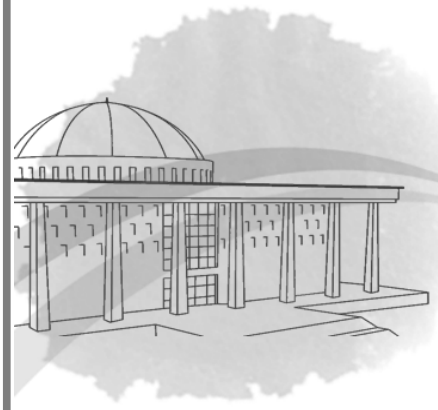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2. 위법행위 예방단속: 적정 인력과 기간 산정을 통한 예산 불용 방지 필요 ····· 471
3. 민주시민 의식함양 및 지원: 계획된 프로그램의 원만한 추진과 오프라인 교육수요 발굴을 통한 예산 불용 방지 노력 필요 ····· 474
4.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수의계약 체결 지양 필요 ····· 478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81

Ⅰ. 개 관 ····· 481

1. 결산 개요 ····· 48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485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85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699억 4,600만원(36.4%)이 많은 6,37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5억 7,600만원(13.5%)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31,958	231,958	291,599	59,641	267,335	267,335	396,153	128,818	104,554
기 금	312,590	312,590	269,918	△42,672	199,812	199,812	240,940	41,128	△28,978
총수입	544,548	544,548	561,517	16,969	467,147	467,147	637,093	169,946	75,576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54억 8,800만원(△1.3%)이 적은 3조 4,038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23억 8,500만원(10.5%)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874,765	2,806,112	2,811,547	5,435	3,249,526	3,249,526	3,162,910	△86,616	351,363
기 금	312,590	312,590	269,918	△42,672	199,812	199,812	240,940	41,128	△28,978
총지출	3,187,355	3,118,702	3,081,465	△37,237	3,449,338	3,449,338	3,403,850	△45,488	322,385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673억 3,100만원으로 3,963억 2,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961억 5,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1억 6,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67,335	267,335	△4	267,331	396,322	396,153	-	169
합 계	267,335	267,335	△4	267,331	396,322	396,153	-	169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2,847억 8,200만원으로, 이 중 3조 1,629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3%)되고 90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28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249,526	3,249,526	6,517	△33,833	62,572	3,284,782	3,162,910	9,004	112,868
합 계	3,249,526	3,249,526	6,517	△33,833	62,572	3,284,782	3,162,910	9,004	112,868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087억 5,100만원으로 2,409억 4,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151,807	160,746	199,318	199,318	-	-
국제질병퇴치기금	48,005	48,005	41,622	41,622	-	-
합 계	199,812	208,751	240,940	240,940	-	-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087억 5,100만원으로, 이 중 2,409억 4,000만원이 지출(집행률 115.4%)되고 312억 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제교류기금	151,807	160,746	-	160,746	199,318	-	30,282
국제질병퇴치기금	48,005	48,005	-	48,005	41,622	-	988
합 계	199,812	208,751	-	208,751	240,940	-	31,270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외교부 자산은 전년 대비 1,171억 8,100만원이 증가한 5조 3,440억 9,4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150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1,070억 8,300만원 증가하고 무형자산이 148억 9,8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0억 9,100만원 증가한 1,152억 6,0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95억 9,9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10억 9,000만원이 증가한 5조 2,288억 3,4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외교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조 9,407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19억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7,944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97억 9,9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외교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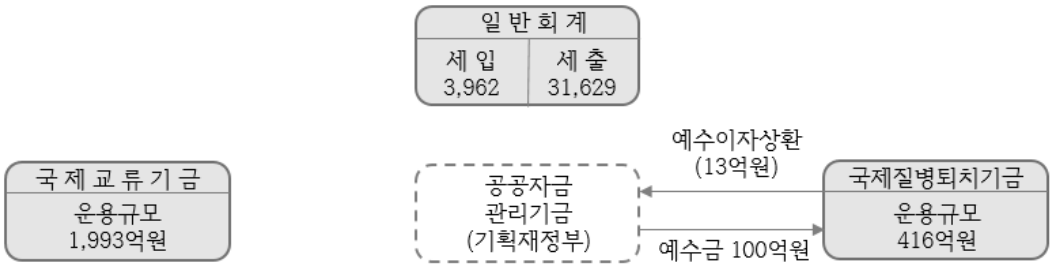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5,344,094	5,226,913	117,181	2.2
		유동자산	297,907	312,907	△15,000	△4.8
		투자자산	57,189	47,125	10,064	21.4
		일반유형자산	4,896,331	4,789,248	107,083	2.2
		무형자산	83,469	68,571	14,898	21.7
		기타비유동자산	9,198	9,063	135	1.5
	부 채		115,260	109,169	6,091	5.6
		유동부채	1,755	1,686	69	4.1
		장기차입부채	59,053	49,454	9,599	19.4
		장기충당부채	54,452	58,029	△3,577	△6.2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5,228,834	5,117,744	111,090	2.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940,799	2,708,898	231,901	8.6
	재정운영순원가		2,903,525	2,703,747	199,778	7.4
	재정운영결과		2,794,432	2,654,633	139,799	5.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외교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100억원을 예수받았고, 예수금 이자 13억원을 상환하였음.

[2023회계연도 외교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 외교부는 ① 보편적 가치 수호 및 공동 번영의 동아시아 외교 실현, ② 북핵·북한 문제 실질적 진전 추진, ③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가치·국익 외교 본격 전개, ④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심화, ⑤ 글로벌 가치 외교 적극 실천, ⑥ 경제안보·과학기술·세일즈 외교 및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강화, ⑦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일반회계 18개 프로그램 47개 단위사업 173개 세부사업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 확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확대', '국가 이미지 제고, 국민의 대외활동 지원',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 적극 추진'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외교센터 민간임대 공간 중 일부가 장기간 공실인 것은 국유재산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라 할 것이므로, 외교부는 외교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중국 외교 사업의 집행부진 및 예산 규모의 축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 규모 내에서 사업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에 따라 현지 인력수급을 위해 미 의회에서의 전문직 비자 쿼터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나, 법안 발의 서명에 동참하는 의원의 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외교부와 KOICA는 국가별 협력사업의 명목집행률과 실제 사업추진상황 간에 괴리가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집행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집행이 부진한 국가별 협력사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수원국의 제도적 여건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복합적인 ODA 환경에 대응하여 사업지연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여 예정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예비비: 연례적 예비비 사용 및 예비비 과다 배정

가. 개 요

2023년도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등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05억 7,5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배정받아 318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6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음.[2)]

[2023년도 외교부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자금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정상 및 총리외교	대통령·국무총리 해외순방행사 및 외빈 접수행사 소요 비용	32,859	28,548	'23.8.14	1,071	3,240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준비 및 준비기획단 운영	4,896	3,023	'23.8.3	947	926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관련 준비기획단 운영, 의제·성과사업 협의, 사전 홍보	2,820	322	'23.10.11	2,004	494
합계		40,575	31,893		4,022	4,660

주) 재외동포청 신설로 인해 배정받아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한 219억 9,700만원은 제외함
자료: 외교부

나. 검토의견

첫째,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2023년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사용한 문제가 있음.

2) 일반회계-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의전장실),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1432-403)(아프리카중동국),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231-421)(국제기구국)

예비비를 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고(예측불가능성),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출의 시급성이 있어야 하며(시급성), 기존 예산을 통해 충당할 수 없어야 하는(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그런데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2020년~2021년을 제외하고 2018년 이후 매년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본예산보다도 많은 예비비를 사용함.

외교부는 정상외교 일정의 특수성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정상외교 수요 증가 추세로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정상외교 일정이 추가되고,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이례적인 규모의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예기치 못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인 반면, 정상외교는 그 수요에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상대국과의 사전적인 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동시에 통상적인 정상외교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속하여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본예산보다도 많은 예비비의 사용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적정 예산편성 및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이와 같은 예비비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18년~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8	19,608	19,608	5	-	6,385	25,998	24,644	125.7	94.8	703	651
2019	23,301	23,301	703	-	1,589	25,593	23,475	100.7	91.7	-	2,118
2020	21,191	11,191	-	△7,000	-	4,191	1,941	17.3	46.3	-	2,250
2021	22,502	22,502	-	-	-	22,502	19,283	85.7	85.7	709	2,510
2022	20,472	20,443	709	-	6,308	27,460	26,199	128.2	95.4	71	1,190
2023	24,868	24,868	71	-	32,859	57,798	53,094	213.5	91.9	1,071	3,633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외교부는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비비 신청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요구액을 면밀히 추산함으로써 예비비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사업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것으로,

외교부는 2023년 예비비 48억 9,600만원을 배정받아 30억 2,300만원을 집행(집행률 61.7%)하고 9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부는 2023년 예비비 28억 2,000만원을 배정받아 3억 2,200만원을 집행(집행률 11.4%)하고 20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비비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	-	-	4,896	4,896	3,023	947	926	34,739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	-	2,820	2,820	322	2,004	494	4,377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사업별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상당하여 예비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 중 ‘준비기획단 운영’의 집행률이 54.1%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임차 사무실 계약시 보증금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보증금 3억원 및 그 외 집행잔액이 불용된 것에 기인함.

내역사업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잔금 3,0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 7,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내역사업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에서는 홍보용역 잔금 9억 1,700만원이 이월되고 용역계약 낙찰차액 4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내역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비비 배정액(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준비기획단 운영	882	477	-	405	54.1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514	407	30	77	79.2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3,500	2,139	917	444	61.1
합계	4,896	3,023	947	926	61.7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의 내역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내역사업 ‘준비기획단 운영’에 배정된 예비비 5억 2,000만원 중 2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49.8%)되고 2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임차하려던 사무실이 변경됨에 따라 보증금 및 임차료가 1억 9,700만원 불용된 것에 주로 기인함.

한편 2개 내역사업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 및 ‘정상회의 조정 메커니즘’의 경우, 배정된 예비비 총 22억 800만원 중 집행액은 0원으로, 20억 400만원이 이월되고 2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 사업의 경우 홍보 대행사 입찰 과정에서 적격업체가 없어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 후 이월하게 되었고, 정상회의 조정 메커니즘 사업의 경우에는 4개 국제기구 및 기관과의 계약 체결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협상 과정이 필요하였고 4개 기관별 계약체결 절차가 상이하여 계약 절차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내역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비비 배정액(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준비기획단 운영	520	259	-	261	49.8
공동주최국·시민사회 협의	92	63	-	29	68.5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	1,000	-	806	194	-
정상회의 조정 메커니즘	1,208	-	1,198	10	-
합계	2,820	322	2,004	494	11.4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및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회의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배정된 예비비 중 상당액이 이월 및 불용된 것은 예비비 배정의 원칙인 시급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결과, 정상 및 총리외교를 위한 예비비 요구시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3] 외교부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정상 및 총리외교를 위한 예비비 요구시 불용 최소화 필요	○ 외교부는 예비비 세부사업 내 다른 세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세사업간 세목조정 및 내역변경을 통해 필요재원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적정 수준의 예비비를 배정받도록 할 것(주의) ○ 외교부는 향후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산 배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불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제도개선)	제도개선

자료: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일반회계】

<세 입>

2. 건물대여료: 외교센터 내 민간임대 공간의 장기간 공실 문제 등

가. 개 요

‘건물대여료’ 는 외교타운 내 사무실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건물사용료를 수납하는 비목으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2억 6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4)]

[2023년도 건물대여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건물대여료	390	390	206	206	-	-	100	429

나. 검토의견

첫째, 외교센터 민간임대 공간 중 일부가 장기간 공실인 것은 국유재산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라 할 것이므로, 외교부는 외교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0년 1월 외교센터(서초구 양재동 소재)[5)]에 대한 관리권이 외교부로 환수되어 국립외교원에서 외교센터를 직접관리 중이며, 동 센터 내 민간임대에 대해 건물임대료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외교센터 내 민간임대 공간의 상당수가 장기간 공실인 상황으로, 그 결과 2023년 건물대여료 세입이 전년 대비 1억 2,300만원(37.4%) 감소한 데 이어,

4) 일반회계-건물대여료(51-512)(국립외교원)

5) 외교센터 시설현황: (건립연도) 1996.9.23. / (층수) 지하 2층, 지상 12층 / (부지면적) 9,764㎡ / (연면적) 27,338.79㎡

2024년에는 5월말 기준 세입이 전무한 상황임.

[2020년~2023년 건물대여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	-	-	364	364	100	100	-	-
2021	-	-	-	358	358	100	100	-	-
2022	-	-	-	329	329	100	100	-	-
2023	390	390	390	206	206	100	100	-	-
2024	429	429	429	-	-	-	-	-	-

주) 2024년 5월말 기준
자료: 외교부

이에 구체적으로 외교센터 내 민간임대 예정 공간을 살펴보면, 총 면적은 1,291.06㎡로 다음과 같음.

[외교센터 민간임대 예정 공간]

호수	층	면적	비고
102호	1층	135.56㎡	카페 라크리마 유상사용허가 종료('24.1.17)
201호	2층	36㎡	아포스티유 번역공증 유상사용허가 취소('23.7.29)
202호	2층	220㎡	법무법인 한미 유상사용허가 취소('23.7.29)
304호	3층	146.4㎡	법무법인 센트럴 유상사용허가 취소('23.8.18), 현재는 임시로 국립외교원 경제안보연구센터에서 사용중
305호~306호	3층	376.55㎡	민간임대 예정공간(2020년 이후 공실)
405호~406호	4층	376.55㎡	재외동포협력센터 지방이전 확정시 반납예정
면적 합계			1,291.06㎡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102호·201호·202호 및 304호의 경우 기존에 4개 업체에서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건물대여료 세입이 발생하고 있었음.

그런데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광화문으로 이동하면서 외교센터 내 아포스티유팀이 광화문 소재 센터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7월~8월 기존 4개 업체 중 3개 공증업체(201호, 202호, 304호)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함. 그리고 나머지 1개 업체(카페, 102호)는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2024년 1월 유상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갱신하지 않음.[6)]

상기와 같은 기존 업체의 유상사용허가 취소 및 종료에 따라 외교부는 온비드를 통해

6) <2023년 외교센터 유상사용허가 변동 내역>

수차례 유상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전회 유찰되어 현재까지 공실인 상황으로, 이 중 304호는 현재 국립외교원 경제안보연구센터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음. 한편 수차례의 온비드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지속됨에 따라 예정가격은 계속하여 낮아지고 있음(p.19~21 참고자료 참조).

다음으로 305호·306호의 경우에는 2020년 외교센터의 관리권이 외교부로 전환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계속하여 공실인 상황임. 외교부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온비드를 통해 유상사용허가 일반입찰 공고를 17회 실시하였으나, 전회 유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405호·406호는 기존에 재외동포재단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재단이 해산함에 따라 현재는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음. 동 공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지방이전이 확정될 경우 외교부로 반납될 예정임.

양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에 있는 외교센터는 바로 옆에 서초구청도 위치하고 있어 사무실 임대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교센터 내 민간임대 공간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것은, 외교부가 유상사용허가를 업무 유관성이 있는 업종으로 제한하여 추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타운 내 국립외교원이 있어 보안 문제로 업종 제한 완화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외교타운에는 여권과 민원실이 위치하여 다양한 민원인이 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또한 외교부의 설명대로 업종 문제로 민간임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교부의 임시조직이나 유관기관 등의 입주를 통해 세출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유상사용허가 기간	기존 사용료	변경 사용료	호수/면적	비고
법무법인 한미	(신규) '20.1.1. ~ '22.12.31. (갱신) '23.1.1. ~ '23.7.29.	223	128	(202호) / (220㎡)	유상사용허가 취소('23.7.29)
법무법인 센트럴	(신규) '20.2.24. ~ '22.12.31. (갱신) '23.1.1. ~ '23.8.18.	117	73	(304호) / (146.4㎡)	유상사용허가 취소('23.8.18)
외교타운 번역 아포스티유	(신규) '20.9.30. ~ '22.12.31. (갱신) '23.1.1. ~ '23.7.29.	12	7	(201호) / (36㎡)	유상사용허가 취소('23.7.29)
(카페) 라크리마 외교타운점	(신규) '21.1.18. ~ '24.1.17	26	26	(102호) / (135.56㎡)	유상사용허가 종료('24.1.17)
합 계		378	234	537.96㎡	

주) 3개 공증업체의 경우 기존 유상사용허가 기간의 종료 후 모두 이를 갱신(기간 : 2023.1.1.~2025.12.31.) 하였으나, 2023년 7~8월 상기와 같이 유상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가 세입 확대 또는 세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없이 민간임대 공간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한 것은 국유재산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로 보이므로, 외교부는 외교센터의 민간임대가 어려울 경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자료실이나 KF 글로벌센터 또는 외교부 임시조직 사무실로의 사용 등 다각적인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7][8]

외교센터는 2020년 약 1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업무편의가 개선된 한편 관리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임대수익 증대 및 세출 예산 절감을 위해 외교센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조속히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외교원 근무인원 1명당 사무공간이 상당 부분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무실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외교센터 민간임대 공간 중 304호(146.4㎡)의 경우 임시로 국립외교원 경제안보연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경제안보연구센터의 구성원은 2~3명에 불과하여 1인당 적정 사무공간 기준인 약 8㎡~11㎡를 훨씬 초과하는 면적을 사용하고 있음.[9][10]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신설 센터 등 수요에 비해 국립외교원의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304호를 임시로 사용하는 중으로, 국립외교원 내 별도 사무공간이 확보될 경우 즉각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주로 연구실로 사용되고 있는 국립외교원 3~4층의 사무실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차제에 국립외교원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등에 따

---

7) 외교센터 1층의 경우 당분간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자료실로 사용하면서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3년 6월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며 자료실 소장자료(33,492종 45,981권)를 재외동포청이 승계하였으나, 청사 공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창고를 임차하여 동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이전까지 장기간 자료실 소장자료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활용을 위해 외교센터 1층 공간을 당분간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자료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외교센터 2층~4층의 경우 공간 재배치를 통해 KF 글로벌센터 및 외교부 임시조직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먼저, KF 글로벌센터는 현재 중구에서 총 2,581.14㎡(전용면적 1,683.38㎡)의 공간을 연간 임대료 약 11억 3,000만원에 임차하고 있음. 이 중에서 전시공간이 아닌 19층의 사무실, 세미나실 등의 공간(전용면적 880.37㎡)은 외교센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외교센터 11층에 KF의 데이터센터가 입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KF의 데이터센터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며, 국제교류기금의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동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외교부는 매년 각종 회의의 준비기획단 등 임시조직을 운영하면서 서울 종로구 일대 사무실 임차료로 수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시조직을 외교센터에 설치하면 연간 상당액의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9) <근무인원 1명당 적정 사무공간 면적 기준>

라 근무인원 1명당 적정한 사무공간을 사용 중인지 점검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립외교원 3층~4층 사무실 사용 현황]

(단위: 명, ㎡)

호실	사용부서	근무인원	면적	1인당 면적
300~319	국립외교원(연구실)	20	627.00	31.35
322~327	국립외교원(연구실)	6	222.00	37.00
332	방문교수실	2	48.00	24.00
333	국립외교원(연구실)	1	33.00	33.00
3층 합계		**29**	**930.00**	**32.07**
400	글로벌운영실	5	44.00	8.80
401~402	일본연구센터	3	62.00	20.67
403~404	외교사연구센터	3	62.00	20.67
405	국제법센터	3	62.00	20.67
406~413	연구실	14	217.00	15.50
414~415	아세안인도연구센터	2	62.00	31.00
416~417	지정학연구센터	2	62.00	31.00
418~419	중국연구센터	3	62.00	20.67
430	겸임교수실	2	33.00	16.50
4층 합계		**37**	**666.00**	**18.00**

주) 각 층에 위치한 강의실, 학습실, 회의실, 세미나실, 창고, 자료실, 라운지, 도서관 등의 공간은 제외하고, 사무실에 대해서만 작성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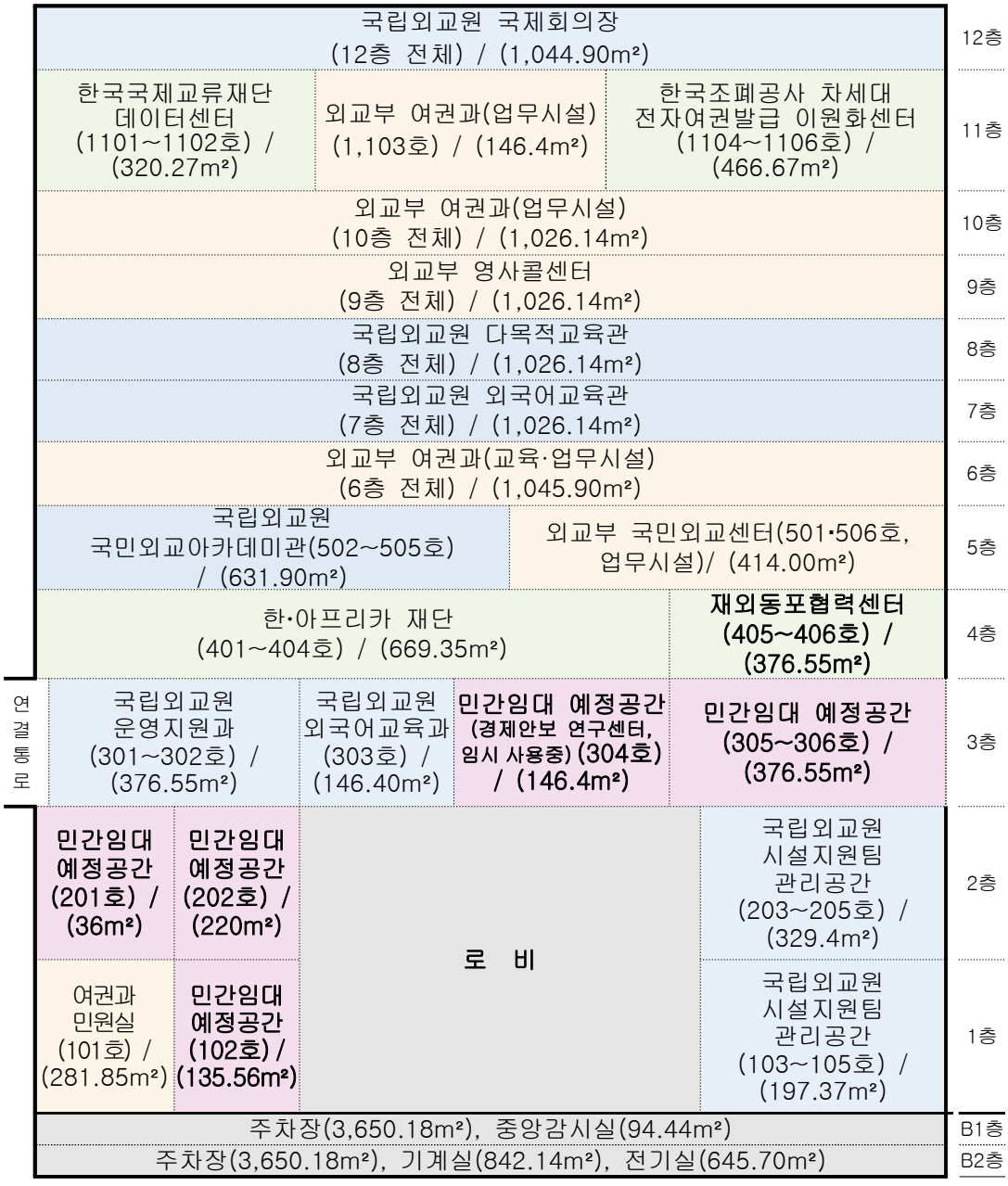
<table>
<tr><th>기준</th><th>1명당 적정 면적</th><th>산정근거</th></tr>
<tr><td>「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청사 배정면적[1)]</td><td>약 8㎡</td><td>- 3급 과장, 4급 국·과장, 5급 과장: 17㎡(집무면적)
-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이하 일반직원: 7㎡(집무면적)</td></tr>
<tr><td>적정 업무시설 면적[2)]
(한국건설기술연구원)</td><td>8.52㎡</td><td>(단위: ㎡/인)
<table>
<tr><th colspan="2">개인전용공간</th><th colspan="2">공유공간</th><th rowspan="2">합계</th></tr>
<tr><th>업무공간</th><th>개인활동</th><th>업무지원</th><th>공유통로</th></tr>
<tr><td>2.79</td><td>1.02</td><td>0.32</td><td>4.39</td><td>8.52</td></tr>
</table></td></tr>
<tr><td>국내기업 평균 공간별 이용면적[3)]
(건축공간연구원)</td><td>10.7㎡</td><td>(단위: ㎡/인)
<table>
<tr><th colspan="2">업무공간</th><th rowspan="2">회의 공간</th><th rowspan="2">휴게 공간</th><th rowspan="2">수납 공간</th><th rowspan="2">지원 공간</th><th rowspan="2">합계</th></tr>
<tr><th>관리자급</th><th>팀원급</th></tr>
<tr><td>8.6</td><td>3.6</td><td>1.1</td><td>0.4</td><td>0.4</td><td>0.8</td><td>10.7</td></tr>
</table></td></tr>
</table>

주 1)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시설 적정 공간면적 설계기준 개발 연구」(2013)
3) 건축공간연구원, 「공공업무시설의 계획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2017)

자료: 법령정보시스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24년 2월 경제안보 및 기술안보 연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국립외교원 경제안보연구센터는 현재 연구인력 2명(연구교수 1명 및 연구원 1명)으로 운영중이며 전임교수 1명을 추가로 채용 중에 있음.

[외교센터(서초구 양재동) 층별 입주현황 (2024년 4월 기준)]



[참고자료] 2023년~2024년 4월말 외교센터 내 민간임대 공간 온비드 입찰 경과

연도	공고 회차	공고 일자	입찰기간	허가물건	허가기간	임대면적	예정가격	결과
2023	1회차	'23.10.4	'23.10.4 ~'23.10.11	외교타운 202호	'23.10월 ~'26.12.31	총면적 524.53㎡ (전용 220.00㎡, 공용 304.53㎡)	197,383,076원	유찰
	2회차	'23.10.16	'23.10.16 ~'23.10.23		'23.10월 ~'26.12.31		197,383,076원	유찰
	3회차	'23.10.26	'23.10.26 ~'23.11.2		'23.11월 ~'26.12.31		177,644,769원	유찰
	4회차	'23.11.6	'23.11.6 ~'23.11.14		'23.11월 ~'26.12.31		157,906,461원	유찰
	5회차	'23.12.1	'23.12.1 ~'23.12.08		'23.12월 ~'26.12.31		138,168,153원	유찰
	6회차	'23.12.21	'23.12.21 ~'23.12.28		'24.1월 ~'26.12.31		118,429,846원	유찰
2024	7회차	'24.1.2	'24.1.2 ~'24.1.9		'24.1월 ~'26.12.31		98,691,538원	유찰
	8회차	'24.1.18	'24.1.18 ~'24.1.26		'24.2월 ~'26.12.31		78,953,230원	유찰
2023	1회차	'23.10.4	'23.10.4 ~'23.10.11	외교타운 201호	'23.10월 ~'26.12.31	총면적 85.83㎡ (전용 36.00㎡, 공용 49.83㎡)	32,299,049원	유찰
	2회차	'23.10.16	'23.10.16 ~'23.10.23		'23.10월 ~'26.12.31		32,299,049원	유찰
	3회차	'23.10.26	'23.10.26 ~'23.11.2		'23.11월 ~'26.12.31		29,069,144원	유찰
	4회차	'23.11.6	'23.11.6 ~'23.11.14		'23.11월 ~'26.12.31		25,839,239원	유찰
	5회차	'23.12.1	'23.12.1 ~'23.12.08		'23.12월 ~'26.12.31		22,609,334원	유찰
	6회차	'23.12.21	'23.12.21 ~'23.12.28		'24.1월 ~'26.12.31		19,379,429원	유찰
2024	7회차	'24.1.2	'24.1.2 ~'24.1.9		'24.1월 ~'26.12.31		16,149,524원	유찰
	8회차	'24.1.18	'24.1.18 ~'24.1.26		'24.2월 ~'26.12.31		12,919,620원	유찰
2023	1회차	'23.10.4	'23.10.4 ~'23.10.11	외교타운 304호	'23.10월 ~'26.12.31	총면적 349.05㎡ (전용 146.40㎡, 공용 202.65㎡)	131,349,465원	유찰
	2회차	'23.10.16	'23.10.16 ~'23.10.23		'23.10월 ~'26.12.31		131,349,465원	유찰
	3회차	'23.10.26	'23.10.26 ~'23.11.2		'23.11월 ~'26.12.31		118,214,519원	유찰
	4회차	'23.11.6	'23.11.6 ~'23.11.14		'23.11월 ~'26.12.31		105,079,572원	유찰

연도	공고 회차	공고 일자	입찰기간	허가물건	허가기간	임대면적	예정가격	결과
2023	1회차	'23.1.13	'23.1.13 ~'23..1.20	외교타운 305호	'23.1월 ~'26.1월	총면적 404.24㎡ (전용 169.55㎡, 공용 234.69㎡)	160,643,405원	유찰
	2회차	'23.1.26	'23.1.26 ~'23.2.2		'23.2월 ~'26.2월		160,643,405원	유찰
	3회차	'23.2.7	'23.2.7 ~'23.2.14		'23.2월 ~'26.2월		144,579,064원	유찰
	4회차	'23.2.17	'23.2.17 ~'23.2.24		'23.2월 ~'26.2월		128,514,724원	유찰
	5회차	'23.10.4	'23.10.4 ~'23.10.11		'23.10월 ~'26.12.31		152,119,548원	유찰
	6회차	'23.10.16	'23.10.16 ~'23.10.23		'23.10월 ~'26.12.31		152,119,548원	유찰
	7회차	'23.10.26	'23.10.26 ~'23.11.2		'23.11월 ~'26.12.31		136,907,593원	유찰
	8회차	'23.11.6	'23.11.6 ~'23.11.14		'23.11월 ~'26.12.31		121,695,638원	유찰
2023	1회차	'23.1.13	'23.1.13 ~'23.1.20	외교타운 306호	'23.1월 ~'26.1월	총면적 493.53㎡ (전용 207.00㎡, 공용 286.53㎡)	196,126,127원	유찰
	2회차	'23.1.26	'23.1.26 ~'23.2.2		'23.2월 ~'26.2월		196,126,127원	유찰
	3회차	'23.2.7	'23.2.7 ~'23.2.14		'23.2월 ~'26.2월		176,513,514원	유찰
	4회차	'23.2.17	'23.2.17 ~'23.2.24		'23.2월 ~'26.2월		176,513,514원	유찰
	5회차	'23.10.4	'23.10.4 ~'23.10.11		'23.10월 ~'26.12.31		185,719,531원	유찰
	6회차	'23.10.16	'23.10.16 ~'23.10.23		'23.10월 ~'26.12.31		185,719,531원	유찰
	7회차	'23.10.26	'23.10.26 ~'23.11.2		'23.11월 ~'26.12.31		167,147,578원	유찰
	8회차	'23.11.6	'23.11.6 ~'23.11.14		'23.11월 ~'26.12.31		148,575,625원	유찰

연도	공고 회차	공고 일자	입찰기간	허가물건	허가기간	임대면적	예정가격	결과
2023	1회차	'23.12.1	'23.12.1 ~'23.12.8	외교타운 1층 카페	'24.1월 ~'26.12.31	총면적 323.20㎡ (전용 135.56㎡, 공용 187.64㎡)	121,623,863원	유찰
	2회차	'23.12.12	'23.12.12 ~'23.12.19		'24.1월 ~'26.12.31		121,623,863원	유찰
	3회차	'23.12.21	'23.12.21 ~'23.12.28		'24.1월 ~'26.12.31		109,461,477원	유찰
2024	4회차	'24.1.2	'24.1.2 ~'24.1.9		'24.1월 ~'26.12.31		97,299,090원	유찰
	5회차	'24.1.18	'24.1.18 ~'24.1.26		'24.2월 ~'26.12.31		85,136,704원	유찰
	6회차	'24.3.13	'24.3.13 ~'24.3.21		'24.3월 ~'26.12.31		72,974,318원	유찰
	7회차	'24.3.25	'24.3.25 ~'24.4.2		'24.4월 ~'26.12.31		60,811,932원	유찰
	8회차	'24.4.4	'24.4.4 ~'24.4.11		'24.4월 ~'26.12.31		48,649,545원	유찰
	9회차	'24.4.12	'24.4.12 ~'24.4.19		'24.4월 ~'26.12.31		36,487,159원	유찰
	10회차	'24.4.23	'24.4.23. ~'24.4.30.		'24.5월 ~'27.12.31		24,324,773원	유찰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 출>

3.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 국회 감액 사업의 증액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은 부서간 워크숍 및 협업 행사, 제안제도 운영, 조직역량 점검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억 8,000만원 중 1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8%)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3년도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387	387	-	16.5	403	379	-	24	1,802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129	129	-	51.5	180	167	-	13	120

나. 검토의견

국회에서 감액 조정된 사업의 예산을 증액 전용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반하는 집행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 예산은 부서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관련 예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안(1억 8,400만원) 대비 5,500만원 감액 조정되었음.

11) 일반회계-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7033-403)(기획조정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감액)]

(단위: 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정부안	감액
외교부	일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442	△55

자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본회의 수정안)

그런데 외교부는 2023년 제2회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5,650만원을 동 사업으로 전용 증액하여 행사장 조성 및 방송 연출 용역 비용으로 집행함.

[제2회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으로		
(날짜)	세부사업(내역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내역사업)	비목	금액
전용 ('23.4.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일반수용비 (210-01)	16.5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소통 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7033-403)	일반용역비 (210-14)	56.5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외교역량 강화 정책연구) (7033-403)	일반연구비 (260-01)	40			

자료: 외교부

[2023년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 행사 개요]

○ 일시 : 2023. 4. 5(수) 14:00~15:40 (약 100분간)
○ 장소 : 청와대 영빈관
○ 참석 : 약 135명
- 외교·안보 부처, 대통령실 등 약 20여명(외교·통일·국방 3개 부처 장관 및 보훈처장)
- 민간 : 110명(전문가패널 약10명, 국민방청객 약 100명 등)
○ 세부일정 : 개회 → 모두말씀 → 발표 및 점검 → 전문가·방청객 질의/답변 → 마무리말씀 → 폐회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이에 대해 예산안 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기타 비목의 집행 잔액 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고, 동 사업은 국정과제 관리를 내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어 관련도를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내역사업에서 집행하고자 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 감액은 내내역사업 '전체·실국간·과팀간 워크숍 및 협업 행사 개최'의 효용성·시급성 감소를 사유로 제시한 것이고, 예산 전용은 이와 별도의 내내역사업인 '국정과제 및 자체평가 관련 교육참석 및 업무협의'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임.

[2023년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예산(1억 2,900만원) 세부 내역]

ㅇ **전체·실국간·과팀간 워크숍 및 협업 행사 개최 : 37.5백만원**
- 연찬회 및 소통행사 개최 : 6백만원
- 국정과제·평가업무·조직업무·정부혁신 담당 실무자 워크숍 : 20.5백만원
- 협업·조직문화 개선 사업 실시 : 2백만원
- 부내 멘토링 기획 및 운영 : 9백만원
ㅇ **국정과제 및 자체평가 관련 교육참석 및 업무협의 : 7백만원**
- 회의준비·책자인쇄 등(일반수용비) : 4백만원(2회×2백만원)
- 국정과제 및 자체평가 관련 교육참석 등(국내여비) : 1백만원(5회×0.1백만원×2인)
- 국정과제 및 자체평가 관련 교육참석 등(사업추진비) : 2백만원(5회×0.4백만원)
○ 선진 업무시스템 벤치마킹 및 재외공관 조직역량 점검 : 21백만원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조직 역량 제고 : 13.5백만원
○ 소관 위원회(자체평가, 산하기관평가, 자체규제, 갈등관리 등) 구성·운영 : 28.8백만원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9백만원
○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 활성화 : 12백만원

자료: 외교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확정예산 기준, 2022. 12.)

그러나 국회의 감액은 내역사업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전체에 대해 조정한 것으로, 내내역사업 '국정과제 및 자체평가 관련 교육참석 및 업무협의' 예산 또한 정부안(900만원)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을 증액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반하는 동시에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국가재정법」제46조제3항[12]에도 위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12)「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4. 대중국 외교 사업 전반: 연례적 집행부진 부적정

가. 개 요

외교부의 대중국 외교를 위한 주요 사업은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및 ‘공공외교 역량강화’ 3개 세부사업에서 추진되고 있음.[13)]

[2023년도 대중국 외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075	3,075	-	△120	2,955	1,900	9	1,046	3,560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880	880	-	△82	798	526	-	272	897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434	434	-	△57	377	96	-	281	396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622	622	-	13	635	414	-	221	554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1,005	1,005	-	9	1,014	809	9	196	877
소계	**2,941**	**2,941**	**-**	**△117**	**2,824**	**1,845**	**9**	**970**	**2,724**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8,007	8,007	-	53	8,060	6,763	2	1,296	5,381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509	509	-	-	509	286	-	223	509
한중 기업교류 강화	2,040	2,040	-	△304	1,736	1,396	-	340	-
소계	**2,549**	**2,549**	**-**	**△304**	**2,245**	**1,682**	**-**	**563**	**509**
공공외교 역량강화	16,282	16,282	15	-	16,297	14,189	-	2,108	16,103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13,742	13,742	-	-	13,741	12,078	-	1,663	13,521
대중국 정책공공외교 강화	**260**	**260**	**-**	**-**	**260**	**130**	**-**	**130**	**-**
대일본 정책공공외교 강화	180	180	-	-	180	97	-	83	-
대일본국민 우호증진 외교	998	998	-	-	998	969	-	29	-
인태지역 글로컬 네트워크 구축	-	-	-	-	-	-	-	-	1,178

13) 일반회계-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1134-401)(동북아시아국),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공공문화외교국),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3032-401)(양자경제외교국)

먼저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에는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대중 외교를 위한 4개 내역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도 예산현액 28억 2,400만원 중 18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65.3%)되고 9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다음으로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사업에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과 ‘한중 기업교류 강화’ 2개 내역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 22억 4,500만원 중 16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4.9%)되고 5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마지막으로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에는 ‘대중국 정책공공외교 강화’ 1개 내내역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6,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50.0%)되고 1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대중국 외교 사업의 집행부진 및 예산 규모의 축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 내에서 사업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대중국 외교를 위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3개 세부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예산은 축소되고 있음.

①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에 편성된 4개 내역사업의 경우, 가장 높았던 2022년의 집행률이 70.0%에 불과하고, 2022년 이후 본예산 규모가 32억 7,000만원에서 29억 4,100만원, 27억 2,400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4개 내역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1,313	709	1,263	863	880	526	897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394	170	404	123	434	96	396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441	365	511	550	622	414	554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875	570	1,092	752	1,005	809	877
합계	**3,023**	**1,814**	**3,270**	**2,288**	**2,941**	**1,845**	**2,724**
집행률		**60.0**		**70.0**		**62.7**	**집행중**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2021년~2023년 집행액이 각각 1억 7,000만원, 1억 2,300만원, 9,600만원으로 악화되고 있음.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또한 집행실적이 계속 저조하여, 이에 외교부는 사업예산을 전반적으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과 중국 간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확정된 예산 규모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사업에 편성된 2개 내역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등 2개 내역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567	408	517	180	509	286	509
한중 기업교류 강화	2,213	1,035	2,040	930	2,040	1,396	-
합 계	**2,780**	**1,443**	**2,557**	**1,110**	**2,549**	**1,682**	**509**
집행률		**51.9**		**43.4**		**66.0**	**집행중**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은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중 우호주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이고, ‘한중 기업교류 강화’는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 간 분야별 교류 및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2개 내역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66.0%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부진한 측면이 있음.

한편 한중 기업교류 강화 사업은 2024년도 폐지사업으로 결정되었는데, 외교부는 여타 기업지원 사업과의 중복성·유사성 및 사업의 집행부진 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 축소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수출·수주 확대 지원 활동의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

③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내 ‘대중국 정책공공외교 강화’ 사업은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집행률은 50%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예산 규모 또한 줄어든 측면이 있고, 2022년 집행률은 3.6%에 불과하는 등 최근 3년간 집행이 계속 부진하였음.

[최근 3년간 대중국 정책공공외교 강화 사업 등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대중국 정책공공외교 강화(A)	**330**	**98**	**330**	**12**	**260**	**130**	**-**
집행률		**29.7**		**3.6**		**50.0**	**-**
대일본 정책공공외교 강화(B)	249	100	200	183	180	97	-
대일본국민 우호증진 외교(C)	1,530	575	1,330	924	998	969	-
소계(D=A+B+C)	2,109	773	1,860	1,119	1,438	1,196	-
인태지역 글로컬 네트워크 구축	-	-	-	-	-	-	1,178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외교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대중국 및 대일본 정책공공외교를 위한 3개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인태지역 글로컬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개편하였음. 최근의 집행부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업 개편이 대중국 정책공공외교 사업의 축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외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중국 외교를 위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예산 규모 또한 축소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취지를 고려하여 한중 양국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중국 외교 사업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 전문직 인력 비자 쿼터 입법을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은 현지 자문회사 활용을 통해 미국 내 경제입법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관련 입법 노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억 2,300만원 중 7억 1,200만원이 집행(98.5%)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3년도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2,462	2,462	-	△54	2,408	2,088	-	320	2,917
미국 경제동향 대응	723	723	-	-	723	712	-	11	1,014

나. 검토의견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에 따라 현지 인력수급을 위해 미 의회에서의 전문직 비자 쿼터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나, 법안 발의 서명에 동참하는 의원의 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법안인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은 매 회계연도마다 미국 내 전문직 취업 우리 국민 대상 15,000개의 비자(E-4) 쿼터를 할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외교부는 2012년 이후 전문직 인력 비자 쿼터 입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미 의회 회기마다 법안 발의 서명에 동참하는 의원의 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음.

14) 일반회계-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3032-402)(양자경제외교국)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미 의회 회기별 발의 현황]

구분	113회기 (2013~2014)	114회기 (2015~2016)	115회기 (2017~2018)	116회기 (2019~2020)	117회기 (2021~2022)	118회기 (2023~2024)
발의 의원 수	118명 (상원 6, 하원 112)	87명 (상원 6, 하원 81)	85명 (상원 3, 하원 82)	57명 (상원 3, 하원 54)	54명 (상원 3, 하원 51)	40명 (상원 3, 하원 37)

주) 2024년 5월 기준
자료: 외교부

이에 대해 외교부는 법안 최종 입법을 위해 대미 아웃리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 내 반이민 정서 등으로 법안에 대한 지지의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미국 내 경제입법 동향 모니터링 및 미 의회 대상 아웃리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에서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법안 지지의원 확보를 위해 매년 동일한 현지 자문업체를 유사한 계약액으로 고용하고 있는 반면, 사업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외교부는 그동안 관행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법안 지지의원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내역]

(단위: 만달러)

연도	회사명	계약기간	지출액	활동 내용
2019	Cornerstone	상반기	15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하반기	15	
	Squire Patton Boggs	상반기	7.5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하반기	22.5	
	합계		60	
2020	Cornerstone	상반기	14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하반기	14	
	Squire Patton Boggs	상반기	14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하반기	14	
	합계		56	
2021	Cornerstone	상반기	14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하반기	14	
	Squire Patton Boggs	상반기	14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및 우리 전문 인력의 對美 진출 현황 추가조사
		하반기	17	
	합계		59	

(단위: 만달러)

연도	회사명	계약기간	지출액	활동 내용
2022	Cornerstone	상반기	14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하반기	14	
	Squire Patton Boggs	상반기	14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하반기	14	
	합계		56	
2023	Cornerstone	상반기	14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하반기	14	
	Squire Patton Boggs	상반기	14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및 통상 자문
		하반기	14	
	합계		56	

자료: 외교부

또한 외교부 북미국 소관의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에서도 대미 의회 외교 강화 목적으로 현지 자문회사를 고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할 필요도 있음.

[2023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 내 해외자문회사 고용 현황]

(단위: 백만원, 만달러)

연도	예산액(백만원)	고용 자문회사	업무 분야	집행액
2023	1,793 (의회 1,437 / 정책 홍보 356)	Brownstein Farber Hyatt Schreck	미 의회 상·하원 관련 자문	48
		Thomas Capitol Partners	미 의회 상·하원 관련 자문	48
		Squire Patton Boggs	미 의회 법안·법률 자문	7.5
		Hager Associates	미 의회 법안·법률 자문	5.5
		Qorvis	정책 홍보 자문	30
		Fiscal Note	미 의회 동향법안 분석 서비스 제공	1.5
		계		140.5

자료: 외교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보조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이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 문제로 정작 공장을 관리할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관련 입법이 시급한 상황임.[15)16)]

15) 中·印, 미국 취업비자 싹쓸이…兆단위 투자한 한국엔 2%만 내줘(2024.3.3., 한국일보), 美 비자發 인력난…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 멈출판(2024.3.26., 이데일리)

16)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연도별 H-1B 비자 국별 발급 현황>

따라서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미국 제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계기에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고용 중인 현지 자문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적 점검 및 수시 협의 등을 통해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기업·경제단체 및 교민사회 등과 함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단위: 명, %)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취득자 수	비율	취득자 수	비율	취득자 수	비율	취득자 수	비율	취득자 수	비율
인도	278,491	71.7	319,494	74.9	301,616	74.1	320,791	72.6	279,386	72.3
중국	50,609	13.0	51,597	12.1	50,328	12.4	55,038	12.5	45,344	11.7
필리핀	2,707	0.7	2,711	0.6	2,786	0.7	3,501	0.8	4,619	1.2
캐나다	4,615	1.2	3,987	0.9	3,836	0.9	4,235	1.0	3,852	1.0
한국	**3,476**	**0.9**	**3,665**	**0.9**	**3,481**	**0.9**	**4,097**	**0.9**	**3,603**	**0.9**
멕시코	2,936	0.8	2,543	0.6	2,611	0.6	3,203	0.7	2,808	0.7
파키스탄	1,766	0.5	1,929	0.5	1,880	0.5	2,505	0.6	2,591	0.7
대만	2,637	0.6	2,595	0.6	2,604	0.6	3,016	0.7	2,554	0.7
브라질	1,902	0.4	1,931	0.5	1,986	0.5	2,521	0.6	2,214	0.6
기타	39,264	10.2	36,258	8.4	35,943	8.8	42,595	9.6	39,347	10.2
전체발급건수	388,403	100.0	426,710	100.0	407,071	100.0	441,502	100.0	386,318	100.0

주 1) 2023년 기준 H-1B 비자 취득자 수 상위 9개국 발급 현황, 비자 발급은 추첨 방식으로 결정
2) 여타 상세 국별 취득자 수는 불임 미 이민국(USCIS) 발간 「Characteristics of H-1B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보고서 참고

자료: 외교부

6. 의전장실 기본경비 사업: 설계용역 완료 전 다음년도 공사계약 체결 및 예산 이월 부적정

가. 개 요

‘의전장실 기본경비’ 사업은 의전장실의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5억 2,600만원 중 4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18.3%)되고 15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3년도 의전장실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의전장실 기본경비	2,530	2,530	-	△4	2,526	461	1,517	548	329

나. 검토의견

외교부는 2023년 외빈차고지 개축 관련 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이월하였으나, 2024년 6월 기준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단계별 행정절차 및 설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만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동 사업에는 외빈차고지 개축을 위한 예산 22억원(설계 및 감리비 1억 7,000만원, 공사비 19억 4,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18)]

당초 외교부는 건물 5개동 중에 4개동이 단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 2023회계연도 내에 설계·기존 건물 철거 및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아 공사비까지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비목에서 다음과 같이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17) 일반회계-의전장실 기본경비(7011-253)(의전장실)

18) 외빈차량 보관·정비 등을 위한 외빈차량 차고지는 1970년대 건축된 관리동·정비동·차고동 등 총 5개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50년 이상 운용됨에 따라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2022년 구조안전진단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 신축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음.

[2023년도 의전장실 기본경비 사업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의전장실 기본경비	2,530	2,530	-	△4	-	2,526	461	1,517	548	329
- 일반수용비(210-01)	158	158	-	23	-	181	177	-	4	15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	11	-	3	-	14	13	-	1	11
- 피복비(210-03)	1	1	-	-	-	1	1	-	-	1
- 임차료(210-07)	96	96	-	△71	-	25	11	-	14	10
- 유류비(210-08)	31	31	-	-	-	31	27	-	4	3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0	60	-	△8	-	52	39	-	13	58
- 국내여비(220-01)	1	1	-	2	-	3	2	-	1	1
- 국외업무여비(220-02)	3	3	-	△2	-	1	-	-	1	3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6	26	-	△4	-	22	22	-	-	26
- 기본조사설계비(420-01)	70	70	-	26	-	96	67	7	22	-
- 실시설계비(420-02)	70	70	-	22	-	92	74	18	-	-
- 공사비(420-03)	1,942	1,942	-	-	-	1,942	-	1,462	480	-
- 감리비(420-04)	30	30	-	-	-	30	-	30	-	-
- 시설부대비(420-05)	-	-	-	5	-	5	3	-	2	-
- 자산취득비(430-01)	31	31	-	-	-	31	25	-	6	31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건설사업관리(CM) 업체 부재 및 2023년 분망한 정상외교 수행 일정으로 12월에 공사 관련 계약들이 체결됨에 따라 차년도 용역 완료 후 잔금 지급을 위해「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이월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19)]

그런데 2023년 외빈차고지 개축 관련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까지로,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 완료 후에 착수가 가능한 공사 관련 계약들이 체결되었음.

19)「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023년 외빈차고지 개축 관련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000-00)	계약일	계약명	발주액	계약액	수행기관	계약기간	집행액	이월액	계약 방법
기본조사 설계비 (420-01)	23.7.24.	외빈차량 차고지 **건축기본조사 설계용역**	70	70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은	**23.7~24.1**	63	7	수의
실시설계비 (420-02)	23.11.8.	외빈차량 차고지 **실시설계 용역**	70	70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은	**23.11~24.2 (건축허가 완료시까지)**	56	14	수의
	23.10.24.	외빈차량 차고지 **해체계획 인허가 업무 및 도면작성 용역**	22	22	해이담 건축사사무소	**23.10~24.1 (해체신고 완료시까지)**	18	4	수의
공사비 (420-03)	23.12.27.	외빈차량 차고지 **건축공사**	1,191	1,191	㈜동훈종합건설	**24.5~24.10**	-	1,191	경쟁 입찰
	23.12.26.	외빈차량 차고지 **전기공사**	116	116	㈜서우이앤씨	**24.5~24.10**	-	115	경쟁 입찰
	23.12.26.	외빈차량 차고지 **통신공사**	33	33	(주)디테코	**24.5~24.10**	-	33	수의
	23.12.26.	외빈차량 차고지 **소방공사**	22	22	(주)하이앤텍	**24.5~24.10**	-	22	수의
	23.12.28.	외빈차량 차고지 차고동 **해체공사**	55	55	(주)삼일건영	**24.2~24.4**	-	55	수의
	23.12.28.	외빈차량 차고지 차고동 **폐기물처리 용역**	22	22	(주)정암건설	**23.12~24.12**	-	22	수의
	23.12.28.	외빈차량 차고지 건물동 외 **폐기물처리 용역**	22	22	해암개발(주)	**23.12~24.12**	-	22	수의
	23.12.27.	외빈차량 차고지 **재해예방기술지도**	2	2	(주)서울안전연구원	**24.5~24.10**	-	2	수의
감리비 (420-04)	23.12.26.	외빈차량 차고지 **해체감리용역**	11	11	해이담 건축사사무소	**23.12~ 용역완료시**	-	11	수의
	23.12.26.	외빈차량 차고지 건축분야 **감리용역**	19	19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은	**23.12~24.10**	-	19	수의

자료: 외교부

공사비 등 예산을 이월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해체공사, 건축·전기 등 각종 공사, 감리용역 등의 계약을 2023년 연말에 서둘러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설계완료 전 공사 관련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설계용역 결과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따라 공사비 등이 증가할 경우 대응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2024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6월 기준 설계용역, 외빈차량 사무실 등 이전 및 차고지 철거까지는 완료되었으나, 용산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이후 절차들이 순연됨에 따라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2023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공사비 및 감리비는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며, 이월된 공사비 및 감리비의 경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사례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착공 허가를 거쳐 2024년 내 기계약 범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나, 실무협의 및 행정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경우 연내 완공이 어려울 수 있음.

이 경우「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2024년으로 이월된 공사비 및 감리비는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외교부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연내 외빈차고지 개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20]

20)「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7. 온라인 홍보 강화 사업: 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미추진 및 교체 여비로의 전용 부적정

가. 개 요

‘온라인 홍보 강화’ 사업은 온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을 국민과 밀접하게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억 6,400만원 중 8억 1,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4%)되고 1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2023년도 온라인 홍보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외교홍보역량강화	2,365	2,365	120	△820	1,665	1,503	118	44	2,268
온라인 홍보 강화	1,621	1,621	120	△777	964	814	118	33	1,389
일반연구비(260-01) (홈페이지 개편)	594	594	120	△590	124	120	-	4	-

2023년 동 사업에는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연구비 5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외교부는 2023년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당분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동 예산을 재외공관 직원 이부임을 위한 교체 여비로 전용하였음.

외교부는 2023년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기능 전반을 개선하여 주요 외교정책 홍보 기능 및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동 사업 예산에 홈페이지 개편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연구비 5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음.

21) 일반회계-외교홍보역량강화(7034-401)(대변인실)

그런데 2023년 일반연구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만 집행되고, 당초 계획한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음.

[2023년 온라인 홍보 강화 사업 내 일반연구비(260-01)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일반연구비(260-01)	594	120	△590	-	124	120	4	-	-	4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3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의 노력으로 홈페이지 개편 사업으로 계획한 일부 기능을 개선함에 따라 일반연구비 예산 5억 9,400만원을 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당분간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계획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22)]

22) <2023년 홈페이지 개편 계획 대비 개선 내역>

2023년 개편 계획	개선 내역(진행중인 사항 포함)
1. 게시판 에디터(편집기) 기능 개선	**완료** - HWP파일과 HTML 태그(Tag) 호환성 개선 - 공관 관리자가 본부 도움 없이 태그 수정 가능 - 게시글 작성 시 파일(HWP, PDF, DOC) 불러오기 후 글자 깨지는 현상 개선
2. 보안 강화(취약점 제거)	**완료** - 스크립트 취약점(쿠키값 탈취, 파라미터 변조 등) 제거 -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아이피 지정,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임시 파일 등 삭제 등
3.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웹접근성 : 장애인, 고령자 등이 보다 쉽게 홈페이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개념	**완료** - 시각장애인이 리더기를 사용하여 메뉴 이름 콘텐츠(이미지 캡션 등)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메뉴를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4. 스토리지 용량 확보	**완료** - 서버 안의 불필요한 프로그램 파일 및 임시 파일 등을 제거하여 스토리지 용량 확보
5. 홈페이지 로딩 속도 향상을 위한 서버 튜닝 (이미지 사이즈 조절, DB쿼리 튜닝)	**완료** - 용량이 큰 이미지와 비효율적인 DB쿼리(DB 조회 명령문)로 인해 홈페이지 로딩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과거 업로드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 DB쿼리 튜닝
6. 공관 홈페이지와 CMS(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연동	**완료** - 공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글이 등록되었을 때 CMS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
7. 대표 홈페이지와 외교부 대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유튜브) 연동	**개발중** - 외교부 공식 SNS(4개) 신규 콘텐츠가 외교부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 누리소통망 섹션)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보여주는 기능

그리고 동 불용액 대부분(5억 9,000만원)은 재외공관 발령 직원의 이부임 항공료 및 이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외교부 설명대로라면 당초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예산을 홈페이지 개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재외공관 직원의 이부임을 위한 교체여비로 융통했다는 점에서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가 있음.[23]

2023년 개편 계획	개선 내역(진행중인 사항 포함)
8. CMS UI/UX(화면, 기능) 개선 ※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홈페이지 화면/디자인/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개념 ※ 지침 : 행안부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개발중** - 게시판 표시 방법(한 화면에 게시판 전체 목록을 보여주지 않고 슬라이드식으로 간결히 표시) - 사용자가 게시판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전체 게시판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 정보 표시, 굵게/색상 추가) 등
9. 전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기능 추가	**개발중** - 전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설문조사(ex: 구글 설문조사) 기능 추가 중
10. 민간SNS(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본인 인증 도입	**미완료(행안부 승인 필요)** - 현재 휴대폰/아이핀 인증만 가능 - 민간SNS 인증은 행안부 승인이 필요한바, 행안부와 협의중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8.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 리모델링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은 재외공관 국유화 건물의 대수선 및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외공관의 시설 안전성을 높이고 국격에 어울리는 외교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84억 4,100만원 중 272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8%)되고 11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음.[24)]

[2023년도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30,756	30,756	-	△2,315	28,441	27,244	-	1,197	28,180

나. 검토의견

다수의 재외공관에서 리모델링 사업 지연으로 교부된 사업비가 실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집행부진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실소요 수준의 경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은 연례적으로 공관으로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과다함. 2023년 실집행률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41.9%에 불과하고, 5년 평균 실집행률은 30.2%에 그치고 있으며, 이월액은 2021년~2023년 각각 914만불, 737만불, 800만불로 5년 평균 627만불에 달하고 있음.

24) 일반회계-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4031-401)(기획조정실)

[연도별 리모델링 사업 집행현황]

(단위 : 10,000USD, %)

구분	본부		공관					본부	실집행률 (C/A)
	예산액(A)		교부액 (B)	집행액 (C)	반납액	이월액 (D)	이월률 (D/B)	불용액*	
	만미불	백만원							
2019년	906	9,966	850.5	246.0	-	604.5	71.1	611백만원	27.2
2020년	230	2,737	184.5	105.4	0.7	78.4	42.5	534백만원	45.8
2021년	1,613	19,517	1,390.5	468.8	8.2	913.5	65.7	3,543백만원	29.1
2022년	1,684	19,029	1,039.7	302.4	-	736.7	70.9	3,622백만원	18.0
2023년	**1,839**	**23,723**	**1,709.4**	**771.4**	**138.3**	**799.7**	**46.8**	**987백만원**	**41.9**
5년 평균	1,254.4	14,994.4	1,034.9	378.8	29.4	626.6	60.5	1,859백만원	30.2

주 1) 연도별 편성환율 : '18년 1,130원, '19년 1,100원, '20년 1,190원, '21년 1,210원, '22년 1,130원, '23년 1,290원
2) 불용액은 디브레인 결산 금액으로 시설정비 사업의 불용액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외교부

이처럼 집행이 부진한 것은 다수의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2023년 진행된 19건의 사업 중 14건에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 리모델링 사업 건별 실집행현황]

(단위 : 10,000USD)

공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3년							
		본부			재외공관				
		본예산	예산 현액	당해연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교부현액 (C=A+B)	집행액	반납액 (공관→본부)	다음연도 이월액
칠레	청사 리모델링 (2021~2023, 365)	12.2	-	12.2	40.2	52.4	52.4	-	-
사우디	직원주택 리모델링 (2021~2023, 470)	11.5	-	11.5	210.7	222.2	213.6	8.6	-
인도	청사 리모델링 (2021~2024, 647)	163.0	-	163.0	174.7	337.7	250.3	-	87.4
이탈리아	청사 리모델링 (2019~2024, 856)	171.1	-	171.1	196.8	367.9	208.3	-	159.6
네덜란드	영사동 리모델링 (2020~2025, 339)	-	-	-	8.4	8.4	5.4	3.0	-
프랑스	청사 리모델링 (2022~2026, 1,508)	268.0	-	142.4	62.0	204.4	92.8	94.3	17.3
세네갈	관저 리모델링 (2020~2024, 446)	338.0	-	338.0	-	338	196.9	-	141.1
러시아	관저 리모델링 (2020~2026, 565)	35.0	-	35.0	1.6	36.6	20.6	-	16.0
캐나다	관저 리모델링 (2017~2024, 339)	161.5	-	161.5	-	161.5	1.5	-	160.1

(단위 : 10,000USD)

공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3년							
		본부			재외공관				
		본예산	예산 현액	당해연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교부현액 (C=A+B)	집행액	반납액 (공관→본부)	다음연도 이월액
프랑스	영사동 리모델링 (2021~2024, 237)	234.7	-	234.7	1.3	236	208.1	7.5	20.4
미국	관저 리모델링 (2020~2026, 938)	-	-	-	32.0	32.0	26.7	5.3	-
노르웨이	청사 리모델링 (2021~2025, 449)	18.3	-	18.3	-	18.3	7.3	-	11.0
아르헨티나	관저 리모델링 (2021~2025, 382)	181.7	-	181.7	-	181.7	97.6	-	84.1
영국	관저 리모델링 (2022~2027, 427)	1.7	-	1.7	-	1.7	1.7	-	-
카타르	청사 리모델링 (2022~2025, 300)	140.6	-	140.6	7.3	147.9	80.6	-	67.3
헝가리	청사 리모델링 (2022~2025, 120)	3.0	-	3.0	1.8	4.8	3.6	-	1.2
페루	청사 리모델링 (2023~2026, 378)	26.1	-	26.1	-	26.1	15.1	-	11.0
시애틀	관저 리모델링 (2023~2026, 202)	18.6	-	18.6	-	18.6	7.9	-	10.7
유네스코	관저 리모델링 (2023~2025, 215)	50.0	-	50.0	-	50	9.6	27.9	12.5
합계		1,835		1,709.4	736.7	2,446.2	1500	146.6	799.7

자료: 외교부

한편 2023년 이월액이 발생한 리모델링 사업에서 최초 계획 대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된 사유를 살펴보면, 주요 지연요소가 철거 중 추가사항 발생(인도, 프랑스), 인허가 시 내외부 복원조치(프랑스), 인허가 지연(아르헨티나, 카타르, 페루)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현지여건 특성 및 주재국의 행정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공관에서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의 최초 계획 대비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동 현황]

공관/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2021년 **~2023년**	2021년 **~2024년**	**556만 미불**	**647만 미불**	**강당 철거 중 구조가 취약한 상태 발견**으로 구조 검토 후 보강, 이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으로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2019년 ~2024년	2019년 ~2024년	**750만 미불**	**856만 미불**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및 **추가설계**에 따른 공사비 설계비 변경
주프랑스(대) 청사 리모델링	2022년 **~2024년**	2022년 **~2026년**	**1,092만 미불**	**1,508만 미불**	**인허가 시 내외부 복원조치**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2020년 **~2024년**	2020년~ **2026년**	**490만 미불**	**565만 미불**	**주재국 전시상황 및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주캐나다(대) 관저 리모델링	2017년 **~2023년**	2017년 **~2024년**	**290만 미불**	**339만 미불**	**인허가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기간 변경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주프랑스(대) 영사동 리모델링	2021년 **~2023년**	2021년 **~2024년**	**190만 미불**	**237만 미불**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 예산 반영시 확인 할 수 없었던 **추가 공사사항(공조 교체 등)이 철거 시 발생**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주아르헨티나(대) 관저 리모델링	2021년 **~2024년**	2021년 **~2025년**	382만 미불	382만 미불	**인허가 승인 지연**으로 사업기간 변경
주카타르(대) 청사 리모델링	2022년 **~2024년**	2022년 **~2025년**	**260만 미불**	**300만 미불**	**인허가 승인 지연**으로 사업기간 변경 및 **설계 중 당초 공조시스템 수리하려고 하였으나, 수리 불가**로 교체에 따른 사업비 변경
주페루(대) 청사 리모델링	2023년 **~2025년**	2023년 **~2026년**	**224만 미불**	**378만 미불**	**인허가기간 추가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및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
주유네스코(표) 관저 리모델링	2023년 **~2024년**	2023년 **~2025년**	**152만 미불**	**215만 미불**	**예산 반영 시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이 설계 중 발생(누수)**하여 기술진단용역 수행 및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더불어 사업지연이 발생할수록 공사비 및 임차료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은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5년도 예산안에 재외공관의 실 집행률 및 사업수행능력 등에 맞추어 실소요 수준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준수 필요

가. 개 요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은 재외공관 외교활동 지원인력인 행정직원의 인건비·교육훈련 예산·귀부임여비 및 전지의료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929억 7,100만원 중 1,848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8%)되고 81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2023년도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201,281	201,281	-	△8,310	192,971	184,858	-	8,113	208,655

나. 검토의견

국가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경우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으나, 외교부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국가예산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인사 수요 발생 시 이를 고려한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26)]에 따라 2023년 기준 국가기관은 공

25) 일반회계-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4021-401)(기획조정실)

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외교부는 2021년 장애인의무고용인원 43명 중 3명을 고용하여 40명이 미달되었고, 2022년은 장애인의무고용인원 45명 중 2명을 고용하여 43명이 미달되었으며, 2023년에는 장애인의무고용인원 46명 중 1명을 고용하여 45명이 미달되는 등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은 감소하여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적용대상 정원	의무고용인원 (A)	고용인원 (B)	고용 미달인원 (A-B)	고용부담금 납부액
2021년	1,278	43 (3.4%)	3	40	569
2022년	1,262	45 (3.6%)	2	43	625
2023년	1,285	46 (3.6%)	1	45	71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외교부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 미달로 국가 재원이 지출되지 않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사 수요 발생 시 이를 고려한 인력수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27)]

또한 직접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연계고용 등의 대안 또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28)]

27)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각 재외공관은 사실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공관당 한국국적 행정직원 수가 평균 약 7명에 불과하여, 현재와 같이 전 재외공관을 상시 50명 이상의 단일사업장으로 간주하여 3.6%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상기와 같은 공관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대다수 재외공관의 장애인 근무/생활 여건이 국내보다 열악하여 장애인 중 해외근무 지원자가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황이고, 전 재외공관의 약 55%가 임차 청사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우며, 각 공관별 시설 공사 시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국가별 협력사업(ODA): 무상 ODA 실질적 집행정보 제공방안 모색 및 철저한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공적개발원조’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증여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29] 외교부의 무상 ODA는 2023년도 예산현액 1조 2,978억 7,200만원 중 1조 2,477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501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연도별 외교부 무상 ODA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이·전용	예비비	예산현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19년	국가별 협력사업	363,213	-	-	363,213	363,213	-	100.0
	인도적지원	79,403	-	-	79,403	79,403	-	100.0
	그 외	352,199	-	-	352,199	349,997	2,202	99.4
	'19년 ODA 합계	794,815	-	-	794,815	792,613	2,202	99.7
'20년	국가별 협력사업	411,814	△43,947	-	353,730	353,730	-	100.0
	인도적지원	91,987	62,000	-	177,697	177,697	-	100.0
	그 외	399,015	△18,053	-	333,893	329,173	4,720	98.6
	'20년 ODA 합계	902,816	±62,000	-	865,320	860,600	4,720	99.5
'21년	국가별 협력사업	481,554	△49,036	-	432,518	432,518	-	100.0
	인도적지원	124,094	69,200	43,750	237,044	236,334	710	99.7
	그 외	337,122	△20,164	-	316,958	316,958	-	100.0
	'21년 ODA 합계	942,770	±69,200	43,750	986,520	985,810	710	99.9
'22년	국가별 협력사업	499,734	-	-	449,574	447,574	2,000	99.6
	인도적지원	236,641	△44	64,830	301,427	301,427	-	100.0
	그 외	365,182	△112	-	354,671	352,120	2,529	99.3
	'22년 ODA 합계	1,101,557	△156	64,830	1,105,672	1,101,121	4,529	99.6
'23년	국가별 협력사업	660,014	△8,420	-	651,594	610,201	41,393	93.6
	인도적지원	299,367	8,420	-	307,787	307,774	13	100.0
	그 외	338,469	-	-	338,491	329,797	8,695	97.4
	'23년 ODA 합계	1,297,850	±8,420	-	1,297,872	1,247,772	50,101	96.1

자료: 외교부

29)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무조정실 소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총괄·조정 하에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를, 외교부는 무상원조를 주관함.

무상 ODA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별 협력사업’[30]은 수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자간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함)에 출연하여 수행되고 있음. KOICA는 2023년도 출연금 예산현액 4,769억원(간접비 등 제외) 중 4,555억원을 집행(집행률 95.5%)하였음.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가별 협력사업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사업 건수	예산액 (A)	예산현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액 (C)	집행률	
							예산액 대비 (C/A)	예산현액 대비 (C/B)
2018	267건	3,278	3,378	228	30	3,120	95.2	92.4
2019	264건	3,466	3,412	85	68	3,259	94.0	95.5
2020	290건	3,746	2,866	39	166	2,661	71.0	92.8
2021	361건	4,052	3,651	47	239	3,365	83.0	92.2
2022	377건	4,330	3,923	14	194	3,715	85.8	94.7
2023	394건	5,190	4,769	26	188	4,555	87.8	95.5
2024	424건	6,021						

주 1)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사업시행계획 기준
2) 소규모・분쟁취약・사업효과성・사업행정비 제외, 국별협력사업 예산 및 실집행액 기준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나. 검토의견

첫째, 외교부와 KOICA는 국가별 협력사업의 명목집행률과 실제 사업추진상황 간에 괴리가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집행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가능한 사업에 초과 배정하는 방식을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음.

KOICA 집행단계에서 2023년 국가별 협력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5%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예산을 집행가능한 사업에 당초 계획 대비 초과 배정하는 것에 기인함.

예를 들어 중점협력국 중 가장 많은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이 배정되는 ‘베트남(ODA)’[31] 사업을 보면, 2023년 수행된 사업 26건 중에서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가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이 다음과 같이 9건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현액을 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전체 집행실적을 제고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30) 일반회계-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원조(2431),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2432), 중남미지역 국가원조(2433), 중동CIS지역 국가원조(2434)(개발협력국・한국국제협력단)

31) 세부사업: 베트남(ODA)(2431-401)

[2023년도 베트남(ODA)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가 큰 사업 현황(KOICA 단계)]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전용 조정액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 (C-A)	본예산 대비 집행률 (C/A)
① 베트남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18-'25/550만불)	1,500	△1,490	10	-	-	△1,500	-
② 베트남 뚜옌꽝성 포용적 농촌개발 프로그램('19-'23/1,500만불)	3,600	2,830	6,430	6,014	93.5	2,414	167.1
③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사업('20-'25/900만불)	1,600	2,542	4,142	3,823	92.3	2,223	238.9
④ 베트남 탱화성 Ma강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20-'25/900만불)	2,600	△1,640	960	722	75.2	△1,878	27.8
⑤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 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20-'25/1,050만불)	1,835	△1,125	710	645	90.8	△1,190	35.2
⑥ 베트남 중부지역 꽝빈성 평화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21-'26/1,000만불)	1,450	2,020	3,470	3,067	88.4	1,617	211.5
⑦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지역 평화마을 조성 사업(UNDP)('22-'26/2,500만불)	3,750	△2,259	1,491	1,462	98.1	△2,288	39.0
⑧ 베트남 정부업무 평가제도 개선 및 집행 모니터링평가(M&E) 시스템 구축 사업('22-'25/300만불)	1,063	△1,063	-	-	-	△1,063	-
⑨ 베트남 타이응웬성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지원사업('22-'25/810만불)	1,700	△1,700	-	-	-	△1,700	-

주) KOICA 단계에서 집행액(B)이 본예산(A) 대비 10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내역사업에 대해 작성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본예산 기준으로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3년 총 394건의 국가별 협력사업 중 KOICA 집행단계에서 연도말 기준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이 123건(31.2%)으로, 2021년~2023년 기간 연속적으로 30% 이상의 사업 집행이 저조한 상황임.

[국가별 협력사업 본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KOICA 집행단계) 현황]

(단위: 건)

구분	KOICA 단계 총사업수	60% 미만 집행사업(KOICA 집행단계)		
		본예산 대비	예산현액 대비	예산 미배정
2021	361	122 (33.8%)	44 (12.2%)	20 (5.5%)
2022	377	126 (33.4%)	40 (10.6%)	6 (1.6%)
2023	394	123 (31.2%)	40 (10.2%)	17 (4.3%)

주 1) 본예산 대비, 예산현액 대비는 0원 사업 제외
2) 예산 미배정은 본예산 및 전년도이월액이 없는 0원 사업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각 연도마다 당초 편성된 본예산과 비교하여 30% 이상의 사업 집행이 저조함에 따라, 2023년에는 종료예정사업 101건 중 60건(59.4%)의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2021년 이후 다수의 사업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국가별 협력사업 사업기간 연장(KOICA 집행단계)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사업수	사업종료	사업기간 연장	사업취소
2021	전체	361	47 (13.0)	56 (15.5)	3 (0.8)
	당해연도 종료예정사업	87	47 (54.0)	40 (46.0)	-
2022	전체	377	30 (8.0)	72 (19.1)	3 (0.8)
	당해연도 종료예정사업	83	30 (36.1)	53 (63.9)	-
2023	전체	394	41 (10.4)	98 (24.9)	3 (0.8)
	당해연도 종료예정사업	101	40 (39.6)	60 (59.4)	1 (1.0)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이와 같이 실제 집행단계에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확인되는 반면 2023년 국가별 협력사업의 명목집행률이 95.5%로 개선되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집행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초과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외교부는 명목집행률과 실제 국가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 간의 괴리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다 실질적인 집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집행률 제고를 위한 부적정한 관행을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3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집행이 저조하므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수원국의 제도적 여건에 대한 검토를 보다 강화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복합적인 ODA 환경에 대응하여 사업지연요인을 면밀히 관리하여 예정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48개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중 25개 사업(52.1%)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그 중 15개 사업(31.3%)의 경우 집행률 0%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내역사업명	본 예산 (A)	예산 현액	코이카 실 집행액 (B)	불용액	본예산 대비 집행률 (B/A)	'24년 예산	집행부진 사유
1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	100	-	-	-	0.0	1,500	• 수원국 원조사업에 대한 법령 체계(상위부처 문안검토, 자체 F/S 실시 등)에 따른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2	베트남 전쟁피해 집중지역 취약계층 취·창업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3-'27/1,200만불)	492	12	-	12	0.0	500	• 수원국 원조사업에 대한 법령 체계(상위부처 문안검토, 자체 F/S 실시 등)에 따른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3	인도네시아 유료도로 운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23-'26/700만불)	50	8	-	8	0.0	850	• 수원국측 협의의사록 검토기간 소요 및 체결 지연
4	캄보디아 국립 축산물 안전 및 위생 연구원 설립 사업('23-'27/900만불)	448	-	-	-	0.0	100	• 수원기관 측 사업대상지 및 기타 구성요소 변경 요청에 따른 R/D 체결 지연
5	필리핀 경찰청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3-'28/690만불)	700	118	-	118	0.0	1,300	• 교부액 조정 결정에 따라 PMC 용역비 집행액 조정
6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 서비스 역량강화사업('23-'26/965만불)	100	17	-	17	0.0	1,860	• 2023년 중 수원국과의 R/D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23.12.10.)에 따른 PMC 선정 입찰 지연
7	라오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23-'26/880만불)	57	10	-	10	0.0	1,486	• 수원기관의 사업 주요내용 변경 요청에 따른 계획 조정 검토 필요
8	라오스 항만 관리 정보화 시스템 (Port-MIS) 구축 사업('23-'27/425만불)	55	3	-	3	0.0	1,000	• 2023년 4분기 PMC 선정 입찰에 착수했으나, 최종 계약체결은 2024년 1분기 진행 예정
9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23-'26/700만불)	100	8	-	8	0.0	980	• 수원국 정부의 협의의사록 내부 승인절차 및 체결 지연
10	피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전문의료인력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사업 ('23-'27/977만불)	100	8	-	8	0.0	900	• 사업수행기관(PMC) 선정 입찰 유찰에 따라 사업 착수 지연
11	이집트 한-이집트 기술대학 교육역량강화 및 교원 양성 사업('23-'26/800만불)	594	39	-	39	0.0	4,162	• 수원국과의 R/D 체결 지연 ('23년 9월)으로 인한 PMC 선정 지연
12	파라과이 농민조합 육성을 통한 원예 경쟁력 강화사업('23-'28/1,200만불)	500	-	-	-	0.0	1,620	• 수원국 RD문안검토 지연으로 인한 RD체결 지연
1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스마트 기술기반 산림 도시녹화 역량강화사업 ('23-'28/770만불)	50	29	-	29	0.0	2,027	• PMC 계약방식변경(공공협력약정체결 ->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PMC 계약 체결 지연

(단위: 백만원, %)

연번	내역사업명	본 예산 (A)	예산 현액	코이카 실 집행액 (B)	불용액	본예산 대비 집행률 (B/A)	'24년 예산	집행부진 사유
14	키르기스스탄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앙 집중 AMI 시스템 구축사업('23-'26/1,050만불)	50	-	-	-	0.0	3,300	• 상호 약정서 문안 검토 과정 지연으로 약정 체결 시기 및 약정금 지급 요청 순연
15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23-'27/500만불)	50	-	-	-	0.0	450	• 수원국 불안정한 정세(전시상황) 下, 사업 전반 순연
16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3-'27/850만불)	730	30	3	27	0.4	1,457	• 수원국의 RD문안검토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17	에콰도르 쿠엔카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통합 관리 및 자원순환 역량강화사업('23-'29/900만불)	345	62	3	59	0.9	1,000	• PMC 입찰 유찰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
18	베트남 폭력피해 여성/여아 예방 및 보호모델 강화사업(UNFPA)('23-'26/500만불)	100	9	2	7	2.0	2,497	• 수원국 원조사업에 대한 법령체계(상위부처 문안검토, 자체 F/S 실시 등)에 따른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19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 및 농가 역량강화 사업('23-'28/700만불)	50	9	1	9	2.0	1,200	• 수원국측 협의의사록 검토기간 소요 및 체결 지연
20	키르기스스탄 가축 품종개량 및 인공수정인력 역량강화사업('23-'27/750만불)	50	2	1	1	2.0	1,462	• 사업총괄관리기관(PMC) 선정 순연
21	타지키스탄 전력소외 지역 전력망 구축 2차 사업('23-'26/1,400만불)	50	1	1	-	2.0	6,131	• PMC 용역 입찰 4차례 유찰에 따라 계약체결 시기 순연
22	캄보디아 ICT 분야 직업기술훈련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환경구축 사업('23-'27/800만불)	100	3	3	-	3.0	2,400	•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순연되어 사업 착수 지연
23	우즈베키스탄 하원 전자의회 도입과 디지털화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지원사업('23-'25/600만불)	50	50	2	48	4.0	757	• 협력국 정부의 요청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추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
24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자연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사업('23-'27/600만불)	1,020	100	83	17	8.1	873	• 수원기관 측 사업대상지 및 기타 구성요소 변경 요청에 따라 사업 추가검토 실시
25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역량 개선사업('23-'27/900만불)	645	87	59	28	9.1	1,400	• 수원국의 RD문안검토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26	모로코 마라케시 친환경 전기버스 교통체계 구축사업('23-'26/1,300만불)	450	74	69	5	15.3	5,823	• RD협의 지연(내륙운송 경비 관련)에 따라 PMC 선정 지연('23년 12월)
27	카메룬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23-'28/1,400만불)	470	80	77	3	16.4	2,000	• 수원국과의 R/D 체결 지연('23.11월)으로 인한 사업 착수 및 PMC 선발 지연
28	이라크 쿠르드 지역학교 내 난민통합교육 강화사업 ('23-'28/1,200만불)	100	32	20	12	20.0	2,000	• 수원국의 정치적 상황(선거 라마단 및 휴일)으로 인하여 R/D 체결 지연

(단위: 백만원, %)

연번	내역사업명	본 예산 (A)	예산 현액	코이카 실 집행액 (B)	불용액	본예산 대비 집행률 (B/A)	'24년 예산	집행부진 사유
29	르완다 산업 표준화 ICT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23-'28/700만불)	259	114	85	29	**32.8**	2,300	• 사업시행자 선정 지연
30	세네갈 콜다 주 통합적 접근을 통한 미곡가치사슬 강화사업('23-'28/1,450만불)	1,743	683	673	10	**38.6**	2,206	• 추가 기획조사 실시 등에 따른 사업 착수 순연
31	가나 전역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이행을 통한 보건안보 역량강화사업 ('23-'27/1,000만불)	1,540	762	731	31	**47.5**	1,548	• USCDC 본부 약정서 검토 지연에 따른 약정체결 지연
32	알제리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대기관리 역량강화사업 ('23-'27/550만불)	100	50	49	1	**49.0**	1,092	• 수원국과의 R/D 체결 지연('24.2월)으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
33	라오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폐기물 및 하수처리 역량강화 2차사업(GGGI) ('23-'27/1,050만불)	600	415	389	26	**64.8**	1,009	-
34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ICT 교육환경 조성사업('23-'28/1,220만불)	50	40	38	2	**76.0**	2,430	-
35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 아보보 지역 상수급수 연결 사업('23-'26/700만불)	900	762	747	15	**83.0**	3,400	-
36	탄자니아 여성 청소년 STEM 교육 지원사업('23-'27/1,000만불)	300	290	287	3	**95.7**	3,943	-
37	몽골 자동차 검사역량 제고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사업 ('23-'27/1,300만불)	100	98	97	1	**97.0**	860	-
38	엘살바도르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23-'26/504만불)	144	144	141	3	**97.9**	1,000	-
39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역량강화사업 ('23-'26/495만불)	100	100	99	1	**99.0**	775	-
40	코트디부아르 펠릭스 우푸에 부아니 대학교 ICT 교육역량 강화 및 ICT 혁신센터 설립 사업('23-'27/995만불)	300	300	298	2	**99.3**	2,500	-
41	탄자니아 도도마시 및 아루샤 농촌지역 상수도시설 모델구축 시범사업 ('23-'26/382만불)	50	50	50	-	**100.0**	3,061	-
42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행정 역량강화 및 식물검역소 개선사업('23-'25/674만불)	50	50	50	-	**100.0**	1,339	-
43	우즈베키스탄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시설 구축을 통한 경찰역량 강화사업 ('23-'27/600만불)	50	50	50	-	**100.0**	1,538	-
44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 ('23-'27/840만불)	50	50	50	-	**100.0**	1,200	-

(단위: 백만원, %)

연번	내역사업명	본 예산 (A)	예산 현액	코이카 실 집행액 (B)	불용액	본예산 대비 집행률 (B/A)	'24년 예산	집행부진 사유
45	이란 내 아프간 여성 난민을 위한 통합적 성생식 보건 및 보호 서비스 지원사업(UNFPA) ('23-'26/500만불)	505	530	519	11	102.8	3,534	-
46	탄자니아 잔지바르 여성어업종사자 대상 해양수산업 가치사슬 구축 사업 ('23-'27/550만불)	50	60	59	1	118.0	2,296	-
47	네팔 포카라시 리사이클/업사이클 플랫폼 및 친환경 시범마을 구축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지원사업('23-'29/980만불)	50	92	92	-	184.0	1,042	-
48	에티오피아 낙농가치사슬 및 이해관계자 역량강화를 통한 유제품 품질 개선사업('23-'28/1,000만불)	50	112	106	6	212.0	2,507	-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2023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의 초년도 사업 착수 비율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48건 중 당해연도 내 착수에 성공한 사업은 15건(31.3%)에 불과한 반면, 33건(68.7%)은 착수시점이 지연되었음.

추진이 지연된 신규사업 중 협의의사록 체결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업이 12건이고, 협의의사록이 체결된 이후 사업관리기관의 선정까지 이르지 못했거나 실제 착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이 21건으로 나타남.

[2023년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초년도 사업 현황(KOICA 단계)]

(단위: 건, %)

총 신규사업 수	초년도 사업착수	초년도 사업착수 지연			
		소계 (A+B+C)	협의의사록[1] 미체결 (A)	사업관리기관[2] 미선정 (B)	사업관리기관 선정 후 착수 준비 (C)
48	15 (31.3)	33 (68.7)	12 (25.0)	13 (27.1)	8 (16.7)

주 1)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 미체결'은 KOICA와 수원국/수원기관 간 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

2) '사업관리기관(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미선정'은 협의의사록(RD)은 체결되었으나 이후 KOICA의 위탁에 따라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으로 본격적인 사업착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의미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의 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 2년 전 사업을 발굴・형성하는 장기 검토(N-2년 예비검토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신규사업의 집행이 저

조한 측면이 있으므로,[32] 외교부와 KOICA는 당사국의 사업착수 절차 등 제도적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공정별 지연 요소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수원국의 분담사항 미이행 또는 이행 지연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수원국과의 협의를 지속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동 사업들의 2024년도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2025년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 진행에 대한 수원국의 의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 취소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에콰도르 키토시 혁신센터 건립을 통한 창업 및 기업혁신 지원체계 강화 사업('20-'26/900만불)(연번11)' 은 수원국 분담사항인 구조보강공사 입찰 지연 및 건축부지 변경 요청으로 분담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원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4년도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예로 '베트남 타이응웬성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지원사업('22-'25/810만불)(연번2)' 는 사업부지 미제공 등 수원국의 책임사항 이행이 불가함이 확인되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처럼 사업 추진에 대한 수원국의 의지가 미흡한 경우 사업 취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3년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및 이행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내역사업명	본 예산 (A)	예산 현액 (B)	코이카 실집행액 (C)	본예산 대비 집행률 (C/A)	'24 예산	'23년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내역
1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18-'24/350만불)	411	1,461	193	46.9	-	• 기자재 통관 지연 및 관리 미비, 전기 및 인터넷 설치 지연

32) <2022년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초년도 사업 현황(KOICA 단계)>

(단위: 건, %)

총 신규사업 수	초년도 사업착수	초년도 사업착수 지연			
		소계 (A+B+C)	협의의사록 미체결 (A)	사업관리기관 미선정 (B)	사업관리기관 선정 후 착수 준비 (C)
66	36 (54.5)	30 (45.5)	21 (31.8)	5 (7.6)	4 (6.1)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

연번	내역사업명	본 예산 (A)	예산 현액 (B)	코이카 실집행액 (C)	본예산 대비 집행률 (C/A)	'24 예산	'23년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내역
2	베트남 타이응웬성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지원사업('22-'25/810만불)	1,700	-	-	0.0	50	• 사업부지 미제공 등 핵심 수원국 책임사항 이행 불가 확인(협의를 통해 사업취소 검토 중)
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 ITS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19-'24/550만불)	2,453	2,305	1,674	68.3	990	• 수원기관 분담사항인 기초공사 지연
4	방글라데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18-'24/750만불)	1,200	819	794	66.2	1,334	• 사업 착수를 위한 수원국 별도 사업 승인 행정절차 지연(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미이행)
5	방글라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국가 간선도로망 안전성 강화 사업('20-'25/893만불)	2,335	686	512	21.9	670	• 수원기관 과업인 도로 및 교통관리센터 케이블 포설 및 토목 공정 지연
6	방글라데시 사이버안전을 위한 디지털 수사 역량 확산 사업('20-'25/480만불)	1,909	303	271	14.2	1,939	• 수원국 분담사항인 건축 부지정리 지연
7	파키스탄 KP주 아보타바드시 하베리안지역 상수도공급 지원사업('21-'26/1,200만불)	2,191	703	489	22.3	3,390	• 수원기관 측 상수도 시설위치 변경요청 및 분담사항(지질조사) 지연
8	피지 멜라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역량강화사업('18-'24/600만불)	403	278	233	57.9	370	• 수원기관 측 기자재 성능시험 및 내부승인 지연
9	가나 관개지구 개선 및 물 관리 역량강화 사업('20-26/653만불)	1,400	644	598	42.7	2,620	• 가나 관개청 과업 지연(관개 개선 설계 검토)
10	모로코 스마트 멀티마이크로그리드 R&D 역량강화 사업('19-'24/470만불)	2,000	593	580	29.0	1,240	• 기자재 통관 및 수원기관의 사업활동(실증 사이트 구축) 계획 검토 지연
11	에콰도르 키토시 혁신센터 건립을 통한 창업 및 기업혁신 지원체계 강화 사업('20-'26/900만불)	2,085	761	569	27.3	1,280	• 수원국 분담사항인 구조보강공사 입찰 지연 및 건축부지 변경 요청(분담사항 조정 예정)
12	에콰도르 국가품질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정계량 역량강화 사업('20-'24/410만불)	1,846	599	438	23.7	199	• 수원국 분담사항(교통관제 센터 건축) 이행 지연
13	엘살바도르 국립보건교육센터 설립 및 보건교육 강화사업('19-'25/718만불)	2,819	816	481	17.1	2,719	• 수원국 분담사항인 건축 부지 정리 등 이행 지연
14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버스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21-'26/590만불)	1,454	454	450	31.0	1,026	• 수원국 분담사항(기자재 설치 실험실 리모델링) 이행 지연
15	엘살바도르 ITCA 공학교육역량 강화 사업('21-'26/580만불)	1,147	477	432	37.7	1,810	• 수원국 건축허가 절차 지연
16	이라크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2차 지원사업('14-'25/541만불)	800	138	23	2.9	2,776	• 수원기관 분담사항인 시공입찰 및 시공사 선정 지연 및 의사결정 지연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넷째, 수원국의 사업 관련 변경 요청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 또한 다수 존재하므로, 외교부와 KOICA는 ODA 사업 추진에 있어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사업 부지 등에 대한 사전점검 등 충분한 예비조사를 통해 사업의 주요내용 변경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모로코 직업훈련교사 기술 향상 훈련 허브 센터 설립 사업('20-'24/600만불)(연번8)' 은 모로코 정부의 건축방식 변경(리모델링→신축) 요청으로,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20-'26/1,100만불)(연번10)' 은 수원기관측 사업대상지역 변경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ODA 사업 추진 시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철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수원국의 사업 관련 변경 요청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내역사업명	본 예산 (A)	예산 현액 (B)	코이카 실집행액 (C)	본예산 대비 집행률 (C/A)	'24 예산	비 고
1	인도네시아 하천 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사업('21-'25/250만불)	762	315	273	35.8	850	• 수원기관의 사업대상지 변경 요청 확정을 위한 MoU 체결 지연이 지연되어, '23년 6월 양해각서 체결 후 PMC 선정 및 과업에 착수
2	인도네시아 재난대응 공공의료 훈련 역량강화사업('22-'25/1,200만불)	2,880	5	-	0	1,400	• 수원기관(보건부) 담당부서 변경, 수원기관 측 R/D 검토 협조 지연 및 사업 재조정 요청 등에 따른 R/D 체결 지연
3	필리핀 동부사말 기안 펠리페 아브리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 재건사업('15-'26/876.6만불)	1,094	47	24	2.2	200	• 수원기관과 사업요소 조정 협의(ROD 수정) 절차 중으로 '24년 내 RD 재체결, 신규 사업수행업체 선정 예정
4	몽골 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및 운영 역량강화를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강화 사업('21-'26/1,400만불)	1,885	595	592	31.4	4,435	• 일부 과업(철도안전 통합 감시제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이 수원기관과의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수행이 지연되었고, 철도교통제어센터 구축 설계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 및 기자재 입찰이 순연
5	라오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23-'26/880만불)	57	10	-	0	1,486	• 수원기관의 사업 주요내용 변경 요청에 따른 계획 조정 검토 필요
6	파키스탄 KP주 아보타바드시 하베리안지역 상수도공급 지원사업('21-'26/1,200만불)	2,191	703	489	22.3	3,390	• 수원기관 측 상수도 시설위치 변경요청 및 분담사항(지질조사) 지연으로 일정 순연
7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2차 사업('18-'24/560만불)	1,612	782	758	47.0	182	• SW과업심의 결과, 시스템 유지보수과업 수행자 조달방식 변경에 따라 과업 추진 지연

(단위: 백만원, %)

연번	내역사업명	본 예산 (A)	예산 현액 (B)	코이카 실집행액 (C)	본예산 대비 집행률 (C/A)	'24 예산	비 고
8	모로코 직업훈련교사 기술 향상 훈련 허브 센터 설립 사업('20-'24/600만불)	800	453	452	56.5	2,040	• 모로코 정부의 건축방식 변경(리모델링→신축) 요청으로 활동 추진 지연
9	탄자니아 도도마주 보건의료정보체계(GoT-HoMIS) 확산 사업('21-'25/620만불)	2,225	577	293	13.2	2,697	• 수원국 정부의 보건의료정보시스템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기자재 목록변경으로 인해 각 보건시설에 설치예정인 기자재 조달 지연
10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20-'26/1,100만불)	2,511	1,311	1,262	50.2	4,100	• 2022년 수원기관측 사업대상지역 변경 요청에 따른 과업 순연
11	파라과이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교육접근성 향상사업('21-'27/990만불)	2,250	221	211	9.4	2,270	• 파라과이 신정부 수립으로 인한 수원기관 변경 및 사업범위 조정 요청으로 건축과업 중단
12	에콰도르 키토시 혁신센터 건립을 통한 창업 및 기업혁신 지원체계 강화 사업('20-'26/900만불)	2,085	761	569	27.3	1,280	• 수원국 분담사항인 구조보강공사 입찰 지연 및 건축부지 변경 요청(분담사항 조정 예정)
13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자연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사업('23-'27/600만불)	1,020	100	83	8.2	873	• 수원기관 측 사업대상지 및 기타 구성요소 변경 요청에 따라 사업 추가검토 실시로 사업 착수 지연
14	도미니카공화국 여성 중심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사업('20-'26/550만불)	1,512	544	444	29.4	1,150	• 건축 사업부지 1개소 재지정에 따라 건축과업 순연
15	우즈베키스탄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사업('22-'26/1,415만불)	50	50	24	47.7	1,045	• 본사업 추진과 연계 필요한 선행사업의 추가지원 요구 및 결과보고 지연 등으로 기획조사가 장기 순연되어 사업수행자 선정 및 착수 지연 발생
1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 취창업 연계형 비즈니스 IT 교육 역량강화 사업('22-'27/500만불)	1,756	688	687	39.1	1,721	• 수원기관 요청에 따른 학위과정 역량강화 인원 조정 및 기자재 조달 과업 지연에 따라 본예산 잔액 발생
17	우즈베키스탄 하원 전자의회 도입과 디지털화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지원 사업('23-'25/600만불)	50	50	2	3.8	757	• 사업수행자 선정절차 진행 도중, 협력국 상원의회의 요청으로 사업계획변경(상원 추가)을 위한 추가 타당성 조사 실시
18	아제르바이잔 혁신정책로드맵 수립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사업('21-'24/200만불)	980	489	488	49.8	787	• 수원국 요청에 따라 PMC 과업(혁신정책로드맵) 관련 수요가 변경되어 일정 순연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소규모 무상원조(ODA) 사업: 수원국별 지원한도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불특정 원조수요에 대응하여 소규모의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73억 5,900만원 중 574억 2,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4.2%)되었음.[33]

[2023년도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D)	증감 (D-A)	(D-A)/A
	본예산(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B)			
소규모 무상원조(내역사업)	78,000	77,359	57,428	74.2	23,006	△54,994	△70.5
아시아태평양	16,500	14,720	7,411	50.3	4,006	△12,494	△75.7
아프리카	27,000	28,543	22,353	78.3	10,000	△17,000	△63.0
중남미	18,500	18,500	15,175	82.0	3,000	△15,500	△83.8
중동·CIS	16,000	15,596	12,489	80.1	6,000	△10,000	△62.5

무상 ODA 사업은 n-2년 주기에 따라 장시간의 발굴-검증-심의 과정을 거쳐 편성되나, 소액의 무상원조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시행절차를 간소화한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도 병행 편성되어 있음.

소규모 무상원조는 정규 ODA 예산에 비해 예외적으로 재량을 부여받은 제도로서 외교부 전체 무상 ODA 예산의 1%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편성되어 왔으나, 2023년도 소규모 무상원조 비중은 3.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34]

33) 일반회계-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1-411),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2-403),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3-405),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4-402)(개발협력국·한국국제협력단)

34) 2022년 6월 수립된 「20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에서는 2023년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안이 175억원으로 의결되었으나 이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78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2023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대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가능성이 있는 118개 개도국(BIE 170개 회원국 중 무상원조 수원국)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음.

[연도별 소규모 무상원조 편성액 및 외교부 무상 ODA 총액 대비 비중]

(단위: 억원, %)

예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외교부 무상 ODA[주](A)	13,015	14,910	15,320	16,933	20,068	27,925
소규모 무상원조(B)	44	77	100	115	780	230
비중(B/A)	0.3	0.5	0.7	0.7	**3.9**	0.8

주) 국제기구 분담금 및 질병퇴치기금 포함
자료: 외교부

나. 검토의견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불특정 소규모 원조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세부내역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되며, 일반협력국에 대한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수원국별 지원한도가 크게 상향조정되고 예외에 해당하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및 현금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당초 사업 도입취지에 충실하도록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무상원조는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외교부 예규)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사업 전년도에 재외공관에서 외교부 본부로 후보사업을 신청하면, 본부에서 이를 심의하여 당해 연도 초 확정사업을 통보하고, 재외공관은 통보받은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코이카는 사업예산을 협력단 사무소나 재외공관에 송금하는 등 예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소규모 무상원조 집행절차]

□ (절차) 수요조사 ⇒ 검토 · 예산반영 ⇒ 집행 ⇒ 결과보고의 4단계
○ 외교부
- (본부) 사업 1년 전 수요조사 · 예산반영, 당해 연도 초 확정사업 통보
- (공관) 당해연도 1분기 내 집행계획서 제출, 늦어도 11월내 집행 완료 및 연내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 KOICA: 승인사업 대상 사업비 송금 및 연말 잔액 행정처리 등 실질적 예산 관리 담당

○ 24년도 사업절차

사업 확정·통보	집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중간점검 보고	결과보고서·정산 제출
외교부 본부 (24년 2월)	➡ 재외공관 → 본부 (24년 2~3월)	➡ 재외공관 → 본부 (24년 6, 10월)	➡ 재외공관 (24년 연내)

자료: 외교부

동 지침에서 소규모 무상원조 지원대상 국가는 원조소외 완화를 위해 일반협력국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점협력국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원국별 지원한도는 기존에 미화 20만불(특별히 필요한 경우 40만불)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도 예산 급증에 따라 2022년 12월 동 지침을 개정하여 미화 50만불(특별히 필요한 경우 100만불)로 상향 조정하였음.

[소규모 무상원조 지원 원칙 및 한도]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외교부예규, 2022.12.13. 일부개정)

제3조(지원 원칙) ① 지원 형태는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상 물자 지원이 곤란하거나 원조효과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국가는 원조소외 완화를 위해 **일반협력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점협력국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한도) ① 사업 지원은 수원국별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50만불 이내**로 한다. 다만, 환율 변동, 추가 송금 수수료 발생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외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만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교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불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년에 비해 사업 건수 및 집행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연도별 소규모 무상원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현액	집행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집행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집행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집행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집행	사업 건수	본예산
아시아 태평양	2,008	1,978	11	1,709	1,461	11	2,404	2,241	12	2,000	1,824	10	14,720	7,411	36	4,006
아프리카	1,245	1,193	9	3,721	3,679	18	4,705	4,419	23	5,000	4,760	25	28,543	22,353	65	10,000
중남미	650	620	5	1,540	1,496	6	1,531	1,500	9	1,500	1,478	8	18,500	15,175	33	3,000
중동CIS	750	625	7	869	809	8	1,630	1,629	9	2,776	2,401	12	15,596	12,489	38	6,000
합 계	4,653	4,417	32	7,839	7,445	42	10,270	9,790	53	11,276	10,463	55	77,359	57,428	172	23,006

자료: 외교부

(1) 수원국별 지원한도의 적정성 검토 필요

구체적으로 2023년 수원국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개국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지침 개정 전 지원한도였던 미화 20만불 이하로 지원된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고, 개정 후 지원한도인 50만불 이상 지원된 국가가 53개국으로, 그 중 16개국은 예외적 지원한도인 100만불까지 예산 배정이 승인되었음.

[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배정(승인) 현황]

20만불 이하	50만불 미만	50만불	50만불 초과~100만불 미만	100만불	합계
20개국	27개국	11개국	26개국	16개국	100개국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는 2022년 연말 “소규모”의 의미를 미화 50만불 이내로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100만불을 상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이 배정된 국가 중에서 50만불 이상 배정된 국가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수원국별 지원한도를 100만불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은 국회에서 세부 내역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 예외적으로 재량을 부여받은 제도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소규모”의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중점협력국에 대한 예외적 배정기준 명확화 필요

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은 일반협력국뿐만 아니라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점협력국에도 상당히 배정되었음.

중점협력국 27개국 중 66.7%에 해당하는 18개국에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지원금액 측면에서 보면 50만불 이상 배정된 국가가 12개국으로, 예외적 지원한도인 100만불이 배정된 국가도 6개국에 달하고 있음.

[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배정(승인) 현황]

구분	20만불 이하	50만불 미만	50만불	50만불 초과~100만불 미만	100만불	합계
비중점협력국	19개국	22개국	8개국	23개국	10개국	82개국
중점협력국	1개국	5개국	3개국	3개국	6개국	18개국
계	20개국	27개국	11개국	26개국	16개국	100개국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우리 정부 ODA 예산의 70% 이상이 중점협력국에 지원되고 있어[35] 원조소외 완화를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는 일반협력국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중점협력국에 대한 소규모 무상원조 지원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으로 보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중점협력국에 대한 예외적 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물자지원 원칙 준수 노력 필요

다른 한편으로,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의 지원 형태는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수원국(기관)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집행 결과 현금지원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집행액은 23억 2,0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나타났음.

[연도별 소규모 무상원조 현물/현금 집행 현황]

구분	물자지원		현금지원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2019년	35.8억원	81.0%	8.4억원	19.0%
2020년	61.32억원	82.4%	13.13억원	17.6%
2021년	89.93억원	91.9%	7.96억원	8.1%
2022년	104.4억원	99.8%	0.2억원	0.2%
2023년	**551.1억원**	**96.0%**	**23.2억원**	**4.0%**

자료: 외교부

현금 집행 또한 절차에 따라 관리·감독되고 있으나 수원국의 회계행정체계 여건상 집행 투명성이 낮아지고 사업효과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집행 시 가급적 현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5) 중점협력국은 정부가 제한된 ODA 예산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ODA 예산을 집중투자할 일부 국가를 선정한 것으로,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중점협력국에 재원의 70%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12. 분쟁 및 취약국 지원(ODA) 사업: 2023년 신규사업 추진 지연 문제 및 국제기구 실집행을 고려한 사업관리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은 국제적인 취약국 지원 파트너십 강화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해 분쟁 및 취약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43억 6,800만원 중 328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5%)되었음.[36)]

[2023년도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D)	증감 (D-A)	
	본예산(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B)			(D-A)/A
분쟁 및 취약국 지원(내역사업)	33,676	34,368	32,831	95.5	123,352	89,676	266.3
아시아태평양	7,480	7,704	7,454	96.8	16,810	9,330	124.7
아프리카	16,380	16,756	16,358	97.6	73,048	56,668	346.0
중남미	4,431	4,429	4,410	99.6	1,819	△2,612	△58.9
중동・CIS	5,385	5,479	4,609	84.1	31,675	26,290	488.2

국가별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무상 ODA 사업은 2년 주기의 발굴-검증-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고, 그 과정에서 부실・중복사업 배제 및 연계사업 추진을 통한 질적 내실화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치고 있음.[37)]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인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무상 ODA 사업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국가별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2년 주기에 따라서는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원조 수요에

36) 일반회계-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1-411),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2-403),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3-405),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4-402) (개발협력국・한국국제협력단)

37) ① n-2년 하반기 : 예비사업 정보를 ODA 통합정책포털에 입력하여 ODA 시행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도모(n-2년 예비검토제)
② n-1년 상반기 : 무상사업 간 심사・조정(외교부) 및 유상사업 간 심사(기재부) → 유・무상 종합조정(국조실) → 종합시행계획 의결(요구액 기준, 6월말)
③ n-1년 하반기 : ODA 예산안 편성*(8월말) →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12월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제6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n년 : 사업 집행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외교부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년도 연말 협력대상국의 재외공관 및 KOICA 사무소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한 후, 당해년도 예비검토 및 예비조사를 거쳐 4월 사업을 심사·확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을 수행해왔음.[38)]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신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약정 체결 및 1차년도 약정액 지급이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원조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022년 연말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2023년 신규사업 17건(취소사업 제외)의 약정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9월에 2건, 10월에 3건, 11월에 6건, 12월에 5건 및 2024년 1월에 1건이 체결되어 대부분 2023년 4분기에 국제기구와의 약정이 체결되었음.

[2023년 신규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시행 기구	약정 체결일	'23년 예산 지급일	지급액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초 인프라, 생계 지원, 평화활동을 통한 사회 안정 및 사회통합 향상 사업(UNDP, 2023-2025/372만불)	UNDP	'23.9.18.	'23.10.23.	363
나이지리아 북동부 3개 주 대상 분쟁 및 폭력 상황 피해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기초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사업(ICRC, 2023-2025/400만불)	ICRC	'23.9.12.	'23.10.26.	392
부르키나파소 농업생산자본 지원 및 경제활동을 통한 청년 및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WFP, 2023-2025/400만불)	WFP	'23.10.05	'23.11.30.	382
짐바브웨 국적 남아공 이주민의 특별면제허가(ZEP) 제도 폐지에 따른 동부 4개 지역 귀국이주민 재통합 지원사업(IOM, 2023-2026/400만불)	IOM	'23.10.17.	'23.10.31.	306
파푸아뉴기니 모로베주 통합적 식수위생 접근을 통한 평화 구축 사업(UNICEF, 2023-2026/400만불)	UNICEF	'23.10.23.	'23.12월초	397
zero hunger village: 기니 전역 내 zero hunger 달성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 회복성 강화사업(WFP, 2023-2025/400만불)	WFP	'23.11.03	'23.12.2.	313

38) 사업추진방식은 다자성 양자 사업(공여국이 국제기구에 자금을 제공하고, 국제기구가 원조사업을 진행하지만, 지원대상 국가나 목적 등은 공여국이 결정하는 형태)으로 분류됨.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시행 기구	약정 체결일	'23년 예산 지급일	지급액
우간다 카라모자 지역 분쟁 영향 및 취약 공동체 내 회복력 구축(UNDP, 2023-2025/500만불)	UNDP	'23.11.3.	'23.11.10.	758
미얀마 라카인, 몬, 카인 주 분쟁 및 재해·재난으로 취약해진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강화사업(IOM, 2023-2025/400만불)	IOM	'23.11.10.	'23.12.5.	399
예멘에서 평화를 위한 물: HDPN에 기반한 물 관련 분쟁 해결 및 기후변화 적응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사업(IOM, 2023-2025/400만불)	IOM	'23.11.16.	'23.12.1.	792
예멘 여성 권리보호 및 젠더정의 강화를 위한 법치제도 조기회복 및 지역사회 사법접근성 강화사업(UNDP, 2023-2026/430만불)	UNDP	'23.11.20.	'23.11.30.	658
예멘 분쟁피해 장애인 신체 재활 및 사회참여 서비스 개선사업(ICRC, 2023-2025/400만불)	ICRC	'23.11.29.	'23.12.5.	788
미얀마 4개 주 취약농가 식량안보 개선 및 생계지원사업(FAO, 2023-2026/400만불)	FAO	'23.12.1.	'23.12.7.	916
콜롬비아 내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 지역사회 통합지원 사업(IOM, 2023-2026/400만불)	IOM	'23.12.1.	'23.12.8.	2,162
시리아 분쟁 피해지역 대상 지역참여형 복구전략을 통한 사회적 결속과 통합 촉진사업(UNDP, 2023-2026/372만불)	UNDP	'23.12.3.	'23.12.1.	788
베네수엘라 분쟁피해지역 공공서비스 재건지원 사업(ICRC, 2023-2025/400만불)	ICRC	'23.12.6.	'23.12.8.	765
미얀마 카친주 국내난민 귀환 및 재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사업(UNHCR-UNFPA, 2023-2025/400만불)	UNHCR-UNFPA	'23.12.22.	-	-
니제르 난민-원주민 간 평화적 사회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생계 역량강화 지원사업(UNHCR, 2023-2026/450만불)	UNHCR	'24.3.26	-	-
레바논 북동부 취약지역 기후 회복력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사업(UNEP, 2023-2026/400만불)	UNEP	사업취소	-	-

자료: 외교부

이와 같이 약정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KOICA에서 국제기구로의 1차년도 약정액 지급이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는데,[39] 이 경우 외교부 및 KOICA의 2023회계연도 결산상 집행률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국제기구 단계에서의 사업은 거의 2024년도에 수행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함.

또한 전년도 연말 수요조사 이후 국제기구와의 약정 체결 및 약정금 지급까지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39) '23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10월 3건, 11월 3건, 12월 9건, 미지급 2건

둘째, 표면적인 집행률은 높으나 국제기구의 실집행은 저조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속도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국제기구에 사업비가 과다배정되지 않도록 국제기구의 실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의 표면적인 집행률은 높으나, 국제기구별로 회계주기가 상이하고 사업약정시점에 따라 약정액 지급 및 연차보고서 제출시점도 분산되어 국제기구의 실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로 인해, 국제기구 단계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경우에도 사업 초기 국제기구에 약정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거나 매년 연도말에 약정액이 지급되어 예산이 조기집행되지 못하고 코이카에 장기간 보유되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① 예를 들어 '아이티 UNDP 담므마리군 라헤면 태풍 매튜 피해 이재민 지원사업('17-'24/255만불)' 의 경우 '17년 12월 약정 체결 이후 정세 불안 및 치안 악화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음.

[아이티 UNDP 담므마리군 라헤면 태풍 매튜 피해 이재민 지원사업('17-'24/255만불)]

(단위: USD)

약정액 차수	약정액 지급일		지급액	누적지급액	연례보고서 제출날짜	대상기간	누적집행액
	연도	날짜					
1차	2017	12월	430,000	430,000	'19.1월	'17~'18년	232,058
2차	2018	12월	1,017,000	1,447,000	'20.1월	'19년	372,920
3차	2019	12월	1,033,578.82	2,480,578.82	'21.1월	'20년	697,256
					'22.1월	'21년	1,991,496
					'23.1월	'22년	2,154,252
					'24.1월	'23년	2,241,115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18년 및 '19년 12월 각각 2~3차 약정액을 지급한 결과, 국제기구 단계에서는 '17년 12월 지급한 1차년도 약정액이 '19년까지도 집행되지 못하였고, '24년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19년에 지급한 약정액의 경우 5년에 걸쳐 집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② 또 다른 예로 '동티모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복원력 강화 사업(Mercy Corps)('19-'24/300만불)' 의 경우, '19년 9월 약정 체결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사업기간 연장을 거쳐 계속 추진하는 중으로 '24년 연내 종료할 예정임.

[동티모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복원력 강화 사업(Mercy Corps)('19-'24/300만불)]

(단위: USD, %)

약정액 차수	약정액 지급일		지급액	누적지급액	연례보고서 제출날짜	대상기간	누적집행률
	연도	날짜					
1차	2019	10월	1,000,000	1,000,000	'20.1월말	'19.9.12. ~ '19.12.31.	0.91
2차	2020	8월	1,400,000	2,400,000	'21.1월말	'20.1.1. ~ '20.12.31.	16.0
3차	2021	5월	600,000	3,000,000	'22.1월말	'21.1.1. ~ '21.12.31.	36.0
					'23.1월말	'22.1.1. ~ '22.12.31.	65.64
					'24.1월말	'23.1.1. ~ '23.12.31.	90.16
					'24.1월	'23년	2,241,115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동 사업 또한 사업 초년도인 '19년 10월에 100만불을 지급한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20년 8월에 140만불, '21년 5월에 60만불을 추가로 지급하여 약정액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음. 그러나 '22년 1월말 국제기구가 제출한 연례보고서상 '21년까지의 누적집행률이 36%에 불과하여, 국제기구의 사업 추진속도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사례로 보임.

③ 다음 '동티모르 진실화해센터 디지털화를 통한 평화인식증진사업(UNESCO)('21-'24/500만불)' 또한 국제기구 단계의 실집행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 약정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로, '21년 지급한 약정액 120만불이 '23년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22년 및 '23년 국제기구에 추가 약정액이 지급되고 있음.

[동티모르 진실화해센터 디지털화를 통한 평화인식증진사업(UNESCO)('21-'24/500만불)]

(단위: USD)

약정액 차수	약정액 지급일		지급액	누적지급액	연례보고서 제출날짜	대상기간	누적집행액
	연도	날짜					
1차	2021	11.29.	1,200,000	1,200,000	'22.2.9.	'21.11.29. ~ '21.12.31.	-
2차	2022	11.1.	1,500,000	2,700,000	'23.2.26.	'22.1.1. ~ '22.12.31.	469,423.27
3차	2023	5.8.	1,150,000	3,850,000			
		9.18.	200,000	4,050,000	'24.2.29.	'23.1.1. ~ '23.12.31.	772,534.28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④ 다음 2개 사업 '솔로몬제도 재난 및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 사업(IOM)('22-'25/500만불)' 및 '파푸아뉴기니 젠더기반폭력 및 주술관련폭력 피해 방지 사업(UNFPA)('22-'26/500만불)'의 경우, 국제기구의 연례보고서가 10월에 제출됨에 따라 매년 연도말에 약정액이 지급되고 있는 사례임.

[솔로몬제도 재난 및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 사업(IOM)('22-'25/500만불)]

(단위: USD)

약정액 차수	약정액 지급일		지급액	누적지급액	연례보고서 제출날짜	대상기간	누적집행액
	연도	날짜					
1차	2022	12.1.	772,762	772,762	'23.10.31.	'22.10.31. ~ '23.7.31.	332,000
2차	2023	12.5.	540,000	1,312,762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파푸아뉴기니 젠더기반폭력 및 주술관련폭력 피해 방지 사업(UNFPA)('22-'26/500만불)]

(단위: USD)

약정액 차수	약정액 지급일		지급액	누적지급액	연례보고서 제출날짜	대상기간	누적집행액
	연도	날짜					
1차	2022	12월	570,000	570,000	'23.10.10.	'22.11.28. ~ '23.8.31.	288,197
2차	2023	12월	760,000	1,330,000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4분기에 연례보고서가 제출되는 사업은 집행점검이 완료된 이후 연도말에 국제기구로 약정액이 지급되고 있으나, 결산상 집행률은 100%로 나타남에 따라 실제 사업성과 체감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게 됨.[40)]

따라서 외교부와 KOICA는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의 추진속도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기구에 사업비가 과다배정되지 않도록 집행점검 시기 및 약정액 지급 일정 등에 대한 사업방안을 협의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41)42)]

40) 국제기구로부터 연례보고서가 제출되면 KOICA는 약 2~3주간 사업평가와 협의를 거친 후 차년도 약정액을 지급하는데, 연례보고서 보완필요사항이 발생하여 약정액 지급시기가 더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함.

41) 외교부는 2023년 국제기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표준약정서를 개정하여 사업 중간점검시 실집행률이 4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로부터 보완 실행계획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수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향후 사업 추진전망을 고려하여 약정액 지급 일정이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2) '국가별 협력사업' 중 다자성 양자(멀티바이) 사업 및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등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되는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과 함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13. 현지 ODA 역량강화 사업: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확대 및 제도개선 필요

가. 개 요

‘현지 ODA 역량강화’ 사업은 무상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의 현지 ODA 사업 현장 모니터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억 2,400만원 중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8.2%)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43)]

[2023년도 현지 ODA 역량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ODA 선진화	1,265	1,265	22	-	1,287	1,149	-	138	812
현지 ODA 역량강화	132	132	-	△8	124	97	-	27	136

나. 검토의견

ODA 예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지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는 오히려 일부 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모니터링 의무 비율 도입과 모니터링 조기 수행을 통한 차년도 사업 심의 시 환류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외공관의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은 재외공관에서 수원국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무상 ODA 사업의 사업 현황·수원국과의 협의 상황·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공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차년도 무상원조 사업 심의 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부는 201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8년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43) 일반회계-ODA 선진화(2438-401)(개발협력국)

모니터링 대상 사업은 종료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년도 기준 5년 내외 경과 사업,[44] 계속사업의 경우 후보사업 선정 당시 사업기간 기준 약 30% 이상 진행된 사업임.

그런데 무상 ODA 사업의 확대에도 모니터링 실시 사업의 수는 정체됨에 따라, 2018년 사업 시작 이후 2023년까지 매년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 대비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2018~2023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현황]

(단위: 건, %)

구 분	모니터링 대상 후보 사업 수(A)	재외공관 모니터링 희망사업 수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B)	모니터링 실시 비율 (B/A)
2018년	1,230	611	311	**25.3**
2019년	1,230	325	201	**16.3**
2020년	1,145	335	193	**16.9**
2021년	1,426	338	195	**13.7**
2022년	1,583	289	187	**11.8**
2023년	2,334	422	211	**9.0**
2024년	2,484	576	322	**13.0**

주) 2024년은 4월 기준
자료: 외교부

2024년에는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모니터링 희망사업 및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 건수를 확대함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 비율이 다소 개선되었으나,[45]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후보사업 대비 모니터링 대상 사업 비율이 10% 이하인 곳도 있으므로, 외교부는 중장기적으로 '일정 건수'가 아닌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4) 2024년부터는 연간 권장 모니터링 건수 확대에 따라 7년 내외 경과 사업으로 확대함.

45) <2024년 외교부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희망사업 및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 확대 현황>

구분	모니터링 대상 희망사업(2배수)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	
	중점 협력국	기타 협력국	중점 협력국	기타 협력국
2023년	10개 내외	6개 내외	5개 이상	3개 이상
2024년	10~14개 내외	6~10개 내외	5~7개 내외	3~5개 내외

주)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2024년 지역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현황]

(단위: 건, %)

구 분		모니터링 대상 후보 사업 수(A)	재외공관 모니터링 희망사업 수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B)	모니터링 실시 비율 (B/A)
2023년	아시아·태평양	1,126	127	67	6.0
	아프리카	564	134	65	11.5
	중동·CIS	284	75	37	13.0
	중남미	360	86	42	11.7
	합계	**2,334**	**422**	**211**	**9.0**
2024년	아시아·태평양	1,188	191	102	8.6
	아프리카	592	185	100	16.9
	중동·CIS	323	91	56	17.3
	중남미	381	109	64	16.8
	합계	**2,484**	**576**	**322**	**13.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4년 외교부는 모니터링 단계별 수행시기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

[2024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단계별 수행시기 변동사항]

모니터링 단계	기존 수행시기	2024년 변동사항
① 본부, 재외공관에 차년도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 목록(long list) 전달	n-1년 11월	n년 1-2월
② 재외공관, 후보사업 목록 검토 및 모니터링 대상 2배수 사업 목록(short list) 보고 ※ 중점협력국은 10~14개, 기타 협력국은 6~10개 내외의 사업 제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다수 기관 사업 포괄하도록 작성)	n-1년 11월	n년 1-2월
③ 본부, 관계부처에 short list에 대한 사업 정보 제공 요청	n-1년 11~12월	n년 2-3월
④ 본부, 관계부처로부터 전달받은 사업 정보를 재외공관에 전달	n-1년 12월	n년 2-3월
⑤ 재외공관,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final list) 및 차년도 모니터링 계획 보고 ※ 중점협력국은 5~7개, 기타 협력국은 3~5개 내외의 사업 제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모니터링 선순위 사업 : ① 일정 규모(약 100만불) 이상의 프로젝트성 사업, ② 예산 집행률 저조, 공관과의 미협의, 수원국측 문제제기 사업,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공관에서 판단하는 사업, ③ 과거 점검 결과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	n-1년 12월	n년 2-3월
⑥ 본부, 당해연도 모니터링 실시 계획 승인 / 재외공관, 모니터링 시행	**n년 최소 2회 이상**	n년 3-12월
⑦ 본부, 모니터링 결과 종합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보고 ※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년도 사업 심의에 환류		
⑦ 모니터링 결과 종합	n+1년 1~2월	n+1년 1~2월
⑧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보고		n+1년 6-7월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에는 ‘① 외교부 본부에서 재외공관으로의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 목록 전달’부터 ‘⑤ 재외공관의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 및 차년도 모니터링 계획 보고’까지를 전년도(n-1년) 11~12월에 수행하고, 당해연도(n년) ‘⑥ 모니터링 시행’ 후 ‘⑦ 본부의 모니터링 결과 종합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보고’는 차년도(n+1년) 1~2월에 수행하여, 그 다음연도의 사업 심의에 모니터링 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음.

그런데 2024년 변경된 단계별 수행시기를 살펴보면, ①부터 ⑤까지를 당해연도(n년) 3월까지 수행하도록 늦추었고, 모니터링 결과 종합은 기존과 같이 차년도(n+1년) 1~2월에 수행하나,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보고 시기를 차년도(n+1년) 6~7월로 미루었음.

그리고 기존에는 재외공관이 당해연도 모니터링을 시행할 때 최소 2회 이상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음.

그러나 보다 충실한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재외공관이 전년도에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당해연도에 시간을 두고 최소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외교부는 2024년 변경한 단계별 수행시기 등을 다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이 ‘종료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년도 기준 7년 내외 경과 사업, 계속사업의 경우 후보사업 선정 당시 사업기간 기준 약 30% 이상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선정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은 전년도 연말에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부처에서 다음연도의 ODA 사업계획을 매년 3월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5~6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국무조정실의 심사·조정 등을 거쳐 ODA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모니터링 결과를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보고 시기 또한 차년도(n+1년) 6~7월로 늦추기보다 기존과 같이 차년도(n+1년) 1~2월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최근 ODA 예산 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ODA의 효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질적 내실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수원국 입장에서 사업 추진과정이 효율적인지,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등을 분석하고 현지 상황을 적시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현지사무소 중심의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지정보 파악, 현지 네트워크 구축, 현지 관심사업 발굴·점검,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지속적 개선 조치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환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4. 해외긴급구호(ODA) 사업: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 보고 시기 단축 필요

가. 개 요

‘해외긴급구호’ 사업은 분쟁·자연재해 등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구호 실시를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950억 6,1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 되었음.[46]

[2023년도 해외긴급구호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도적지원(ODA)	299,367	299,367	-	8,420	307,787	307,774	-	13	740,111
해외긴급구호	295,061	295,061	-	-	295,061	295,061	-	-	734,624

나. 검토의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가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과를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함.[47] 동 규정에 따라 ‘구호물품·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작성되어

---

46) 일반회계-인도적지원(ODA)(2438-402)(개발협력국·한국국제협력단)

47)「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 구호물품·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 보건의료활동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야 하므로, 해외긴급구호에 대한 정부의 최종 평가는 이 결과보고서에 반영됨.

그러나 법에서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결산 심사에 동 결과보고가 반영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부가 정기국회 말에 보고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도 해외긴급구호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실제로 2022년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 또한 2023년 11월 30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48)]

[2019년~2022년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 국회 보고일]

구 분	2019년도 결과보고	2020년도 결과보고	2021년도 결과보고	2022년도 결과보고
일 자	2020. 12. 4.	2021. 11. 12.	2022. 8. 31.	2023. 11. 30.

자료: 외교부

2024년도 해외긴급구호 예산은 전년 대비 4,395억 6,300만원(149.0%)이 증액된 7,346억 2,400만원이 편성되는 등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해외긴급구호 결과를 국회에 상반기에 보고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등 국회 예결산 심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8)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예비심사 의결일 : 2023. 11.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일 : 2023. 11. 13. ~ 2023. 11. 24.

15. 협력사업 지원(ODA) 사업: 결산잉여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협력사업 지원(ODA)’ 사업은 ODA 전담기관인 KOICA에 홍보·평가·연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인건비 및 경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17억 500만원 중 483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6%)되고, 33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음.[49)]

[2023년도 협력사업 지원(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협력사업 지원(ODA)	51,705	51,705	-	-	51,705	48,397	-	3,308	59,260

KOICA[50)] 단계에서는 예산현액 1,098억 9,700만원(자체수입 차감액 603억 3,800만원 포함) 중 1,076억 4,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7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9,100만원이 불용되었음.

49) 일반회계-협력사업 지원(ODA)(2436-401)(개발협력국·한국국제협력단)

50) KOICA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기관의 지출 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됨.

[2023년도 협력사업 지원(ODA) 집행 현황(KOICA 단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액 (B)	집행률 (B/A)	
협력사업지원(외교부 기준)		51,705	51,705	-	3,308	48,397	93.6	59,260
KOICA	홍보	1,844	1,844	-	22	1,822	98.8	2,343
	사업평가 및 심사	2,648	2,596	-	58	2,538	97.8	2,648
	연구조사 및 교육	2,263	2,224	-	49	2,175	97.8	2,371
	정보화	14,373	13,385	765	513	12,107	90.5	14,373
	국제협력증진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등)	35,096	34,447	-	666	33,781	98.1	44,767
	산하기관지원비(대만대표부)	2,224	2,224	-	-	2,224	100.0	2,224
	국제개발협력센터	3,099	3,077	-	4	3,073	99.9	3,099
	국제협력증진 (분야별 전문성강화)	1,819	1,799	-	51	1,748	97.2	1,819
	경상운영비	1,687	1,687	-	100	1,587	94.1	1,960
	인건비	45,671	46,586	-	-	46,586	100.0	47,783
	예비비	1,319	28	-	28	-	0.0	1,330
	협력사업지원 합계	**112,043**	**109,897**	**765**	**1,491**	**107,641**	**97.9**	**124,717**
	자체수입 차감	△60,338	△60,338	-	-	-	-	△65,457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나. 검토의견

매년 상당액의 결산잉여금을 차년도 수입이 아닌 차차년도 수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차년도 수입에 반영하고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KOICA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서 2019년까지는 결산 결과 발생된 잉여금을 차년도 수입에 편입하는 방식(차기이월)으로 처리해왔음.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발도상국 내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되면서 불용액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부터 결산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에 발생한 결산잉여금부터 차년도 수입에 편성되는 일부 금액(차기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차년도 수입에 편입(차차기이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었음.

[KOICA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회계연도말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처분전 결산잉여금 합계	12,350	2,581	32,137	48,131	49,856	46,289
- 퇴직급여적립금	-	-	-	4,817	-	1,517
- 법정보험료부족분	-	-	-	-	-	-
- 사업외 비용	200	472	-	-	-	-
- 차기이월	12,150	2,109	11,878	7,276	8,380	7,088
- 차차기이월	-	-	20,259	36,038	41,476	37,684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그 결과 2023년 결산잉여금 462억 8,900만원 중에서 70억 8,800만원만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376억 8,400만원은 2025년도로 이월되는 등 3년 평균 383억 9,9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차차기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는 차기 이월금의 약 5.1배 수준임.[51)]

이처럼 결산잉여금에서 차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클 경우 결산잉여금 발생 시점부터 수입계상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

더욱이 무상 ODA 규모 증가에 따라 사업비 잔액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향후에도 상당액의 결산잉여금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KOICA는 여유재원을 유보하기보다는 이를 차년도 수입에 즉시 반영하고 출연금을 감액조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1) 2024년 예산 편성시 기획재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과거 3개년도 결산의 평균액을 반영하여 전기이월금을 추계하였다면, '24년 전기이월금(차기 이월금)으로 433억 7,400만원[=('20년 321억 3,700만원 + '21년 481억 3,100만원 + '22년 498억 5,600만원) / 3]을 편성하여야 적정하였음. 이 경우 전전기이월금(차차기 이월금)은 13억 9,800만원(='23년 결산최종액 462억 8,900만원 - 퇴직급여적립금 15억 1,700만원 - 전기이월금 433억 7,400만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전기이월금 및 전전기이월금 편성 방식]

- 전기이월금 : 당해연도('23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을 추정하여 다음해('24년) 전기이월금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으로, 과거 3개년도 결산의 평균액 또는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계
  (예시) '24정부안 편성 중에 '23년 결산액 추정('20~'22결산액 평균 등)하여 '24예산액 반영
- 전전기이월금 : 전년도 확정결산액에서 당해연도 수입에 우선 반영한 가결산액(전기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해 전전기이월금으로 편성한 금액
  (예시) '22년 결산최종액에서 '23년 전기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통일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54억 300만원(△62.7%)이 적은 151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8,500만원(23.6%)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673	1,673	2,739	1,066	2,006	2,006	1,937	△69	△802
기 금	34,850	34,850	9,491	△25,359	38,512	38,512	13,178	△25,334	3,687
총수입	36,523	36,523	12,230	△24,293	40,518	40,518	15,115	△25,403	2,885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조 2,120억 7,700만원(△84.4%)이 적은 2,237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2억 2,100만원(△19.2%)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30,881	229,911	196,757	△33,154	223,340	223,340	199,047	△24,293	2,290
기 금	1,271,405	1,271,405	80,201	△1,191,204	1,212,474	1,212,474	24,690	△1,187,784	△55,511
총지출	1,502,286	1,501,316	276,958	△1,224,358	1,435,814	1,435,814	223,737	△1,212,077	△53,221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0억 600만원으로 21억 8,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9억 3,700만원이 수납(수납률 88.6%)되고 2억 4,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006	2,006	-	2,006	2,185	1,937	-	249
합 계	2,006	2,006	-	2,006	2,185	1,937	-	249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274억 4,700만원으로, 이 중 2,562억 4,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8.3%)되고 1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10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23,340	323,340	4,107	±1,035	-	327,447	256,247	110	71,090
합 계	323,340	323,340	4,107	±1,035	-	327,447	256,247	110	71,09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조 8,003억 8,800만원으로 7,180억 6,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890억 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5.9%)되고 290억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800,388	1,800,388	718,066	689,004	-	29,062
합 계	1,800,388	1,800,388	718,066	689,004	-	29,062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조 8,003억 8,800만원으로, 이 중 6,890억 400만원이 지출(집행률 38.3%)되고 3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2,135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남북협력기금	1,800,388	1,800,388	-	1,800,388	689,004	3,300	1,213,525
합 계	1,800,388	1,800,388	-	1,800,388	689,004	3,300	1,213,52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통일부 자산은 전년 대비 222억 7,000만원이 감소한 3조 5,688억 2,4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444억 6,500만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3억 3,500만원 증가한 2조 3,069억 4,700만원으로 유동부채 911억 8,000만원 증가, 장기차입부채 900억원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36억 500만원이 감소한 1조 2,618억 7,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통일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745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3억 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877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5억 2,0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통일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568,824	3,591,094	△22,270	△0.6
		유동자산	239,252	233,596	5,656	2.4
		투자자산	2,808,732	2,799,176	9,556	0.3
		일반유형자산	405,263	449,728	△44,465	△9.9
		무형자산	16,014	11,188	4,826	43.1
		기타비유동자산	99,562	97,407	2,155	2.2
	부 채		2,306,947	2,305,612	1,335	0.1
		유동부채	527,159	435,979	91,180	20.9
		장기차입부채	1,779,500	1,869,500	△90,000	△4.8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288	134	154	114.9
	순자산		1,261,877	1,285,482	△23,605	△1.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74,511	112,205	62,306	55.5
	재정운영순원가		287,766	223,127	64,639	29.0
	재정운영결과		287,766	221,246	66,520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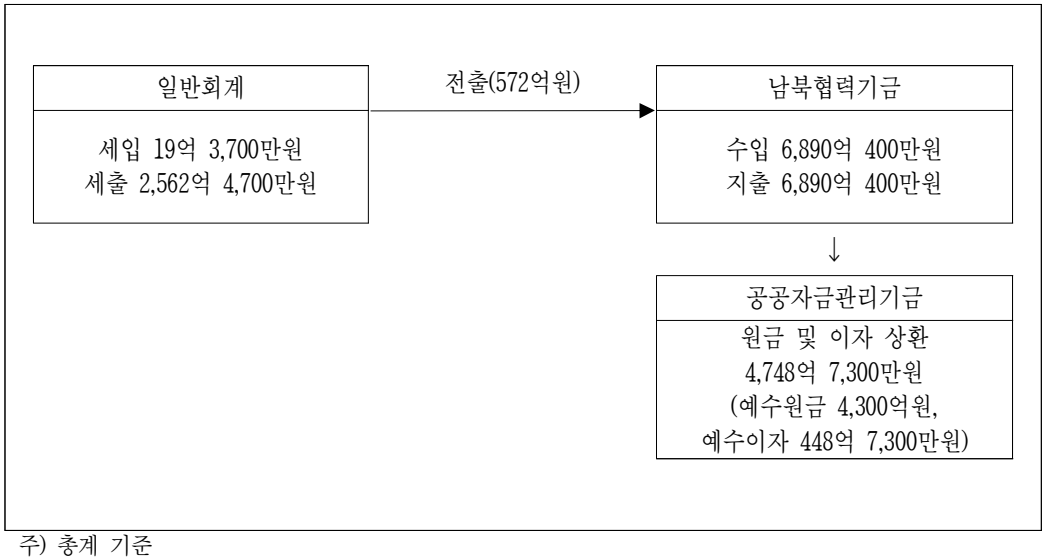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통일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통일부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572억원이 전출되었음.

기금 간 거래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함)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4,300억원이 예수되었고, 남북협력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4,300억원의 예수원금과 448억 7,300만원의 예수이자가 상환되었음.

[2023회계연도 통일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통일부는 일반회계 9개 프로그램, 69개 세부사업과 남북협력기금 7개 프로그램, 19개 세부사업에서 북핵 문제 해결 추진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예산을 지자체로 교부하여 지자체 단계에서 전액 이월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의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집행, 보조사업 발생이자의 정산·반납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변경 및 재설계로 인해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설계·협의일정 등 단계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별 종사자 인력 편차 문제를 해소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가. 개 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65억 5,200만원 중 159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2%)되고 6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2)]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1억 4,700만원 중 97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9%)되고 4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322	16,322	-	230	16,552	15,930	-	622	15,987
국내통일기반조성	8,735	8,735	1,312	100	10,147	9,726	-	421	10,144

2023년 통일부는 상기 2개 세부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와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탈북민 토크콘서트)’를 예산 전용 및 내역변경을 통해 각각 추진하였음.

2) 일반회계-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인권인도실)

3) 일반회계-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통일협력국)

나. 검토의견

통일부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을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① 통일부는 2023년 12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함.

[2023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12. 1.(금) 10:00 ~ 16:00, 서울 코엑스 E홀 ○ 주최/주관 :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 (후원) 고용부, 보건부, 농림부, 인사처, 서울시, 인천시, 경북도 ○ 주요 내용 : 채용관, 구직지원, 부대행사, 정착 성공사례 좌담회 등 ○ 참가자 : 참가자 1,248명, 구직자 771명으로 추정 ○ 참여기업 : 한전KDN,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영원무역, 코웨이, 한국 야쿠르트 등 기업 총 139개 참여(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부스 운영) ○ 구직현황 : 총 59명(현장 취업 25명, 추가면접 진행자 34명)

이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동 행사를 위해 통일부는 세부사업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예산 2억 3,000만원을 다음과 같이 세부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으로 전용하여 약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4)]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 전용 및 집행현황]

구분 (날짜)	~에서			~으로			집행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전용 ('23.11.3.)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일반수용비 (210-01)	20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일반용역비 (210-14)	200	195
전용 ('23.11.22.)			30		일반수용비 (210-01)	15	10
					임차료 (210-07)	15	5
합계						230	210

② 한편, 통일부는 2023년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탈북민 토크콘서트)’를 총 5회 개최하였음.[5)]

4) 통일부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탈북민 일자리 지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5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여 정례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5) 전국 5개 도시에서 개최(△서울 9.20., △부산 10.6., △대전 11.13., △목포 11.25., △춘천 12.6.)

이 또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동 행사를 위해 통일부는 세부사업 ‘통일정책추진’ 예산 5,500만원 및 ‘국제통일기반조성’ 예산 4,500만원을 다음과 같이 세부사업 ‘국내통일기반조성’으로 내역변경하여 8,000만원을 집행하였음.[6)]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탈북민 토크콘서트)' 개최를 위한 예산 내역변경 및 집행현황]

구분 (날짜)	~에서			~으로			집행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내역변경 ('23.8.29.)	통일정책추진 (1031-300)	일반용역비 (210-14)	55	국내통일기반조성 (1031-301)	일반용역비 (210-14)	100	80
	국제통일기반조성 (1031-302)	일반수용비 (210-01)	45				
합계						100	80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 제45조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을 제한하는 동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7)] 통일부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23.1.27.) 지시(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기획·추진하였고, 2024년 예산에는 정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7)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 입>

2.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자치단체 보조사업 정산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자체 감사 후 환수금액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12억 7,500만원 중 10억 3,500만원이 수납(수납률 81.2%)되고 2억 4,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8)]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보조금 관련 발생이자 및 관유물대여료 분할납부시 이자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7,600만원 중 7,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7.4%)되고 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9)]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1,090	1,090	1,275	1,035	-	240	81.2	1,162
기타재산 이자수입	20	20	76	74	-	2	97.4	20

8)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9) 일반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이 지연되어 연내 미수납된 사례가 있으므로, 통일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의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2억 4,000만원은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으로 미수납된 20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6,500만원과 채무자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소송비용 등 환수분 1억 7,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통일부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납부자(단체)	발생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강원도	2022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집행잔액	9	-	9
	충청북도		21	-	21
	전라북도		10	-	10
	전라남도		24	-	24
소송비용 등 환수	김○○ 등 15인(단체)	소송비용 등 환수	184	96	175
합계					24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일부의 2023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 174만원 중 105만원 또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으로 미수납된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발생이자에 해당함.

[2023년 통일부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납부자(단체)	발생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발생이자	강원도	2022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발생이자	0.11	-	0.11
	충청북도		0.12	-	0.12
	전라북도		0.05	-	0.05
	전라남도		0.18	-	0.18
	전라남도	2022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 발생이자	0.59	-	0.59
기타	한겨레고등학교	2020년 국고보조금 오집행액 이자	1.28	0.59	0.69
합계					1.74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관서의 장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2022년도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2023년 연내 미수납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10)11)]

10)「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보조금법」제27조와「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반납이 추경을 통해 심의 의결 후 이루어지는데 미납 지자체의 경우 2023년 추경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여 반납이 지연되었으며, 미납액은 지방의회 추경 의결을 거쳐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24년 6월말 기준 강원도 및 충청북도는 20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완료하였고, 전라남도는 미수납액 중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 발생이자를 반납한 상황임).

<세 출>

3.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연례적인 연내 집행가능성이 미흡한 보조금 예산 교부 및 보조사업 집행관리 미흡 문제

가. 개 요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해 있는 통일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1억 8,800만원 중 51억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0%)되고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3년도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내통일기반 조성	8,735	8,735	1,312	100	10,147	9,726	-	421	10,144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3,877	3,877	1,312	-	5,188	5,137	-	51	4,885
지자체 자본보조	2,900	2,900	1,312	-	4,212	4,212	-	-	3,300

나. 검토의견

첫째, 통일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예산을 지자체로 교부하여 지자체 단계에서 전액 이월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지방비 부담능력·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연내 집행가능성 및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2) 일반회계-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통일협력국)

그러나 2023년 통일부의 보조금 교부 시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2023년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지자체별 보조금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 주체 (지자체)	통일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전라남도	300	300	300	300	-	300	299	300	299	-	1	99.7
강원도	-	-	812.5	812.5	2,210	3,022.2	3,021.8	812.5	812.5	-	-	-
충청남도	1,600	1,600	1,600	1,600	400	2,000	355.7	1,600	-	1,644	-	-
경기도	1,000	1,000	1,500	1,500	1,457	2,956.8	201.7	1,000	-	2,755	-	-
계	2,900	2,900	4,212.5	4,212.5	4,067	8,279	3,878.2	3,712.5	1,111.5	4,399	1	34.85

주1) 전남: 3억원 교부('23.5월)
2) 강원: (전년이월) 8억 1,250만원 교부('23.1월)
3) 충남: 1차 8억원 교부('23.8월), 2차 8억원 교부('23.10월)
4) 경기: (전년이월) 5억원 교부('23.9월), 1차 5억원('23.10월), 2차 5억원('23.10월)
자료: 통일부

우선, 충남센터의 경우 2022년에 교부받은 설계비 4억원이 설계 착수시기가 미루어짐에 따라 2023년으로 전액 이월되었으나, 2023년 이 중 약 3억 5,600만원만 집행되고 2023년 교부된 16억원은 2024년으로 전액 이월되었음.

다음으로 경기센터 또한 2022년 교부받은 보조금 15억원 중 14억 5,700만원이 2023년으로 이월되었으나, 2023년 이 중 약 2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2억 5,500만원이 2024년으로 재이월되었음. 이에 따라 2023년 교부된 15억원 또한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당초 2023년 예산을 교부할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임.

특히 2021~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당시 통일+센터 신설 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반복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통일부는 향후 피보조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발생하는 집행 지연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고 회계기간 내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만 편성·교부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1~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2021	(24) 지연되고 있는 강원 통일+센터 신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개선 필요	○ 통일부는 통일+센터 신설 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강원 통일+센터의 신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2022	(31) 통일+센터 설치사업 일정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히 할 필요	○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며,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	주의

둘째, 통일부는 지자체의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집행, 보조사업 발생이자의 정산·반납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1:1로 매칭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함.

먼저 각 지자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로부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받아야 함.[13]

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또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3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보조금법」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4] 이는 적어도 보조사업 실적보고시까지는 지자체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여 매칭 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을 의미함.

그런데 현재 통일+센터가 설치되고 있는 강원, 충남, 경기 3개 지자체별로 사업 시작 이후 연도별 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음.

① 강원 통일+센터

[2021년~2023년 강원 통일+센터 연도별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통일부 단계 (국고보조금)			지자체 단계(강원도)												
				국고보조금 부분					지자체부담금 부분					합 계		
	예산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교부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예산 현액 (A+C)	집행액 (B+D)	차년도 이월액
2021	1,625	1,625	-	-	1,625	1,625	-	1,625	-	-	-	-	-	1,625	-	1,625
2022	1,625	812.5	812.5	1,625	812.5	2,437.5	227.8	2,209.7	-	2,437.5	2,437.5	-	2,437.5	4,875	227.8	4,647.2
2023	-	812.5	-	2,209.7	812.5	3,022.2	3,021.8	-	2,437.5	812.5	3,250	247.8	3,002.2	6,272.2	3,269.6	3,002.2

자료: 각 연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사업이 시작된 강원 통일+센터 경우, 2021년 통일부에서 교부한 보조금 16억 2,500만원이 지자체 단계에서 전액 이월된 반면, 지자체 부담금은 확보되지 않았음.

1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보조금법」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2022년에는 편성된 보조금 예산의 50%인 8억 1,250만원을 추가로 교부하였으나, 지자체 단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중 약 2억 2,800만원만 집행되었음. 2023년 국비는 거의 전액 집행되어 집행잔액 446,960원까지 산출되는 등 통일부 단계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나, 강원 통일+센터는 2024년 8월 준공될 예정으로 지자체 단계에서 지자체 부담금 중 약 30억원이 2024년으로 이월된 상황임.

동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1:1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전액 이월되고 지자체 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거나, 국비만 우선 집행·정산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매년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정산하여 반납해야 했으나,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자의 정산 및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음.

② 충남 통일+센터

[2021년~2023년 강원 통일+센터 연도별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통일부 단계 (국고보조금)		지자체 단계(강원도)														
			국고보조금 부분					지자체부담금 부분						합 계			
	예산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교부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불용액 (자체 반환액)	차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예산 현액 (A+C)	집행액 (B+D)	자체 반환액	차년도 이월액
2022	400	400	-	400	400	-	400	-	400	400	-	-	400	800	-	-	800
2023	1,600	1,600	400	1,600	2,000	356	1,644	400	1,600	2,000	-	239	1,761	4,000	356	239	3,405

자료: 각 연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사업이 시작된 충남 통일+센터 또한 2022년 교부된 국고보조금 4억원이 지자체 단계에서 전액 2023년으로 이월되었고, 2023년 이 중 3억 5,600만원만 집행됨에 따라 2023년 교부된 16억원 또한 전액 2024년도로 이월되었음.

한편 2023년 집행된 3억 5,6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고, 지자체 부담금 중 집행액은 없는 반면, 지자체 반환액으로 2억 3,900만원이 산출되었음. 이에 대해 통일부는 설계용역 대금 지급 후의 잔액으로 불용에 해당되어 반환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1:1로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잔액이 발생했다면 국고보조금에서도 반환액이 산출·정산되었어야 함.

또한 강원 통일+센터와 마찬가지로 충남 통일+센터에서도 매년 발생이자의 정산 및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③ 경기 통일+센터

[2022년~2023년 경기 통일+센터 연도별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통일부 단계 (국고보조금)			지자체 단계(경기도)										합 계		
				국고보조금 부분					지자체부담금 부분							
	예산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교부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예산 현액 (A+C)	집행액 (B+D)	차년도 이월액
2022	2,000	1,500	500	-	1,500	1,500	43.2	1456.8	-	2,000	2,000	-	2,000	3,500	43.2	3456.8
2023	1,000	1,500	-	1456.8	1,500	2,956.8	201.6	2,755.2	2,000	1,000	3,000	1.6	2,998.4	5,956.8	203.3	5753.5

자료: 각 연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사업이 시작된 경기 통일+센터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보조금 예산을 지자체로 교부하여 지자체 단계에서 이월 및 재이월되고, 지자체 단계에서 집행된 금액 대부분이 국비에서만 집행된 것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매년 발생이자의 정산 및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동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1:1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단계에서 국비만 우선 집행되고, 매년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정산·반납되지 않고 있는 것은 통일부의 보조사업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서 부적절함.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액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의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마다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정산·반납받는 등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부지변경 및 재설계로 인한 사업 지연

가. 개 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공간을 임차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의 장서 확충 및 열람공간 확대를 위해 통일·북한 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9억 7,700만원 중 50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45.7%)되고, 59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3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10,647	10,647	330	-	10,977	5,022	-	5,955	8,828

동 사업은 2021년 11월 경기 고양시(현 고양특례시)로 부지를 확정하고 총사업비 445억원, 연면적 9,900㎡ 규모(사업기간 2022~2025년)로 계획하였으나, 공공건축 사전검토 결과[16)]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상 연면적을 8,463㎡로 축소 조정하였음.

나. 검토의견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변경 및 재설계로 인해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설계·협의일정 등 단계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당초 2022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 3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이에 2023년 하반기 실시설계 종료 후 연내 착공할 예정이었음.

15) 일반회계-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정보분석국)

16) 2022년 5월 완료된 공공건축 사전검토에서는 물가상승률 및 노임단가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어, 적정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예산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사업규모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런데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구 및 통일부의 변경부지 수용으로[17] 착공 진행이 불가능해지면서 2023년 예산 중 공사비 54억 4,500만원 등 총 59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후 2024년 1월 10일 통일부와 고양시는 고양시에서 재설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지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고,[18] 고양시의 예산 확보 이후 5월 24일 공유재산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통일부는 재설계 종료 후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2024년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임.

[대체 부지 현황]

구분	부지	위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면적	
기존	E4	대화동 2707-1	문화시설・공공청사	50%	200%	6,600㎡	2,000평
대체	J2	대화동 2706	(현 주차장 →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기존과 동일하게 변경 예정)			4,120.6㎡	1,246평

자료: 통일부

그러나 기본・실시설계(재설계), 조달청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업체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2024년 내 공사 착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일부는 공정별 협의 및 계약 절차를 최소화하여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 관련 고려사항]

구분	실시설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협의	공사업체 공모	공사
통일부안	'24.5.~'24.9. (5개월)	'24.6.~'24.7. (2개월)	'24.8.~'24.9. (2개월)	'24.9.~'24.11. (3개월)	'24.12.~'26.11. (23개월)
추가 고려사항	'24.5.~'24.9. (5개월)	'23.8.~'23.9. (2개월)	특정 곤란	약 2~3개월 또는 그 이상	'25년 초 이후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7) 통일부와 고양시는 2022년 3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동년 9월 2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부지매입계약 직후인 2022년 9월 13일 고양시가 통일부에 이미 선정된 부지(킨텍스 전시장 인근)를 다른 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부지 변경은 불가능하고 원안대로 계획된 부지에 건립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23년 11월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구 이후 건립 사업의 장기 표류를 방지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 부지의 접근성과 주변 환경이 양호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변경에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18) 부지 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 비용은 고양시에서 부담, 고양시는 설계변경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 시한 등에 대해 통일부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계 사항 내용과 설계 공정 및 완료 등은 통일부 소관 사항으로 함.

5.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상시 대응 태세 구축 필요

가. 개 요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은 남북회담·협상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국제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대북협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100만원 중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12.9%)되고,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3년도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남북회담 추진	354	354	-	△78	276	147	-	129	305
남북회담 역량강화	38	38	-	△7	31	4	-	28	38

나. 검토의견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및 남북간 회담 미개최로 인해 남북회담 담당 인력의 대북협상 역량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부는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담당 인력의 협상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회담에 대한 상시 대응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은 실제 회담 준비 및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대북협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먼저 ‘남북회담 담당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외부전문가 및 회담 유경험자 강의, 직원 연구과제 발표·토론 등을 통해 직원의 협상능력을 개발하고 회담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나, 최근 사업 실적이 감소하고 있음.

19) 일반회계-남북회담 추진(4031-300)(남북관계관리단)

[2019년~2023년 연도별 남북회담 담당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추진실적	상세내용
2019	3	3	15회	○ 전 회담대표 등 회담유경험자 초청 토의(4회) ○ 과거 회담사례/합의문 연구・토론(4회) ○ 협상전술 및 전략 등 전문가 초청 토론(7회)
2020	3	5	18회	○ 전 회담대표 등 회담유경험자 초청 토의(2회) ○ 과거 회담사례/합의문 연구・토론(7회) ○ 회담 수행원 역량 향상을 위한 실무연습(3회) ○ 해외 협상사례 및 전략 등 전문가 초청 토론(6회)
2021	5	4	11회	○ 과거 회담사례/합의문 연구・토론(4회) ○ 전 회담대표 등 회담유경험자 초청 토의(3회) ○ 남북관계 및 향후 협상전략 등 전문가 초청 토론(4회)
2022	5	5	11회	○ 모의회담 연습 및 현장방문(2회) ○ 과거 회담사례/합의문 연구・토론(3회) ○ 남북관계 및 향후 협상전략 등 전문가 초청 토론(6회)
2023	6	4	8회	○ 남북회담 모의훈련 및 의제 작성 교육(2회) ○ 과거 회담사례/합의문 연구・토론(회담경험자 사례 공유 포함)(4회) ○ 협상전술 및 전략 등 전문가 초청 토론(1회) ○ 해외 협상사례 연구 포럼 개최(1회)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유관부처 합동 해외 사례조사’ 사업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 이후 예산 집행이 저조함.

[2019년~2023년 연도별 유관부처 합동 해외 사례조사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출장기간	상세내용
2019	34	33	’5.13.~ ’5.19.	○ 유관부처 합동 남북간 교통협력 사례연구 국외출장(독일, 벨기에) - 남북 교통협력(항공・철도) 관련 통합 사례연구(경제분야) - △유럽연합(EU) 항공 통합 및 기술분야 협력 프로세스 연구 △동·서독 항공 및 철도 통합 사례 고찰 및 남북간 적용 시사점 도출 - 출장자 : 통일부,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등 7명
2020	34	-	-	미집행
2021	32	-	-	미집행
2022	32	14	’11.20.~ ’11.27.	○ 유관기관 합동 방송개방 사례연구 국외출장(독일-베를린, 라이프치히) - 분단국 분단국 방송개방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방송 개방 및 남북간 방송교류 시사점 도출 - 출장자 : 통일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5명
2023	32	-	-	미집행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와 같이 남북간 회담이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갑작스러운 국면 전환에 대비하여 회담 담당 인력의 대북협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통일부는 동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북회담에 대한 상시 대응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사업: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개편 노력 필요

가. 개 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사업은 개성공단 기업 지원 대책 수립,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억 9,400만원 중 4억 1,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8%)되고, 8,0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3년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592	592	-	△47	545	458	-	87	453
남북협력지구발전 기획단 운영	535	535	-	△41	494	414	-	80	353

나. 검토의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기업의 호응 및 성과가 축소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기존 사업의 결과분석 및 2024년 이후의 사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휴면 중인 기업이 20개 내외이고, 폐업 기업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20) 일반회계-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2-303)(남북관계관리단)

[2021년~2023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 현황]

(단위: 개사)

구분	전체 입주기업 수	가동	휴면	폐업
2021년	123	96	21	6
2022년		99	16	8
2023년		93	21	9

주) 휴면 : 사실상 휴업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동 사업에서 추진해온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의 성과는 정체 또는 축소되고 있어 일정 부분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임.

첫째, 동 사업에서 개성공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소비재박람회' 및 '국회 상품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

[2021년~2023년 '소비재박람회 참가 지원' 및 '국회 상품전시회 지원' 사업 추진 실적]

구분	소비재박람회 참가 지원		국회 상품전시회 지원	
	참가 기업수	매출실적	참가 기업수	매출실적
2021년	9개사	66백만원	10개사	16백만원
2022년	7개사	32백만원	7개사	16백만원
2023년	5개사	49백만원	국회 협의 지연으로 미개최	
행사 개요	개성 경영정상화 지원 및 개성공단 홍보를 위해 메가쇼의 개성공단 기업관 운영 지원('19년~) * '메가쇼'는 연간 5~6회 개최되는 국내 최대 소비재박람회로 개성공단 기업의 판로개척 차원에서 지원		매년 12월경 국회 외통위 여야 위원 공동 주최로 개성공단 생산 상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해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 개최('06년~) * 판매액의 약 10%는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기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신규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통해 경영 역량을 배양하고 공유·전수하기 위한 '남북협력지구 기업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또한 2023년 연 4회에서 연 1회 운영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강인원이 축소되고 수료율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함.

[남북협력지구 기업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위: 명, %)

연도	회차	모집 인원 (A)	지원인원			선발인원(수강인원)			수료 인원 (E)	수료율
			개성공단 입주·영업 기업 임직원	남북경협 희망 기업인 등 관심층	계 (B)	개성공단 입주·영업 기업 임직원	남북경협 희망 기업인 등 관심층	계 (C)		
2022	1	35	10	32	42	10	32	42	30	71.4
	2	35	7	29	36	7	29	36	23	63.9
	3	35	7	28	35	7	28	35	23	65.7
	4	35	9	22	31	9	22	31	24	77.4
2023	**1**	**35**	**13**	**19**	**32**	**13**	**19**	**32**	**17**	**53.1**

주) 수료기준 : 6회 이상 교육 참여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 사례집 제작' 사업[21]은 당초 전체 입주기업을 대상(폐업 및 인터뷰 미호응 기업 제외)으로 하여 2023년~2025년 3년 동안 연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수요조사 결과 기업들의 호응이 높지 않아 2023년~2024년 2년간 추진하여 사례집을 제작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였음.

[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 사례집 제작 사업 수요조사 결과]

(단위: 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미호응	기타	합계
기업 수	25	30	사업종료	65	3	123

주) 전체 입주기업(123개)을 대상, 인터뷰 미호응 기업 제외하고 2023~2024년(2개년) 간 추진
- (미호응) 대표자 변경 등 인터뷰 대상자 부재, (기타) 대표자 사망 등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통일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의 호응 및 성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통일부의 기존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부는 기존 사업의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2024년 이후의 사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등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1) 개성공단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 기업 실무자들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7.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강화 필요

가. 개 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65억 5,200만원 중 159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2%)되고, 6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322	16,322	-	230	16,552	15,930	-	622	15,987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500	500	-	-	500	500	-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128	7,128	-	-	7,128	7,128	-	-	7,528

하나원 교육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보호담당관(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됨.

내역사업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은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를 통하여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은 지역사회에 최초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1억 2,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22) 일반회계-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인권인도실)

나. 검토의견

통일부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별 종사자 인력 편차 문제를 해소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먼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를 운영하고 있음.[23][24]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25] 2023년 138개 지역협의회 중 회의를 미개최한 지역협의회가 4곳, 1회만 개최한 지역협의회가 42곳으로, 약 33%의 협의회가 규정에 따른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

이는 2022년 약 19%의 협의회가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비해 더욱 미흡한 결과임.[26]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24) 지역협의회는 거주지보호담당관(지자체), 취업보호담당관(고용노동부), 신변보호담당관(경찰), 하나재단 또는 하나센터의 관계자, 각종 민간 지원기관 관계자, 북한이탈주민 등 중에서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여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 주민 인식개선, 정서안정, 남한 주민과의 교류·연결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5)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회의 운영)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6) 2022년 137개 지역협의회 중 회의를 미개최한 지역협의회가 1곳, 1회만 개최한 지역협의회가 25곳이었음.

[2023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현황]

(단위: 개)

지역	협의회 개최 횟수	개최 횟수별 협의회 수				지역	협의회 개최 횟수	개최 횟수별 협의회 수			
		미 개최	1회	2회	협의회 수			미 개최	1회	2회	협의회 수
서울	37	-	8	14	22	강원	8	-	2	3	5
부산	17	-	-	8	8	충북	13	1	5	4	10
대구	12	-	-	6	6	충남	10	-	4	3	7
인천	14	-	-	7	7	전북	8	-	4	2	6
광주	8	-	1	3	4	전남	12		4	4	8
대전	9	-	1	4	5	경북	14	2	3	5	10
울산	10	-	2	4	6	경남	10	1	2	4	7
세종	2	-	-	1	1	제주	2	-	-	1	1
경기	44	-	6	19	25	**합계**	**231**	**4**	**42**	**92**	**138**

주) 2회 이상 5개 지자체
자료: 통일부

지역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례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통일부는 지역협의회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전국에 분포한 25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을 실시하여 자립·자활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동시에 취업·심리상담·기초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을 돕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로 종사자(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 1명이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를 살펴보면, 최소 규모인 강원북부의 경우 종사자 1명당 담당 주민의 수가 71.8명이지만 최대 규모인 인천의 경우 263.8명으로 두 지역 간 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센터별로 거주 인원 외에 관할 면적, 기본 배치 인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종사자가 배치되기 때문이나, 전국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기에는 지역별 편차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25년 제6기 지역적응센터 지정시에는 현재까지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력·시설·업무 등 관련 표준모델을 수립하고 자원을 재배치하여 지역별 편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지역적응센터별 종사자 대비 북한이탈주민 수]

(단위: 명, %, 건)

지역	북한이탈 주민 수(A)	지역적응센터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 수(B)	(A/B)	지역	북한이탈 주민 수(A)	지역적응센터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 수(B)	(A/B)
서울동부	1,546	10	154.6	경기북부	1,090	7	155.7
서울서부	1,482	10	148.2	경기서북부	1,783	10	178.3
서울남부	1,694	10	169.4	경기중부	1,652	8	206.5
서울북부	1,810	10	181.0	강원남부	553	6	92.2
부산	875	8	109.4	**강원북부**	**359**	**5**	**71.8**
대구	736	5	147.2	충북	1,385	8	173.1
인천	**2,902**	**11**	**263.8**	충남	1,691	8	211.4
광주	534	6	89.0	전북	532	6	88.7
대전	683	7	97.6	전남	670	7	95.7
울산	459	6	76.5	경북	1,030	7	147.1
경기동부	1,760	9	195.6	경남	1,068	8	133.5
경기서부	1,601	8	200.1	제주	355	5	71.0
경기남부	3,089	13	237.6	**합 계**	**31,339**	**198**	**158.3**

주) 북한이탈주민 수 2023년 6월말 기준,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수 2023년 8월말 기준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총 괄>

8. 남북협력기금의 적정 여유자금 규모 검토 필요

가. 개 요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계획현액 1조 8,004억원 중 6,629억원이 수납(수납률 36.8%)되었으며, 이 중 정부내부수입이 4,872억원으로 전체수입의 73.5%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132억원으로 2.0%에 해당함.

지출의 경우 계획현액 1조 8,004억원 중 6,629억원이 지출(집행률 36.8%)되었으며, 이 중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액이 4,749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71.6%이고, 사업비 집행은 224억원으로 3.4% 수준임.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A)	실 적(B)		수납률(B/A)
					비중	집행률(B/A)
수 입	합 계	1,800,388	1,800,388	662,924	100.0	36.8
	자 체 수 입	38,512	38,512	13,179	2.0	34.2
	정부내부수입	1,671,653	1,671,653	487,200	73.5	29.1
	여유자금회수	90,223	90,223	162,545	24.5	180.2
지 출	합 계	1,800,388	1,800,388	662,924	100.0	36.8
	사 업 비	1,210,118	1,210,118	22,434	3.4	1.9
	기금운영비	2,356	2,356	2,256	0.3	95.7
	공자기금원리금상환	503,914	503,914	474,873	71.6	94.2
	여유자금운용	84,000	84,000	163,316	24.6	194.5

자료: 통일부

‘일반회계전입금’ 은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000억원 중 572억원이 수납(수납률 57.2%)되었음.[27]

27) 남북협력기금-일반회계전입금(91-911)(기획조정실)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일반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57,200	-	-	57.2	100,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함)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739억 1,400만원 중 448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60.7%)되고 290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28)]

[202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73,914	73,914	-	73,914	44,873	-	29,041	76,209

나. 검토의견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금 사업계획 및 남북관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여유자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잔액을 기금 사업비로 충당하는 예비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매년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의 집행이 부진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의 지출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수로계정에서는 이자상환 계획과 지출 간 차이가 근소하지만, 남북협력계정에서는 사업비 충당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가 없어 이자상환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에 기인함.[29)]

---

28) 남북협력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9110-920)(기획조정실)

29)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은 ‘경수로계정’(과거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차입비용 상환분)과 ‘남북협력계정’(남북협력기금 사업 추진 시 차입되는 공자기금에 대한 이자 상환분)으로 구분됨. 2023년 경수로계정 이자 상환 계획액은 450억 5,400만원으로 이 중 448억 7,300만원이 지출(99.6%)되었고, 남북협력계정 이자 상환 계획액은 288억 6,000만원이나 지출되지 않았음.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일반회계 →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집행잔액 (A-B)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A)	계획현액	지출액(B)	
2019	100,000	100,000	100,000주)	100,873	58,013	41,987
2020	150,000	150,000	150,000주)	98,898	57,032	92,968
2021	100,000	100,000	100,000주)	88,256	46,074	53,926
2022	100,000	100,000	100,000주)	90,000	43,087	56,913
2023	100,000	100,000	57,200주)	73,914	44,873	12,327

주) 당초 남북협력사업 사업비 목적 전입금 : 2019년 433억원, 2020년 930억원, 2021년 539억원, 2022년 569억원, 2023년 551억원

자료: 통일부

이처럼 일반회계전입금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여 기금 여유자금으로 편입된 결과,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1,751억원에 달해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함.[30]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여유자금회수(연초)	278,879	84,568	62,407	141,903	176,342	162,545
일반회계전입금(사업비 충당)	-	43,280	92,960	53,926	56,913	28,526
사업비 및 운영비	214,493	77,369	46,559	33,517	80,201	24,690
여유자금운용(평잔)	200,387	87,178	90,220	157,474	153,801	175,124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를 대비한 예비적 재원의 성격도 가지므로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보유할 필요는 있으나, 최근 여유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기금 사업계획 및 남북관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여유자금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0) 2022년 여유자금이 1,538억원으로 2021년의 1,574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일회성으로 지출된 사업비(경협·교역·금강산 및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특별대출 및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425억원이 없었다면 2022년 여유자금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하였을 것임.

<수 입>

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이자수입: 다각적인 회수 노력 필요

가. 개 요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는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321억 7,800만원 중 52억 8,000만원이 수납(수납률 16.4%)되고, 미수납액 268억 9,800만원이 발생하였음.[31]

‘기타민간이자수입’ 은 남북 교역 및 경협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남한기업 앞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는 것으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36억 400만원 중 14억 4,000만원이 수납(수납률 40.0%)되고, 미수납액 21억 6,400만원이 발생하였음.[32]

[2023년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18,241	18,241	32,178	5,280	-	26,898	16.4	22,560
기타민간이자 수입	3,856	3,856	3,604	1,440	-	2,164	40.0	3,856

31) 남북협력기금-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기획조정실)

32) 남북협력기금-기타민간이자수입(54-544)(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최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수납률이 하락하고, 기타민간이자수입의 미수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3년 12월말 기준 남북협력기금의 민간에 대한 대출잔액은 총 3,624억 5,700만원으로, 통일부는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 금리 및 담보 유지 조건 하에 만기도래 시점에 1년 단위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상환유예된 금액은 1,830억원임.

[2023년 12월말 기준 대출종류별 잔액 및 대출조건]

(단위 : 백만원)

구분	잔액	대출조건
교역자금대출	5,083	연 1.5 ~ 2.1%
경협자금대출	112,356	연 1.0 ~ 1.5%
개성공단운영대출	80,807	연 1.0%
특별대출	164,211	(1차, 2차) 연 1.5 ~ 2.5% (3차) 연 1.5% (4차) 연 1.0% (개성공단 1, 2, 3차) 연 1.0%
합 계	**362,457**	**만기도래 시점에 1년 단위로 상환유예 조치 시행 중**

자료: 통일부

[연도별 상환유예액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업체수	238	251	241	269	264	248	230	229	230
상환유예액	1,253	1,236	1,287	1,561	2,257	2,663	1,760	1,830	1,682

주) 상환유예액: 원금 기준
자료: 통일부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징수결정액은 해당연도 만기도래하는 원금(원리금 상환유예한 금액은 제외)으로, 이 중 수납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연체원금인데, 최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2016	119,241	9,526	9,526	-	-	8.0	100
2017	66,417	34,785	8,658	26,127	-	13.0	24.9
2018	53,084	30,744	7,905	22,839	-	14.9	25.7
2019	36,041	27,101	6,647	20,454	-	18.4	24.5
2020	62,143	32,555	10,552	22,003	-	17.0	32.4
2021	73,099	36,798	**9,218**	27,580	-	12.6	**25.0**
2022	10,600	32,522	**6,166**	26,356	-	58.2	**19.0**
2023	18,241	32,178	**5,280**	26,898	-	28.9	**16.4**

자료: 통일부

기타민간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은 해당연도 기일이 도래한 이자(원리금 상환유예한 금액은 제외)로, 이 중 수납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연체이자인데, 최근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기타민간이자수입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2016	11,725	827	827	-	-	7.1	100
2017	13,192	2,502	2,305	197	-	17.5	92.1
2018	7,985	3,269	2,169	1,100	-	27.2	66.4
2019	7,002	2,876	1,842	1,034	-	26.3	64.0
2020	4,992	2,850	1,712	1,138	-	34.3	60.1
2021	4,062	3,052	1,384	**1,668**	-	34.1	45.3
2022	3,411	2,513	804	**1,709**	-	23.6	32.0
2023	3,856	3,604	1,440	**2,164**	-	37.3	40.0

자료: 통일부

한편 폐업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산조사 결과 회수가능 재산이 없거나, 파산·면책 등 채무자의 법적절차 완료 등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출 채권에 대해 현재까지 5회의 대출 상각(총 66개사, 99억 2,300만원)이 실시되었음.[33)]

33)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각대상 채권을 확정함.

[기금 대출 상각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1년	2014년	2016년	2019년	2022년	총 합계
기업 수	7	6	5	18	30	66
상각금액	1,055	293	743	3,587	4,245	9,923

자료: 통일부

연도별 연체기업수 및 연체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연체기업수와 연체액이 감소하는 연도도 있으나 이는 대출 상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연체기업수 및 연체액 현황]

(단위: 개, 억원)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업체수	62	66	70	63	71	78	52	56
연체액	215	263	239	215	231	292	281	291
원금	215	261	228	205	220	276	264	269
이자	-	2	11	10	11	17	17	22

자료: 통일부

현재까지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만기도래 시점에 1년 단위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수납률은 계속 하락하고, 기타민간이자수입의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한편 대출 상각은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해 통일부는 정기적인 기업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리스크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500만원(300.0%)이 많은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66.7%)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	5	12	7	5	5	20	15	8
총수입	5	5	12	7	5	5	20	15	8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1억 2,600만원(△3.3%)이 적은 329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100만원(0.7%)이 증가함.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4,025	33,728	32,686	△1,042	34,033	34,033	32,907	△1,126	221
총지출	34,025	33,728	32,686	△1,042	34,033	34,033	32,907	△1,126	221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000만원이 수납(수납률 62.5%)되고 1,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	5	-	5	32	20	-	12
합 계	5	5	-	5	32	20	-	12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40억 3,300만원으로, 이 중 329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고 11억 2,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4,033	34,033	-	-	-	34,033	32,907	-	1,126
합 계	34,033	34,033	-	-	-	34,033	32,907	-	1,126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산은 전년 대비 1억 4,800만원이 감소한 289억 5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1,200만원 감소하고, 무형자산이 1억 3,600만원이 감소한 데 기인함.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채는 없음.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41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41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9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8,905	29,053	△148	△0.5
		유동자산	-	-	-	-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28,355	28,367	△12	△0.0
		무형자산	550	686	△136	△19.8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	-	-	-
		유동부채	-	-	-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8,905	29,053	△148	△0.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4,132	33,185	947	2.9
	재정운영순원가		34,112	33,173	939	2.8
	재정운영결과		34,112	33,173	939	2.8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라 함)는 2023년도 주요 정책추진 방향인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를 위해, 일반회계(2개 프로그램)에서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총 11개 세부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3년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참석률이 48.8%로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민주평통은 회의일정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전체회의 출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 전체회의(국내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

가. 개 요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출범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활동방향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0억 8,400만원 중 19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8%)되고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3년도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 년 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문회의 운영	4,339	4,339	-	±312	4,339	4,198	-	141	4,530
국내・해외 출범회의	2,148	2,148	-	△64	2,084	1,996	-	8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1년 제1기 자문회의가 구성된 이래 2023년 제21기 자문회의(위원 임기 2년) 21,984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임.[3)]

---

2) 일반회계-자문회의 운영(1031-300)(위원지원국)

3) 민주평통은「대한민국헌법」제92조 및「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기구로, 제21기 자문위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현황

나. 검토의견

제21기 전체회의 참석률이 48.8%로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민주평통은 회의일정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전체회의 출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내출범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4]에 따라 의장(대통령)이 자문회의 임기(2년, 홀수년에 개시) 중 1회 소집하는 전체회의로서, 가장 많은 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최상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의결기구로 상징성과 중요성이 큰 법정회의임.

제21기 자문회의 출범에 따라 2023년 11월 28일(화) 14:00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6년 만에 국내출범회의가 대면 회의로 개최되었음.[5]

통상 전체회의는 국내 자문위원 전원 및 해외 간부 자문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하여 대면 회의로 개최해왔으나, 제21기 전체회의의 경우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해외 일반자문위원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자문위원들의 온라인 참여를 병행함.

총 위촉위원(임기)	국내			해외
	지역대표	직능대표	소계	재외동포대표
21,984명 (2023.9.1.~2025.8.31.)	3,288명	14,658명	17,946명	4,038명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5) 2019년 제19기 전체회의는 감염병 발발 등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였고, 제20기 전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17일 현장·비대면 병행방식으로 개최되었음.

[2023년 제21기 전체회의 개최 현황]

구분	내용
회의명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2023. 11. 28.(화) 14:00~16:00, 킨텍스 제1전시장 1・2홀
출석	국내 및 해외 자문위원 10,525명(참석률 48.8%)
주요내용	• 식전공연(자유, 평화, 번영을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공연) • 제21기 활동방향 및 계획보고 • 의장(대통령) 개회사 • 자문위원 활동 다짐 발표 - 탈북민, 청년・여성, 해외 자문위원 • 국내・외 협의회 활동 다짐 영상 • 통일의 빛 퍼포먼스 등
집행액	11억 3,600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제21기 전체회의 참석률은 48.8%로, 제17기 60.1%, 제20기 64.0%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였음.

[제17기~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 현황]

구 분	제17기	제18기	제19기	제20기	제21기
임기	'15.7.1.~'17.6.30.	'17.9.1.~'19.8.31.	'19.9.1.~'21.8.31.	'21.9.1.~'23.8.31.	'23.9.1.~'25.8.31.
일시	'15.7.1.(수)	'17.10.31.(화)	미실시	'21.12.17.(금)	'23.11.28.(화)
장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강릉 아이스아레나	-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참석률	**60.1%** (10,106 / 16,805)	**48.1%** (7,781 / 16,174)	미실시	**64.0%** (12,613 / 19,718)	**48.8%** (10,525 / 21,56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개최된 제18기 전체회의의 참석률이 48.1%로 제21기 전체회의 참석률보다 낮았으나, 이때는 회의가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됨에 따라 거리 문제가 참석률 저조에 크게 작용하였고, 당시 회의장 가용 좌석수(9천석)의 한계로 참석 가능한 자문위원의 수를 55%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21기의 참석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각 지역별 출범식이 모두 종료된 뒤[6] 전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자문위원의 전체회의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고, 추운 날씨와 거리 등의 영향으로

6) 2023년 9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국내 18개 시・도별 자문위원 연수가 '국내지역회의 출범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어, 총 9,093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음.

수도권 지역의 참석이 하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전체회의 날짜·장소가 회의 2주일 전인 2023년 11월 14일에 결정됨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참석 안내 및 홍보를 할 시간이 부족한 점 및 평일에 회의가 개최된 것 또한 참석률 저조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체회의는 자문위원 임기(2년) 중 1회만 개최되고, 의장(대통령)이 참석하여 자문회의의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의장에게 건의하는 중요한 법정 회의로서 자문위원의 출석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출석률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7)]

또한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건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문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기 초기에 자문회의의 출범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전체회의 참여를 통해 자문위원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제고하고, 위원 간에 활동방향을 공유하고 단합하는 것은 이후의 자문위원 활동을 독려하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민주평통은 향후 전체회의를 자문회의 출범시기에 맞추어 조기에 개최함과 동시에 회의 일정을 빠르게 확정하여 자문위원에게 충분히 안내·홍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회의 운영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8)] 자문위원의 회의 참석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7) 참고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2조에서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제21기 전체회의에 대한 자문위원의 향후 개선 필요사항 제안 현황>

○ 출범시기에 맞춰 회의 개최 ○ 개최 시기를 사전에 여유있게 공지 ○ 주말 개최도 고려 ○ 경기장·체육관 형식의 회의장에서 개최, 계단식 의자 설치 ○ 회의 방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 ○ 민주평통 취지와 활동 주제에 맞는 구체적 프로그램 강화 ○ 사기진작 및 활동 독려를 위해 활동 우수 협의회와 자문위원 포상 ○ 위원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선정 ○ 참여형 이벤트나 부스 운영을 통해 즐길거리 제공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자문회의 운영 사업: 연례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목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자문회의 운영’ 사업은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통일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내 출범회의(전체회의)·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등 법정회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3억 3,900만원 중 41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1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3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문회의 운영	4,339	4,339	-	±312	4,339	4,198	-	141	4,530

나. 검토의견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연례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목별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민주평통은 동 세부사업 내에서 2023년 전체회의 회의장 임차료 및 인쇄비 부족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1억 1,400만원을 전용하였고, 2022년에는 화상회의 운영 등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중계료 부족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7,0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연례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음.

9) 일반회계-자문회의 운영(1031-300)(자문건의국)

[2019년~2023년 자문회의 운영 사업 내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19	자체전용 ('19.12.30.)	자문회의운영 (1031-300)	220-01	264	자문회의운영 (1031-300)	210-14	국내출범회의 일반용역비(269백만원) 부족분 충당
			240-01	5			
	자체전용 ('19.6.27.)	자문회의운영 (1031-300)	210-07	51	자문회의운영 (1031-300)	220-01	직능별정책회의 여비(61백만원) 부족분 충당
			210-01	10			
	자체전용 ('19.12.12.)	자문회의운영 (1031-300)	250-03	12	자문회의운영 (1031-300)	220-01	자문위원일반지원 여비(12백만원)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19.12.26.)	자문회의운영 (1031-300)	210-07	10	자문회의운영 (1031-300)	220-02	해외출범회의 국외여비(13백만원) 부족분 충당
			240-01	3			
	소계			**355**	**일반용역비 269백만원, 국내여비 73백만원 등**		
2020	자체전용 ('20.10.12.)	자문회의운영 (1031-300)	220-02	1,030	자문회의운영 (1031-300)	320-01	해외지역회의 민간경상보조금 충당
	자체전용 ('20.11.11.)	자문회의운영 (1031-300)	220-01	50	자문회의운영 (1031-300)	**210-07**	국내지역회의 임차료(50백만원)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12.15.)	자문회의운영 (1031-300)	220-01	38	자문회의운영 (1031-300)	**210-01**	정책건의법정위원회 화상회의 운영 등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중계료 등 일반수용비(35백만원) 및 임차료(11백만원) 부족분 충당
			240-01	8		**210-07**	
	소계			**1,205**	**일반수용비 35백만원, 임차료 61백만원 등**		
2021	전용 ('21.11.23.)	자문회의운영 (1031-300)	220-01	50	자문회의운영 (1031-300)	**210-01**	정책건의법정위원회 화상회의 운영 등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중계료 등 일반수용비(46백만원) 및 임차료(33백만원) 부족분 충당
			220-02	5			
			240-01	24		**210-07**	
	소계			**79**	**일반수용비 46백만원, 임차료 33백만원**		
2022	자체전용 ('22.12.23.)	자문회의 운영 (1031-300)	220-01	25	자문회의 운영 (1031-300)	**210-01**	정책건의법정위원회 화상회의 운영 등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중계료 등 일반수용비(55백만원) 부족분 충당
			220-02	14			
			240-01	16			
	자체전용 ('22.12.27.)	자문회의 운영 (1031-300)	220-02	15	자문회의 운영 (1031-300)	**210-01**	해외지역회의 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15백만원) 부족분 충당
	소계			**70**	**일반수용비 70백만원**		
2023	자체전용 ('23.11.24.)	자문회의 운영 (1031-300)	220-01 220-02	104	자문회의 운영 (1031-300)	**210-01 210-07**	전체회의 일반수용비(86백만원), 임차료(18백만원)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3.12.20.)	자문회의 운영 (1031-300)	220-02	10	자문회의 운영 (1031-300)	**210-01**	상임위원회 개최 일반수용비(10백만원) 부족분 충당
	소계			**114**	**일반수용비 96백만원, 임차료 18백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0년 이후 매년 여비(220목) 또는 사업추진비(240목)를 전용하여 일반수용비(210-01) 및 임차료(210-07)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예산의 전용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특정 비목에 대한 연례적·반복적인 예산 전용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민주평통은 향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각 비목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3. 협의회 직무교육 사업: 지역회의 및 협의회 직원 대상 직무교육 강화 필요

가. 개 요

‘협의회 직무교육’ 사업은 공무직 사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300만원 중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4%)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3년도 협의회 직무교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협의회 운영	12,337	12,337	-	-	12,337	12,272	-	65	12,265
협의회 직무교육	78	78	-	△15	63	62	-	1	78

나. 검토의견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대상 지도·점검 결과 동일한 사항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므로, 회계처리 및 복무 관련 직무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민주평통은 매년 1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통일 활동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10) 일반회계-지역협의회 운영(1131-301)(운영지원담당관)

[2022년~2023년 협의회 직무연수 개최 개요]

추진년도	개최 개요
2022년	· 일　　시 : '22.5.25.(수) 11:30~18:30 ·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9) · 참석인원 : 지역회의·협의회 행정실장 241명(참석률 : 97.2%) · 주요내용 : 강연(통일정책, 업무계획), 직무교육, 협의회 우수사례 발표 등 · 소요예산 : 45,806천원
2023년	· 일　　시 : '23.3.30.(목)~31.(금) (1박2일) · 장　　소 : 부산 코모도호텔(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51) 및 부산 일원 · 참석인원 : 지역회의·협의회 행정실장 236명(참석률 : 95.2%) · 주요내용 : 행정실정과 소통, 직무교육, 지역과별 분임토의 등 · 소요예산 : 55,432천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편 민주평통 사무처는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및 회계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음.

자체감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는 2년에 걸쳐 全 지역에 대해(1년차 50%, 2년차 50%)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023년 국내 8개 지역회의 및 118개 협의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시정요구 11건, 주의요구 14건 등 총 126건을 지적하여 조치하였음.

[2022년~2023년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지도·점검 결과 총괄표]

(단위: 건)

구분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현지지도	계
2022년	10	1	1	-	1	82	95
2023년	11	14	2	-	6	93	12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출장여비 지급 기준 위반에 따른 부적절 지급,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2개월 이상 지연, 지출증빙 일부 미흡, 물품관리대장 관리 미흡 등 2022년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협의회 직원에 대한 회계처리 및 복무 관련 직무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2023년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지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구분	2023년	2022년
시정요구	출장여비 지급 기준 위반에 따른 부적절 지급, 행정실장 휴대폰 요금 지원 기준 위반에 따른 부적절 지급, 기타소득 원천징수 누락	출장여비 지급 기준 위반에 따른 부적절 지급, 운영비 월별 지출부 전체 보고·결재를 누락하고 법인세 납부, 원천세액 신고 미흡
주의요구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2개월 이상 지연,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단순인건비 지급 시 증빙 부실	국고보조금 집행보고 2개월 이상 지연, 운영비 지출 항목 부적정, 집행증빙 일부 미흡
개선요구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운영비 집행지침」내 단순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증빙 서식 등 개선·보완,「공무직 주요 복무제도 안내서」내 출장 관련 부분에 대한 현행화·개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신고를 위해 전체 협의회 대상 교육 강화 및「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집행지침」보완
통보	단순인건비 지급 시 증빙 미흡, 통합시스템 내 지출내역 미입력	'21년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를 '22년에 지연 제출
현지지도	국고보조금 지출증빙 일부 미흡(계좌이체 시 증빙자료 누락, 간담회 참석자 명단 누락 등), 물품관리대장 관리 미흡 등	국고보조금 집행 증빙 일부 누락, 물품관리대장 확인자 서명 누락 등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지역회의 및 협의회 직원의 특성상 전국 단위의 대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주평통은 지도·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분야별로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우수 업무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봄.

재외동포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순증한 67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함.[1)]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	-	-	-	0.67	0.67	0.67
총수입	-	-	-	-	-	-	0.67	0.67	0.67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순증한 421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함.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	-	-	-	42,129	42,129	42,129
총지출	-	-	-	-	-	-	42,129	42,129	42,129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50만원으로 67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4.5	4.5	0.67	0.67	-	-
합 계	-	-	4.5	4.5	0.67	0.67	-	-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61억 3,300만원으로, 이 중 421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1%)되고 32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7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	-	-	34,136	21,997	56,133	42,129	3,240	10,764
합 계	-	-	-	34,136	21,997	56,133	42,129	3,240	10,764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재외동포청(개청: 2023. 6. 5.) 자산은 79억 8,8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16억 9,1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41억 5,900만원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함.

부채는 1억 300만원으로 유동부채 9,0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8억 8,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45억 2,3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383억 4,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조직개편일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988	-	7,988	순증
		유동자산	1,691	-	1,691	순증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4,159	-	4,159	순증
		무형자산	747	-	747	순증
		기타비유동자산	1,391	-	1,391	순증
	부 채		103	-	103	순증
		유동부채	90	-	90	순증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13	-	13	순증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7,885	-	7,885	순증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4,523	-	24,523	순증
	재정운영순원가		38,348	-	38,348	순증
	재정운영결과		38,348	-	38,348	순증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재외동포청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 업무 전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이에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수행하던 재외동포 관련 사업들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었음.

재외동포청은 출범 이후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해「재외동포기본법」을 기반으로 한「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개 프로그램, 19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재외동포 보듬기, 한인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모국과의 유대 강화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취지 및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외교부로부터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소관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간에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편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3년 연속 예산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단계별 협의 및 계약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 추가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당초 동포사회의 기부 취지를 고려하여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승계받은 기부금의 사용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소관 업무 및 예산 정비 필요

가. 개 요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및 예산이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되었음.

「정부조직법」에 따라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2)]

그리고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등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3)]

---

2)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3) 「재외동포청 직제」
제2조(직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검토의견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취지 및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외교부로부터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소관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은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는 내국인과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지 생활·안전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4)]

[2023년도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워킹홀리데이 이행	-	-	-	299	299	295	-	4	665
재외공관 역할 강화	-	-	-	70	70	69	-	1	158
워킹홀리데이 내외국인 참가자 지원	-	-	-	229	229	226	-	3	507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이고,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협정 체결 담당 부처로서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및 동 사업이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아닌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의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참가 현황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동 자료는 외교부에서 주한공관에 외교공한을 발송하여 파악하여야 하는바 외교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본적인 현황도 직접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다음으로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향상’** 사업은 재외공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의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가 영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교관이 수행하는 순회영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5)]

재외동포청은 소관 업무인 재외공관 공증 및 국내 아포스티유·영사확인[6)]·가족관계

4) 일반회계-워킹홀리데이 이행(5033-301)(재외동포정책국)

5) 일반회계-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5031-301)(재외동포정책국)

6) 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우리나라는 ’06.10.25.「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 동 협약 발효일인 ’07.7.14.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실시함.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 제출할 공문서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필요)

등록 등 관련 업무 협조가 용이하고, 민원인 중 상당수가 재외동포인 점을 감안하면 동 사업을 재외동포청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3년도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향상(순회영사 활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	-	-	833	833	830	-	3	906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향상	-	-	-	472	472	471	-	1	766
임차료(210-07)	-	-	-	5	5	5	-	-	10
국외업무여비(220-02)	-	-	-	416	416	416	-	-	676
사업추진비(240-01)	-	-	-	51	51	50	-	1	80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사업내용 측면에서 순회영사는 외교부 소관의 영사 업무 또한 함께 수행하고, 무엇보다 예산 측면에서 동 사업이 단순히 외교부 소속의 외교관에게 순회영사 활동 관련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을 다시 외교부 소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간에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혼재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편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청에 의하면, 재외동포청 출범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 및 대규모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주기적인 초청·연수·교육·문화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 모국 초청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한인회장·재외동포 차세대·해외 입양동포 및 재외동포 언론인을 대상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한인 정치인·재외동포 청소년 및 취약지역 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교사 연수 분야에서 재외동포청은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등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조선어교원 및 CIS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를 수행하고 있어, 소관 구분 기준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

이 외에도 두 기관 모두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사업 수혜자 입장에서 소관 기관이 어디인지

혼란스럽고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될 우려도 있으므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업무 및 예산 구조 재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간 유사·중복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소관 기관	내역사업명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23 결산	'24 예산
재외동포 모국 초청 및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청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전 세계 한인회장(연간 약 340명) 국내 초청사업	726	1,006
		재외동포 차세대 대회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차세대 재외동포(만25~45세) 대상 모국 초청 프로그램	523	468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해외 입양동포(및 입양동포 자녀) 대상 모국 초청 프로그램	856	810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특수지(러시아·CIS, 일본 등) 재외동포 언론인 대상 연수 기회 제공, 국내 언론사와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68	104
	재외동포 협력센터	**세계한인정치인포럼** (동포지원사업)	전·현직 한인 정치인 및 차세대 유망 정치인 대상 모국 초청 프로그램	693	580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차세대육성사업)	한인 청소년·대학생 대상 모국문화 체험 기회 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 도모	1,841	7,680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차세대육성사업)	한글교육 취약지역 차세대 대상 한국어 집중 연수 (현지 및 모국 초청)	123	340
교사 연수	재외동포청	**한글학교 교사 육성**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389	1,036
			해외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96	1,229
			사이버 교사 연수 지원	116	420
	재외동포 협력센터	**민족교육 육성**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CIS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397	339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향상**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등 한국의 우수성에 대한 콘텐츠 개발, 동포사회 전파를 위한 국외 간담회 개최 등	-	310
	재외동포 협력센터	**한인 정체성함양 콘텐츠 개발** (동포지원사업)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온라인 전용 채널 구축	-	3,000

자료: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재외동포청 출범을 위한 예비비 과다 배정 및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개선 필요

가. 개 요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61억 3,300만원으로, 재외동포청은 예비비 219억 9,700만원 및 외교부 본예산 341억 3,600만원을 이체받아 운영하였으며, 이 중 421억 2,900만원을 집행(집행률 75.1%)하고 32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7억 6,4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재외동포청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	-	-	34,136	21,997	56,133	42,129	3,240	10,764	106,660

예비비 219억 9,700만원은 '23.3.4.「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3.6.5. 재외동포청이 출범함에 따라 외교부(재외동포청 설립준비기획단)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예비비를 신청하여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한 것으로, 재외동포청은 이 중 155억 3,400만원을 집행(집행률 70.6%)하고 15억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8억 9,8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지출결정액	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21,997	15,534	1,565	4,898

주) '23.3.4.「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3.6.5. 재외동포청이 출범함에 따라 외교부(재외동포청 설립준비기획단)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예비비 219억 9,700만원을 신청하여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하였음

자료: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나. 검토의견

첫째,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이체받은 예비비 중 상당액이 불용된 바, 이는 예비비 배정의 원칙인 시급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외교부(재외동포청 설립준비기획단)는 2023년 5월 예비비 219억 9,700만원을 신청하면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2023년 3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청 출범을 위하여 시급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음.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공무원 인건비 58억 8,100만원, 사무환경 조성비 75억 7,900만원 등 총 219억 9,7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고, 이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155억 3,400만원이었으며, 15억 6,500만원이 이월, 48억 9,800만원은 불용되었음.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별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사업에 배정된 예비비 58억 8,100만원의 57.6%에 해당하는 33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액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음. 이어서 '사무환경 조성' 사업에서 7억 9,5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총 예비비 배정액 219억 9,700만원의 22.3%에 이르는 48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예비비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비비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인건비	5,881	2,491	-	3,390	42.4
사무환경 조성	7,579	5,459	1,325	795	72.0
기본경비	2,126	1,489	240	397	70.0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123	32	-	91	26.0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116	108	-	8	93.1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1,543	1,326	-	217	85.9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4,629	4,629	-	-	100.0
합계	21,997	15,534	1,565	4,898	70.6

자료: 재외동포청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외동포청 출범에 필요한 예비비 배정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처럼 2023년 배정된 예비비 중 상당액이 불용된 것은 예비비 배정의 시급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7)]

둘째,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출연된 예비비 중 일부가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앞서 검토한 예비비 중 46억 2,900만원은 재외동포청에서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전액

7) 예비비를 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고(예측불가능성),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출의 시급성이 있어야 하며(시급성),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야 하는(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출연되어, 재외동포협력센터 단계에서 인건비 29억 8,000만원과 경상운영비 16억 4,900만원으로 배정되었음.

그런데 재외동포협력센터 인건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현액 31억 8,100만원 중 26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7%)되고, 5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재외동포협력센터 인건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본예산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인건비	-	201	2,980	3,181	3,181	3,181	-	3,181	2,631	530	20

자료: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특히 인건비 중 보수 3억 6,400만원을 이월한 것에 대해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정・현원 차이 해소를 위해 2024년 명예퇴직・조기퇴직을 통한 감원을 지속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이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8)]

[2023년도 재외동포협력센터 인건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 내역	이월액	비고
보수 (110-01)	명예퇴직 수당	292	• '24년 수요조사 실시하여 명예퇴직 시행 예정
	조기퇴직 수당	72	• '24년 수요조사 실시하여 조기퇴직 시행 예정
	'23년 재외동포재단 경영평가 성과급	147	• 외교부 산하기관 평가위원회 '24년 1월 개최
	소 계	511	
고용부담금 (320-09)	4대 보험료(12월분)	19	• 센터 임직원 12월분 보험료 등(다음달 10일 납부)
합 계		530	

자료: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그러나 이는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확정된 지출원인 행위 없이 예비비를 이월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재외동포기본법」 부칙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선급금 지급 기준 등에 위배되는 집행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법령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모두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9]에 위반되는 집행내역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먼저, 재외동포청의 경우 2023년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2024년 1월 실시된 동포단체 행사비를 지출하였음.

[재외동포청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사례]

(단위: USD)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공관	사업명	교부일	사업일	지원액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5035-301)	동포단체 활성화 (문화예술단체 지원)	뭄바이 (총)	'24년 1월 김치담그기 행사	'23.9.4.	**'24.1.27.**	1,500

자료: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다음,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2023년 예산으로 2024년 1월분 장학금을 집행하였음.

[재외동포협력센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사례]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사업명	집행내역	집행일	집행액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대상 **'24년도 1월분 장학금(생활비)**	'23.12.22.	192

자료: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② 재외동포청은 계약기간이 2024년 3월까지인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관련 계약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급금 지급 기준을 위반하여 계약액 전액을 2023년에 지급하였음.

9)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023년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계약명)	발주액	계약액	수행기관	계약기간	집행액	이월액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PMO 용역	167	167	㈜한국정보기술단	'23.06.28.~'24.03.31.	167	-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3,057	2,935	㈜한국이디에스	'23.09.20~'24.03.31.	2,935	-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감리	149	149	㈜씨에이에스	'23.11.13.~'24.03.31.	149	-

자료: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회계부서에서 오지출한 것으로 2024년 초 업체로부터 잔금 20%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재외동포청은 다음과 같이 연내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 지연으로 불필요하게 이월 집행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한 계약 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명(계약명)	발주액	계약액	계약기간	집행액	이월액
사무환경 조성(7112-251)	재외동포청 본청 보안설비 구축	610	512	'23.09.04.~'23.12.03.	-	512
사무환경 조성(7112-251)	재외동포청 본청 사무공간 조성사업(리모델링)	840	812	'23.08.17.~'23.11.24.	-	812

자료: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한 출장 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명	출장기간	이월액
재외동포정책기반 조성(5036-301)	네덜란드 동포 간담회 국외출장 촬영지원	'23.12.10.~'23.12.13.	4.3

자료: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일반회계】

<세 출>

3.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사업: 사업 지연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부적정 등

가. 개 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사업은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84억 5,600만원 중 6억 4,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되고, 78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음.[10)]

[2023년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사업 결산(재외동포협력센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	-	8,456	-	8,456	647	7,809	-	-

주) 재외동포협력센터 실집행액 기준임(재외동포청 단계에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의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된바, 2023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만 있고 2023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동 사업은 당초 2021년에 부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2021년 예산에 설계비 12억 7,000만원(기본조사설계비 2억 8,600만원, 실시설계비 9억 8,400만원), 2022년 예산에 건축비 71억 8,600만원(공사비 57억 4,900만원, 시설부대경비 14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검토 중이던 부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며 현재까지 서울대와 경기도 시흥캠퍼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중으로,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이 (舊)재외동포재단 및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계속하여 이월되고 있음.

10) 일반회계-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5032-302)(교류협력국・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2021년	설계비	1,270	-	1,270	• 2022년으로 이월
2022년	설계비	1,270	-	1,270	• 2023년으로 재이월
	건축비	7,186	-	7,186	• 2023년으로 이월
2023년	설계비	1,270	647	623	• 2024년으로 재재이월
	건축비	7,186	-	7,186	• 2024년으로 재이월
2024년	설계비	623	-		
	건축비	7,186	-		

자료: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나. 검토의견

첫째, 사업 지연으로 3년 연속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단계별 협의 및 계약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 추가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검토 중이던 부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며 2021년과 2022년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고, 2023년에도 예산현액 84억 5,600만원 중 6억 4,700만원만 집행되고 78억 900만원이 다시 2024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3년 연속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재외동포재단과 서울대학교 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부속 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건립 부지가 확정되었고, 이에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음.[11]

11) 2023년 당초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사업명(계약명)	발주액	계약액	수행기관	계약기간	집행액	이월액
기본조사 설계비(420-01), 실시설계비 (420-02)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1,052	1,052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축 사사무소 (대표계약자)	'23.1.25.~ '24.4.29.	526	526
감리비 (420-04)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기획, 설계관리)	107	107	조달청	'23.2.1.~ 공사계약 체결일	-	107
기본조사 설계비(420-01)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45	45	주식회사 이원알앤디	'23.6.1.~ '24.3.26.	-	45

자료: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그러나 서울대학교 캠퍼스위원회의 시설사업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12] 진행 중이던 설계용역이 2024년 1월 19일부터 일시정지된 상황이고, 교통영향평가 용역 또한 평면도가 확정되고 계획설계가 완료되어야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용역 계약기간을 변경할 계획임.

현재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서울대 캠퍼스위원회의 시설사업 안건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재개할 계획이나, 설계용역이 정지된 시점을 고려할 때 계획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설계 재개 후 적어도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임.

계획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중간·실시설계, 조달청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2024년 내 공사 착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일정 관련 고려사항]

구분	재외동포협력센터 안	추가 고려사항
계획설계	'23.1.25.~'24.4.29.	'24.1.19.부터 일시정지 중 (약 3개월)
중간설계	~'24.5.	약 3개월
조달성 적정성 검토		약 15일
총사업비 조정 협의		특정 곤란
실시설계	~'24.8.	약 3~4개월
조달성 적정성 검토		약 15일
총사업비 조정 협의		특정 곤란
공사업체 공모	'24.9. 공사 발주	약 2~3개월 또는 그 이상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내 착공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024년 예산현액 대부분이 재차 이월되고 지속적인 공사비 증가에 따라 총사업비 상승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서울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설사업 안건 승인 후 조속히 설계용역을 재개할 필요가 있고, 이후 총사업비 협의 및 시공사 선정 단축 등 사업을 면밀히 관리하여 향후 계획된 공사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2) ㅇ **'23.11.29. 서울대 캠퍼스위원회 시설사업 심의 안건 상정 결과: 재심의**
- 시흥캠퍼스 내 인프라 설비(기계설비, 전기, 배관 등)와 연계
- 지하에 조성된 통합주차장을 사용하는 마스터플랜 반영을 검토
- 소방 관련법 및 사이니지 계획을 검토

ㅇ **'24.2.20. 서울대 캠퍼스위원회 시설사업 심의 안건 상정 결과: 원안보류**
- 통합주차장 활용 및 공동구 연결 방안을 협의, 합리적 계획안을 마련
- 지난 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으로 변경된 입면도를 제시
- 서울대학교 공식 UI가이드 라인을 준용

둘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당초 동포사회의 기부 취지를 감안하여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승계받은 기부금의 사용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 12월말 기준 기부금 약 27억 6,7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동 기부금은 재외동포재단 해산 전인 2023년 5월말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보통재산으로 승인[13]된 것으로, 발전기금 약 9억원[14]과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기부금 약 18억원[15]으로 구성됨.

한편 2020년 9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관련 2021년도 예산안 요구 당시,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287억원으로 산출하였고,[16] 이 중 47억 2,1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서 동포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당초 계획한 마곡지구 부지 매입이 무산되고, 장기 임차방식(서울대 시흥캠퍼스)으로 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동 기부금을 부지매입비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으로, 현재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이를 정기예금으로 계속 예치하면서 운영수익을 토지 임차료 지급에 활용하는 등 센터 건립 후 소요되는 운영경비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당초 동포사회의 기부 취지가 '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 센터 건립 자금 지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부금의 사용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3) 2023.5.31. 외교부 재외동포과-9272

14)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 당시 다수의 재외동포로부터 받은 기부금 약 5억원이 20여년간 이자를 더해 약 9억원에 달하게 되었고, 2020년 1월 2일 제76차 재외동포재단 이사회를 통해 본 발전기금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함.

15) 2020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동포사회로부터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자금 등으로 35억원의 기부금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실제로는 2020년 10억원, 2021년 8억원, 총 18억원이 접수되었음.

16) 2021년도 예산안 요구 당시 총사업비 287억 4,200만원(부지매입비 47억 2,100만원, 설계비 12억 7,000만원, 건축비 등 227억 5,100만원)이 산출되었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신규등록 보고서(2021. 12. 29.)에 299억 7,400만원(부지매입비 47억 2,100만원, 설계비 14억 8,300만원, 건축비 등 237억 7,000만원)이 등록되었음.

4. 자료실 운영 사업: 소장자료 보관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자료실 운영’ 사업은 도서·논문 및 학술자료 등 재외동포 관련 전문자료를 수집·축적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술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억 300만원 중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7%)되고,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3년도 자료실 운영 사업 결산(재외동포협력센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록전시운영	-	-	-	351	351	159	76	116	315
자료실 운영	-	-	-	103	103	11	-	92	65

주) 재외동포협력센터 실집행액 기준임(재외동포청 단계에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의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현재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자료실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활용을 위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이전까지의 자료실 운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00년 재일동포의 성금으로 설치된 재외동포재단의 연수실이 2002년 2월 동포사업 추진 학술기반 마련을 위해 자료실로 전환된 것으로, 2013년 6월부터는 대외에 개방하여 대출증 발급 및 관외대출을 시작하였음.

2023년 6월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며 자료실 소장자료(33,492종 45,981권)[18]를 재외동포청이 승계하였으나, 청사 공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자료실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현재 창고를 임차하여 동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음.

---

17) 일반회계-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5032-302)(교류협력국·재외동포협력센터)

18) 단행본 및 재외동포재단 발간자료 16,740종 20,709권, 학술 및 학술포럼자료 2,549종 2,836권, 논문 515종 800권, 연속간행물 542종 7,639권, 비도서자료(DVD 등) 1,562종 2,413권, 기타(전자문서, 원문자료 등) 11,584종 11,584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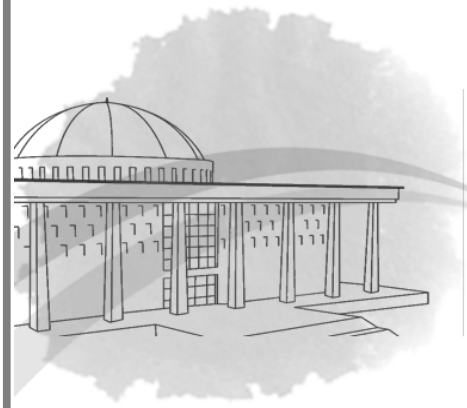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당초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기 전 90일 정도 보관하기 위해 2023년 6월 경기도 하남 소재 일반창고를 임시로 임차하였으나, 소장자료의 서가 배치 및 활용 시점이 불명확함에 따라 2023년 12월 항온항습 및 방역위생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기도 연천 소재 창고로 이전한 상황으로,[19]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현재 추진 중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재외동포아카이브(전시)와 접목하여 도서관 또는 자료실 형태로 운영할 계획임.

그러나 당초 2023년 완공 예정이었던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4월 기준 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된 상황으로 3년 연속 예산이 이월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장기간 자료실 소장자료의 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활용을 위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이전까지의 자료실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20]

19) 2023년 자료실 이관을 위한 용역 비용 5,500만원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 내 경상운영비 예산에서 집행되었음.

20)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소장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해 '23년 12월 항온항습 및 방역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를 임차하여 자료를 이전하였고, '24년에는 소장자료 소독 및 보관박스 교체 작업을 시행하여 장기 보관이 가능한 상태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료 대다수가 지류로서 장기간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현재 소장자료는 임시 보관을 전제로 종이 박스에 보관한 상태로, 보관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창고 이전 및 자료의 하중 등의 문제로 일부 박스가 손상된 상황임).

국방위원회



국방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62억 9,800만원(1.1%)이 많은 2조 4,172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80억 6,200만원(34.4%)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55,358	755,358	615,524	△139,834	1,160,105	1,160,105	1,138,800	△21,305	523,276
기 금	1,200,329	1,200,329	1,183,702	△16,627	1,230,885	1,230,885	1,278,488	47,603	94,786
총수입	1,955,687	1,955,687	1,799,226	△156,461	2,390,990	2,390,990	2,417,288	26,298	618,062

문의 : 김석룡 예산결산조사관 dragon@assembly.go.kr (02-6788-567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8,836억 2,000만원(△2.1%)이 적은 41조 40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729억 1,300만원(7.4%)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4,387,974	34,500,439	33,866,204	△634,235	37,427,415	37,427,415	36,319,688	△1,107,727	2,453,484
기 금	4,266,886	4,266,886	4,264,918	△1,968	4,460,240	4,460,240	4,684,347	224,107	419,429
총지출	38,654,860	38,767,325	38,131,122	△636,203	41,887,655	41,887,655	41,004,035	△883,620	2,872,913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6,987억 1,300만원으로 2조 636억 5,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9,418억 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4.1%)되고 1억 9,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1,216억 5,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19,224	219,224	-	219,224	455,455	349,930	178	105,347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599,553	599,553	-	599,553	693,662	682,838	-	10,824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879,936	879,936	-	879,936	914,535	909,041	13	5,481
합 계	1,698,713	1,698,713	-	1,698,713	2,063,652	1,941,809	191	121,652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2조 7,020억원으로, 이 중 40조 4,631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8%)되고 1조 739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1,648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0,097,410	40,097,410	859,650	±303,622	-	40,957,060	38,973,056	967,166	1,016,838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	599,553	599,553	232,087	±4,417	-	831,640	603,879	84,031	143,730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879,936	879,936	33,364	±3,912	-	913,300	886,219	22,767	4,314
합 계	41,576,899	41,576,899	1,125,101	±311,951	-	42,702,000	40,463,154	1,073,964	1,164,882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4조 9,585억 4,300만원으로 5조 48억 6,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조 9,630억 6,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2%)되고 2억 5,9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415억 3,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군인연금기금	3,919,311	4,143,856	4,151,976	4,140,639	-	11,337
군인복지기금	814,687	814,687	852,884	822,430	259	30,195
합 계	4,733,998	4,958,543	5,004,860	4,963,069	259	41,532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4조 9,668억 6,000만원으로, 이 중 4조 9,630억 6,9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9%)되고 38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67억 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군인연금기금	3,919,311	4,143,856	-	4,143,856	4,140,639	-	50,320
군인복지기금	814,687	814,687	8,317	823,004	822,430	3,816	36,385
합 계	4,733,998	4,958,543	8,317	4,966,860	4,963,069	3,816	86,705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국방부 자산은 전년 대비 7조 4,035억 9,800만원이 증가된 273조 1,620억원 6,6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3,810억 3,500만원, 투자자산이 956억 8,6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7조 8,092억 4,6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조 621억 7,900만원 증가된 263조 7,549억 9,2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4조 561억 5,3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조 3,414억 1,900만원이 증가된 9조 4,070억 7,4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국방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7조 6,16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조 3,733억 8,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4조 2,981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조 4,454억 9,300만원 증가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방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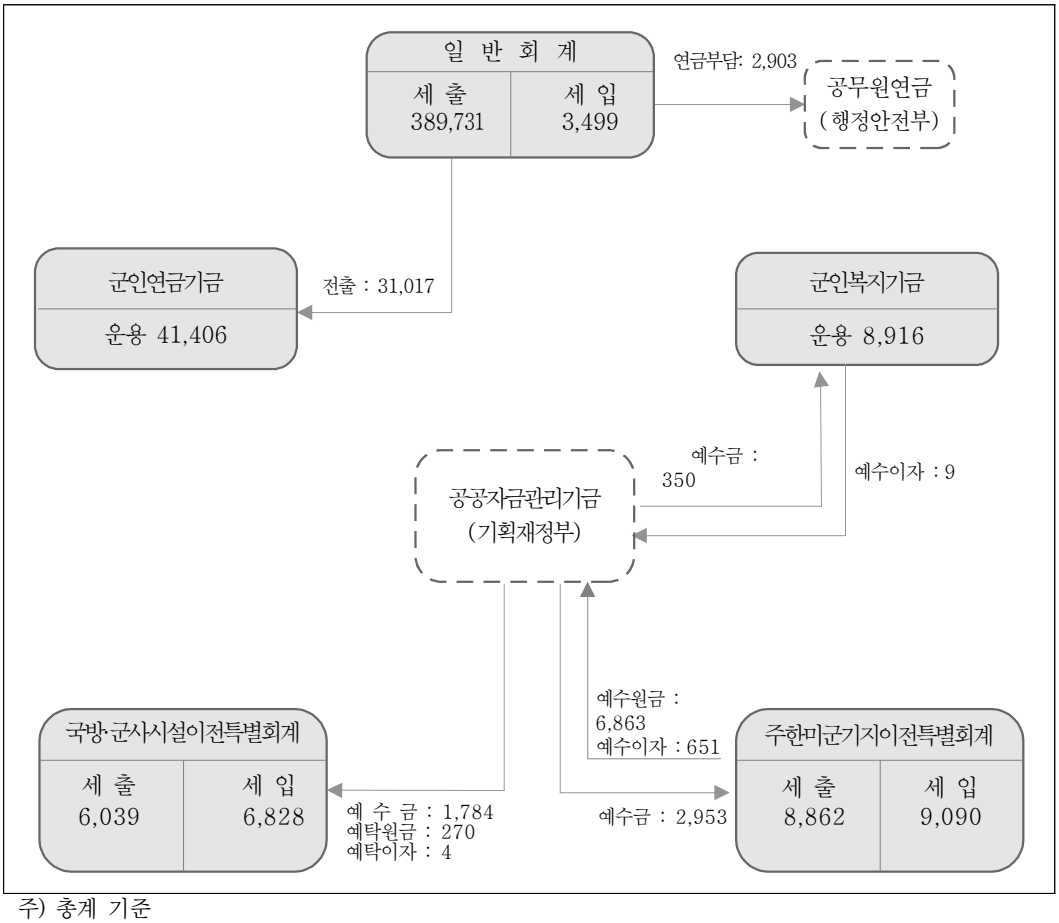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73,162,066	265,758,468	7,403,598	2.8 %
		유동자산	11,873,909	12,254,944	(381,035)	(3.1 %)
		투자자산	1,653,681	1,749,367	(95,686)	(5.5 %)
		일반유형자산	259,372,876	251,563,630	7,809,246	3.1 %
		무형자산	259,571	188,498	71,073	37.7 %
		기타비유동자산	2,029	2,029	-	-
	부 채		263,754,992	259,692,813	4,062,179	1.6 %
		유동부채	3,362,865	3,311,847	51,018	1.5 %
		장기차입부채	3,022,607	3,016,668	5,939	0.2 %
		장기충당부채	251,626,789	247,570,636	4,056,153	1.6 %
		기타비유동부채	5,742,731	5,793,662	(50,931)	(0.9 %)
	순자산		9,407,074	6,065,655	3,341,419	55.1 %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7,616,105	52,242,723	5,373,382	10.3 %
	재정운영순원가		54,298,418	46,853,491	7,444,927	15.9 %
	재정운영결과		54,298,166	46,852,673	7,445,493	15.9 %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국방부는 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국방부 재정흐름도]

(단위 :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국방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교육훈련 및 과학화를 통해 실전적이고 안정적인 전투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하도록 장병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초급간부 복무여건, 병영생활관 및 군급식 개선, 장병 봉급 지속적인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였음.

2023년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미수납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채권회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미수납 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본피복이 계약 지연·자산 충족 및 계약 대비 소요량 부족 등으로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고, 매년 특정단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당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체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피복 소요량에 대한 추계를 면밀히 계획하여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조달체계 확립을 위해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재해보상금 중 사망보상금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재해보상금 편성에 있어서 순직인정률과 순직인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의 사망보상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국가의 책임이 따르는 사망보상금 지급 인원(순직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군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군인들에게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군내에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양성평등담당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상담실적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과 임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양성평등 업무내용과 비슷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의 배치를 확대하여 상담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부정확한 적금 가입률 산정 및 지급조건 미충족자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면밀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병 내일준비지원금 지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재난 및 안전사고가 사고유형별로는 지상 및 차량에 의한 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고, 사고원인별로는 인적원인에 의한 사고 발생이 대부분이므로, 국방부는 지상 및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요인 차단과 차량의 정비 및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인적원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위험예지훈련, 지휘관에 의한 현장확인 및 점검 등을 통해 사고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채권 관리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PKO[2] 경비보전금, FMS[3] 정산잔액, 과오지급금·군장학금 회수, 연체료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2,802억 4,000만원 중 1,948억 7,700만원이 수납(수납률 69.5%)되고 1억 6,000만원은 불납결손되었으며, 852억 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4]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이 전수입	118,774	118,774	280,240	194,877	160	85,203	69.5	120,674

나. 검토의견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징수결정된 채권이 미수납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채권회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미수납 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PKO(Peace Keeping Operation): 평화유지활동

3) FMS(Foreign Military Sales):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판매하는 무기 수출 방식

4)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계획예산관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국고금관리법」및「국유재산법」등에 따라 연체료 및 과오지급금, 정산잔액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과목임.

연도별 수납률을 보면, 2020년도는 징수결정액 1,565억 6,600만원 중 886억 1,1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56.6%를 보이고 있고, 2023년도는 징수결정액 2,802억 4,000만원 중 1,948억 7,7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69.5%를 보여 전반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 상태에 있음.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105,034	105,034	105,034	156,566	88,611	56.6	67,789	166
2021	111,353	111,353	111,353	174,831	90,057	51.5	84,505	269
2022	116,904	116,904	116,904	199,031	110,129	55.3	88,576	326
2023	118,774	118,774	118,774	280,240	194,877	69.5	85,203	160

자료: 국방부

2023년도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790억 7,200만원이, 납기미도래로 56억 200만원이, 징수유예 등으로 5억 2,900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어,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계	**280,240**	**194,877**	**160**	**85,203**	
기타경상 이전수입	280,240	194,877	160	**79,072**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5,602	납기미도래
				529	징수유예 등

자료: 국방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주요 미수납 채권을 보면, 130밀리 탄약 추진기관 위탁처리 용역에서 발생된 240억 5,000만원이 가장 큰 금액이고, 다음으로 F-4항공기 부품 외주

정비 99억 4,300만원, 2함대 해상전술훈련장 67억 8,100만원,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43억 4,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 주요 미수납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채권발생연도)	발생원인 (계약명)	금액	추진경과 및 조치계획
케○○텍(2016)	부당이득금 환수 (130밀리 탄약 추진기관 위탁처리 용역)	24,050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현장방문 4회 채무자 재산없음으로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주식회사 블○○어 (2014)	부당이득금 환수 (F-4 항공기 부품 외주정비)	9,943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부동산 압류로 3억원 환수 소멸시효 연장 소송 中
㈜트○○○디어 (2021)	계약해제 반환금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6,781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3심 판결 선고('23.5.18.) 선금보증보험금 회수(11.8억원) 발견재산(부동산) 강제집행 의뢰 中
코리○○○팅 주식회사(2019)	계약해제 반환금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4,345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부동산 가압류 결정(2019)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프런○○ ○○어 (2007)	하자발생 손해배상금 (심해훈련장비 납품)	3,930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근로소득 및 자산식별 후 권리행사 확보방안 모색 中
문○인(1994)	구상금 (토지매매사기에 따른 구상금)	3,266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현지 회수활동 및 재산명시 요청 자동차 압류 조치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주식회사 제○○○테크 (2018)	손해배상금 (130밀리 탄약 추진기관 위탁처리 용역)	2,128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재산명시 신청(재산없음) 채무자 소재 및 재산 파악 中
조○원,조○열 (2019)	손해배상금 (시설본부 매입 토지 관련)	1,409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재산명시소송 결과 재산없음 확인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김○림(2009)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1,346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은행 계좌압류 및 급여소득 압류 진행 中(환수 2회)
김○인(2001)	구상금 (중사 재직 중 은행강도)	1,215	공시송달(서울신문) 현지출장 3회, 월 4만원 분납 中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채권발생연도)	발생원인 (계약명)	금액	추진경과 및 조치계획
권○식 외 2명 (2008)	손해배상금 (해병1사단 훈련장 부지매입)	1,054	채무자 명의 토지 압류 채무자 근저당원 부채 압류 제3채무자(은행) 추심결정문 전달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사유의 미수납 채권 중 장기 미수납 채권의 경우 상당 부분 수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데 반해, 납기미도래와 징수유예의 경우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미수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사유의 미수납 채권의 경우 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채권확보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채권회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미수납 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변상금: 미수납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변상금’ 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판정 사항 및 군수품 손망실 등에 대한 국방부 자체 변상판정 사항, 차량사고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분에 대한 구상금, 국유재산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자에게 일정금액을 수납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137억 5,100만원 중 23억 4,200만원이 수납(수납률 17.0%)되고 114억 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5)]

[2023년도 변상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변상금	2,987	2,987	13,751	2,342	-	11,409	17.0	3,244

나. 검토의견

변상금의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국방부는 변상금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회수 전문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변상금은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변상판정 금액을 수납하기 위한 과목임.

최근 4년간 변상금 수납실적을 보면, 미수납액이 2020년도 104억 9,7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발생하여 2023년도는 114억 900만원으로 증가되고 있음.

5) 일반회계-변상금(57-571)(계획예산관실)

[최근 4년간 변상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1,961	1,961	1,961	13,507	2,991	22.1	10,497	19
2021	2,992	2,992	2,992	12,522	2,258	18.0	10,263	1
2022	2,940	2,940	2,940	13,009	2,509	19.3	10,476	24
2023	2,987	2,987	2,987	13,751	2,342	17.0	11,409	-

자료: 국방부

연도별 변상금 발생 내역을 보면, 2020년도는 징수결정액 135억 700만원 중 당해연도 발생분 30억 8,500만원, 과거연도 발생분은 104억 2,2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2023년도는 징수결정액 137억 5,100만원 중 당해연도 발생분 37억 3,900만원, 과거연도 발생분 100억 1,200만원으로 매년 미수납된 과거연도 발생분이 다시 징수결정되고 있음.

[연도별 변상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당해연도 발생분	과거연도 발생분
2020	13,507	3,085	10,422
2021	12,522	4,429	8,093
2022	13,009	3,237	9,772
2023	13,751	3,739	10,012

자료: 국방부

2023년도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106억 700만원이, 납기미도래로 8억원이, 징수유예 등으로 200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어,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3년도 변상금 미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계	13,751	2,342	-	11,409	-
변상금	13,751	2,342	-	10,607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800	납기미도래
				2	징수유예 등

자료: 국방부

변상금의 주요 미수납 채권 현황을 보면, 국고금 횡령에 따른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따라 2009년에 발생된 10억 6,600만원과 2001년에 발생된 10억 1,200만원이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음.

[변상금 주요 미수납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채권발생연도)	발생원인 (계약명)	금액	추진경과 및 조치계획
김○림(2009)	국고금 횡령 (감사원 변상판정)	1,066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은행 계좌압류 및 급여소득 압류 진행 中(환수 2회)
김○주(2001)	국고금 횡령 (감사원 변상판정)	1,012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채무자 사망(2021년) 친인척 상속 포기여부 확인 中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기 미수납 채권의 경우 상당부분 수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 미수납 채권의 경우 자산관리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방부는 변상금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회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세 출>

3. 민간조리원운영 사업: 민간조리원 운용률 제고 및 관리 규정 마련 필요

가. 개 요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은 조리병의 조리기술을 보완하고 군 급식의 맛과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48억 3,700만원 중 882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2%)되고, 165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3년도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민간조리원운영	105,437	105,437	-	△600	104,837	88,267	-	16,570	110,028

나. 검토의견

민간조리원의 낮은 처우 수준이 중도퇴사로 이어져 집행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고, 민간조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부족하므로,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조리전문성 확보 및 급식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 식수인원 250명 이상 취사장에 1명의 민간조리원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식수인원 80명 이상 취사장에 2명의 민간조리원을 고용하고, 이와 더불어 300명 이상 취사장에는 1명의 민간조리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일반회계-민간조리원운영(1231-305)(군수관리관실)

[연도별 민간조리원 운영 현황]

기간	식수인원(명) 기준	민간조리원 인원(명/개소)
1996~2006년	250명 이상	1
2007~2011년	200명 이상	1
2012~2014년	150명 이상	1
2015년	120명 이상	1
2016년	110명 이상	1
2018년	90명 이상	1
2019~2020년	80명 이상	1
2021년	80~299명	1
	300명 이상	2
2022년~2023년	80명 이상	2+

자료: 국방부

최근 5년간 민간조리원 인원은 2019년 1,982명에서 2023년 3,30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액도 2019년 509억 5,800만원에서 2023년 1,054억 3,7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민간조리원 규모]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1,982	1,987	2,278	3,188	3,305
증원	+79	+5	+291	+910	+117
예산	50,958	57,638	62,881	98,087	105,437

자료: 국방부

그런데 민간조리원 운영률은 2020년의 경우 정원 1,987명에 현원 1,919명으로 96.6%로 나타났으나, 2023년의 경우 정원 3,305명에 현원 2,713명을 운영하여 운영률이 82.1%로 낮아지고 있음.

[민간조리원 정·현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민간조리원			
	군 요구	정원(A)	현원(B)	운영률(B/A)
2020년	2,241	1,987	1,919	96.6
2021년	2,282	2,278	2,014	88.4
2022년	2,306	3,188	2,494	78.2
2023년	3,337	3,305	2,713	82.1

자료: 국방부

또한 연도별 결산내역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020년 99.5%에서 2023년 84.2%로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불용액도 2020년 2억 6,100만원에서 2023년 165억 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집행부진이 심화되고 있음.

[연도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57,638	57,638	-	△4,339	53,299	53,038	99.5	-	261
2021	62,881	62,881	-	-	62,881	59,242	94.2	44	3,595
2022	98,087	98,087	44	△14,233	83,897	73,621	87.8	-	10,276
2023	105,437	105,437	-	△600	104,837	88,267	84.2	-	16,570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낮은 처우[7] 수준이 잦은 퇴직[8]의 원인이 되고 있고, 퇴직에 따른 신규채용 저조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설명한 집행부진 원인 외에도 민간조리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

7) 1인당 월 급여: 국방부 민간조리원은 2,326,733원, 교육공무직(조리사) 2,743,467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월별로 환산한 값이며, 격년 지급인 건강검진비는 제외, 자료: 국방부)

8) 연도 중 중도퇴사 현황: 2018년 105명, 2019년 108명, 2020년 231명, 2021년 116명, 2022년 169명, 2023년 83명

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짐.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의 법령상 근거를 보면, 「군인 급식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령은 급식 및 급식기준액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조리원을 고용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2023년 말 현재 국방부는 3,305명의 민간조리원 정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한 상태임.

따라서 민간조리원의 낮은 처우 수준이 중도퇴사로 이어져 집행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고, 민간조리원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부족하므로,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기본피복 사업: 면밀한 추계에 의한 집행부진 개선 및 공정한 조달체계 확립 필요

가. 개 요

‘기본피복’ 사업은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 및 전투화 등 공통 개인피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571억 7,800만원 중 3,219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1%)되고, 100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1억 1,500만원은 불용되었음.[9)]

[2023년도 기본피복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본피복	374,810	374,810	18,070	△35,702	357,178	321,990	10,073	25,115	374,184

나. 검토의견

기본피복이 계약 지연·자산 충족 및 계약 대비 소요량 부족 등으로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고, 매년 특정단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당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체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피복 소요량에 대한 추계를 면밀히 계획하여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조달체계 확립을 위해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본피복은 군인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투복·전투화 및 근무복 등을 일컬으며, 기본피복의 적절한 품질유지가 군인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20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1%이었으나, 2023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1%로 하락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전용 현황을 보면, 2020년 16억 8,500만원, 2021년 71억 2,800만원, 2022년 129억 6,600만원, 2023년 357억 200만원 등이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

9) 일반회계-기본피복(1241-301)(군수관리관실)

어 실질적인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보다 더 하락하고 있음.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367,828	367,828	3,593	△1,685	369,736	362,659	98.1	5,115	1,962
2021	401,446	401,446	5,115	△7,128	399,433	379,689	95.1	16,433	3,311
2022	385,824	377,464	16,433	△12,966	380,931	352,381	92.5	18,070	10,480
2023	374,810	374,810	18,070	△35,702	357,178	321,990	90.1	10,073	25,115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계약 지연으로 연내 납품이 제한되고, 자산 충족에 따라 실소요를 조달하였으며, 특이체형자를 위한 맞춤피복 운용 품목의 경우 사전 계약물량 대비 실제 소요량 부족 등으로 기본피복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023년도 주요 품목별 집행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 유
전투모	1,569	56	-	1,626	1,329	82	1	295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 (다음년도 이월액) - 계약지연으로 연내 납품제한
전투복	49,181	1,365	△10	50,536	45,631	90	2,985	1,920	· (이·전용) - 베레모 부족예산 지원 · (불용) - 이월된 계약업체 계약해지로 인한 불용 · (다음년도 이월액) - 업체 부자재 확보 지연 등 생산차질에 따른 이월
전투화 (육면)	12,986	-	△6,083	6,903	6,903	100	-	-	· (이·전용) - 공공요금 및 국가배상금 지원 ※자산 충족에 따른 이·전용 후 실소요 조달
운동모	946	-	-	946	929	98	17	-	· (다음년도 이월액) - 업체 생산납품 지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 유
동운동복	33,624	1,946	△7,785	27,785	27,085	97	191	509	· (이 · 전용) - 공공요금 지원, 시제품개발비 · 런닝 예산지원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 (다음년도 이월액) - 업체 생산 납품 지연
하운동복	11,478	2,453	△3,000	10,931	10,473	96	70	388	· (이 · 전용) - 공공요금 지원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 (다음년도 이월액) - 업체 생산 납품 지연
운동화 (런닝용)	3,559	0	△1,494	2,065	1,688	82	-	377	· (이 · 전용) - 공공요금 지원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자산 충족에 따른 이·전용 후 실소요 조달
면양말	7,003	62	-	7,065	5,974	84	21	1,070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업체간 경쟁과열로 저가 낙찰) · (다음년도 이월액) - 추가조달로 연내 납품제한
동내의	8,156	10	△1,005	7,161	5,201	73	348	1,612	· (이 · 전용) - 가방 부족예산 지원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업체간 경쟁과열로 저가 낙찰) · (다음년도 이월액) - 업체 생산 납품 지연
팬티 (드로즈)	11,569	-	△3,000	8,569	8,260	96	115	194	· (이 · 전용) - 공공요금 지원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 (다음년도 이월액) - 추가조달로 연내 납품제함
방상외피	15,526	922	△2,798	13,650	11,233	82	22	2,395	· (이 · 전용) - 공공요금 지원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자산 충족에 따른 실소요 조달) · (다음년도 이월액) - 맞춤피복 계약대비 소요량 부족으로 사고이월
방상내피	5,251	1,089	△900	5,440	4,268	78	57	1,115	· (이 · 전용) - 공공요금 지원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자산 충족에 따른 실소요 조달) · (다음년도 이월액) - 업체 생산 납품 지연

자료: 국방부

그러나 계약 지연은 피복이 연도 내에 납품될 수 있도록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면 되고, 자산 충족으로 실소요만 조달하였다는 것과 계약대비 소요량이 부족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여짐.

또한 기본피복의 계약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계약이 전투복, 운동복, 면양말, 동내의, 방상 내・외피 등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

[기본피복 계약현황]

구분	계약방식	편성단가 (단위 : 원)	계약단가 (단위 : 원)	낙찰률(%) *조달·기초·공고 대비 계약단가
전투모	다수공급자 계약	간부용: 5,300 병사용: 5,400	간부용: 5,280 병사용: 5,380	간부용: 99(조달) 병사용: 99(조달)
사계전투복(상)	경쟁계약, 수의계약	35,798	35,840	100(공고)
사계전투복(하)	경쟁계약, 수의계약	32,728	32,940	101(공고)
하계전투복(상)	경쟁계약, 수의계약	31,710	32,100	101(공고)
하계전투복(하)	경쟁계약, 수의계약	31,996	32,460	101(공고)
전투화(육면)	다수공급자 계약	54,232	53,676	93(조달)
운동모	다수공급자 계약	5,500	7,480	136(조달)
동운동복	다수공급자 계약, 수의계약	58,520	53,378	91(조달)
하운동복	다수공급자 계약, 수의계약	40,500	28,350	70(조달)
운동화(런닝용)	다수공급자 계약	20,000	20,751	95(조달)
면양말	다수공급자 계약, 수의계약	3,680	3,179	86(조달)
동내의	다수공급자 계약, 수의계약	27,400	23,302	85(조달)
팬티(드로즈)	다수공급자 계약	3,300	3,531	78(조달)
방상외피	경쟁계약, 수의계약	63,520	78,797	101(공고)
방상내피	경쟁계약, 수의계약	27,411	41,641	119(공고)

주) 조달(조달요구단가) 대비, 기초(기초예비가격) 대비, 공고(공고단가) 대비
자료: 국방부

2023년도 국방부는 기본피복 예산액 3,748억원 중 10.3%인 384억원을 보훈 및 복지단체에 물량을 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2023년도 보훈 및 복지단체 수의계약 비율 및 배정 금액]

구 분	단체명	품 목	2023년	
			비율(%)	배정금액(억원)
보훈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동내의	5.25	2.85
		방상내피	20.10	12.51
		사각팬티	18.42	2.9
	부산의용촌	방상외피	44.1	64.35
		육군 동운동복	9.54	10.5
		전투복	13.84	46.84
	대방용사촌	면양말	-	-
	고엽제전우회	전투복	6.54	22.13
	무궁화용사촌	공군 동운동복	35	6.87
		육군 근무복	66.5	19.6
		육군 정복	66.5	19.92
	전우	방상내피	3.5	2.18
		육군 하운동복	7	2.74
		전투복	7.81	26.43
	평화용사촌	육군 춘추운동복	7.43	6.23
		전투복	6.2	20.98
	화랑용사촌	동내의	-	-
		목도리	-	-
복지단체	나눔과 자람	공군 동운동복	2.33	0.46
		육군 춘추운동복	3.5	2.94
	나눔복지재단	방상내피	3.5	2.18
		육군 동운동복	2.33	2.56
		육군 하운동복	1.75	0.69
	누리복지회	육군 동운동복	3.32	3.65
		육군 춘추운동복	3.32	2.79
		육군 하운동복	2.74	1.07
	다솜	육군 동운동복	-	-
		육군 춘추운동복	-	-
		육군 하운동복	-	-
	동진복지재단	육군 동운동복	2.24	2.46
		육군 춘추운동복	2.24	1.88
		전투복	3.5	11.85
	부산시남구장애인협회	육군 동운동복	2.99	3.29
		육군 춘추운동복	2.97	2.49
		육군 하운동복	3.32	1.3
	부산진구 장애인협회	방상외피	3.5	5.11
		육군 동운동복	3.5	3.85
	삼덕재단	동내의	6.43	3.49
		육군 동운동복	3.17	3.49
	연광복지재단	육군 동운동복	2	2.20

구 분	단체명	품 목	2023년	
			비율(%)	배정금액(억원)
		육군 춘추운동복	3.33	2.79
		육군 하운동복	4.24	1.66
	한국기능 장애인협회	육군 동운동복	-	-
		육군 춘추운동복	-	-
		육군 하운동복	-	-
	한국 농아인협회	육군 동운동복	-	-
		육군 하운동복	-	-
	한국신체 장애인복지회	방상내피	15.17	9.44
		육군 동운동복	3.65	4.02
		육군 하운동복	3.2	1.25
	한국장애인 기업협회	육군 춘추운동복	4.49	3.77
		육군 하운동복	3.33	1.3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육군 동운동복	3.5	3.85
		육군 춘추운동복	3.5	2.94
		육군 하운동복	1.66	0.65
	한국장애인 중심기업협회	방상내피	13.07	8.13
		육군 춘추운동복	4.73	3.97
		육군 하운동복	6.45	2.53
	한국척수 장애인협회	방상외피	3.37	4.92
		육군 춘추운동복	2.24	1.88
		육군 하운동복	1.5	0.59
	한움	공군 동운동복	2.33	0.46
		육군 하운동복	2.74	1.07
	해오름복지재단	면양말	3.5	3.82
	행복나눔장애인복지협회	공군 동운동복	2.33	0.46
	미망인모자복지회	사각팬티	-	-
	성심사회복지재단	육군 하운동복	-	-
	드럼장애인작업장	육군 춘추운동복	-	-

자료: 국방부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불가피할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이 매년 일정물량을 특정단체에 할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10)]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보훈 및 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의 단계적 축소·폐지 방안을 마련[11]하여 시행하였으나, 보훈 및 복지단체가 매년 수의계약 물량배정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은 조달청이 승소(2023년 8월~10월)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음.

[수의계약 축소에 대한 보훈 및 복지단체 소송제기 현황]

구분	원고	사건번호	접수일자	법원	기일
1	무궁화용사촌에프앤씨	2023누13430	2023.12.08.	대전 고등법원	2024.06.13. (판결)
2	전우 등(3개 단체)	2023누56776	2023.09.07.	서울 고등법원	2024.07.04. (변론)
3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등 (8개 단체)	2023누54398	2023.08.11.	서울 고등법법	2024.06.19. (변론)
4	무궁화용사촌에프앤씨	2023구합203169	2023.05.25.	대전 지방법원	(미정)
5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23구합66061	2023.05.25.	서울 행정법원	(미정)
6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2023구합65488	2023.05.19.	서울 행정법원	2024.07.12. (변론)
7	나눔복지재단 등(7개 단체)	2023구합64898	2023.05.15.	서울 행정법원	2024.07.09. (변론)
8	전우 등(3개 단체)	2023구합64140	2023.05.08.	서울 행정법원	(미정)

자료: 국방부

따라서 기본피복이 계약 지연·자산 충족 및 계약 대비 소요량 부족 등으로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고, 매년 특정단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당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체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피복 소요량에 대한 추계를 면밀히 계획하여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조달체계 확립을 위해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2021년 국무총리 주관, 국방부장관·보훈처장·복지부장관 등 유관부서 기관장 참석

5. 특수피복 사업: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 및 방탄물자 성능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특수피복’ 사업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한피복류·침구 및 방탄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503억 5,400만원 중 2,203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0%)되고 127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3억 1,800만원은 불용되었음.[12)]

[2023년도 특수피복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특수피복	245,949	245,949	24,427	△20,022	250,354	220,326	12,710	17,318	194,905

나. 검토의견

사업비 집행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방탄물자 획득에 있어서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보급하는 등 방탄성능 유지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품목별 예산집행이 당초 계획된 바와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방탄물자 성능 및 유지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수피복은 군인들의 생존 및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방탄복·방탄헬멧·침낭 및 방한화 등이 있음.

2023년도 특수피복 집행현황을 보면, 이용 및 내역변경을 통해 200억 2,200만원을 공공요금과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집행되었고, 불용내역은 방탄복 및 방탄헬멧의 조달취소로 인한 금액과 각 품목들의 집행잔액들임.

품목별로 보면, 기능성 방한복은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신형

12) 일반회계-특수피복(1241-302)(군수관리관실)

방한복 교체를 고려하여 일부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여 22억 300만원이 침구류 및 항공피복 등 부족 예산으로 조정되었으며, 침낭 또한 향후 신형 침낭으로 교체가 예정됨에 따라 39억 2,300만원이 상용이불 부족예산으로 집행되었음.

여름이불과 패드는 예산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109억 4,100만원과 48억 8,2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방탄복 1형은 해수침투 저항 요구성능 누락과 해군의 부력방탄복 파편탄 요구성능 미흡 등 방탄성능이 미달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13]에 따라 2023년도 구매 분은 조달 취소되어 방위비분담금 등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었음.

방탄헬멧 3형은 낮은 단가에 대한 업체의 입찰거부로 2022년도분만 집행되고 2023년도분은 조달 취소되어 19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2023년도 품목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 유
기능성 방한복	10,843	-	△2,203	8,640	6,810	79	1,185	645	·(이·전용) - 기타침구류, 항공피복 등 부족예산 지원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다음년도 이월액) - 대금청구지연 이월
방한화	2,103	-	△291	1,812	1,799	99	-	13	·(이·전용) - 기타침구류 부족예산 지원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방한장갑	797	180	-79	898	898	100	-	-	·(이·전용) - 기타침구류 부족예산 지원
침낭	10,852	865	△3,923	7,794	7,794	100	-	-	·(이·전용) - 기타침구류(상용이불) 부족예산 지원
늅침대	386	66	273	725	525	72	200	-	·(이·전용) - 침낭예산에서 부족예산 확보 ·(다음년도 이월액) - 업체 납품지연 이월
베개	1,157	-	-	1,157	1,001	87	-	156	·(불용) - 계약 및 집행잔액
베갯잇	968	-	10	978	977	100	-	1	·(이·전용) - 침낭예산에서 부족예산 확보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13) 방탄물자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 2023년 2월 13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19일간), 2023년 7월 20일 확정, 감사결과(징계 1, 주의 2, 통보 4), 주요내용은 방탄성능이 미달되는 방탄복 보급 및 운영, 경량방탄헬멧에 대한 품질검사 허위작성, 방탄물자 내용연수 임의 변경 등 유지관리 미흡 등임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 유
여름이불 *22,21년 (포단)	6,749	-	4,200	10,949	10,941	100	8	-	· (이·전용) - 침낭, 기타방한복등 예산에서 부족예산 확보 · (다음년도 이월액) - 업체 납품지연 이월
겨울이불 *22,21년 (모포)	10,129	266	△836	9,559	9,194	96	365	-	· (이·전용) - 패드 부족예산 지원 · (다음년도 이월액) - 업체 납품지연 이월
패드	3,241	206	1,658	5,105	4,882	96	223	-	· (이·전용) - 겨울이불, 방한복예산에서 부족예산 확보 · (다음년도 이월액) - 업체 납품지연 이월
방탄복 1형	19,555	5,564	△17,119	8,000	7,886	98	-	114	· (이·전용) - 방위비분담금, 공공요금 지원, 헬멧류 지원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방탄헬멧 3형 (육군)	9,953	3,007	3,041	16,001	14,031	88	-	1,970	· (이·전용) - 방탄복 1형 예산에서 부족소요 확보 · (불용) - 조달 취소(단가저항)로 불용
개인천막	11,752	-	-	11,752	10,288	88	-	1,464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전투배낭	29,782	3,672	△2,320	31,134	31,128	99	-	6	· (이·전용) - 공공요금 지원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전투조끼	5,474	-	-	5,474	5,089	93	-	385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수통	1,928	612	-	2,540	1,716	68	625	199	· (불용) - 계약 및 집행 잔액 · (다음년도 이월액) - 업체 생산 납품 지연

자료: 국방부

품목별 집행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 집행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방탄물자 획득에 있어서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보급하거나, 방탄성능 유지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특수피복의 품목이 다양하고 각 군의 수요가 군 특성에 따라 변경되어 지금과 같은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편성 단계부터 명확한 기준으로 품목과 물량을 결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사업비 변경은 발생되

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방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품목별 예산집행이 당초 계획된 바와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방탄물자 성능 및 유지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재해보상금 사업: 사망보상금 적정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재해보상금’ 사업은 군 복무 중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47억 2,600만원 중 222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1%)되고 24억 3,900만원은 불용되었음.[14)]

[2023년도 재해보상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해보상금	24,726	24,726	-	-	24,726	22,287	-	2,439	25,853

나. 검토의견

첫째, 재해보상금 중 사망보상금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재해보상금 편성에 있어서 순직인정률과 순직인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망보상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재해보상금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군인에게 장애등급 및 장애원인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보상금과 군 복무 중 공무상 사망(전사, 특수직무순직, 일반순직)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으로 구분됨.

장애보상금은「군인 재해보상법」제33조[15)]에 근거하고 있고,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14) 일반회계-재해보상금(2242-301)(보건복지관실)

15)「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제39조[16]에 규정되어 있음.

장애보상금의 지급배율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1급), 6배(2급), 4.5배(3급), 3배(4급)에, 원인별로 1배(일반장애), 1.88배(특수직무공상), 2.5배(전상)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망보상금의 지급배율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공무상 사망), 45배(특수직무순직), 60배(전사)가 적용되고 있음.

연도별 재해보상금 지급인원을 보면, 장애보상금 지급인원은 2019년 890명에서 2023년 323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보상금은 2019년 174명에서 2023년 271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재해보상금 지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장애 보상금*	일반장애	1급	109	90	37	42	31
		2급	106	93	31	30	20
		3급	214	183	94	80	71
		4급	461	405	325	299	196
	특수직무 공상	1급	-	-	1	1	-
		2급	-	-	2	1	1
		3급	-	-	1	4	2
		4급	-	-	2	1	2
	전상	1급	-	-	-	-	-
		2급	-	-	-	-	-
		3급	-	-	-	-	-
		4급	-	-	-	-	-
	소계		890	771	493	458	323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16)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망 보상금**	전사	-	-	-	-	-
	특수직무순직(순직Ⅰ)	1	2	-	5	1
	일반순직(순직 Ⅱ,Ⅲ)	79	69	99	67	82
	순직재분류***	94	107	115	171	188
	소계	174	178	214	243	271

* ' 20년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21년부터 장애 발생 원인별 차등 지급
** ' 22년 보훈부 →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로 사망보상금 지급 업무 이관
*** 사망 당시에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따라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
자료: 국방부

이에 따라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장애보상금의 집행률은 2019년 99.11%에서 2023년 68.31%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보상금의 집행률은 2022년 99.8%에서 2023년 106.66%로 증가하고 있음. 2023년 사망보상금의 부족분은 장애보상금에서 내역변경되어 집행되었음.

[연도별 재해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재해 보상금	13,725	13,602 (99.11)	14,177	14,814 (104.50)	15,140	10,594 (69.97)	28,492	23,779 (83.46)	24,726	22,287 (90.14)
장애 보상금	13,725	13,602 (99.11)	14,177	14,814 (104.50)	15,140	10,594 (69.97)	14,695	10,010 (68.12)	10,652	7,276 (68.31)
사망 보상금							13,797	13,769 (99.80)	14,074	15,011 (106.66.)

주) 2022년 보훈부 →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로 사망보상금 지급 업무 이관
자료: 국방부

지금처럼 사망보상금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는 것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직 인정률이 2020년 74.5%에서 2023년 82.9%로 증가하였고, 순직 인정 인원도 2020년 202명에서 2023년 311명으로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음.

[연도별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단위 : 명)

구 분		합계	순직			일반사망
			소계 (순직인정률)	순직Ⅰ형	순직Ⅱ,Ⅲ형	
2020년	소 계	271	**202 (74.5%)**	3	199	69
	국방부	160	144	1	143	16
	육 군	76	35	1	34	41
	해 군	20	13	1	12	7
	공 군	15	10	-	10	5
2021년	소 계	279	**223 (79.9%)**	3	220	56
	국방부	170	149	1	148	21
	육 군	69	43	1	42	26
	해 군	20	16	1	15	4
	공 군	20	15	-	15	5
2022년	소 계	437	**346 (79.2%)**	5	341	91
	국방부	301	269	1	268	32
	육 군	91	42	1	41	49
	해 군	23	19	-	19	4
	공 군	22	16	3	13	6
2023년	소 계	375	**311 (82.9%)**	1	310	64
	국방부	257	244	-	244	13
	육 군	86	44	-	44	42
	해 군	17	12	1	11	5
	공 군	15	11	-	11	4

주)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에 따른 분류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재해보상금 편성에 있어서 순직인정률과 순직인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망보상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국가의 책임이 따르는 사망보상금 지급 인원(순직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군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군인들에게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군 내에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애보상금 지급인원이 감소하고 예산집행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망보상금 지급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군인사법」제54조의2제2호의 신설에 따라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일부 순직 인정률과 인원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있고,[17] 사망 당시에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사망보상금 지급 인원이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보상금 지급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순직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높고,[18]「군인사법」에 따른 순직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또는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등이므로 국가의 책임이 따르는 사망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국가의 책임이 따르는 사망보상금 지급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군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음.

연도별 군 사망자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기사고의 대부분은 자살이고,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차량 및 익사 사고로 나타나고 있음.

---

17)「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18) 사망보상금 지급인원과 순직인원의 증가는 사망보상금을 부모가 각각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

[연도별 군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Ⅰ형 사망사고														
	계	군 기 사 고					안 전 사 고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소계	차량	항공	함정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2019	87	63	62	-	-	1	24	9	-	-	1	7	3	-	4
2020	55	44	42	-	-	2	11	1	-	-	-	2	5	-	3
2021	103	84	83	-	-	1	19	8	-	-	-	2	6	-	3
2022	93	73	70	-	-	3	20	6	5	-	-	1	4	-	4
2023	70	60	60	-	-	-	10	3	-	-	-	1	5	-	1

주 1) Ⅰ형 사망 : 군의 노력으로 예방이나 감소 가능한 사망
2) 사망보상금 지급 인원과 연도별 군 사망자 수는 사망시기 및 전공사상심사위 결과에 따라 일치하지 않음
3) 2023년의 사망통계는 현재 조사 및 수사 중으로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군인들에게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군 내에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양성평등 운영 사업: 양성평등 등 상담의 효과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양성평등 운영’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억 7,100만원 중 6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2,600만원은 불용되었음.[19)]

[2023년도 양성평등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건복지지원	16,345	16,345	361	-	16,706	14,175	194	2,338	17,351
양성평등 운영	**521**	**521**	**-**	**150**	**671**	**645**	**-**	**26**	

나. 검토의견

양성평등담당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상담실적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과 임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양성평등 업무내용과 비슷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의 배치를 확대하여 상담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 운영 사업은 부대원의 양성평등 및 성고충 상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담당관을 운용하기 위한 것임.

양성평등담당관은 「양성평등기본법」,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양성평등담당관의 임명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제98조[20)]에 따라 군생

19) 일반회계-보건복지지원(2242-303)-양성평등 운영(보건복지관실)

20)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8조(임명) ① 양성평등담당관은 군생활 10년 이상 장교 또는 부사관,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년 이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인사심의를 통해 지휘관이 품성과 자질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활 10년 이상 장교 또는 부사관, 군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양성평등담당관 배치인원은 정원 120명에 현원 60명으로 정원의 절반만 운영되고 있음.

[양성평등담당관 배치현황]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정원(명)	120	33	20	24	8	35
현원(명)	60	23	2	-	-	35

주) 육군·해군은 24년 말까지 양성평등담당관 미운영
자료: 국방부

또한 국방부는 양성평등담당관이 임명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상담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는 상태임.

이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 국방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사단급까지 확대·증원됨에 따라,[21]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임명하며, 필요시 남성 또는 여성으로 각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담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대장은 양성평등담당관 임명시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며, 임명사실을 전 간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 부대 인사실무자는 1년 이상 양성평등담당관 임무수행자에 대해 개인자력에 기록변경토록 조치한다.

21) 사단급까지 확대·증원됨: 2021년 50명→ 2023년 150명

[양성평등담당과 및 성고충전문상담관 현황]

구분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활동/ 임무	•여성인력에 대한 연 1회 이상 1:1 상담 •장병 성관련 고충상담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 상담 및 피해자지원 임무수행	•여성인력, 초급간부, 임신여군 중점관리 •부대원의 양성평등 관련 고충상담 / 처리지원 •성폭력 예방 활동(상담 및 진단) •양성평등정책 관련 행정지원 * 상담 + 행정업무 병행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전문상담 소요 발생 시 성고충전문상담관 연계)
신분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현역 군인·군무원
설치 기준 및 운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육군・해병대 : 소장급 이상 ・ 해군・공군 : 준장급 이상 •사단급 150명(현원 141명)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6조 ・ 육군 : 사단급, ・ 해군 : 전단급 ・ 공군 : 비행단급, ・ 해병대 : 여단급 •사단급 120명(현원 60명)
선발 자격	•민간(男·女) 국방부 선발 •심리 상담이나 사회복지 분야 자격증 보유 •5년 이상 상담경력 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이수 또는 1년 이상 성폭력 관련 상담 경력	•각 군(부대별) 선발 •현역 임명 시 : 군 생활 10년 이상 장교・부사관・군무원 중 품성 및 자질 우수자 임명 •군무원 전담시(채용) : 상사(7급)이상 전역자로서 양성평등 및 여성고충처리 분야 2년 이상 경력 등

자료: 국방부

그러나 양성평등담당관이 법령에 의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특성상 보안 등의 사유로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전면 배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으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양성평등담당관의 신분이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인 관계로 행정업무와 상담을 겸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담자 또한 전문 상담자가 아닌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상담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과 임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양성평등 업무내용과 비슷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의 배치를 확대하여 상담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8.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 면밀한 적금 가입률 등의 산정 필요

가. 개 요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올바른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시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584억 2,100만원 중 5,014억원이 집행(집행률 76.2%)되고, 1,570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3년도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병 내일준비지원	658,421	658,421	-	-	658,421	501,400	-	157,021	1,019,109

나. 검토의견

부정확한 적금 가입률 산정 및 지급조건 미충족자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면밀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병 내일준비지원금 지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23)]에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병역의무이행자에게 전역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79조의2[24)]에 근거를 두고 있음.

2022년 1월 납입 원리금부터 매칭 지원되고 있으며, 2022년도는 원리금의 33%인 14.1만원, 2023년도는 원리금의 71%인 30만원, 2024년 이후부터는 입금액의 100%가 매칭 지원되고 있음,

---

22) 일반회계-병 내일준비지원(2242-304)(보건복지관실)

23) 장병내일준비적금: 2021년 비예산 사업으로 시작, 기본금리 5%, 비과세, 시중은행에서 제공

24)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 매칭비율]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보수(월액, 병장 기준)	67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적금 납입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입금액의) 100%	(입금액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전역시 정부지원금(최대) *해당년 1월 육군(18개월) 입대 기준	349.2만원	600만원	810만원	990만원

자료: 국방부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지원절차는 복무만료 후 적금 만기 해지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 및 금액 등이 확인된 후 지원금이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있음.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도는 예산현액 1,868억 9,200만원의 48.4%인 903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3년도는 예산현액 6,584억 2,100만원의 76.2%인 5,014억원이 집행되어, 두 해 모두 사업집행이 부진하였음.

[연도별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	-	-	-	-	-	-	-
2021	-	-	-	-	-	-	-	-
2022	219,009	219,009	△32,117	186,892	90,386	48.4	-	96,506
2023	658,421	658,421	-	658,421	501,400	76.2	-	157,021
2024	1,019,109							

자료: 국방부

세부적으로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204,077명에 6,58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은 177,322명에 5,014억이 집행되어, 예산액으로는 76.2%, 인원으로는 86.8%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특히 대체복무자 및 전환복무자의 집행실적이 현역 및 상근예비역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

[202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복무구분	예산편성(A)	집행(B)	추계 정확도 (B/A)
현역 & 상근예비역	6,498억 (98.7%) * 200,871명 (98.4%)	4,973.4억 (98.7%) * 175,525명 (99.0%)	예산 76.5% * 인원 : 87.4%
	현역 : 193,513명 (94.8%) 상근 : 7,358명 (3.6%)	현역 / 상근예비역 파악 제한	
대체복무 * 2023. 11월부터 전역자 발생	5억 (0.1%) * 106명 (0.1%)	0.2억 (0.1%) * 8명 (0%)	예산 4% * 인원 : 7.5%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 2023. 6월 전환복무자 전역완료	81억 (1.2%) * 3,100명 (3.6%)	40.4억 (1.2%) * 1,789명 (1.0%)	예산 49.9% * 인원 : 57.7%
계	6,584억 (100%) * 전체인원 : 204,077명 (100%)	5,014억 (100%) * 전체인원 : 177,322명 (100%)	예산 76.2% * 인원 : 86.8%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예산편성 기준 대비 실제 적금 가입률 및 평균 납입금액 저조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회계연도 중 지급조건 미충족자 발생으로 미집행액[25]이 발생되었으며, 회계연도 내 집행이 제한되는 2023년 12월 전역자에 대한 예산이 편성[26]되어 미집행액 발생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금 가입률과 1인당 평균 지원금에 대해 과거의 집행실적과 현재의 가입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집행률 저조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방부는 부정확한 적금 가입률 산정 및 회계연도 중 지급조건 미충족자 등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병 내일준비지원금 지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5) 지급조건 미충족자(395억원) : 중도해지 (7,330명 / 약 290억), 조기전역 (1,632명 / 약 55억), 신분전환(1,983명 / 약 50억)

26)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로, 2023년 12월분이 편성되어 490억원이 불용됨.

9.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사고 원인별 대응 강화 및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 필요

가. 개 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및 안전교육훈련 발전 등 국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78억 9,400만원 중 346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5%)되고, 8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억 7,900만원은 불용되었음.[27)]

[2023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난 및 안전관리	34,536	34,536	2,358	1,000	37,894	34,683	832	2,379	32,527

나. 검토의견

첫째, 재난 및 안전사고가 사고유형별로는 지상 및 차량에 의한 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고, 사고원인별로는 인적원인에 의한 사고 발생이 대부분이므로, 국방부는 지상 및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요인 차단과 차량의 정비 및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인적원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위험예지훈련, 지휘관에 의한 현장확인 및 점검 등을 통해 사고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예방·재난관리 물자 확보·안전관리시스템 정착·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 국방에 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연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76건, 2020년 62건, 2021년 117건, 2022년 100건, 2023년 84건이 발생되어 2021년을 기점으로 전체 사고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

27) 일반회계-재난 및 안전관리(2337-301)(군수관리관실)

[최근 5년간 사고 원인 및 유형별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사고유형별					사고원인별				
		차량	무기/위험물질	수상/해상사고	항공사고	지상사고	인적	물적	환경적	복합	원인미상
2019년	76	24	8	6	2	36	63	11	1	0	1
2020년	62	14	6	5	7	30	50	4	3	1	4
2021년	117*	25	5	5	7	75	99	8	8	0	2
2022년	100	13	4	9	10	64	83	11	5	0	1
2023년	84	15	1	8	6	54	68	5	2	4	5

주 1) 집계기준 : 안전사고로 1명 이상 중상, 사망자 또는 1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2) 2021년 안전사고 증가 이유 : 국방안전훈령('20.12.30.) 제정 이후 안전사고 통계 작성기준이 정립
(기존에는 군사경찰에서 조사한 사고 外 단순 사고의 집계가 누락 될 수 있었으나, '21년부터 모든 안전사고 집계 중)

자료: 국방부

그런데 사고유형별로는 연도에 상관없이 지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28] 다음으로 차량에 의한 사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원인별로는 인적원인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 다음으로 물적원인에 의한 사고가 뒤를 잇고 있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상사고 및 차량사고의 경우 작전 및 교육 훈련의 이해 부족과 안전규정 및 절차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고, 인적원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장비조작 실수 및 의사소통 오류 등을 들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사고 유형과 원인 등 위험요소를 제대로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면 재난 및 안전사고는 지금보다 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난 및 안전사고가 사고유형별로는 지상 및 차량에 의한 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고, 사고원인별로는 인적원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므로, 국방부는 지상 및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요인 차단과 차량의 정비 및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인적원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위험예지훈련, 지휘관에 의한 현장확인 및 점검 등을 통해 사고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8) 지상사고: 작전 및 교육 훈련 중 사고, 작업 및 부대관리 중 사고, 생활여가(체육활동) 사고 등

둘째, 재난예방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재난예방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재난예방공사는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된 군 내 재난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공사임.

재난예방공사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체결되어야 함.

최근 3년간 재난예방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2021년도는 수의계약 90%에 경쟁입찰 10%이고, 2022년도는 수의계약 89%에 경쟁입찰 11%이며, 2023년도는 수의계약 84%에 경쟁입찰 16%로 연도별 수의계약 비율이 경쟁입찰 비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재난예방공사 계약 현황]

(단위: 건, %)

연도	수의계약		경쟁입찰		총 계약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1년	221	90	25	10	246	100
2022년	160	89	20	11	180	100
2023년	171	84	33	16	204	100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찰방식에 따른 평가결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응찰 가능한 업체를 다수 확보하기 위함이며, 재난예방공사의 특성상 예방이 긴급히 요구되거나 위험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우기 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면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등 적격심사가 실시되어 견실한 업체가 계약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응찰 가능한 다수의 업체를 확보할 수 있음. 다만 적격심사에 따라 20~30일 더 걸리는 문제점은 있으나,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공사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는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지명경쟁,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방부는 대부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경쟁입찰은 거의 실시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취지와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재난예방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재난예방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10.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필요

가. 개 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1억 8,7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29)]

[202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사정책지원	18,096	18,096	96	410	18,601	17,865	374	363	17,366
장애인 고용부담금	7,826	7,826	-	361	8,187	8,187	-	-	7,826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법률에 따라 정원의 3.6% 이상(공무직의 경우 현원의 3.6% 이상)을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인사 수요 발생 시 이를 고려한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와 차별 없는 고용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로, 국제적 협약[30)]과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가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31)] 및 제79조

29) 일반회계-인사정책지원(2439-306)-장애인 고용부담금(인사기획관실)

30)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1항[32]에 따라 정원의 3.6%이상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현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중 군무원 122명, 공무직 근로자 49명이 미달되었고, 2021년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중 군무원 218명, 공무직 근로자 55명이 미달되었으며, 2023년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중 군무원 427명, 공무직 근로자 125명이 미달되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증가되고 있음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군무원	의무고용 인원(ⓐ)	731	743	942	1,048	1,290
	고용인원(ⓑ) (고용율)	609 (83.3)	619 (83.3)	724 (76.9)	780 (74.4)	863 (66.9)
	의무고용 미달인원 (ⓐ-ⓑ)	**122**	**124**	**218**	**268**	**427**
공무직	의무고용 인원(ⓐ)	226	271	285	318	366
	고용인원(ⓑ) (고용율)	177 (78.3)	216 (79.7)	230 (80.7)	214 (67.3)	241 (65.9)
	의무고용 미달인원 (ⓐ-ⓑ)	**49**	**55**	**55**	**104**	**125**
의무고용률		**3.4**	**3.4**	**3.4**	**3.6**	**3.6**

주) 공무원은 의무고용인원 충족으로 장애인고용 부담금 관련 해당사항 없음
자료: 국방부

또한 동 법률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 미달로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2019년도 5억 2,200만원, 2021년 38억 2,600만원, 2023년 81억 8,700만원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군무원	예산	-	-	2,741	4,153	6,324
	집행	-	-	3,088	4,017	6,526
공무직	예산	544	524	571	712	1,502
	집행	522	870	738	1,256	1,661
총 계	예산	544	524	3,312	4,865	7,826
	집행	522	870	3,826	5,273	8,187

주) 군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16. 12. 27. / 시행 ’ 20. 1. 1.)에 따라 2021년부터 고용부담금 납부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법률에 따라 정·현원의 3.6% 이상을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인사 수요 발생 시 이를 고려한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병영생활관 사업: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 필요

가. 개 요

‘병영생활관’ 사업은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함으로써 장병들의 기본권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635억 3,100만원 중 2,373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65.3%)되고 1,111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1억 1,700만원은 불용되었음.[33)]

[2023년도 병영생활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병영생활관	355,251	355,251	31,953	△23,673	363,531	237,302	111,112	15,117	311,859

나. 검토의견

과도한 이월 등으로 인해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사업별 공정률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하고, 제반 여건이 완료된 사업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진행 정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사항 발견 시 선제적 대응으로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은 2004년부터 국정과제로 시작되어 총 7.1조원이 투입된 후 2012년 사업이 일차적으로 종료되었고,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재배치 및 편제 조정 등으로 소대단위 병영생활관이 분대단위로 개선되고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1인당 면적기준이 확대[34)]되고 있으며, 병영생활관 생활실은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거주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음.

병영생활관 현황은 육군 2,273동, 해군 121동, 공군 432동, 해병대 261동, 국방부 직할부대 83동 등 총 3,170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

33) 일반회계-병영생활관(2531-301)(자원관리실)

34) 1인당 면적기준: 2.3㎡→6.3㎡(~2022년 착수사업)→10.78㎡(2023년 착수사업~)

[병영생활관 현황 총괄표]

(2023년 12월 말 기준)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비고
물량(동)	3,170	2,273	121	432	261	83	BTL 348동 포함

자료: 국방부

연도별 병영생활관 개선실적(착수기준)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2,137동을 시작으로 2022년 88동, 2023년 66동, 2024년 73동 등 총 3,035동이 개선되었음. 또한 2024년 신규착수 병영생활관 사업(73개동) 중 66개 동에 대해서는 2~4인실을 적용[35]하여 병영생활관 개선사업[36]이 추진될 계획임.

[연도별 병영생활관 개선실적(착수기준)]

(단위: 동)

구분	계	2004~2012	2013~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물량	3,035	2,137	473	37	53	38	70	88	66	73

자료: 국방부

그런데 2023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액 3,552억 5,100만원 중 236억 7,300만원이 전용 등(감)을 통해 공공요금과 병영생활관 부속시설로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30.6%인 1,111억 1,200만원이 과도하게 이월되었으며, 151억 1,700만원은 대관협의 지연 및 정산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음.

세부적으로 사업지연 사유는 42개 사업에서 설계지연으로 372억원, 50개 사업에서 대관협의 지연으로 255억원, 8개 사업에서 업체부도 등으로 95억원, 11개 사업에서 현장여건 변동으로 89억원, 15개 사업에서 감리계약 지연으로 79억원, 기타 48개 사업에서 221억원이 각각 지체되어 이월되었음.

35) 장병의 생활여건 및 인권·복지향상과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 추진

36) 병영생활관 사업은 2023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군 주거시설에 대한 재건축·리모델링 판단기준 및 신규사업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 2022. 9. 14.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2023년도 항목별 이월(사업지연) 사유]

(단위 : 억원, 건)

구분	이월액(비율)	사업건수
설계 지연	372 (33.5%)	42
대관협의 지연	255 (22.9%)	50
업체 부도 등	95 (8.6%)	8
현장여건 변동	89 (8.0%)	11
감리계약 지연	79 (7.1%)	15
기타 사유	221 (19.9%)	48
지연 없음	-	107
계	1,111 (100%)	281

주 1) (설계 지연) 작전계획·편제변경, 설계오류, 개정된 시설기준 확대적용* 등의 사유로 계획대비 설계 지연
* 병영생활관 시설기준 개정 및 생도생활관 시설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혜대상 확대 위해 旣 진행 중인 사업에 확대적용 검토로 지연
2) (대관협의 지연) 설계·단가적정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관련 협의, 총사업비·물량변동에 따른 조정협의 등 기간소요에 따른 집행지연
3) (업체부도 등) 설계/시공업체 재정난에 따른 부도와 이에 따른 계약타절, 사업 재착수 위한 발주, 계약 등 기간 소요
4) (현장여건 변동) 오염토 발생에 따른 정화, 지장물 발견과 이설, 지반보강공사 추가필요 등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 변동으로 지연
5) (감리계약 지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으로 전면책임감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전면책임감리 계약을 위한 감리비 부족과 감리계약 유찰 등 사업추진간 감리계약이 지연

자료: 국방부

또한, 불용사유는 ○○부대 병영생활관 신축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대관협의 지연으로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고, 생활관 관련 시설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 수행으로 설계가 중지되어 24억 8,800만원이 추가로 불용되어 사업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태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설계오류 및 개정된 시설기준의 확대적용 등으로 기 진행중인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업이 지체되었고, 설계·단가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협의 등으로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했으며, 기타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 변동으로 집행부진이 발생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편성 시부터 국방부가 시설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사전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끝마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집행부진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을 보임.

따라서 과도한 이월 등으로 인해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사업별 공정률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하고, 제반 여건이 완료된 사업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진행 정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사항 발견 시 선제적 대응으로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미등재 건축물의 조속한 양성화 필요

가. 개 요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군이 보유 중인 미등재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측량비·설계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52억 4,000만원 중 221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6%)되고 19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억 9,700만원은 불용되었음.[37)]

[2023년도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시설정책지원	172,444	172,444	2,755	△7,178	168,021	160,947	3,376	3,698	170,006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24,581	24,581	897	△238	25,240	22,105	1,938	1,197	26,201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미등재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38)]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39)]에 따라 미등재 건축물을

37) 일반회계-시설정책지원(2533-320)-미등재 건축물 양성화(자원관리실)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령의 개정 · 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3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기존의 국방 · 군사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관한 특례)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되었고, 2020년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부대개편 주둔지부터 추진 중에 있음.

주둔지별 사업절차는 1년 차에 측량을 하고, 2년 차에 설계·지목변경을 하며, 다음 단계로 적합확인·고시 및 건축물대장 등재[40] 순으로 추진되고 있음.

군 건축물은 총 101,683건으로, 이 중 등재 건축물이 50,665건이고 미등재 건축물이 51,018건으로 미등재 건축물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군 건축물 현황]

(단위: 건, 2023년도 말 기준)

계	등재 건축물 (비율)	미등재 건축물 (비율)
101,683	50,665 (49.8%)	51,018 (50.2%)

자료: 국방부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미등재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매년 기본조사설계비 등 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 말 현재 19,902건을 양성화하고 있으나, 미등재 건축물의 양성화 실적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①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 · 군사 시설 중 「건축법」 제11조 · 제14조 ·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사용승인 또는 협의 없이 건축된 국방 · 군사시설로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된 시설로 본다.

1. 국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의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방 · 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해당 국방 · 군사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확인이 신청된 국방 · 군사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 · 군사시설은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40)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심사' 등 추가 절차 이행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실적]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양성화 동 수	측량 실시	188	-	1,024	294
연도	**2020**	**2021**	**2022**	**2023**	**계**
양성화 동 수	6,424	6,054	3,233	2,685	**19,902***

주) 철거예정 등 제외
자료: 국방부

그런데 미등재 건축물은 국방시설 기준 면적 확대, 구조·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보수·보강,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양성화가 필요함.

따라서 국방부는 미등재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건축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므로,[41] 조속히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 공사시공자 · 현장관리인 ·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 개축 · 증축 · 수선 · 용도변경 · 사용금지 ·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3. 공공요금 사업: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한 전기료 인상에 대응 필요

가. 개 요

‘공공요금’ 사업은 군의 시설 및 시설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724억 1,600만원 중 6,703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20억 5,700만원은 불용되었음.[42)]

[2023년도 공공요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공요금	538,110	538,110	-	134,306	672,416	670,359	-	2,057	538,110

나. 검토의견

공공요금 중 전기료 부족으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전년도 공공요금 집행실적과 전기료 인상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과 같이 이·전용(증) 등으로 과도하게 사업비를 증액하면 이·전용(증)해 준 사업에 영향을 주어 국회가 승인해 준 사업내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공공요금 지원 기준을 보면, 군사시설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시설과 민간인도 이용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음.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기준]

구분	시설유형	징수 및 지원기준
공관	단독관사, 연립관사, 아파트	전액국고 지원
지휘관관사	단독관사, 연립관사	국고 지원하되 한도량 설정, 초과 시 개인 부담
	아파트	개인부담

42) 일반회계-공공요금(2536-302)(자원관리실)

구분	시설유형	징수 및 지원기준
일반관사	단독관사, 연립관사, 아파트	개인부담 단, 단독관사에 한해 지휘관 관사와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국고지원(초과 시 개인 부담)
간부숙소	-	국고 지원하되 한도량 설정, 초과 시 개인 부담

자료: 국방부

연도별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은 예산액 4,690억원 중 4,913억원을 집행하여 223억원이 부족하였고, 2021년은 예산액 5,299억원 중 5,321억원을 집행하여 22억원이 부족하였으며, 2023년은 예산액 5,381억원 중 6,704억원이 집행되어 1,323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3년 공공요금 집행액이 편성된 예산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

[연도별 공공요금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편성(A)	4,690	4,950	5,299	5,381	5,381
예산집행(B)	4,913	5,033	5,321	5,649	6,704
(집행증가율)	(0.7%)	(2.4%)	(5.7%)	(6.2%)	(18.7%)
부족액(B-A)	223	83	22	268	1,323

자료: 국방부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기본피복 사업 등 27개 사업에서 예산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343억 600만원을 조달하고 있음.

2023년도 공공요금별 집행현황을 보면, 전기료는 당초 예산액 3,481억 2,200만원의 40%인 1,393억 9,300만원이 타 사업으로부터 증액되어 집행되었고, 상수도료는 당초 예산액 1,303억 7,100만원에서 54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집행되었으며, 하수도료는 당초 예산액 596억 1,700만원에 3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집행되었음.

[2023년도 공공요금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전기료	348,122	348,122	-	139,393	487,515	486,553	-	962	368,604
· 상수도료	130,371	130,371	-	△5,480	124,891	124,368	-	523	116,578
· 하수도료	59,617	59,617	-	392	60,009	59,438	-	571	52,928
합 계	538,110	538,110	-	134,306	672,416	670,359	-	2,057	538,110

자료: 국방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용 등을 통한 증액된 금액은 공공요금 중 전기료 부족분으로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물가상승에 따라 공공요금 중 전기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전용 등을 통해 공공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예산이 이·전용되면 이·전용해준 사업이 당초 국회가 승인해준 내용과 다르게 집행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이·전용 등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전년도 공공요금 집행실적과 전기료 인상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과 같이 이·전용 등을 통해 과도하게 사업비를 증액하면 이·전용해준 사업에 영향을 주어 국회가 승인해 준 사업내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4.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 비상근예비군 제도 점검 필요

가. 개 요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은 동원위주부대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될 비상근예비군에 대한 보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7억 7,400만원 중 47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69.5%)되고 20억 6,700만원은 불용되었음.[43)]

[2023년도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동원훈련	49,873	49,873	29	-1,446	48,456	41,635	11	6,809	50,191
비상근예비군 복무	7,061	7,061	-	△287	6,774	4,707	-	2,067	7,329

나. 검토의견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의 단기 지원률과 응소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단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10년 이상 경과된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군에 실효성이 있는지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유사시 예비군으로 90% 이상 충원되는 동원위주부대(동원사단·동원보충대대 및 동원자원호송단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될 예비역(장교·부사관 및 병)을 평시에 소집 및 훈련시켜, 전시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여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육군부터 시작되었음.

비상근예비군은 단기와 장기로 나뉘어져 운용되고 있으며, 단기는 성과 달성이 가능한 직위로써 30일 이내로 근무하고 있고, 장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지휘관 등으로써 180일 이내로 근무하고 있음.

43) 일반회계-동원훈련(2632-303)(동원기획관실)

[장·단기 비상근예비군 운용]

구 분	비상근 예비군	
	단기 비상근 예비군	장기 비상근 예비군
대 상	예비역 병 ~ 소·중령	
운 용 직 위	•비교적 단기간 운용으로 성과 달성이 가능한 직위 * 육군·해병(중·소대장 등), 해군(함장 등), 공군(통제실장 등)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직위 * 주요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업 무 성 격	•작전계획에 따라 하위 전투제대 현장 지휘, 전투장비·물자관리	•부대 창설계획, 작전계획, 전투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등 장기·지속·전문성 업무 •무기체계 정비 수리 등 전투장비·물자 관리 업무
복 무 기 간	•단기간 복무(연간 30일 이내) *現 15일 근무	•장기간 복무(연 180일 이내)
보상비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지급	평일·휴일 15만원

자료: 국방부

비상근 예비군 정원은 2019년 단기근무만 1,023명이었으며, 2023년 단기근무 4,349명, 장기근무 100명으로 증가되었음.

[비상근예비군 정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기	계	-	-	-	50	100
	육군	-	-	-	50	100
	해군	-	-	-	-	-
	공군	-	-	-	-	-
	해병대	-	-	-	-	-
	국수사	-	-	-	-	-
단기	계	1,023	1,769	3,011	3,754	4,349
	육군	1,023	1,749	2,952	3,547	4,012
	해군	-	20(시험)	20	56	56
	공군	-	-	20(시험)	95	95
	해병대	-	-	19(시험)	35	124
	국수사	-	-	-	21(시험)	62

자료: 국방부

그런데 연도별 비상근예비군 선발 결과를 보면, 장기근무는 지원률과 선발률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단기근무의 경우 지원률은 2018년 188%에서 2023년 135%로 하락하고 있고, 선발률도 2018년 100%에서 2023년 85.3%로 낮아지고 있음.

[장기 비상근예비군 선발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정 원	50	100
지 원(%)	258 (516%)	357 (357%)
선 발(%)	50 (100%)	95 (95%)

자료: 국방부

[단기 비상근예비군 선발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 원	585	1,023	1,769	3,011	3,754	4,349
지 원(%)	1,098 (188%)	1,730 (169%)	2,959 (167%)	4,101 (136%)	5,418 (144%)	5,874 (135%)
선 발(%)	585 (100%)	1,023 (100%)	1,759 (99.4%)	2,908 (96.5%)	3,257 (86.7%)	3,713 (85.3%)

자료: 국방부

또한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7억 7,400만원 중 47억 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69.5%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동원훈련 보상금에서 발생되어 집행이 부진한 상태임.

[2023년도 비상근예비군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집행률)	불용
일반수용비	92	91 (98.8%)	1
피복비	12	12 (100%)	-
기타운영비	17	17 (99.5%)	-
국내여비	1	1 (100%)	-
손실보상금	6,563	4,497 (68.5%)	2,066
자산취득비	89	89 (99.9%)	-
합 계	6,774	4,707 (69.5)	2,067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비상근예비군의 정원 대비 선발율이 단기는 85.3%, 장기는 95%로 저조하고, 2016년 보상비가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고 복지혜택도 없어 지속적으로 지원률이 하락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대로 단기 지원률은 낮은 것이 사실이나, 장기는 낮은 상태가 아니므로 일부 차이가 있고, 다만, 2023년도 훈련 응소율이 단기가 58.2%이고, 장기가 88.6%로 선발인원 중 훈련에 응소하는 인원이 낮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의 단기 지원률과 응소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단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10년 이상 경과된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군에 실효성이 있는지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 출>

15.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완전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은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문화재 조사 포함) 및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878억 9,200만원 중 835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1%)되고 43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44)]

[2023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환경조사 및 치유	65,002	65,002	20,491	2,399	87,892	83,552	4,340	-	54,223

나. 검토의견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소송패소 결과로 배상금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기관과의 협업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토양오염 정화의 완전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정화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토양환경보전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해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정화 대상 36개소 중 20개소가 환경정화 사업이 완료되었음.

---

44)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환경조사 및 치유(4232-30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그런데 환경정화를 완료한 20개소 중 5개소가 소송 중(3건)에 있거나 소송이 완료(2건)되어 배상금이 지급되었음.

2023년 12월 확정된 니블로배럭스 부지의 배상금은 262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3년 9월 확정된 캠프캐슬 부지의 배상금은 14억 9,300만원이 집행되어, 지금까지 환경정화와 관련된 총 소송 배상금 277억 80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출되고 있음.

[환경정화 관련 소송 현황]

(단위: 백만원)

기지명	소송 사유	배상금	비 고
계		**27,708**	
니블로 배럭스 (미정화)	•LH로 양여한 부지를 개발사업자(DS한남)가 매수하여 공사 간 오염 발견·정화 후 LH로 정화비용 청구 소송 •LH가 국방부를 대상으로 정화비용 청구	26,215	2023. 12월 판결
캠프 캐슬 (농어촌공사)	•기지 주변 사유지 토양정화 및 원상복구하였으나 •토지 소유주가 원상복구 부실을 주장하며 원상복구 비용 및 지장물에 대한 배상을 요구	1,493	2023. 9월 판결
캠프 라과디아 (환경공단)	•토양정화 후 개발사업자(HDC현대산업개발)가 매수 후 개발사업간 오염토양 발견 및 정화 •HDC현대산업개발이 국방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1심 진행 중
유엔사 (농어촌공사)	•LH로 양여한 부지를 개발사업자(일레븐건설)가 매수하여 공사 간 오염 발견 •LH가 토양정화 후 국방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1심 진행 중
의정부 저유소 (농어촌공사)	•토양정화 후 개별사업자(나리벡씨티)가 매수하여 공사 간 오염토양 발견 •나리벡씨티가 국방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1심 진행 중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니블로배럭스 부지의 경우, 1979년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79년부터 해당 부지를 대여[45]받아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운용하다가 2016년 해당 토지를 양여받았으나, 해당 부지는 토양오염정화의 근거 법률인「토양환경보전법」[46] 시행 이전(1979년부터)에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 대여받아 활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토양환경정화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

4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9년 ~ '16년 1월까지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설 후 운용

46)「토양환경보전법」은 1995년 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음.

하고 있음.

또한 캠프캐슬 부지는 기지 주변 사유지에 대해 토양정화 및 되메움을 완료하고 철거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의 출입통제로 지반다짐 및 지장물 원상복구를 못하였고, 이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치환 및 지장물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여 배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니블로배럭스 부지는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47]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국방부)가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1979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활용하였던 부지였으므로 국방부가 2016년 해당 토지를 LH에 양여하기 전에 토양오염 정화책임에 대해 LH와 협의할 필요가 있었으며, 캠프캐슬 부지는 국방부가 수탁기관 및 소유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고,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수탁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7)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 유출 · 투기(投棄) · 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 · 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세 출>

16. 부대개편 3차 사업: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양 필요

가. 개 요

‘부대개편 3차’ 사업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 22개 부대를 미래 부대구조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7억 1,6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48)]

[2023년도 부대개편 3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부대개편 3차	-	-	-	716	716	716	-	-	-

나. 검토의견

2022년도 완료 계획된 부대개편 3차 사업의 정산금 발생이 예산안 편성시 예측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내역변경을 통해 집행된 것은 부적정하므로, 국방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료사업에 대한 정산금 지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부대개편 3차 사업은 2014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 소요결정 후 2022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89억원임.

부대구조 개편을 위한 시설확보 공사는 2018년 5월 시작되어 2022년 12월 준공을 통해 완료되었음.

48)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부대개편 3차(4131-472)(군사시설기획관실)

그런데 국방부는 2023년 3군단 603수송대대, 51사단 168여단 및 169여단, 12사단 정보 및 전차대대, 17사 본부·직할대·102여단군수지원대대의 사업완료에 필요한 정산금이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내역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전용 등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사업조정 ('23.4.11)	부대개편 5차 (4131-477)	420-03	45	부대개편 3차 (4131-472)	420-03	물가변동
사업조정 ('23.5.2)	부대개편 4차 (4131-476)	420-03	501	부대개편 3차 (4131-472)	420-03	물가변동
사업조정 ('23.5.2)	부대개편 5차 (4131-477)	420-04	85	부대개편 3차 (4131-472)	420-04	물가변동
사업조정 ('23.7.24)	부대개편 6차 (4131-481)	420-03	22	부대개편 3차 (4131-472)	420-03	물가변동

자료: 국방부

이처럼 부처가 사업추진 중 필요에 의해 기존 사업비를 증액시킬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타 사업으로부터 내역변경하여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전용(감)된 사업에 집행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대개편 3차 사업을 2022년말에 준공 정산 완료하고, 그 이후인 2023년에 물가변동 발생 상승분이 추가로 청구된 것으로 부득이 타 사업의 예산을 내역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설명은 일부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2022년도에 부대개편 3차 사업의 시설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이를 위한 정산금 발생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였음을 고려해 볼 때 지금과 같은 예산집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3년 내역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내역사업 명	예산
3군단 603수송대대 개편	○ 104백만원 - 감리비 104백만원 (준공 이후 물가변동분 정산 지급)

내역사업 명	예산
3군단 603수송대대 개편	○ 104백만원 - 감리비 104백만원 (준공 이후 물가변동분 정산 지급)
17사본부,직할대,102여단군수지원대대	○ 42백만원 - 공사비 42백만원 (준공 이후 물가변동분 정산 지급)
51사단 168여단 개편	○ 217백만원 - 공사비 161백만원, 감리비 56백만원 (준공 이후 물가변동분 정산 지급)
51사단 169여단 개편	○ 330백만원 - 공사비 301백만원, 감리비 29백만원 (준공 이후 물가변동분 정산 지급)
12사단 정보, 전차대대 개편	○ 22백만원 - 공사비 22백만원 (준공 이후 물가변동분 정산 지급)

자료: 국방부

17.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이전 사업: 면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 집행 필요

가. 개 요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이전’ 사업은 포항 도심지에 위치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를 해병1사단 인접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4억 6,600만원 중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6.6%)되고 13억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000만원은 불용되었음.[49)]

[2023년도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이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이전	1,466	1,466	-	-	1,466	97	1,319	50	5,365

나. 검토의견

대부분의 기본조사설계비와 건설보상비 전액이 이월되어 집행이 부진하므로, 국방부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국가재정법」요건에 맞지 않는 건설보상비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이전 사업은 포항 도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전차대대를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544억원이고 선행연구[50)]와 사업타당성 조사[51)]가 완료된 후 연도 말인 2023년 10월 기본조사설계가 처음 시작되었음.

재공고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기본조사설계비가 집행[52)]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49)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이전(4131-480)(전력자원관리실)

50) 2019년 3월 완료

51) 2021년 12월 완료

52) 기획설계용역비: 사업기간 ‘23. 10. 17.~’ 24. 6. 31., 계약금액 1억 2,800만원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건설보상비에 편성된 토지보상비 역시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함.

[2023년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이전 사업 비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해병1사단 1전차대대 이전	1,466	1,466	-	1,466	97	1,319	50	5,365
- 건설보상비	1,185	1,185	-	1,185	-	1,185	-	5,277
- 기본조사설계비	281	281	-	281	97	134	50	83
- 시설부대비	-	-	-	-	-	-	-	5
합 계	1,466	1,466	-	1,466	97	1,319	50	5,365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본조사설계비의 경우 1개 업체 응찰 등에 따른 재공고로 연도 말 계약체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고, 집행부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보상비(토지보상비)의 경우 부지매입을 위해 토지보상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위탁수수료 상향 요구[53]에 따라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사업자 선정 기간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에 의해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이월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전액 이월된 건설보상비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54]에 따라 토지·물건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만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대이전을 위한 해당 토지는 토지

53) 위탁수수료 요구액: 법적요율 1.73%(약 2억) ⇒ 4~5%(4.7~5.9억) 요구

5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②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 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물건조사의 경우 2021년 12월 사업타당성조사 때 완료되었지만, 감정평가는 미실시되어 국방부가 이월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건설보상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따라서 대부분의 기본조사설계비와 건설보상비 전액이 이월되어 집행이 부진하므로, 국방부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 건설보상비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병무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억 8,700만원(62.3%)이 많은 4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0.7%)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02	302	483	181	300	300	487	187	4
총수입	302	302	483	181	300	300	487	187	4

문의 : 김석룡 예산결산조사관 dragon@assembly.go.kr (02-6788-567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56억 2,100만원(△7.7%)이 적은 3,074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9억 700만원(27.3%)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72,952	272,021	241,581	△30,440	333,109	333,109	307,488	△25,621	65,907
총지출	272,952	272,021	241,581	△30,440	333,109	333,109	307,488	△25,621	65,907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억원으로 5억 3,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억 8,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1.1%)되고 4,8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00	300	-	300	534	487	-	48
합 계	300	300	-	300	534	487	-	48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331억 900만원으로, 이 중 3,074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3%)되고 256억 2,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33,109	333,109	-	782	-	333,109	307,488	-	25,621
합 계	333,109	333,109	-	782	-	333,109	307,488	-	25,621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병무청 자산은 전년 대비 3,300만원이 감소한 3,772억 1,400만원으로, 이는 기타비유동자산이 16억 200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이 11억 3,200만원 감소하고 유동자산이 5억 3,8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40억 8,700만원 증가한 536억 9,4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316억 5,3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41억 2,000만원이 감소한 3,235억 2,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병무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86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587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3억 8,1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병무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77,214	377,247	△33	△0.0
		유동자산	7,784	8,322	△538	△6.5
		투자자산	80	175	△95	△54.3
		일반유형자산	354,540	354,408	132	0.0
		무형자산	5,912	7,044	△1,132	△16.1
		기타비유동자산	8,899	7,297	1,602	22.0
	부 채		53,694	19,607	34,087	173.9
		유동부채	13,735	8,400	5,335	63.5
		장기차입부채	8,265	11,166	△2,901	△26.0
		장기충당부채	31,694	41	31,653	77,202.4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323,520	357,640	△34,120	△9.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8,650	28,519	131	0.5
	재정운영순원가		358,767	258,386	100,381	38.8
	재정운영결과		358,767	258,386	100,381	38.8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병무청은 일반회계 단일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병역처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군소요 적정 충원 및 병력동원업무 수행,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자긍심 고취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일반회계 4개 프로그램 20개 세부사업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모집·현역병 입영·산업지원인력·사회복무요원 교육·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대체역 심사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존에는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25년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운영 주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병역판정검사 시기 조정 등 검사체계 개선 노력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무청 신체검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0년부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8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사업추진 예산도 집행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부정확한 적금 가입률 산정 등에 따라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면밀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사회복귀준비금 지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병역판정검사 사업: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체계 개선 필요

가. 개 요

‘병역판정검사’ 사업은 공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자원을 선발하고, 병역판정검사 장비 적기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81억 7,400만원 중 176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3%)되고, 4억 8,200만원은 불용되었음.[2)]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병역판정검사	18,174	18,174	-	±67	18,174	17,692	-	482	19,551

나. 검토의견

기존에는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25년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운영 주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병역판정검사 시기 조정 등 검사 체계 개선 노력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무청 신체검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병역판정검사(1131-301)(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는 19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이행 가능 여부와 병역이행 종류를 최초로 결정하는 검사로서 병무청이 주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입영판정검사는 기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 변화를 재확인하고 현역복무 및 군사교육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임. 2021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로 입영하는 현역병 입영 및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이래 입영판정검사 대상 부대를 확대 중에 있으며, 2025년 7월 이후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비교]

구 분	병역판정검사 (최초 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전 신체검사)
근 거	「병역법」 제11조	「병역법」 제14조의3
목 적	병역이행 가능여부 판정	현역복무(군사교육) 적합여부 판정
	병역이행 종류 최초 결정	군부대 입영신체검사 대체
대 상	19세 남자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시 기	19세가 되는 해	입영일 14일전~3일전
내 용	신체검사 + 심리검사	신체검사(매독검사 추가) + 심리검사 + 마약류 검사(2024. 7월 이후 실시)

주)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절차 및 검사항목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입영판정검사 시 매독검사 추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검사 전원 실시(2024. 7월이후)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 실시 계획]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2026년
부 대	2작사	2작사 + 지작사 (舊 1군)	2작사 + 지작사 (舊 1・3군)		전면시행 (육훈, 해·공군, 해병대 포함)	
인 원	1.3만명	3.7만명	8,7만명	8.9만명	17.1만명	23.7만명

자료: 병무청

기존에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와 군부대 입영신체검사가 이원화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으로 판정을 받아 입영한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귀가 조치되는 인원이 지속 발생하였음.[3] 귀가 후 재입영까

3) 귀가율(%) : (2015년) 4.3 → (2016년) 6.3 → (2017년) 6.2 → (2018년) 5.9 → (2019년·2020년) 각 5.1

지는 평균 3개월 이상의 대기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학업·취업 복귀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부대별로 장비·인력의 차이가 있고 귀가율 또한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었음.

병무청에서는 입영 후 귀가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복무 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역법」 개정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였음.

제도 도입 결과 군부대 신체검사에 비해 보다 정밀하고 세분화된 검사를 수행하게 되었고, 입영 후 귀가될 인원을 사전에 선별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음.[4)]

[입영신체검사(군부대)/입영판정검사(병무청) 항목 비교]

구분	검사과목	일반부위	심리검사	병리검사	방사선
입영신체검사 (3개과, 23종 37개 항목)	3개과 (내과, 일반/ 정형외과)	3종 (신장체중 등 6개 항목)	1종 (인성검사 1개 항목)	18종 (25개 항목)	1종 (흉부, 편평족 등 5개 항목)
입영판정검사 (9개과, 36종 58개 항목)	9개과 (전담의사 9개 과목)	3종 (신장체중 등 6개 항목)	1종 (인성/인지능력 검사 2개 항목)	31종 (45개 항목)	1종 (흉부, 편평족 등 5개 항목)

자료: 병무청

다만, 기존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와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의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어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운영 주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된 만큼, 추가적인 검사체계 개선 노력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무청 신체검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병역법」 제11조에서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5)] 「병역법」 제14조의3조[6)]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7)]에서는 입영

4) 입영판정검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입영판정검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입영판정검사 결과		대졸 초임 평균연봉	귀가 후 평균 대기기간	사회적 비용 절감
① 역종변경	2,390명	2022년 2,887만원 (월 240만원)	재검사까지 1.5개월	86억 4백만원
② 일시적 질환자	2,460명		재입영까지 3개월	177억 1천만원

자료: 병무청

5)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

판정검사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⑥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여건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023년 기준 19세 남성 인구의 90.5%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8] 전체 입영자 중 20세의 비율은 56%임.[9] 즉, 과반수의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20세에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을 하게 되는 것임.

이러한 검사 시기의 차이로 인해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두 번 수검하게 됨. 반면, 18·19세에 입영을 희망하여 모집병에 지원한 의무자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번의 병역판정검사만을 받고 입영하고 있음.

18·19세 모집병 검사를 참고하여, 20세에 모집병으로 입영하고자 하는 입영대상자에 대해서도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를 20세에 수검할 수 있게 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더 많은 병역 의무자가 입영 시기에 맞추어 한 번의 검사를 수검하고 입영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역병 충원방법]

구분	내용	2023년 충원 비율
징집	- 충원분야: 육군 -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으로 판정 후 20세 되는 해부터 입영 * 본인이 입영일자 선택, 연기해소자 등은 직권 통지	45.3%
모집	- 충원분야: 육해공군, 해병대 - 복무를 희망하는 군과 특기, 입영시기 선택 * 18세가 되는 해부터 지원 가능	54.7%

자료: 병무청

다만, 병역판정검사 후 일정 기간(6개월)이 지난 의무자의 경우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입영 전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군복무에 적합한 경우에만 입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군복무 부적합자 입영으로 인한 군의 지휘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역대상자에게 사전에 군복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병역대상자가 병역에 관한 생애주기별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다면, 스스로 입영시기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해당 시기를 반영하여 한 번의 병역판정검사만으로 입영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8) 2023년 기준 19세 남성인구: 253,746명 / 19세 병역판정검사 수검인원: 229,706명

9) 2023년 기준 현역병 인도 인원: 191,003명 / 20세 현역병 인도 인원: 107,021명 (징집 54,833명, 모집 52,188명)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병역대상자가 병역에 관한 생애주기별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아 미래의 군복무와 학업 및 취업 등을 연계하여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병역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2. 병역진로설계 사업: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필요

가. 개 요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군 복무가 개인의 취업·진로와 연계되고,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입영 전·후를 아우르는 생애 설계적 관점에서 병역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0억 9,600만원 중 28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5%)되고 2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3년도 병역진로설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현역병모집	3,583	3,583	-	±60	3,583	3,320	-	263	4,362
병역진로설계	3,027	3,027	-	±60	3,096	2,833	-	263	3,818

나. 검토의견

2020년부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8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사업추진 예산도 집행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역병 모집’의 내역사업인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11)] 센터는 군 복무가 학업 및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지원하고 있음.

[병역 단계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역할]

입 영 前		⇒	복 무 中		⇒	전 역 後	
병무청	병역진로설계		군(軍)	개인 경력개발		고용부 등	취업지원

자료: 병무청

10) 일반회계-현역병모집(1232-303)-병역진로설계(입영동원국)

1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은 전문상담·체험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상설 센터 운영,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청년층 맞춤 정보 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사회진출 지원

2020년 7월 서울 센터를 개소한 이후, 2021년 대구·광주 및 대전, 2022년 부산·춘천, 2023년 수원·인천 센터가 개소되어 총 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12]도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를 활용한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선호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진로 상담', 각 군 지원 안내 등 '군 생활 정보제공', 군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군 생활체험' 등이 있음.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프로그램 구성 현황]

프로그램	내 용
직업선호도 검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 활용, 직업흥미, 성격, 생활 경험을 측정하여 흥미유형(6가지)을 탐색 후 적합한 직업정보 제공
병역진로 상담	개인의 직업선호도검사 결과와 전공·자격·면허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군 특기 추천, 입영시기 설계 등 1:1맞춤 상담
군 생활 정보제공	각 군 지원 안내, 특기/분야 직무안내, 군 생활 및 복무 중 자기개발에 관한 정보들을 전시·체험관을 통해 제공
군 생활 체험	군 보급품 전시, 군 장비 체험(사격, 전차시뮬레이터, 드론 VR 등), 군복체험 등 다양하게 실시

자료: 병무청

센터의 주요 실적은 2020년도 방문인원 664명 및 상담인원 2,358명 등 총 3,022명, 2021년도 방문인원 5,153명 및 상담인원 8,365명 등 총 16,310명, 2022년도 방문인원 13,105명 및 상담인원 19,182명 등 총 32,287명, 2023년도 방문인원 24,507명 및 상담인원 24,227명 등 총 48,734명이며,[13] 연도별로 센터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실적도 상승하고 있음.

등.

12) 센터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 6억 4,600만원, 2021년 21억 6,500만원, 2022년 20억 5,400만원, 2023년 28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음.

13) 방문인원은 초·중·고등학생, 교사 및 부모 등으로 체험·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상담인원은 병역을 준비하는 병역의무자가 주요 대상으로 1:1병역진로상담까지 제공받는 사람을 의미함

[연도별 각 센터의 업무실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춘천	수원	인천
2023년	총계	48,734	8,624	7,104	6,522	7,753	7,124	4,308	4,846	2,453
	방문인원	24,507	3,432	2,814	2,632	4,099	3,956	2,397	3,368	1,809
	상담인원	24,227	5,192	4,290	3,890	3,654	3,168	1,911	1,478	644
2022년	총계	32,287	8,424	6,852	7,379	6,516	2,122	994		
	방문인원	13,105	2,854	2,054	3,109	3,523	1,008	557		
	상담인원	19,182	5,570	4,798	4,270	2,993	1,114	437		
2021년	총계	16,310	8,783	3,147	2,522	1,858				
	방문인원	5,153	4,008	2,254	1,008	675				
	상담인원	8,365	4,775	893	1,514	1,183				
2020년	총계	3,022	3,022							
	방문인원	664	664							
	상담인원	2,358	2,358							

주) 방문인원은 초·중·고등학생, 교사 및 부모 등으로 체험·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상담인원은 병역을 준비하는 병역의무자가 주요 대상으로 1:1병역진로상담까지 제공받는 사람을 의미함
자료: 병무청

또한 각 센터에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말 현재 공무원 32명과 공무직 근로자 16명 등 총 48명이 각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음.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춘천	수원	인천
계	48	8	6	6	7	6	4	6	5
공무원	32	8	3	3	4	3	3	4	4
공무직	16	-	3	3	3	3	1	2	1

자료: 병무청

그런데 2020년을 시작으로 각 지역마다 8개 센터가 설치되어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사업 예산도 집행되고 있으나, 비직제로 운영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설치와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병역법」및 직제를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면밀한 적금 가입률 등의 산정에 의한 집행부진 개선 필요

가. 개 요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학업복귀 및 취·창업 지원 등의 마중물로 활용되기 위한 것으로[14], 2023년도 예산현액 865억 5,700만원 중 661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0%)되고, 203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3년도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병역의무자지원	120,480	120,480	-	+257	120,737	100,283	-	20,454	193,737
사회복무요원 지원	94,790	94,790	-	+174	95,006	75,606	-	19,400	169,105
사회복귀준비금	86,557	86,557	-	-	86,557	66,161	-	20,396	159,740

나. 검토의견

부정확한 적금 가입률 산정 등에 따라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면밀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사회복귀준비금 지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귀준비금은「병역법」제79조의2에 따라 2022년 1월 납입 원리금부터 매칭 지원되고 있으며,[16] 2022년도는 원리금의 33%인 14.1만원, 2023년도는 원리금의 71%인

14) 장병내일준비적금 : 가입대상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병역의무이행자, 납입한도는 월 40만원, 은행금리(5% 수준 이자)+추가이자지원(1%), 비과세 정기적금 상품,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 최대 24개월(사회복무요원 21개월),

15) 일반회계-병역의무자지원(7135-314)(사회복무국)

16)「병역법」

30만원, 2024년 이후에는 입금액의 100%가 매칭 지원되고 있음,

[연도별 사회복귀준비금 매칭비율]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보수(월액, 병장 기준)	67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적금 납입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입금액의) 100%	(입금액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자료: 병무청

사회복귀준비금의 지원절차는 소집해제(복무만료) 후 적금 만기 해지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 및 금액 등이 확인된 후 매월 지원금이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있음.

[사회복귀준비금 등 지원절차]

사회복무요원	은 행	병무청
① 21개월 소집해제 후 적금 만기 해지 신청	② 사회복무요원에게 1% 이자 선 지급 ③ 병무청으로 개인별 매칭지원금 금액 및 계좌번호 통보	④ (1% 이자) 은행으로 지급 ⑤ (매칭지원금) 복무기간 및 금액 등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급

자료: 병무청

연도별 사회복귀준비금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도의 경우 예산액 303억 1백만원 중 116억 7,300만원이 집행되어 3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2023년도의 경우 예산액 865억 5,700만원 중 661억 6,100만원이 집행되어 7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사회복귀준비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예산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집행률
2022년	30,301	14,668	11,673	38.5
2023년	86,557	25,432	66,161	76.4

자료: 병무청

2023년도의 집행률은 2022년도 보다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집행이 부진한 상태임.

이에 대해 병무청은 예산편성 당시 적금 가입률을 77.45%로 산정하고 1인당 평균 지원금도 351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집행은 적금 가입률 74.9%와 1인당 평균 지원금 260만원 등의 차이로 집행부진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적금 가입률과 1인당 평균 지원금에 대해 과거의 집행실적과 현재의 가입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집행률 저조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병무청은 부정확한 적금 가입률 산정 등에 따라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면밀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사회복귀준비금 지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청

※ 비공개 (243 ~ 288쪽)

문의 : 김석룡 예산결산조사관 dragon@assembly.go.kr (02-6788-567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59.5%)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42	42	-	-	67	67	25
총수입	-	-	42	42	-	-	67	67	25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0억 2,800만원(△15.3%)이 적은 112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400만원(△5.7%)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3,739	13,733	11,914	△1,819	13,268	13,268	11,240	△2,028	△674
총지출	13,739	13,733	11,914	△1,819	13,268	13,268	11,240	△2,028	△674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3.1%)되고 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	-	72	67	-	5
합 계	-	-	-	-	72	67	-	5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8억 7,100만원으로, 이 중 112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0%)되고 이중 26억 3,100만원은 불용처리됨.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3,268	13,268	603	-	-	13,871	11,240	-	2,631
합 계	13,268	13,268	603	-	-	13,871	11,240	-	2,631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7억 5,900만원 감소한 13억 1,5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 4억 8,800만원의 감소와 일반유형자산 6,000만원 감소 및 무형자산 2억 1,300만원이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 증가한 2억 7,500만원으로 유동부채 900만원 증가, 장기충당부채 2억 1,700만원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억 8,400만원이 감소한 10억 4,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28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28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2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315	2,074	(759)	(36.6 %)
		유동자산	1,054	1,542	(488)	(31.6 %)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255	315	(60)	(19.0 %)
		무형자산	5	218	(213)	(97.7 %)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275	50	225	450.0 %
		유동부채	9	-	9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267	50	217	434.0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040	2,024	(984)	(48.6 %)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2,841	12,350	491	4.0 %
	재정운영순원가		12,841	12,349	492	4.0 %
	재정운영결과		12,841	12,349	492	4.0 %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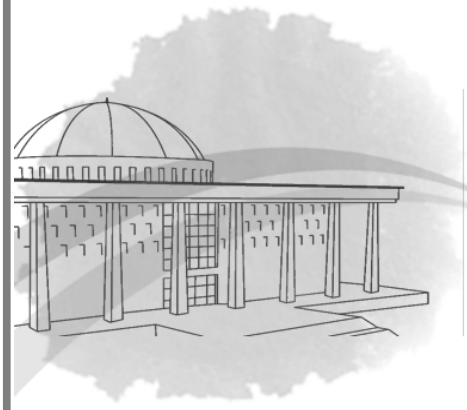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에 대한 책임자와 경위, 민간인 사망 및 집단 학살, 행불자의 규모, 소재 및 북한 개입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였음.

또한 관련 사건에 대한 입체적 재구성 및 전문가 참여, 전문적인 조사기법 등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국민 참여 유도 등을 통한 진상규명 촉진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5·18 관련 단체 등과도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음.

더불어 신문과 방송, SNS 등을 활용하여 증언 및 제보 참여를 유도하고 사진, 영상자료 및 주요 인물의 증언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783억 9,700만원(114.2%)이 많은 1,470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1억 3,100만원(△49.0%)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6,420	66,420	288,199	221,779	68,671	68,671	147,068	78,397	△141,131
총수입	66,420	66,420	288,199	221,779	68,671	68,671	147,068	78,397	△141,131

문의 : 박세경 예산결산조사관 sg.park@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8조 1,340억 7,700만원(△0.1%)이 적은 72조 3,537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조 6,224억 9,700만원(△10.6%)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0,664,875	82,668,454	80,976,249	△1,692,205	80,487,829	80,487,829	72,353,752	△8,134,077	△8,622,497
총지출	70,664,875	82,668,454	80,976,249	△1,692,205	80,487,829	80,487,829	72,353,752	△8,134,077	△8,622,497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86억 7,100만원으로 1,978억 2,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70억 6,800만원이 수납(수납률 214.2%)되고, 507억 4,900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63,210	63,210	-	63,210	181,902	132,299	-	49,59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461	5,461	-	5,461	15,919	14,769	-	1,150
- 지역지원계정	3,530	3,530	-	3,530	4,330	3,325	-	1,005
- 지역자율계정	1,931	1,931	-	1,931	11,589	11,444	-	145
합 계	68,671	68,671	-	68,671	197,821	147,068	-	50,749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0조 6,075억 5,700만원으로, 이 중 72조 3,537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8%)되고 309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조 2,228억 9,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78,843,266	78,843,266	118,953	±42,569	-	78,962,927	70,711,893	30,764	8,220,2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44,563	1,644,563	67	±244	-	1,644,630	1,641,859	152	2,619
- 지역지원계정	1,402,142	1,402,142	67	±244	-	1,402,209	1,339,438	152	2,619
- 지역자율계정	225,653	225,653	-	-	-	225,653	225,653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5,323	5,323	-	-	-	5,323	5,323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445	11,445	-	-	-	11,445	11,445	-	-
합 계	80,487,829	80,487,829	119,020	±42,813	-	80,607,557	72,353,752	30,916	8,222,891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자산은 전년 대비 2,871억 9,477만원이 증가한 12조 1,569억 6,691만원으로, 이는 주로 유동자산이 1,243억 9,18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이 11억 8,733만원, 일반유형자산이 3,458억 7,003만원, 무형자산이 639억 2,952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5억 9,969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45억 5,050만원 증가한 1,547억 3,497만원으로 이는 주로 유동부채가 42억 9,927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14억 8,772만원 증가한데에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726억 4,426만원이 증가한 12조 22억 3,194만원임.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72조 4,148억 3,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1,963억 9,835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2조 7,098억 7,0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890억 969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2,156,967	11,869,772	287,195	2.4
		유동자산	105,347	229,739	△124,392	△54.1
		투자자산	9,325	8,138	1,187	14.6
		일반유형자산	11,652,109	11,306,239	345,870	3.1
		무형자산	385,119	321,190	63,929	19.9
		기타비유동자산	5,066	4,466	600	13.4
	부 채		154,735	140,184	14,551	10.4
		유동부채	57,050	52,751	4,299	8.1
		장기차입부채	97,685	86,197	11,488	13.3
		장기충당부채	-	1,236	△1,236	△100.0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2,002,232	11,729,588	272,644	2.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72,414,834	86,611,233	△14,196,399	△16.4
	재정운영순원가		72,709,871	86,798,880	△14,089,009	△16.2
	재정운영결과		72,709,871	86,798,880	△14,089,009	△16.2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결산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흐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1,819억원	707,119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159억원	16,419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혁신, 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안전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291개 세부사업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기반 구축,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 증진, 주민행복 향상기여, 정부자원 효율적 관리 및 과학수사 신뢰 재고,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피해 최소화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 관련 재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장기 미수납액 조속 반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사업은 2023년 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않은 행사 추진을 전용(증)을 통해 추진하였는데, 이는「국가재정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정한 집행 방식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문제가 있음.

셋째,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은 매년 1조원씩 기금으로 출연하여 인구소멸지역 및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고 있으나, 실집행이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넷째, 한국섬진흥원 출연 사업은 한국섬진흥원 사업비의 실집행이 부진하여 출연금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출연금의 집행 및 정산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4년 감소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2023년 예산 중 370억 4,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하였는데, 이는「국가재정법」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법」 상 교부비율을 위반하여 미교부 후 불용한 문제

가. 개 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임.[2] 행정안전부는 내국세 총액 중 일정액(19.24%)과 종합부동산세 전액·담배분 개별소비세 45%를 자치단체별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교부하고 있음.

[2023년도 지방교부세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통교부세	66,644,552	66,644,552	-	-	66,644,552	59,475,700	-	7,168,852	59,843,917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824,469	824,469	-	-	824,469	824,469	-	-	740,337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206,117	206,117	-	-	206,117	206,117	-	-	185,08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30,586	1,030,586	-	-	1,030,586	1,030,586	-	-	925,421

2) 일반회계-보통교부세(1631-300), 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지방재정경제실)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라 내국세를 통한 재원(내국세 총액 중 19.24%)의 97%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고, 3%는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의 재원이 됨.[3]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지역현안특별교부세에 총액의 4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에 총액의 10%,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총액의 50%가 배분되는 구조임.[4]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구분]

구분		교부기준
보통교부세 (내국세 19.24% 중 97%)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지방교부세법」 제6조)
특별교부세 (내국세 19.24% 중 3%)	국가지방협력 (10%)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지역현안 (40%)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재난안전관리 (50%)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4)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검토의견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상 교부비율과 무관하게 2023년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불용을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방교부세법」에 위반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지방교부세는 세수 감소 전망을 고려하여 내국세에 연동되어 불용되었는데, 그 결과 보통교부세 7조 1,688억 5,200만원이 미교부되고 불용되었음.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5조를 고려할 때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 역시 이를 근거로 보통교부세를 불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에 따르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불용액이 발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는 전액 교부되고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만 미교부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음.[5)]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연초 자금 배정 및 교부가 완료되어 불가피하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만 불용한 것이고, 차차년도 보조금 정산 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에 대한 「지방교부세법」 상 비율을 맞춰 사후적으로 정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관계 법령 상 특별교부세에 대해 연초 자금 배정을 완료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실제로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교부되었음.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4월부터 시작하여 58.1%가 10월~12월에 교부되었고,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교부 역시 4월부터 시작하여 99% 이상이 하반기(7월 이후)에 교부되었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1월부터 교부되긴 했으나 그 비중은 3.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10월 이후에 교부되어 행정안전부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5)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2023년도 특별교부세별 월별 교부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월별	교부액	교부율	교부액	교부율	교부액	교부율
합계	2,062	100.0	8,250	100.0	10,313	100.0
1월	-	-	-	-	357	3.5
2월	-	-	-	-	-	-
3월	-	-	-	-	165	1.6
4월	142	6.9	60	0.7	36	0.3
5월	120	5.8	-	-	1,127	10.9
6월	236	11.4	-	-	2,289	22.2
7월	366	17.7	4,011	48.6	419	4.1
8월	-	-	-	-	220	2.1
9월	-	-	-	-	250	2.4
10월	350	17.0	-	-	1,536	14.9
11월	87	4.2	-	-	212	2.1
12월	760	36.9	4,174	50.6	3,697	35.8
정산분	1	0.0	5	0.1	7	0.1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집행행위는 ① 세수결손 상황에 따라 법률상 교부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②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정산절차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가져와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점, ③ 다른 교부세는 교부하지 않으면서 특별교부세만 세수와 무관히 전액 집행해야 할 이유의 설득력이 낮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법」에 반하는 자의적 집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관서운영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위반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는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등을 제외하고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하고 있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소관)에서는 건당(500만원)을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6][7]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인건비(110)	현역병사 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용역비는 제외

6)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7)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 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예산과목	용 도
여 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250)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 시 공제되는 금액 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자료:「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나. 검토의견

행정안전부는 동일한 업체에 관서운영경비 최고액(500만원) 이내로 쪼개기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존재하는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우회하는 집행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행정안전부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날 동일한 업체에 대해 관서운영경비를 최고금액(500만원) 이내로 여러 차례 나눠서 결제한 사례가 존재함.

[2023년 행정안전부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

(단위: 원)

사용부서	세부사업명	일자	내용	집행대상	집행액
지방재정경제실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12. 29.	제4기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임기종료에 따른 감사패 제작 지급요청	세종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4,950,000
			2023년 제4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워크숍 참석자 감사패 제작비용 지급요청		4,950,000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분권실	11. 9.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 올댓샵	2,600,000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e스포츠(스타크래프트)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000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야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000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000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볼링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000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탁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000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족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000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테니스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000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축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000

자료: 행정안전부

관서운영경비는「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른 국고금 지출원칙의 특례로서,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 그 성질상 원칙적인 지출절차 규정에 따라 지출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임. 즉 이는 원칙적인 지출절차 규정에 따라 지출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규정을 우회하여 같은 날 동일 업체에 유사한 건으로 500만원 이내로 나눠 결제하였음. 또한 관서운영경비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집행 사례들이 원칙적인 지출절차 규정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우려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국고금관리법」등에 규정된 관서운영경비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 지연에 따른 개통 지연 문제

가. 개 요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방세정보화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구성됨.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맞춤형 납세서비스의 도입, 업무절차 간소화, 수기업무 자동화,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주요기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체납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5억 1,800만원 중 51억 4,700만원이 출연(집행률 80.5%)되고, 13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8)]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세외수입 정보 공동 활용 및 체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억원 전액 출연(집행률 100.0%)되었음.[9)]

[2023년도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방세정보화 추진	7,049	7,049	-	-	7,049	5,678	-	1,371	5,868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6,518	6,518	-	-	6,518	5,147	-	1,371	5,868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300	300	-	-	300	300	-	-	100

8) 일반회계-지방세정보화추진(1333-500)(지방재정경제실)

9) 일반회계-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1333-503)(지방재정경제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구축 후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사업기간이 2019년~2028년(구축기간 5년, 운영기간 5년)이며, 총사업비 3,106억원(국비 794억원, 지방비 2,312억원)의 규모로 지방세무행정 전과정의 업무혁신과 납세자 정보 통합관리 및 납세 편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함.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집행하고 있음.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념도]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유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시스템 개통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출연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단계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3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50.0%,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은 33.4%로 저조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연도말 기준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의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존재함.

[2020년~2023년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시스템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실집행 저조 사유
2020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1,767	-	21,767	1,204	20,563	5.5	2단계(1차, 16개 시도통합) 사업자 선정 유찰(2회) 및 지연으로 2021.1월 계약 체결* 및 2022.3월 실집행 *지방세·세외수입 통합발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1,000		1,000	56	944	5.6	
202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16,566	20,563	37,129	21,114	16,015	56.9	2단계(2차, 16개 시도통합) 사업자의 SW개발 및 연계 지연으로 기성금 등 지급 지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1,000	944	1,944	602	1,342	31.0	
2022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5,189	16,015	21,204	9,748	11,456	46.0	3단계(서울시 통합)사업 및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이나, 사업자 선정 유찰 등으로 미집행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307	1,342	1,649	952	697	57.7	
2023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4,412	11,456	15,868	7,932	7,936	50.0	2단계(16개 시도통합) 사업 착수 후 SW개발 일정 지연 등으로 개통일을 2차례 연기(2023.1월 →2023.10월 → 2024.2월)하여 2024. 2. 13. 시스템 개통(준공지연)으로 미집행 (2024. 5월 준공검사 완료 후 잔금 지급) ※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예산 3억원은 개통연기에 따라 미집행하고 정산 반납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300	697	997	333	364	33.4	

주) 연도별 실집행 내역은 각 연도말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0년 2단계(1차) 사업의 장기계속계약이 2021년 1월에야 체결되면서 2021년 2단계(2차) 사업 자체가 순연되었고, 결함 보완 및 테스트를 거치면서 개통이 지연되어 2단계 외주용역비 잔금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2021년 중 뒤늦게 추가된 서울특별시 통합 부분에 대한 계약은 지속 유찰되고 있어 3단계 사업 관련 외주용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사업단계	사업 내용	당초 계획 일정 (ISP 기준)	실제 추진 일정
1단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인프라 분석・설계	2019. 1.~2019. 12.	2019. 8.~2020. 5.
2단계(1차)	세무행정 시스템 및 대국민 시스템 관련 인프라 개발・도입(서울시 제외)	2020. 1.~2020. 12.	2021. 1.~2022. 1.
2단계(2차)	세무행정 시스템 및 대국민 시스템 테스트 및 데이터 이관 수행 등(서울시 제외)	2021. 1.~2021. 12.	2021. 12.~2024. 2. 13.
3단계	서울시의 세무행정 시스템 및 대국민 시스템과의 통합	미포함	2021. 8.~진행중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동 시스템 구축 목적이 기존 개별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착수 전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서울시를 포함하여 통합・연계가 전제되어야 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뒤늦게 3단계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시가 함께 참여하여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여겨짐.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개통 연기로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이 일부 불용되었는데,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개통이 테스트 등의 이유로 개통일이 2차례 연기(2023.1월 →2023.10월 → 2024.2월)되어 운영관리 예산 불용 여부는 2023년 예산 편성 시점에서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판단됨.

동 사업은 2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위탁사업자의 실집행이 부진하고 제도 시행일까지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데, 3단계 사업이 이미 4차례 유찰되어 2단계(1차) 사업과 같이 계약 유찰이 반복되어 사업이 추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3단계 사업이 추가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진행에 맞는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 및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전산망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2023년 중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정부24(온라인 민원 서비스)’, ‘주민등록발급시스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가 연이어 발생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10)]

[2023년 정부 주요 행정 전산망 장애 현황]

일자	행정 전산망 장애 내역	장애 원인
6.21.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장애	프로그램 오류
11.17.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새올’, 온라인민원서비스 ‘정부24’ 마비**	**네트워크 연결장치 불량**
11.22.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발급 오류	접속 과부화
11.2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접속 오류	해외 IP 다량 접속에 따른 과부화
11.24.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오류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
12.1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접속 오류	접속 과부화
12.30.	우체국 금융 접속 오류	접속 과부화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 중 2023년 11월 17일부터 18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바 있음. 그 원인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행정전자서명(GPKI) 활용이 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는 시도·새올 시스템 로그인이 불가해 행정업무가 중단되었고, 동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부24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10) 한국경제,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2023. 11.24.
한국경제, “조달청 ’나라장터’도 전산망도 1시간 가량 ’불통’”, 2023.11.23.
연합뉴스, “전산망 복구 발표 후에도 ’줄 장애’…“사상누각, 근본대책 시급”“, 2023.11.24.

[2023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사태 개요]

■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 (기간) ’ 23.11.17.(금), 08:46 ~ 11.18.(토), 09:00 ‣ (원인)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인해,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된 행정전자서명(GPKI, 공무원의 업무시스템 로그인 수단)을 활용하는 시도·새올 시스템 로그인 불가 ‣ (현상) 시도·새올 접속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 등 행정업무가 중단되었고, 동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부24 등 대민서비스 장애로 확산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2023년 11월 17일~18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대책이 현실적으로 향후 재발 방지 효과를 발휘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 신뢰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17일~18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에 대한 대책으로 위험등급에 기반하여 상시 시스템 관제 수행, 통합 장애대응체계 구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신속 추진,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음.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주요 대책	세부 대책	내용
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위험징후 상시 감시 강화	○ 1·2등급 정보시스템 대상 24시간 상시관제 수행 및 모니터링 관리 강화 ○ 다수 시스템 연계 장애의 신속 대응을 위한 범정부 통합모니터링 시행
	위험분산형 구조 개선	○ 他 시스템 장애 확산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장애 격벽 등을 통해 위험 분산 구조로 개선하고, 인증시스템 장애 대비 인증수단 다양화 ○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장애 전이 방지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신속 추진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강화	○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에 대한 표준 예방점검체계 도입 ○ 장애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시스템 간 연계 현황의 상시 분석·활용
	등급제 기반의 효율 관리	○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등급제 마련·적용 및 장애 경중에 따른 차등적 대응을 위한 장애 등급 신설을 통해 효율적 자원 활용
신속한 대응 복구	통합장애 대응체계 구축	○ 민관합동 서면·현장점검, 사이버장애지원단을 통한 주요 시스템 안정성 진단 지원 등으로 장애 사전 예방 ○ 체계적 장애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 중심의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 및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 대책	세부 대책	내용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복구 지원 체계 마련	○ 디지털안전상황실(2023.12월 신설) 중심의 장애 상황 통합관리·전파 및 상황실과 대내외 기관 간 상황공유체계 마련 ○ 장애 유형별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주요 장애 발생 시 민관합동 대응반 구성 및 복구 작업 즉시 투입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대국민 안내 강화	○ 전산 장애에도 대민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이행 ○ 장애 상황 관련 대국민 안내기준 마련 및 안내 채널 다양화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 국민 이용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강화	○ 민간 IT 전문인력을 연봉 상한 없는 공무원으로 채용 추진 ○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전문성·연속성 강화로 장애대응 역량 제고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	○ 경쟁 활성화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등 대기업 참여 허용 추진 ○ 개발 대가기준 상향, 신기술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 대가 개선*
	사업수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발주前-입찰·계약-이행’ 단계별 지원강화로 사업 이행기반 개선
	인프라 복원력 제고	○ 잠재 위험 제거를 위해 노후장비 순차적 교체 및 1·2등급 시스템 대상 모든 장비(네트워크·방화벽 등) 이중화 단계적 이행 ○ 재해·재난 및 장애 상황에서 작동가능한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최근 장애 원인 및 그간 누적된 문제점 등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재발 방지 및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대책의 내용 중 일부는 기존 정책의 답습, 낮은 실현 가능성, 낮은 효과성 등이 우려되므로, 디지털행정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위 대책 중 조직 개편 또는 전문인력 충원의 경우 전산망 장애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전문인력 충원은 사이버장애지원단에 민간 우수 전문가를 전문임기제 가·나급(각 3명, 총 6명)으로 채용하려는 것인데, 전문임기제 가급을 연봉자율책정특례적용 대상 직위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간 우수 전문가의 임금 수준 등 채용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고, 근무환경에 대한 한계도 존재해 빠른 시일 내 채용을 통한 문제 해결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임. 실제 2024년 6월말 기준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목표 채용인원 가급3명, 나급 3명 중 나급 2명만이 2024. 5. 7. 채용된 상황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해 3차 공고가 진행 중인 상황임.[11]

둘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및 행정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이행은 이미 발표한 대책 또는 이미 시행 중인 사항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음.

'클라우드 네이티브[12] 전환 신속 추진'의 경우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새로운 대책이라 보기 어렵고, 기존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실제 전환수요 부족으로 목표 대비 전환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1년~2025년 클라우드 전환추진계획 로드맵 및 2023년까지의 사업실적]

(단위: 개,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당초 계획	시스템 수	430	2,149	3,169	1,892	2,369	-	-
	예산	570	2,402	2,351	1,239	2,179		
⇩								
변경 계획	시스템 수	302	1,590	2,311	2,295	2,127	1,384	
	예산	570	1,787	1,626	2,591	2,799	2,406	800
실제 전환	시스템 수	302	1,590	290	-	-	-	-
	예산	570	1,787	342	-	-	-	-

주) 2023년에는 290개 시스템의 전환이 추진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행정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이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기능 연속성 계획', 「전자정부법」에 따른 장애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으므로,[13][14] 행정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 역시

11) 관련 채용공고 일정: 1차(1.31.~2.13.) / 2차(4.2.~4.12.) / 3차(6.20.~7.8.)

12)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클라우드 특화기술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방식으로, 작고 빠른 서비스의 개발·배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원활용, 민간 혁신기술 활용 가능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음.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 성격상 기존 매뉴얼과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15]

셋째, 시스템 통·폐합의 경우,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여 관리효율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이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은 기능·활용도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적절하고 유지보수·관리의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음. 3·4등급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1·2등급 정보시스템의 기능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각 정보시스템의 서버 구성 및 프레임워크가 상이한 상황에서 사실상 새로운 정보시스템 개발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수반될 것이므로, 시스템 통합을 위한 개발비용 예산 편성 없이 유지보수비용만 삭감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부실만 초래될 우려가 있음.

예컨대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중 4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 정책연구시스템(PRISM) 등을 폐지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정책연구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초래될 것임.[16]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 · 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4)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 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 대응계획 수립
2. 장애관리 부서 및 담당자 지정
3. 장애관리 매뉴얼 작성 · 시행
4. 장애관리 교육 · 훈련 실시
5. 정보시스템의 유지 · 보수 계약체결 및 유지(정보시스템의 유지 ·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의 예방 ·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활동 계획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3.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정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의 경우 기존 매뉴얼에 비해 민원업무의 연속성 유지 방안에 대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중 3등급 이하 사이트 사례]

시스템명	시스템등급
1365자원봉사포털	3
국민비서상담	3
디지털원패스	3
민방위경보시스템	3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	3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3
정부OTP발급시스템	3
지방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3
지자체합동평가시스템	3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지킴e)	3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3
기록관리교육훈련시스템	3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교육관리시스템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대표홈페이지	3
광주센터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3
모바일메시지서비스	3
온나라이음시스템	3
클라우드공통기반	3
클라우드저장소시스템(G드라이브)	3
통합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3
대통령기록포털	3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업무관리시스템	3
공공시설물내진보강정보관리시스템	4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	4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대표홈페이지	4
국민안전교육플랫폼	4
데이터역량강화학습지원시스템	4
민원서비스종합평가e시스템	4
범정부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범정부데이터플랫폼)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NPAS)	4
상훈시스템	4
성과관리시스템	4
소통24(구 온국민소통)	4
스마트워크센터운영시스템	4
안전기준등록관리시스템	4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4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	4
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	4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4
정보화지원시스템	4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4
지방공기업통합결산시스템	4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	4
지자체사이버침해대응지원시스템(CTRS)	4
착한가격업소	4
풍수해관리시스템	4
풍수해보험관리지도통합관리시스템	4
정책연구시스템(PRISM)	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중 '1365자원봉사포털'(3등급), '국민비서상담'(3등급), '디지털원패스'(3등급), '비영리민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나 기관 대표 내부업무용 시스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정보시스템 통합 예외 신청 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통·폐합은 아니라는 입장임.[17]

그러나 2025년도 예산요구안 편성 전까지 통·폐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하기에는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예외 신청 결과 실제 통폐합 가능한 정보시스템의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으며, 무리한 통폐합으로 인해 정보시스템 운영에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관련 대책에 대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현실적으로 재발방지 효과 및 디지털행정서비스 신뢰 제고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보다 보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간단체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 (4등급), 스마트워크센터운영시스템(4등급), '정책연구시스템(PRISM)' (4등급) 등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홈페이지들 역시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

1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7조(통합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장소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된 정보시스템
2. 원자력, 상수도, 가스 등 시설제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
3. 센서, CCTV 등 현장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하는 정보시스템
4. 행정기관등의 내부운영을 위한 보안·통신, 보안관제 등 현장설치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5. 출입통제, 현장장비 제어 등 통신 성능 및 안정성의 사유로 현장에 위치해야 하는 정보시스템
6. 슈퍼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통합이 불가능한 정보시스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정보시스템

【일반회계】

<세 입>

5. 기타경상이전수입: 장기 미수납 국고보조금 최소화 노력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1,511억 6,700만원 중 1,075억 8,400만원이 수납(수납률 71.2%)되고 미수납액 435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음.[18]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47,442	47,442	151,167	107,584	43,583	-	267,1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19]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후 보조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제4항[20]에 따르면,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18)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은 편인데, 행정안전부는 장기 미수납 국고보조금 정산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최근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개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9	40,949	40,949	-	40,949	39,154	34,983	85.4	89.3	4,172	-
2020	43,416	43,416	-	43,416	59,374	49,189	113.3	82.8	10,185	-
2021	44,718	44,718	-	44,718	363,437	246,245	550.7	67.8	117,191	-
2022	46,060	46,060	-	46,060	328,869	253,525	550.4	77.1	75,344	-
2023	47,442	47,442	-	47,442	151,167	107,584	226.8	71.2	43,583	-

자료: 행정안전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완료 시 집행잔액·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및 보조사업 수입금을 반납하고, 행정안전부는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광역지자체가 관할 기초지자체의 정산반환액을 취합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추경 편성 지연 및 사업별 정산시기 상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산반납액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납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함.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미수납액 중 2014년 징수결정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도 2023년말 기준 반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 중에는 2017년 7월 국민안전처 통합 등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중복징수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 등도 있어 장기 미수납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주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장기 미수납액 현황]

(단위: 원)

최초 결의일자	납부자명	결의내용	최초납기일	징수결정 금액	미수납액	수납여부 (2024.6.기준)
2014-05-09	충청북도	201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의뢰	2014-12-26	15,068,400	15,068,400	중복징수로 삭제 완료
2014-09-26	광주 광역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광주 동구)	2014-10-31	157,463,040	157,463,040	중복징수로 삭제 완료
2015-12-07	충청남도	2014년 민방위분야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 발행 요청(충남)	2015-12-31	17,284,330	17,284,330	중복징수로 삭제 완료
2016-03-08	전라남도	재해대책비 집행잔액 반납(2012년 전남 완도)	2016-04-30	112,800,000	112,800,000	2024년 중 수납 예정
2017-11-14	경상남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원금)	2017-12-20	368,895,660	368,895,660	중복징수로 삭제 완료
2017-11-14	충청남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원금)	2017-12-20	203,290,770	203,290,770	중복징수로 삭제 완료
2017-11-14	전라남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원금)	2017-12-20	768,694,000	768,694,000	중복징수로 삭제 완료
2018-08-27	전남 진도군	10.3~6태풍풍랑강풍 피해복구 국고보조금 (재난지원금) 반납	2018-09-09	34,500,000	34,500,000	2024년 중 수납 예정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분기별 미수납 채권 회수계획 수립·지자체별 미납사유 및 납부계획 관리를 통해 반납을 독려하고, 미정산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보조

금 반납 독려를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2024년말까지 납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 관련 재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장기 미수납액 조속 반납을 통해 그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21][22]

---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 · 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 출>

6.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사업: 전용(증)을 통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추진 부적정

가. 개 요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사업은 자원봉사 관련 교육・행사 전반에 걸쳐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2억 5,600만원 중 12억 5,4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8%)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3년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2,561	12,561	-	976	13,537	13,509	-	28	13,527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280	280	-	976	1,256	1,254	-	2	196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이뤄진 것으로, 자원봉사 학술행사 지원・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자원봉사활동 교육 지원 등의 방식으로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임.

나. 검토의견

행정안전부는 2023년 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않은 행사 추진을 전용(증)을 통해 추진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정한 집행 방식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행위가 재발되

23) 일반회계-자원봉사활성화 지원(1141-302)(지방행정국)

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22일 9억 7,600만원을 동 사업의 일반용역비로 전용(증)하여 당초 예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봉사나눔을 위한 국민대통합 행사’를 추진하였음.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사업의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3. 11.22.)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1131-301)	210-01	211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141-302)	210-14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재원 마련
		210-02	7			
		210-05	26			
		210-16	21			
		250-02	38			
		260-01	40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1131-316)	210-01	60			
	공직선거관리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1132-300)	210-01	80			
		210-02	19			
		210-05	52			
	지방자치단체경 쟁력지원 (1139-307)	210-01	70			
		210-14	352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24]

2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이러한 집행행위는「국가재정법」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하고, 동법 제46조제3항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행사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한 부적정한 집행 행태에 해당함.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봉사 나눔을 위한 국민대통합 행사’ 역시 자원봉사 활동의 전국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로 동 사업 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행사의 사업계획서 상 참가자에 자원봉사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나 행사의 주된 목적이 자원봉사 홍보 내지 활성화라 보기 어렵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여겨짐. 특히 당초 동 사업의 예산 계획상 위 행사를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국가재정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을 통한 신규 행사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7.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실집행 부진 문제 등

가. 개 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가 연도별 1조, 10년간 사업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조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5]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1,000,000	1,000,000	-	-	1,000,000	1,000,000	-	-	1,000,000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 시행)에 따라 2022년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매년 1조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함.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이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는 목적재원의 성격을 지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초지원계정에 기금의 75%, 광역지원계정에 기금의 25%가 배분됨. 기초지원계정은 시·군·구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수·재정·인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배분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하며,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인구감소·균형발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이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이 이루어짐.

25) 일반회계-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균형발전지원국)

[지방소멸대응기금 하위계정 및 배분기준]

구분	배분대상	배분기준
광역지원계정 (25%)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90%)	산식에 따른 정액배분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10%)	
기초지원계정 (75%)	인구감소지역 89개(95%)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차등배분
	관심지역 18개(5%)	

주1) 인구감소지역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시・군・구 89개를 의미함
2)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첫째,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은 매년 1조원씩 기금으로 출연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고 있으나, 실집행이 저조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원계정을 제외하고 기초지원계정의 집행률은 20% 내외에 불과하여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남.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 집행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지자체수	사업건수	배분금액	집행액	
					집행금액	집행률
합계		122	554	996,648	376,992	37.8
광역지원계정		15	121	249,477	231,837	92.9
기초지원계정	소계	107	433	747,170	145,155	19.4
	감소지역	89	392	710,370	136,970	19.3
	관심지역	18	41	36,800	8,185	22.2

자료: 행정안전부

특히,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을 통한 사업들 중 ‘푸드플랜 저온체계 구축 사업’ 등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도 다수 존재함. 그 중 대구의 ‘서구 서대구 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 사업은 2022년에 교부된 3억원이 2023년 말까지도 전액 미집행되고 있음에도 2023년에 2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5억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어, 집행 점검·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여겨짐.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주요 사례]

(단위: 원)

지자체	사업명	예산액
대구	서구 유휴공간활용 청년복합문화공간 클러스터 조성	700,000,000
대구	서구 서대구 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	200,000,000
광주	광주청년 통합플랫폼 조성	250,000,000
울산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건립	1,247,387,000
경기	푸드플랜 저온체계 구축사업	242,923,500
강원	양양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	3,400,000,000
강원	강원남부지역 디지털 요양병원-ICT 통합 돌봄서비스 구축	1,700,000,000
전남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7,149,132,000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전액 미집행 또는 집행 부진 사업은 대부분 시설공사 사업으로, 행정절차 등 착공까지의 사업준비에 일정 기간 소요되어 집행이 부진한 것이고, 착공 이후 2024년 중 집행률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2년에 교부된 사업의 2023년 말 기준 실집행률이 평균 52.6%에 불과하고 2023년말까지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업도 존재하여 사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2023년에 교부되어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에서도 이와 같은 비효율적 집행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 집행 현황(2023년 말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지자체수	사업건수	배분금액	집행액	
					집행금액	집행률
합계		122	509	747,724	393,491	52.6
광역지원계정		15	109	187,124	182,900	97.7
기초지원계정	소계	107	400	560,600	210,591	37.6
	감소지역	89	359	532,800	202,268	38.0
	관심지역	18	41	27,800	8,323	29.9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지자체에 대해 사업 선정 및 교부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광역지원계정 출연금이 역내 기초자치단체들에게 단순교부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계정별로 배분기준이 상이함. 그 중 광역지원계정은 투자계획이 아닌 역내 인구감소지역 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한 산식[26]에 따라 배분됨. 그 결과 역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수와 인구감소 수준이 배분액에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됨.

즉, 광역지원계정 출연금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만 이루어질 뿐, 기초지원계정에 비해 환류체계가 미흡함.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배분액 규모]

(단위: 억원)

구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
2022	378	363	258	240	223	179	119	-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26	24	14	14	12	9	9	4
구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
2023	504	484	344	320	297	239	159	-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34	32	19	19	16	12	12	5

자료: 행정안전부

26)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 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2. 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도별 배분계수는 별표2와 같다..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9 \times \frac{A_i \times a1_i \times a2_i}{\sum(A_i \times a1_i \times a2_i)}$$

A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a1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a2_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1 \times \text{해당 시·도 배분계수}$$

그 결과, 광역지원계정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사업이 아닌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되는 사업들로 이뤄지게 됨. 실제 2022년과 2023년 집행 현황을 보면 기초지원계정과 달리 광역지원계정은 높은 실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별도의 사업이 추진되기 보다 대부분의 예산을 역내 기초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경향 때문임.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정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자체 수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집행액	실집행률
2022년	광역지원	15	187,154	163,510	87.4
	기초지원 (인구감소)	89	532,800	30,317	5.69
	기초지원 (관심)	18	27,800	105	0.38
2023년	광역지원	15	249,477	231,837	92.9
	기초지원 (인구감소)	89	710,370	136,970	19.3
	기초지원 (관심)	18	36,800	8,185	22.2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2023년 광역지원계정 추진 사업 중 대구의 ‘서구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지원’, ‘군위 청소년 가온누리관 조성’, 인천 ‘강화 와글와글 새시장 개최’, 광주 ‘동구형 마을복지관 건립’, 경기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등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배분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 사업의 집행실적이 주로 100%로 나타남.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광역계정의 일부를 출자하여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자본과 결합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 기금사업부터는 사업 유형을 분류하고 자체 사업을 권장하며 사업계획 심의 시 사전검토를 통한 환류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함.

광역지원계정을 두고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르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정 간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8.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 한국섬진흥원의 출연금 집행 부진 및 정산 부적절 문제

가. 개 요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한국섬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사업비 등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56억 2,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7)]

[2023년도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섬진흥원 지원	5,620	5,620	-	-	5,620	5,620	-	-	5,058

한국섬진흥원은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개발·지원하고, 연구·진흥·보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진흥원은 정부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됨.[28)]

---

27) 일반회계-한국섬진흥원 지원(1242-300)(균형발전지원국)

28)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3.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섬진흥원의 사업비의 실집행이 부진하여 출연금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출연금의 집행 및 정산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한국섬진흥원의 지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의 집행률이 57.0%에 불과함. 사업별로는 ‘섬관련 국내외 정책연구 및 정보구축’ 사업이 48.6%, ‘DB 및 정보 통계 플랫폼 구축’ 사업이 81.9%, ‘한섬원아카데미’ 사업이 53.8%, ‘홍보 및 교류 협력 운영’ 사업이 77.5%로 주로 정책연구 및 교육 사업의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한국섬진흥원 2023회계연도 지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	2023년 예산현액	2023년 결산	예산잔액	집행률
기관운영비	4,602	3,913	690	85.0
인건비	3,679	3,137	542	85.3
물건비	846	700	146	82.7
자산취득 및 운용	77	75	2	97.4
연구사업비	2,309	1,317	992	57.0
섬관련 국내외 정책연구 및 정보구축	1,450	705	745	48.6
DB 및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	243	199	44	81.9
한섬원아카데미	275	148	127	53.8
홍보 및 교류 협력 운영	342	265	77	77.5
소계	6,911	5,229	1,682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섬진흥원은 2022년 이월예산 우선 집행에 따라 2023년 출연금의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고, 정책 연구나 아카데미 운영의 경우 채용인원 지원자 미달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연구종료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 설명함.

한국섬진흥원의 2022년 및 2023년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22년에는 12억 3,700만원이 이월금(세계잉여금 및 이월예산)으로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45억 200만원이 이월금으로 발생해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매년 10억원 이상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섬진흥원의 실제 연내 집행가능예산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교부되었을 우려가 있음.

[2022년 및 2023년 한국섬진흥원 이월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내 용	금 액
2022년	**이월금 합계**			**1,237**
	세계잉여금	1,023	본예산기반영	700
			일반예산	323
	이월예산	214	일반회계	208
			반환금	6
2023년	**이월금 합계**			**4,502**
	세계잉여금	1,557	본예산기반영	711
			일반예산	844
			반환금	3
	이월예산	2,944	일반회계	143
			보조금회계	2,750
			수탁회계	51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출연금의 집행잔액은 보조금과 달리 반납의무가 없어, 기관 정관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섬진흥원의 기본재산에 전입되어 잔액과 이자수익이 차년도 기관 수입으로 넘어가게 됨. 이를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연내 집행가능한 출연금 연구사업비의 편성 및 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섬진흥원의 출연금 집행 부진 및 과다 이월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출연금의 집행 및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동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을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예산은 56억 2,000만원 전액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 및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출연금은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에 해당하고, 사업출연금은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함.

동 사업의 2023년 예산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 18억 5,000만원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출연금 성격임에도 기관운영출연금으로 편성되고 있음.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 2023년 예산 편성근거]

세사업 명	편성 근거
한국섬진흥원 지원	○ 5,620백만원 - 인건비 (3,105,000천원) · 원장 1명, 정규직 34명, 기간제 3명 - 운영비 (632,000천원) · 일반수용비(244,000천원), 공공요금(212,000천원), 특근매식(8,000천원), 임차료(38,000천원), 유류비(8,000천원), 복리후생비(50,000천원), 여비(18,000천원), 업무추진비(20,000천원), 부서운영(34,000천원) - 사업비 (1,850,000천원) · 섬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1,300,000천원), 국내·외 교류협력 운영(200,000천원), 한섬원 아카데미(250,000천원), 섬 통계 DB 플랫폼 구축(100,000천원) - 자산취득비 (33,000천원) · 보안장비 구축 1식 33,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은 그 집행잔액 처리 방식이 상이하여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관운영출연금은 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기관 세입에 계상할 수 있고, 사업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의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도 사업출연금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비목전환을 검토하도

록 하고 있는 등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 간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성격에 부합하도록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을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9.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사업: 일부 과제 실집행 부진 문제 등

가. 개 요

‘전자정부지원 사업추진’ 사업은 다수 부처 대상 공통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는 등 핵심 전자정부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70억 9,100만원 중 450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8%)되고, 20억원이 불용되었음.[29)]

[2023년도 전자정부지원 사업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자정부지원	49,391	49,391	-	-	49,391	47,391	-	2,000	12,589
전자정부지원 사업추진	47,091	47,091	-	-	47,091	45,091	-	2,000	12,014

동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출연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관련 7개 과제에 대해 지원하였음.

나. 검토의견

첫째, 전자정부지원 사업추진 사업은 일부 과제에서 계약 지연 또는 사업 취소로 실집행이 부진하였는데, 사업 선정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출연사업에 대해 사업지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추진 사업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단계의 실집행률은 54.7%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이는 동 사업으로 추진된 과제들 중 일부 과제의 계약 지연 또는 사업 취소로 집행이 부진했기 때문임.

29) 일반회계-전자정부지원(정보화)(2031-500)(디지털정부실)

[2023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추진 사업 과제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주관기관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23.12월)	계약기간	부진사유
합 계			47,091	45,091	25,755		
1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2차**	**국민권익위원회**	**11,428**	**11,428**	**-**	**'24.4.3.~10.30.**	**계약지연**
2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 3차	행정안전부	8,433	8,433	6,660	'23.9.12.~'24.5.9.	-
3	소상공인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2차	중소벤처기업부	9,522	9,522	8,725	'23.6.16.~12.23.	-
4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 구축 2차	외교부	8,210	8,210	8,037	'23.6.12.~12.24.	-
5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4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753	3,753	2,332	'23.12.6.~'24.6.3.	-
6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국가기록원**	**3,745**	**3,745**	**-**	**'24.2.13.~9.10.**	**계약지연**
7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대통령실**	**2,000**	**-**	**-**	**-**	**주관기관 요청에 따른 사업취소**

자료: 행정안전부

이 중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2차' 과제 및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과제는 2022년 기존 과제에서부터 지연되어 실집행이 부진하였던 사업으로, 과제 선정 및 출연금 교부 과정에서 2023년 과제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짐.

특히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과제는 2022년 당시에도 2022년 11월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하여 2022년 출연금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2022년 출연금이 2023년에 집행되고 2023년 출연금이 2024년에 집행되어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였음.

또한,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과제는 관련 법안(「국가사이버안보법

안」) 법안심사 보류로 인해 2023년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관기관에서 사업취소를 요청하여 취소되게 되었음.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소관 위원회에 2021년 11월 5일 회부되어 2022년 2월 4일 상정된 이후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고 있던 상태였고,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통과될 것으로 가정하고 과제 선정 및 출연금을 교부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30]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제도적·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평가 항목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가 제정되지 않은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취소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추진 여건이 미흡함에도 선정하여 실집행 부진이 발생한 문제가 있음.

[2023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대상사업(과제) 선정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전자정부 정책 부합성	• 전자정부지원사업 적합성 -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기반 조성사업 -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디지털정부 기본계획, 국정과제 등과의 연계성 등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 목적 및 2023년 사업내용의 구체성 •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적절성 •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 • 투자대비 성과, 비용 절감(정량적 효과)
제도적·기술적 실현 가능성	• 법제도적 근거, ISP 실시 등 사업추진 여건 •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 추진 일정의 적절성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 국민 편의성 증진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출연과제 선정 시 사업 추진 여건 마련 여부와 추진 일정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출연사업에 대해 사업지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0) 근거법 미제정에 따른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과제 취소에 대해서는 이하 341쪽에서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였음.

둘째, 전자정부지원 사업추진 사업은 근거법안 제정을 전제로 하는 과제를 선정한 결과, 법적 근거 미비로 과제수행 중 취소되어 동 사업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근거법령 마련을 전제로 하는 과제 추진을 지양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을 통해 추진한 2023년 과제 중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과제(예산 20억원)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법안심사 보류로 인해 2023년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관기관에서 사업취소를 요청하여 취소되게 되었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2021년 11월 5일 회부되어 2022년 2월 4일 상정된 이후 처리되지 않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과제 선정 시점에 계류되고 있던 상태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제하고 과제 선정 및 출연금을 편성·교부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31)]

재정사업의 경우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편성되어야 함에도, 법령 제·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 심의 효율성 저해 및 국회 입법권 제한 소지도 있음.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매뉴얼」 상에도 사업범위 산정 시 선행사업 추진 결과·기획재정부 편성지침·국회 예산 및 결산 심의 결과 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한 과제 선정 시 법률 제정 완료 여부를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할 것임. 결과적으로 법률 미비로 과제가 취소되어 다른 범정부 정보화 과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기회비용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동 사업에 대한 과제 선정 시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한 과제를 선정하여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1)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매뉴얼」에 따르면, 전문기관(NIA)과 행정안전부는 차년도 지원사업 과제를 발굴한 이후 차년도 예산요구안 및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는 절차로 되어 있음.

10.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사업: 연례적인 사업 실적 부진 문제

가. 개 요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노후 유·도선을 신규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정부가 이자 비용의 일부(연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56.7%)되고,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32)]

[2023년도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7,692	7,692	-	-	7,692	7,531	-	161	2,692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150	150	-	-	150	85	-	65	150

나. 검토의견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 및 사업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 적정한 사업방식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0년부터 노후 유·도선의 선박 대체 건조 자금에 대한 금리를 지원해 주고 있음. 2020년부터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집행 및 사업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지원건수의 누적으로 집행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신규 지원 선박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32) 일반회계-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2631-301)(안전예방정책실)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사업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지원내역		
					(누적)건수	선명	비고
2020년	100	3	97	3.0	1	도담삼봉호(109톤)	신규
2021년	250	19	231	7.6	2	도담삼봉호(109톤)	계속
						서동호(24톤)	신규
2022년	150	35	115	23.3	6	도담삼봉호(109톤)	계속
						서동호(24톤)	
						소양2호(35톤)	신규
						수운1호(35톤)	
						충주9호(90톤)	
						청풍1호(290톤)	
2023년	150	85	65	56.7	7	도담삼봉호(109톤)	계속
						서동호(24톤)	
						소양2호(35톤)	
						수운1호(35톤)	
						충주9호(90톤)	
						청풍1호(290톤)	
						청풍1호(100톤)* ※특례보증 시행	신규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도선 업체 경영 악화로 금융기관 대출 심사 통과가 어려워 지원 실적 및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특례보증제도 실시 및 지원실적 증가 추세로 집행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다만 2023년에는 신규 사업자의 하반기 선정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이라 설명함.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2년 7월부터 실시된 특례보증제도와 선령 20년 초과 도래 선박 수 증가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여전히 2023년 신규 지원 선박이 1척에 그쳐 사업 수요 증가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보여짐.

특히 이차보전사업에 선정된 이후 포기하는 비율이 2020년~2023년 평균 63.2%인 점을 고려할 때, 선정 이후 포기되는 사유를 고려한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 행정안전부는 영세한 노후 유·도선 사업자를 고려해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나, 실제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경우가 2023년 말까지 1건에 불과하여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사업 선정 및 포기 현황]

(단위: 척, %, 백만원)

연도	신청 (A)	선정 (B)	선정률 (B/A)	포기 (C)	포기율 (C/B)	신규지원 사업(척)	누적 사업(척)	지원금 (백만원)
합 계	**19**	**19**	**100.0**	**12**	**63.2**	**7**	**7**	**142**
2020	6	6	100.0	5	83.3	1	1	3
2021	4	4	100.0	3	75.0	1	2	19 (신규 3)
2022	6	6	100.0	2	33.3	4	6	35 (신규 4)
2023	3	3	100.0	2	66.7	1	7	85 (신규 3)

자료: 행정안전부

그 결과 동 사업은 당초의 경과조치 기간이 도래(2023년 2월 3일)하여 다량의 노후 유·도선이 폐선되기 전에 이들의 대체 건조를 촉진하여 운항 안전을 도모하고 영세 업자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집행 부진 및 사업 성과 저조로 당초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례적으로 집행 및 사업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 당초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한 사업방식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2020년 및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바 있음.[33] 행정안전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2022년 7월 특례보증제도 실시 및 이차보전금 계속지원으로 집행률이 개선될 것이고 동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지원대상 확보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입장

33)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사업 관련 결산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2020	(47) 노후 유도선 이차보전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국가안전대진단 실효성 확보 필요	○ 행정안전부는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홍보와 선령제도의 도입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재무 상담을 돕는 한편, 대출 준비 서류 작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제도개선
2022	(31) 노후 유·도선 대체건조 촉진방안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노후 유·도선 대체건조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자료: 행정안전부

이나, 여전히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업포기율이 높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1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사업의 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 부진 문제 등

가. 개 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 사업(국비 10%, 지방비 10%)으로, 2023년 예산현액 12억 3,500만원 중 5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43.2%)되고, 7억 100만원은 불용되었음.[34)]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4,811	4,811	-	△232	4,579	3,772	14	793	5,382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2,467	2,467	-	△232	2,235	1,534	-	701	2,717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1,467	1,467	-	△232	1,235	534	-	701	1,467

나. 검토의견

첫째,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수요 부족 및 연말 보조금 교부로 2023년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는데, 향후 실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43.2%에 불과한데, 이는 과다한 수요예측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동 내내역사업은 2022년 수요 부족으로 전액 타 사업으로

34) 일반회계-지진대비 인프라 구축(2731-307)(자연재난실)

전용된 것에 이어, 2023년에도 당초 30개소 지원 목표와 달리 서울과 인천 2개소 지원에 그쳤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수요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이나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 필요성이 확인된 건축물 위주로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권역별로 방문설명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내진보강 참여 유인책으로 세제혜택과 같은 별도 인센티브 및 국고보조율 확대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4년 사업 역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수요안 10개소만 존재하고 실제로 선정되어 설계나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없어,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에 3~6개월 가량 소요됨을 고려할 때 2024년 예산 역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수요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향후 사업대상자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 추진 시 실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2023년 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이 일부 원인행위 없이 이월된 문제가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는 집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에 교부된 3,400만원이 전액 이월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합계	1,467	1,467	534	534	-	534	500	34	-	93.6
서울	500	500	500	500	-	500	500	-	-	100.0
인천	34	34	34	34	-	34	-	34	-	0.0

자료: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에 교부된 예산 3,400만원이 전액 이월된 것은 2023년 11월 중 대상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가 이뤄졌는데, 대상 건물의 내진보강공사가 2024년 4월에야 이뤄졌기 때문임.

인천광역시에 교부된 예산은 내진보강 공사비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2023년 12월말까지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액 이월되었는 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반하여 지출원인행위가 없음에도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사업비가 이월된 문제가 있음.[35][36]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대상 건물 선정 후 2023년 8월부터 내진보강설계를 하여 일정이 지연되었고, 2023년 12월 중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교부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및 제17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연말에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가 있음.[37]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는 집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3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36) 실제 인천광역시의 내진보강 공사 계약은 2024년 2월 입찰공고 후 3월 말 체결되었음.

3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재난대책비 사업: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등

가. 개 요

‘재난대책비’ 사업은 재난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긴급생활안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84억 5,300만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38)]

[2023년도 재난대책비(보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난대책비(보조)	150,035	150,035	-	18,418	168,453	168,453	-	-	600,040

나. 검토의견

첫째, 2022년 교부된 재난대책비 중 2,119억 3,700만원이 2024년으로 재이월되고 있는 등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친 집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취지가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임을 고려하여 피해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재난대책비 사업은 연례적으로 당해연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2회계연도에 걸친 집행이 발생해왔음. 2021년 교부된 재난대책비의 경우 당해연도에 42.1%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되었고, 2021년 교부액 중 29.0%는 재이월되어 2023년까지 집행되었음.

38) 일반회계-재난대책비(보조)(재난복구지원국)

[2021년 재난대책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1년	842,468	-	354,373	487,147	948	42.1
2022년 (이월)	-	487,147	237,257	244,478	5,412	48.7
2023년 (재이월)	-	244,478	222,631	-	21,847	91.1
합계	842,466		814,261		28,207	96.7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교부액 역시 당해연도에 32.2%만이 집행되는 데 그쳤고, 2023년에는 이월되었던 4,229억 9,500만원 중 47.4%만 집행되어 2022년 교부액 중 33.5%는 재이월되어 2024년까지 집행되고 있음.

[2022년 재난대책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2년	632,117	-	203,806	422,995	5,316	32.2
2023년 (이월)	-	422,995	200,335	211,937	10,724	47.4
합계	632,117		404,141		16,040	63.9

자료: 행정안전부

매년 당해연도 실집행이 낮게 나타나고 이월과 재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태풍·폭우 등 대규모 재난이 하반기에 주로 발생하여 보조금 교부 자체가 늦게 이뤄지고, 대규모 공사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2년 재난대책비 중 2023년으로 이월된 금액 중 공공시설 복구공사 관련 예산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음. 8. 8.~17. 호우 재난지원금 1억 4,300만원, 제11호 태풍 힌남노(9. 5.~6.) 재난지원금 68억 9,300만원,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3. 4.~13.) 생활안정지원금 16억 7,200만원, 이태원 사고(10. 29.) 생활안정지원금 4억 400만원이 2023년으로 이월되어 집행되었음.

[2022년 재난대책비 중 2023년 이월사업 유형별 이월액]

(단위: 백만원)

구분	재난명	사업내용	이월액
합 계			422,995
자연재난	소 계		416,639
	8.8.~17. 호우	**재난지원금**	**143**
		공공시설 복구비	195,549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	**6,893**
		공공시설 복구비	214,054
사회재난	소 계		6,356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생활안정지원금**	**1,672**
		공공시설 복구비	4,280
	이태원 사고	**생활안정지원금**	**404**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의 취지가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교부된 재난대책비가 2023년까지 계속 이월되고 있는 등 연례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쳐 집행되고 있는 점, 2022년 교부된 재난대책비 중 공사와 무관한 재난지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피해가 장기화되어 사업 취지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관리 권한 등을 고려하여 집행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39]

39)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둘째, 2023년 발생한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 중 일부(5,402억 8,300만원)는 이전과 달리 예비비로 집행되지 않고 2024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2024년 1월 중 교부되었는데,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적정한 예산편성방식을 일관되게 택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태풍·폭우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재난대책비를 집행해왔음. 이는 재난 피해규모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워 예비비적 성격임을 감안한 집행방식이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3년 발생 소요가 있던 재난대책비 중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등 대규모 공사비 5,402억 8,400만원에 대해 2023년 예비비를 통해 집행하지 않고, 2024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24년 1월 중 전액 교부하였음. 참고로, 2023년 예비비 집행 결과 3조 2,588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3년 예비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을 것임.

[2023년 재난에 대한 2023년 및 2024년 교부액]

(단위: 백만원)

구분	복구비 소요	2023년 교부액			2024년 교부액
		재난대책비	이·전용등	계	
6.27~7.27 호우, 제6호 태풍 카눈	690,893	132,190	18,419	150,609	540,284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은 방식이 일정 부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나, 하반기에 발생할 재난 피해에 대한 차년도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점, 지금과 같이 3회계연도에 걸친 집행 시 2023년 재난의 복구 완료가 2027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 집행과정에서의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음.

실제 2024년 교부된 2023년 재난에 대한 공사비 중 2024년 6월말 기준 39.7%만이 집행되고 있고, 전북·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집행률이 10%대로 매우 저조하여 재난 복구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음.

[2024년 재난대책비 중 2023년 재난에 대한 공사비 실집행 현황(2024. 6월 기준)]

(단위: 백만원, %)

지역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합계	**540,283**	**214,406**	**39.7%**
대구	1,731	1,012	58.5%
세종	11,718	4,317	36.8%
충북	127,619	34,733	27.2%
충남	111,283	24,505	22.0%
전북	23,562	3,524	15.0%
경북	255,205	145,213	56.9%
강원	9165	1,102	12.0%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재난대책비의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한 목적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 만큼, 재난 복구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3.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지원 사업: 클라우드 전환 실적 저조 문제

가. 개 요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지원’ 사업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42억 3,900만원 중 342억 3,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40]

[2023년도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112,284	112,284	2,123	△758	113,649	110,097	3,462	90	151,814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	106,630	106,630	2,120	△758	107,992	104,593	3,394	5	146,377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34,239	34,239	-	-	34,239	34,239	-	-	73,932

나. 검토의견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지원 사업은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실제 클라우드 전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동 사업의 2023년 출연기관 단계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출연금

40) 일반회계-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2036-507)(디지털정부실)

을 포함한 예산현액 653억 5,300만원 중 414억 9,900만원이 집행(실집행률 63.5%)되는데 그침.

[2023년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34,171	34,171	34,171	34,171	31,182	65,353	41,499	15,268	115	63.5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 추진 실적 역시 부진한데, 행정안전부는 2023년 중 280개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 말 기준 28개가 완료(목표 대비 10%)되고, 256개는 전환 추진 중이었음.

동 사업은 당초 '2021년~2025년 클라우드 전환추진계획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실제 전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실제 전환 실적 및 집행이 부진해왔음.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 상황과 최근 클라우드 기술변화(네이티브 및 SaaS)를 반영하여 기존 클라우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도록 2023년 10월 전환추진계획을 변경하였음. 이러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임.

그 결과 2023년 목표한 전환물량의 10%만 실제 전환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4년 목표 물량 역시 2025년까지 지속될 전망임.[41]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클라우드 전환 비용 및 전환 이후 이용료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전환의 지연으로 전환 이후 이용료까지 순차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됨.[42]

동 사업은 2021년~2022년 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클라우드 전환 실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실적이 부진해 2022년 및 2023년 예산이 대규모 감액되었던 바 있는데, 2023년 중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 수립 시 이와 같은 기존 사업 추진 과정의 한계를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할 필요가 있음.

41)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설계단계 및 구축단계로 구성된 사업구조적 한계로 전환실적이 부족하였고, 2023년 목표 물량에 대해서는 2025년 2월까지 조속히 전환을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42) 실제 2024년 예산 국회 심사 당시 클라우드 전환 실적 부진에 따른 2024년 이용료가 감액된 바 있음.

[2021년~2025년 클라우드 전환추진계획 로드맵 및 2023년까지의 사업실적]

(단위: 개,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당초 계획	시스템 수	430	2,149	3,169	1,892	2,369	-	-
	예산	570	2,402	2,351	1,239	2,179		
⇩								
변경 계획	시스템 수	302	1,590	2,311	2,295	2,127	1,384	
	예산	570	1,787	1,626	2,591	2,799	2,406	800
실제 전환	시스템 수	302	1,590	290	-	-	-	-
	예산	570	1,787	342	-	-	-	-

주) 2023년에는 290개 시스템의 전환이 추진됨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연례적 사업 지연 및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향후 사업계획(로드맵) 수립 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4.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의무 소홀 문제

가. 개 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도심지 내 저지대의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강수량을 일시 저장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784억 9,7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43)]

[2023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우수저류시설 설치	78,497	78,497	-	-	78,497	78,497	-	-	71,544

동 사업은 시·군·구에서 시·도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제출하면 행정안전부가 민간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국고보조율 50%)을 교부하여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로 추진됨. 2023년 사업을 통해서는 28개소(신규 8, 계속 13, 마무리 7)에 대한 설치사업이 추진됨.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추진절차]

우수유출저감 대책 수립	⇒	5개년계획 수립 (전년도 10월)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1~2월)	⇒	신규지구 선정 심의회 운영 (3월)	⇒	다음 연도 신규지구 선정 (4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43) 일반회계-우수저류시설 설치(2635-301)(자연재난실)

나. 검토의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의무 소홀로 일부 지역에서 실집행이 부진함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의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2023년 예산은 전액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실집행은 646억 2,500만원 집행(실집행률 71.8%)에 그침.

[2023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행정안전부			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78,464	78,464	78,464	78,464	11,544	90,008	64,625	25,050	332	71.8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통상 3~5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구별 일부 사업에서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음. 특히 강원 삼척시 남양2 지구는 교부액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음. 실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주로 실시설계 보완·사업부지 보상 및 타당성 재조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지구에서 실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2023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중 주요 실집행 부진 사업]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사업명 (지구)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서울 관악구	신림 재정비	1,000	-	1,000	590	410	-	59.0
부산 동래구	수민	6,000	4,551	10,551	1,128	9,423	-	10.7
광주 북구	문흥동	3,000	-	3,000	1,007	1,993	-	33.6
강원 삼척시	남양2	500	-	500	-	500	-	0.0
전북 전주시	학소	3,000	-	3,000	446	2,554	-	14.9
경북 김천시	평화	3,000	-	-	1,467	1,533	-	48.9
경남 사천시	청널	4,000	800	4,800	1,413	3,337	-	29.4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사업명(지구)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경남 합천시	초계	4,700	261	4,961	3,403	1,553	-	68.6
제주 제주시	와흘2	2,113	-	-	205	1,908	-	9.7
제주 서귀포시	남원1	1,308	-	-	517	791	-	39.5

주) 실집행액 및 실집행률은 연도말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및 제17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교부 시 실현가능성·연내 집행가능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2차례 이상에 걸쳐 교부하여야 함. 이는 교부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계획서 상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1차례에 전액 교부하거나, 짧은 간격으로 2차례에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상황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지침을 준수한 문제가 있음. 실집행 부진 사업 중 광주 북구의 문흥동 지구는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사업 지연, 부지사용 관련 협의 등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2차례에 나누어 교부하지 않고 1차례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불가한 지구의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타 지구 사업비로 배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노력을 하였음. 그러나, 보조금 교부 이전에 이월액이나 사업 추진 현황을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었고, 사업비 조정으로 증액교부받은 지구 중에도 2023년 연도말 기준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난 지구(제주 서귀포시 남원1 지구) 가 있어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이 보조금 교부 및 점검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결과, 당해연도 사업비의 실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게 됨. 동 사업은 통상 3년~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만큼, 이러한 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은 보조금 재이월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침수피해 예방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시 연내 집행가능성·실현가능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는 차년도 예산 충당을 위한 이월 부적절

가. 개 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창업지원, 일 경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993억 5,300만원 중 1,991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44)]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99,353	199,353	-	-	199,353	199,167	115	71	75,650

동 사업은 ① 지역혁신형, ② 상생기반대응형(②-1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 ②-2 창업청년 일자리창출지원형), ③ 지역포용형, ④ 지역정착지원형 4가지 유형으로 청년일자리를 지원함.

4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3131-303)(균형발전지원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유형]

구분	지역혁신형 (신규 1유형)	상생기반대응형(신규 2유형)		지역포용형 (신규 3유형)	지역정착지원형 (기존 1유형)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	창업청년 일자리창출지원형		
① 사업 대상					
연령	만 39세 이하				
참여대상	미취업 청년(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거주(사업별 탄력적 운영 가능)				
② 사업 내용					
취창업분야	지역경제구조 변화 대응, 미래 신산업·지역뉴딜 지역특화·혁신 연계 직무 분야 일자리(관련 연구소·인증기업 등 우대)	지역기반이 약한 지방소멸위기 지역 내 청년창업	지역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창업청년 후반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연계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역사회 안전망 기여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지원기간	1년+1년 (+1년)	1년+1년 (+1년)	1년 (+1년)	1년 이내	2+1년 이내
지원내용	취업(인건비, 직무교육·자격증 취득 등 지원) 1년 지원 + 지역거주, 계속근무시 1년 지원 (+3년차 참여 청년 대상 정규직 유지(전환) 시 정착 인센티브 지원)	신규창업지원, 인큐베이팅 1년 + 창업 성공시 성장지원 1년 (+3년차 지역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창업청년 성장지원 (7년이내 지역창업청년) 1년 (+2년차 지역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취업지원(인건비, 직무교육·자격증 취득 등 지원) 1년 지원	취업지원(인건비, 직무교육·자격증 취득 등 지원) 2년 이내 지원 (+3년차 참여 청년 대상 정규직 유지(전환) 시 정착 인센티브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4년 감소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2023년 예산 중 370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이월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2023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310억 8,900만원 중 1,518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5.7%)되고 370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6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행정안전부			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198,558	198,558	198,558	198,558	32,531	231,089	151,870	37,047	9,674	65.7

자료: 행정안전부

실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신규채용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체채용 수요로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임. 또한 이월된 370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이 예상 소요액 대비 적게 편성(2024년 예산액 752억 1,100만원)되면서 일시적으로 대체채용을 중단한 뒤 그에 따른 2023년 예산 집행잔액을 이월하였다고 설명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등에 한해 이월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45)]

4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동 사업에서 차년도로 이월된 370억 4,700만원의 경우 별도 지출원인행위 없이 단순히 차년도 예산소요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월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반하는 집행행위로 여겨짐.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부터 대체채용절차가 재개되어 채용공고 등이 이뤄졌고, 채용자의 실제 근무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되는 정착 인센티브 등이 있어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3호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실제 근무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되는 인센티브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체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채용 계약행위 등의 지출원인행위가 필요했을 것임.[46] 그러나 2023년 12월까지 대체채용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중 충청북도의 경우 공고인원 43명 중 14명에 대해서만 채용이 이뤄졌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공고인원 65명 중 50명에 대해서만 채용이 이뤄져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사업비까지 일괄적으로 이월된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이 차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여 이월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행위는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감액편성된 것을 보전하는 행위로 부적절하고,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집행행위로 여겨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여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하여 우회적으로 사업비를 증액 집행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는 지출원인행위에 대해 ‘계약 등’으로 보고 있음.

16.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신규): 사업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문제 등

가. 개 요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섬을 대상으로 2023년~2027년 5년간 기초인프라(식수시설・전력시설・접안시설 및 기타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사업(보조율 70%)으로, 2023년 예산현액 35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7)]

[2023년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섬 발전 협력사업	10,519	10,519	-	-	10,519	10,519	-	-	10,883
작은 섬 공도방지	3,500	3,500	-	-	3,500	3,500	-	-	3,150

나. 검토의견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지연으로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사업의 순차적 지연 가능성이 있어 사업 집행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3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교부액 35억원 중 14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40.3%)됨에 그침.

4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섬 발전 협력사업(1241-300)(균형발전지원국)

[2023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3,500	3,500	3,500	3,500	-	3,500	1,410	2,059	31	40.3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동 사업의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5개년(2023년~2027년) 계획」이 2023년 5월에야 확정되고, 이후 예산 교부 등을 시작하였기 때문임. 실제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기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2023년 12월에서야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존재함. 그 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편성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실집행이 부진하게 되었음.

[2023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집행부진 사유(실집행률 70% 미만 기준)]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섬 명	예산 (국비)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3년 집행부진사유
경북 울릉	죽도	210	103	49.0	동절기 해상기상악화로 인한 공사일시중지 (2023.11.~2024.5.)
경남 통영	납도	210	37	17.6	예산 편성 지연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착수 지연
경남 사천	별학도	70	14	20.0	예산 편성 지연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착수 지연
전북 군산	죽도	175	41	23.4	수도시설 점사용 관련 협의 지연
전북 고창	외죽도	140	32	22.9	외죽도 패총 유적지에 따른 문화재 시굴 및 표본 조사 시일 소요
전남 고흥	대옥대도	105	18	17.1	예산 편성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3.11.)
전남 고흥	수락도	105	18	17.1	예산 편성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3.11.) 및 인허가용역 착수(2024.4.)
전남 고흥	진지내도	175	30	17.1	예산 편성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3.11.) 및 인허가용역 착수(2024.4.)
전남 고흥	첨도	140	23	16.4	예산 편성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3.11.)
전남 완도	대제원도	175	47.7	27.3	정규선이 다니지 않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물때 작업 추진으로 지연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섬 명	예산 (국비)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3년 집행부진사유
전남 완도	양도	140	57.4	41.0	2023년 관급자재 미집행으로 2024년 1분기 집행 완료
전남 완도	장도	70	21.5	30.7	2023년 관급자재 미집행으로 2024년 1분기 집행 완료
전남 완도	죽굴도	70	17.7	25.3	2023년 관급자재 미집행으로 2024년 1분기 집행 완료
전남 완도	초완도	210	85	40.5	현장 주변 어업활동(매생이 양식 등)으로 작업기간 지연
전남 완도	허우도	175	47.7	27.3	연약지반 침하에 따른 공사 지연
전남 진도	독거혈도	140	49	35.0	공사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공원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전남 진도	소성남도	140	78	55.7	공사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공원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전남 진도	탄항도	70	13	18.6	공사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공원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자료: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및 제17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교부 시 실현가능성・연내 집행가능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2차례 이상에 걸쳐 교부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사업계획 확정 지연 및 지방자치단체 내 자금 확보 지연 등에 따라 하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교부한 결과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행정안전부는 2023년 예산의 2024년 4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80.1%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나, 동 사업의 5개년 사업계획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구축 사업이 주를 이루는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다년도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사업의 순차적 지연 가능성이 있어 사업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17.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사업(신규): 시범사업 지연에 따른 순차적 사업 지연 우려

가. 개 요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이전 지자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 4,250만원을 집행(집행률 71.3%)하고 3,7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0만원을 불용하였음.[48)]

[2023년도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발전활성화	5,226	5,226	697	2	5,925	5,740	37	148	9,928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200	200	-	-	200	142.5	37.3	20.2	350

나. 검토의견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6개월 가량 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 사업까지 순차적으로 지연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3년 중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 컨설팅 연구용역을 위해 일반연구비(260-01목)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범사업 성격의 2023년 사업의 지연으로 2024년 사업까지 순차적으로 지연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음.

4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발전활성화(1231-303)(균형발전지원국)

동 사업은 민간기업 이전 유치를 희망하거나 완료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중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컨설팅 대상 선정 방법 및 컨설팅 분야 확정 등 연구용역 방향성 설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 6월에야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현황]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023. 10.~12.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2023. 12. 27.	연구용역 착수보고
2024. 3.	대상 지자체 선정
2024. 5.~6. (예정)	1차~3차 컨설팅
2024. 6. (예정)	연구용역 결과보고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와 같은 컨설팅 대상 및 분야 등 방향성에 대한 설정은 사업계획 수립 시 결정이 완료되었어야 하는 부분으로, 방향성 설정에 따른 사업 지연은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짐.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동 사업으로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 2024년 중에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기 위한 예산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3년 사업이 2024년 6월 종료 예정이고, 이후 2023년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 및 보완을 거쳐 2024년 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점에서 2024년 사업 역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사업에 대한 수요를 미리 조사하여 2023년 사업 종료 이후 곧바로 2024년 사업을 실시하여 2024년 중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2023년 사업에 대한 보완에도 일정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 방향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과다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539억 900만원(121.0%)이 많은 1조 4,625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38억 1,500만원(11.9%)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079,654	1,079,654	1,338,751	259,097	1,208,657	1,208,657	1,462,566	253,909	123,815
총수입	1,079,654	1,079,654	1,338,751	259,097	1,208,657	1,208,657	1,462,566	253,909	123,815

문의 : 박세경 예산결산조사관 sg.park@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473억 3,500만원(△1.2%)이 적은 12조 3,421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72억 8,500만원(2.5%)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2,289,417	12,260,819	12,044,818	△216,001	12,489,438	12,489,438	12,342,103	△147,335	297,285
총지출	12,289,417	12,260,819	12,044,818	△216,001	12,489,438	12,489,438	12,342,103	△147,335	297,285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2,086억 5,700만원으로, 2조 7,436억 3,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4,625억 6,600만원이 수납(수납률 53.3%)되고 50억 1,9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1조 2,760억 5,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125,327	1,125,327	-	1,125,327	2,658,322	1,377,276	5,019	1,276,026
책임운영특별회계(경찰병원)	83,330	83,330	-	83,330	85,315	85,290	-	25
- 손익계정	80,320	80,320	-	80,320	81,974	81,949	-	25
- 자본계정	3,010	3,010	-	3,010	3,341	3,341	-	-
합 계	1,208,657	1,208,657	-	1,208,657	2,743,637	1,462,566	5,019	1,276,051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경찰청 세출예산현액은 12조 5,073억 9,600만원으로, 이 중 12조 3,721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256억 9,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95억 6,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2,401,341	12,401,341	17,922	-	-	12,419,263	12,286,312	25,662	107,289
책임운영특별회계(경찰병원)	83,330	83,330	36	-	-	83,366	81,059	35	2,272
- 손익계정	80,320	80,320	36	-	-	80,356	78,277	35	2,044
- 자본계정	3,010	3,010	-	-	-	3,010	2,782	-	22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767	4,767	-	-	-	4,767	4,767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767	4,767	-	-	-	4,767	4,767	-	-
합 계	12,489,438	12,489,438	17,958	-	-	12,507,396	12,372,138	25,697	109,562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경찰청 자산은 전년 대비 3,918억 1,400만원이 증가한 17조 8,131억 6,0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유동자산이 922억 6,5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2,905억 8,6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71억 6,400만원 증가한 3,951억 2,300만원으로, 이는 장기충당부채가 151억 8,400만원 증가하고 기타비유동부채 308억 4,500만원의 증가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446억 5,200만원이 증가한 17조 4,180억 3,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경찰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4,79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8억 5,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3조 8,261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38억 3,8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경찰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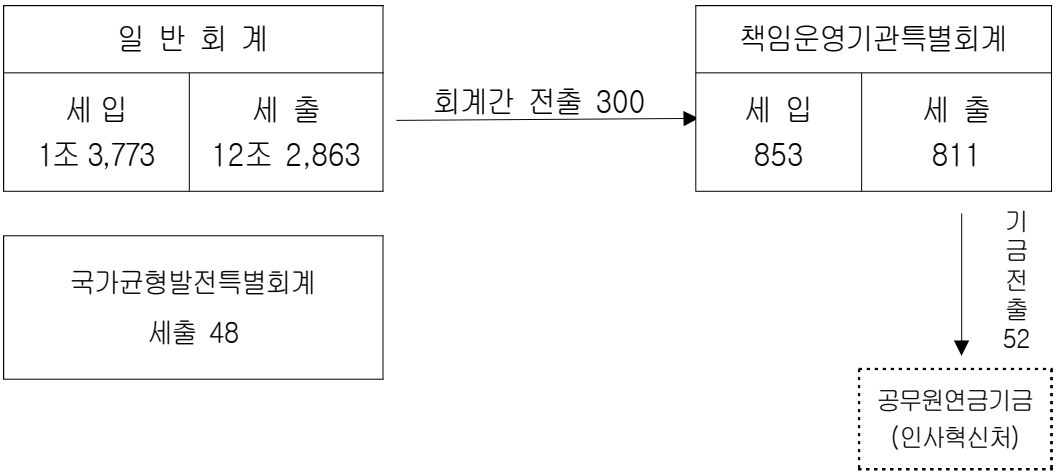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7,813,160	17,421,346	391,814	2.2
		유동자산	1,308,108	1,215,843	92,265	7.6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16,367,822	16,077,236	290,586	1.8
		무형자산	98,980	90,549	8,431	9.3
		기타비유동자산	38,250	37,717	533	1.4
	부 채		395,123	347,959	47,164	13.6
		유동부채	49,693	42,176	7,517	17.8
		장기차입부채	62,556	68,939	△6,383	△9.3
		장기충당부채	104,738	89,554	15,184	17.0
		기타비유동부채	178,136	147,291	30,845	20.9
	순자산		17,418,038	17,073,386	344,652	2.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479,560	1,581,419	△101,859	△6.4
	재정운영순원가		13,826,382	13,462,477	363,905	2.7
	재정운영결과		13,826,148	13,462,310	363,838	2.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경찰청 결산은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경찰청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경찰청은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엄정한 법질서 확립,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를 전략목표로 총 17개 프로그램, 43개 단위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경찰청은 2023년도 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않은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을 이·전용 등을 통해 추진하여「국가재정법」제45조 및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집행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태료 세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데, 경찰청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및 과태료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과태료 수납률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유류비를 실제 사용물량 및 단가 대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데, 향후 현실적 물량 및 단가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 이·전용 등을 통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추진 문제

가. 개 요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것으로, 경찰청은 청년인턴제도 운영을 위해 수사지원 사업, 지능·경제범죄 수사 역량강화 사업, 외사경찰활동 사업 등 16개 사업의 일용임금(110-04목)으로 경찰청에서 채용하는 청년인턴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였음.

[2023년도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16개) 일용임금(110-04목)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	-	-	215	215	202	-	13	-
수사지원	21	21	-	25	46	39	-	7	21
과학수사 역량강화	-	-	-	25	25	24	-	1	-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	-	-	189	189	182	-	7	-
지능·경제범죄 수사 역량강화	-	-	-	41	41	38	-	3	-
교통과학장비관리	-	-	-	164	164	159	-	5	-
외사경찰활동	-	-	-	152	152	137	-	15	-
경찰대학운영	15	15	-	60	75	69	-	6	-
경찰인재개발	-	-	-	38	38	36	-	2	-
신임순경교육	-	-	-	25	25	24	-	1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사경찰전문교육	-	-	-	13	13	5	-	8	-
장비관리유지	-	-	-	88	88	70	-	18	-
경무인사지원	-	-	-	76	76	73	-	3	33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	-	13	13	13	-	-	-
감사관 감찰활동	-	-	-	480	480	414	-	68	152
대국민소통강화	-	-	-	139	139	134	-	5	-

나. 검토의견

경찰청은 2023년도 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않은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을 이·전용 등을 통해 추진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제46조제3항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경찰청은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을 위해 16개 세부사업에서 전용을 통해 17억 8,1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목표인원 200명 중 총 140명을 채용하고 16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 관련 주요 예산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전용 ('23.6.9.)	외사경찰활동 (3132-311)	210-01	15	외사경찰활동 (3132-311)	110-04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운영 재원
전용 ('23.6.9.)	해외치안협력강화 (3133-311)	210-07	60	외사경찰활동 (3132-311)	110-04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운영 재원
		210-14	36			
		220-02	10			
전용 ('23.6.12.)	경찰관채용교육 (4135-311)	430-01	63	경찰대학운영 (4131-311)	110-04	청년인턴(5명) 일용임금 재원 마련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전용 ('23.6.13.)	수사지원 (1231-311)	310-03	25	수사지원 (1231-311)	110-04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운영 재원 (범인검거보상금 → 일용임금)
			25	지능 · 경제범죄 수사역량강화 (1231-312)		
		310-04	25	지능 · 경제범죄 수사역량강화 (1231-312)	110-04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운영 재원 (참고인 여비 → 일용임금)
			25	과학수사 역량강화 (1231-314)		
			84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231-315)	110-04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운영 재원
조정 ('23.6.13)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231-315)	210-09	50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231-315)	110-04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운영 재원
		430-01	56			
전용 ('23.6.13.)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 (1231-317)	320-06	16	지능 · 경제범죄 수사역량강화 (1231-312)	110-04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운영 재원
조정 ('23.6.13.)			84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231-315)	110-04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운영 재원
전용 ('23.6.13.)	교통과학장비관리 (1331-313)	210-01	164	교통과학장비관리 (1331-313)	110-04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운영 재원
내역변경 ('23.6.15.)	수사기획조정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111-213)	110-04	13.5	감사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111-219)	110-04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재원 마련
내역변경 ('23.6.27.)		320-09	1.5		320-09	
전용 ('23.6.13.)	치안활동지원 (7131-311)	110-04	123	대국민소통강화 (7134-311)	110-04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재원 마련
		210-01	16	대국민소통강화 (7134-311)	110-04	
			64	감사관감찰활동 (7133-311)	110-04	
		210-07	336	감사관감찰활동 (7133-311)	110-04	
		420-03	80	감사관감찰활동 (7133-311)	110-04	

자료: 경찰청

그러나, 16개 세부사업의 2023년 일용임금(110-04목) 예산 계획 상 청년인턴 채용·관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경찰청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용 및 내역변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음.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2)]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은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45조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동법 제46조제3항에 위배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집행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이와 같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 입>

2. 과태료: 연례적 미수납액 과다 발생 문제

가. 개 요

‘과태료’는「도로교통법」제160조,「경비업법」제31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근거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 또는 단속법 위반에 대해 질서벌로서 금전적 납부 의무를 부과·징수하는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2조 2,934억 9,100만원 중 1조 2,284억 3,600만원이 수납(수납률 53.6%)되고, 미수납액 1조 609억 8,600만원, 불납결손액 40억 6,9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3)]

[2023년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태료	969,554	969,554	2,293,491	1,228,436	4,069	1,060,986	53.6	1,134,090

경찰청의 과태료 수입은「도로교통법」제160조,「경비업법」제31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근거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 또는 단속법 위반에 대해 질서벌로서 금전적 납부 의무가 부과·징수되고 있음.[4)]

---

3) 일반회계-과태료(56-563)(기획조정관, 교통국)

4)「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 · 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 · 제3항 · 제5항, 제14조제2항 · 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 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5항, 제25조의2제1항 · 제2항, 제27조제1항 · 제7항, 제29조제4항 · 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 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 · 제11호 · 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 · 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검토의견

연례적으로 과태료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찰청은 과태료 수납률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의 연도별 과태료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과다하나 수납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바, 이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전체적으로 50% 내외로 매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미수납액 규모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2023년 미수납액은 1조 609억 8,600만원에 달함.

[연도별 과태료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8	675,048	675,048	-	675,048	1,597,056	678,740	100.5	42.5	873,599	44,717
2019	665,007	665,007	-	665,007	1,603,758	727,408	109.4	45.4	854,287	22,064
2020	694,816	694,816	-	694,816	1,621,189	751,822	108.2	46.4	859,727	9,640
2021	699,607	699,607	-	699,607	1,759,607	860,688	123.0	48.9	894,690	4,229
2022	848,674	848,674	-	848,674	2,122,089	1,141,266	134.5	53.8	974,404	6,418
2023	969,554	969,554	-	969,554	2,293,491	1,228,436	126.7	53.6	1,060,986	4,069

자료: 경찰청

이는 과태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의 미수납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2023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건수는 전년 대비 101.9% 증가하고, 미수납 금액은 전년 대비 81.1% 증가하였음.

「경비업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수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부과		수납		미수납		불납결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15,520,226	792,773	14,900,064	745,963	568,580	44,105	175,153	11,269
2021	17,639,546	931,737	16,742,754	868,562	834,592	59,868	75,684	5,067
2022	22,660,076	1,227,269	21,064,448	1,121,826	1,507,776	100,474	115,818	7,720
2023	24,304,724	1,303,830	21,174,232	1,117,051	**3,044,503**	**181,913**	74,053	4,976

주) 연도별 사전부과 기준임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예산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수납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편성하나, 징수결정액의 경우 기존 누적 미수납액이 포함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고, 미수납액 중 법인 폐업차량이나 불법명의 차량 등 기한내 징수가 어려운 경우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경찰청의 기간별 미수납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의 소멸시효인 5년[5]이 도과한 과태료가 전체 미수납 과태료 건수 대비 62.5%, 금액 대비 63.5%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기간별 미수납 과태료 체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기간	5년 이상	4~5년	3~4년	2~3년	1~2년	0~1년	계
건수	9,556,148	494,652	612,878	891,802	1,663,811	2,080,574	15,299,865
(비중)	62.5	3.2	4.0	5.8	10.9	13.6	100
금액	663,040	37,144	45,889	63,826	110,600	124,103	1,044,602
(비중)	63.5	3.6	4.4	6.1	10.6	11.9	100

주) 2023년 연도말 기준임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과태료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반 및 합동 단속팀(행안부・자치단체등)을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판독 기능이 탑재된 순찰차를 활용하여 번호

5) 다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제2항 및「국세기본법」제28조에 따라 압류・독촉 등 조치시 소멸시효가 중단 및 정지됨.

판 영치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여전히「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미수납 건수 및 금액이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음. 2023년 미수납 건수는 전년 대비 1,536,727건(증가율 101.9%),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814억 3,900만원(증가율 81.1%)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미수납 건수 및 금액의 급증을 고려할 때 경찰청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 개선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과태료의 미수납액 증가는 세입 손실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처분의 기능과 취지를 약화하여 실질적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해 법치주의 준수의식 약화 및 납부자와 미납부자 간 법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경찰청은 법규 등 위반 행위를 제재하여 법정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과태료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국가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세 출>

3. 차량관리 사업: 연례적 유류비 과다편성 및 타 사업 전용재원으로의 활용 부적정

가. 개 요

‘차량관리’ 사업은 경찰차량에 필요한 보험료 및 제세, 유류비, 차량 수리 및 위생관리, 실내 카메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276억 1,900만원 중 944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74.0%)되고, 329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3년도 차량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차량관리	131,342	-	-	△3,723	127,619	94,446	-	32,952	115,111

나. 검토의견

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유류비를 실제 사용물량과 단가 대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크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현실적인 물량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차량관리 사업의 유류비(210-08목)는 925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588억 3,600만원만이 집행(예산액 대비 집행률 63.6%)되고, 299억 9,5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또한 미집행액 중 37억 2,300만원은 타 사업 또는 비목으로 이·전용 등이 되었는데, 이러한 집행 부진 및 타 사업의 전용재원으로의 활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6) 일반회계-차량관리(4231-312)(미래치안정책국)

[최근 5년간 차량관리 사업 유류비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80,136	80,136	-	△211	79,925	63,154	-	16,772	78.8
2020	81,776	72,119		△6,523	65,596	53,141	-	12,456	73.7
2021	68,593	68,593	-	△1,732	66,861	57,181	-	9,680	83.4
2022	77,366	77,366	-	1	77,367	67,040	-	10,326	86.7
2023	92,554	92,554	-	△3,723	88,831	58,836	-	29,995	63.6

자료: 경찰청

유류비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류 편성물량 대비 사용물량의 비율이 68.2%~74.3%로 매년 유류(휘발유 및 경유) 편성물량을 실제 사용물량 대비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음. 특히 2023년의 경우 유가변동을 예상하여 유류 편성단가가 높게 계상되어, 실제 집행단가와의 차이가 더욱 크게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차량관리 사업 유류비 편성 대비 집행 내역]

(단위: 원, 백만l, %)

연도	휘발유					경유					휘발유 + 경유		
	편성 단가	편성 물량	집행 단가	사용 물량	사용 비율	편성 단가	편성 물량	집행 단가	사용 물량	사용 비율	편성 물량	사용 물량	사용 비율
2019	1,633.0	33.4	1,408.9	26.9	80.5	1,421.0	25.5	1,288.0	15.1	59.2	58.9	42.0	71.3
2020	1,481.0	37.8	1,375.8	25.1	66.4	1,259.0	20.4	1,396.1	14.6	71.6	58.2	39.7	68.2
2021	1,432.0	32.0	1,590.5	23.9	74.7	1,234.0	18.5	1,391.4	13.6	73.5	50.5	37.5	74.3
2022	1,626.4	31.4	1,812.6	22.2	70.7	1,421.4	18.4	1,843.3	14.5	78.8	49.8	36.7	73.7
2023	1,943.5	30.7	1,557.3	23.3	75.9	1,776.2	18.4	1,704.3	13.2	71.7	49.1	36.5	74.3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이에 대해 국제유가 변동 및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예산 편성 시점과 집행 시점의 단가 차이에 기인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유류비 단가의 경우 유가 변동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편성단가와 집행단가 간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는 있으나, 물량의 경우 최근 사용물량 및 친환

경 차량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그럼에도 연례적으로 30% 가량 편성물량과 사용물량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경찰청은 전기차량 및 수소차량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와 기존의 유류비 불용액 추이를 고려하여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사업 효과분석 결과에 기반한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8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7)]

[2023년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교통안전활동	42,042	42,042	149	-	42,191	40,777	45	1,370	42,894
기타 교통활동 지원	4,461	4,461	-	-	4,461	4,436	-	25	5,110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1,800	1,800	-	-	1,800	1,800	-	-	1,800

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3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임.

나. 검토의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일반회계-교통안전활동(1331-312)

동 사업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인하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를 통해 선불교통카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18억원 국비 투입 결과 총 112,896명의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이 이뤄졌음.

[2023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결과]

(단위: 명)

구분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이상
전체	112,896	7,192	32,295	34,891	27,234	9,989	1,295
서울	26,005	497	7,990	8,899	6,306	2,049	264
부산	11,109	1,586	3,582	3,219	2,100	576	46
대구	5,784	608	1,700	1,627	1,328	473	48
인천	6,100	146	2,151	2,050	1,319	383	51
광주	2,579	57	833	813	618	231	27
대전	3,055	348	813	867	742	254	31
울산	1,622	153	491	482	387	101	8
세종	241	5	58	70	75	29	4
경기남부	26,418	2,584	6,964	8,079	6,161	2,306	324
강원	3,642	301	828	1,019	974	454	66
충북	2,893	92	697	846	848	369	41
충남	3,576	77	831	1,049	1,023	521	75
전북	4,424	79	1,183	1,279	1,228	570	85
전남	3,512	86	868	1,066	986	442	64
경북	4,926	179	1,171	1,393	1,478	614	91
경남	5,706	289	1,837	1,772	1,319	437	52
제주	1,304	105	298	361	342	180	18

자료: 경찰청

그러나 동 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통한 면허반납자 중 실제 차량을 운전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률 인하 효과가 있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반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내용 중 '동 사업과 같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이 교통안전 제고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지 여부는 재검토가 필요' 하다는 내용의 평가를 받은 바 있고,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시에도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은 바 있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10)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지속 필요성 검토 필요	○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차량운행시간 및 자진반납비율 등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 및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 운영 여부 및 지속 운영 시 연령대별 지원액의 차등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	주의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그 조치결과로 동 사업 관련 효과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연구결과 중 동 사업과 같은 일회적인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운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의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천안시의 운전면허 반납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반납비율이 15% 내외로 저조하여 사업 효과가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음.

[천안시 면허반납 고령운전자 중 실제 운전 비율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반납자 (A)	실제 운전하는 반납자 (B)	일반 반납자 (A-B)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 반납비율 (B/A)
2019	498	52	446	11.7
2020	594	84	510	16.5
2021	674	93	581	16.0
2022	810	110	700	15.7
합 계	2,576	339	2,237	15.2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경찰청은 동 사업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령대·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이나 조건부 운전면허증 검토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실적 저조

가. 개 요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방송·운전면허시험관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에 대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349억 3,4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

[2023년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134,934	134,934	-	-	134,934	134,934	-	-	145.005

도로교통공단은 2002년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기 시작하여, 2016년 이후 정부출연금이 1,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20년부터 1,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연도별 정부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0,949	101,038	102,206	104,285	132,648	144,706	140,639	134,934	145,005

자료: 도로교통공단

나. 검토의견

도로교통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실적 저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수입의 예산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일반회계-도로교통공단 출연금(1331-314)(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사업 중 ‘면허발급’ 사업은 일반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등 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의 경우 2023년 예산현액 406억 9,100만원 중 184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예산현액 대비 징수율 45.5%)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2023년도 면허발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B)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추경(A)							
면허발급	64,311	-	-	64,310	53,535	53,535	-	-	66,345
모바일 운전면허증	40,691	-	-	40,691	18,495	18,495	-	-	23,905

자료: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1~2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실적을 고려하여 실물 면허증 발급 규모의 60% 수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규모를 계상하였음. 그러나 실제 월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계획 대비 40~50% 발급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2023년 1월 및 2월의 계획 대비 발급률은 3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음.

[모바일 운전면허증 월별 목표 대비 발급현황]

(단위: 명, %)

구분	2023.1월	2023.2월	2023.3월	2023.4월	2023.5월	2023.6월	2023.7월
계획	304,587	316,995	169,492	152,671	153,706	170,201	182,402
발급	85,621	79,996	121,194	78,914	74,161	75,439	77,504
계획 대비 발급률	28.1	25.2	71.5	51.7	48.2	44.3	42.5
구분	**2023.8월**	**2023.9월**	**2023.10월**	**2023.11월**	**2023.12월**	**합 계**	
계획	243,256	229,080	228,612	297,037	418,140	2,866,179	
발급	98,225	96,546	111,142	141,726	217,921	1,258,389	
계획 대비 발급률	40.4	42.1	48.6	47.7	52.1	43.9	

자료: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사업 초기 단계로 지자체 자동민원서식이나 금융기관 등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사용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발급 유인이 적고,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목표치를 과다계상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행사 실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간소화 추진 및 사용처 확대로 발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도로교통공단은 수지차 보전기관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수지차 보전기관의 자체수입이 과다계상될 경우, 기관의 자체수입 발생 여부가 불규칙적이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발급 유인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음.

6.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사업: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비목 집행 문제 등

가. 개 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사업은 기존의 경찰청(112, 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신고 및 대응창구를 일원화하도록 전화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1억 800만원 중 9억 9,300만원을 집행(집행률 89.6%)하고 2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음.[9)]

[2023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능·경제범죄 수사역량강화	5,432	5,432	36	65	5,533	5,142	-	391	9,364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1,108	1,108	-	86	1,194	993	-	201	4,852

나. 검토의견

첫째,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사업 집행 과정에서 당초 계상된 비목인 관리용역비(210-15목)가 아닌 자산취득비(430-01목)로 콜센터 솔루션을 구축하여 관리용역비를 전액 불용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은 비목에 맞지 않는 집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사업의 관리용역비(210-15목) 1억 5,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이는 당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콜센터 솔루션 도입·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자산취득비(430-01목)로 집행하였기 때문임.

9) 일반회계-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2)(수사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사업 비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 본예산
관리용역비 (210-15)	150	-	150	-	-	150	45
자산취득비 (430-01)	644	-	644	644	-	-	1,500
합 계	1,108	86	1,194	993	-	201	4,852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경우 관리용역비(210-15목)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430-01목)는 하드웨어나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동 사업의 콜센터 솔루션 도입·구축의 경우, 단순 프로그램 구입이 아니라, 구축 이후의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유지보수 용역의 경우 당초 편성된 비목과 같이 관리용역비(210-15목)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임.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사업은 센터 개소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인력 운영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통합신고대응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사업의 비목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의 집행률이 31.1%에 불과하여 저조하게 나타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 본예산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74	-	74	23	-	51	129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경찰청은 센터 개소가 당초 계획(2023년 6월 1일 목표) 대비 지연(실제 2023년 7월 20일 개소)되었고, 설립 초기에 일 평균 신고량이 882건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당초 예산 산출 시 기준이 된 202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일 평균 신고건수는 2,369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기존 신고량의 40%도 채 안되는 신고량만을 다루고 있어, 경찰청·금융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산발적으로 접수되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초 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202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신고건수가 2021년보다 증가함을 고려하여 2023년 4월 28일 상담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공사비 증액 전용까지 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당초 계획했던 만큼 신고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신고 통합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한 문제가 있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사업 관련 전용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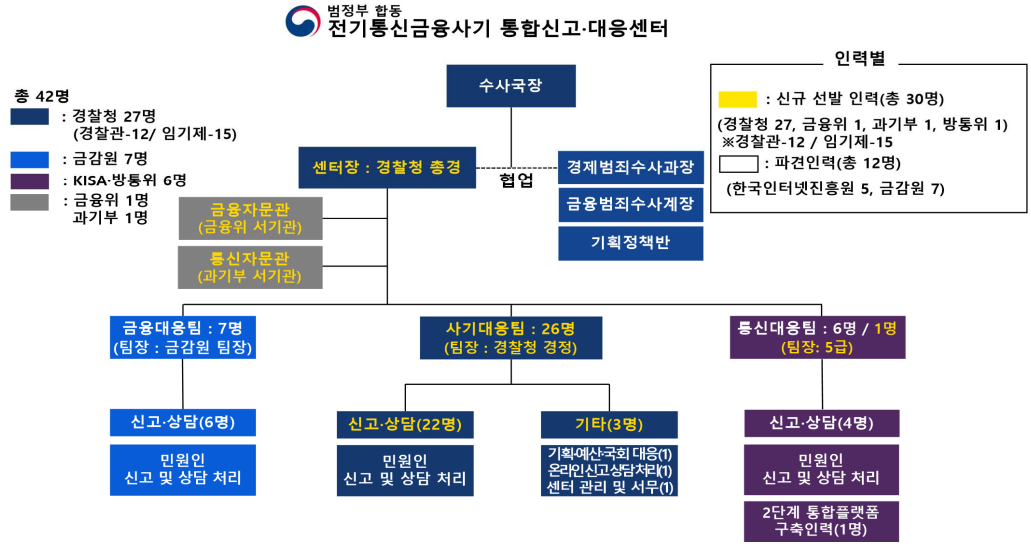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전용 (2023.4.28.)	지능·경제범죄 수사역량강화	430-01	86	지능·경제범죄 수사역량강화	420-03	통합신고대응센터 상담 인력이 추가로 배치(+13명)됨에 따라 사무실 리모델링이 불가피하여, 공사비로 예산 비목 변경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력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전체 신고건수를 접수하는 데에 당초 목표했던 신고량 접수·처리에 한계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인력 증원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4년 5월말 기준 현원이 21명에 불과하고, 그 중 상담인력은 17명에 그쳐 여전히 센터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당초 센터 구성도]



자료: 경찰청

한편 경찰청은「2022년 국무조정실 업무평가서」상 '7대 악성사기 및 가상자산 범죄 등의 범죄수사역량 지속 강화 필요'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역시 7대 악성 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적절히 운영되어 당초 목적 및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7. 경찰장비개선(R&D) 사업: 연구개발 지연에 따른 연구기관 단계 최종집행 저조 문제

가. 개 요

‘경찰장비개선’ 사업은 위해성 경찰장비 성능·기준 등 표준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4억 4,4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10)]

[2023년도 경찰장비개선(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경찰장비개선 (R&D)	2,440	2,440	-	-	2,440	2,440	-	-	2,359

동 사업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표준기술 개발. 안전성 검사 기준 마련, 안전성 검사 장비 개발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검토의견

경찰장비개선 사업은 선행단계에 해당하는 기존과제 집행 지연에 따라 후속단계의 신규과제의 연구기관 단계 최종집행률이 낮게 나온 문제가 있어, 경찰청은 향후 R&D 사업의 연구기관 단계의 사업 및 예산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사업의 2023년 신규과제 ‘위해성 경찰장비 성능검사 기술개발(신규)’의 연구기관 단계 최종집행률은 73.1%로 낮은 수준임.

10) 일반회계-경찰장비개선(R&D)(4431-706)(미래치안정책국)

[경찰장비개선(R&D) 사업 연구기관 단계 최종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과제명	2023년 관련 사항						
			전년도 이월 (A)	2023년 총연구비 (B)	국비 지원액	국비 지원외	연구비 현액 (C=A+B)	2023년 말 최종 집행액 (D)	연구비 현액 대비 집행률 (D/C)
경찰장비개선(R&D)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위해성 경찰장비 성능검사 기술개발 (신규)**	-	902.2	750	152.2	902.2	659.8	73.1
		위해성 경찰장비 표준·인증체계 개발 (계속)	96	1,342.4	1,200	142.4	1,438.4	1,327	92.3
		소계	96	2,244.6	1,950	294.6	2,340.6	1,986.8	84.9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3년 신규과제인 '위해성 경찰장비 성능검사 기술개발(신규)' 과제 중 '경찰봉·저위험권총 성능검사 장비 제작'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기존 과제('위해성 경찰장비 표준·인증체계 개발(계속)' 과제 중 '경찰봉·저위험권총 성능검사 장비 규격 기준 마련')의 수행이 지연되어 최종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함.

[경찰장비개선(R&D) 사업 연차별 로드맵]



자료: 경찰청

동 사업은 표준규격 마련, 성능검사 기준 마련, 성능검사 장비 제작이 순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인데, 경찰청은 이러한 선행구조 및 선행과제의 집행 지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를 전부 출연하여 연구기관 단계 최종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난 문제가 있음. 한편 동 사업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사업 등 타 부처의 기존 사업 중 유사한 구조의 사업들이 있어 사업 집행관리 시 기존 유사 사업을 참고할 수 있었을 것임.

동 사업은 경찰봉 외에도 위해성 장비 9종을 대상으로 각각 표준규격 및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경찰봉 외 다른 위해성 장비 관련 과제 수행 시 이와 유사한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현황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R&D 사업 추진 시 연구기관 단계의 사업 및 예산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8. 장비관리유지 사업: 제품 성능 등에 대한 검토 부족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 집행 문제

가. 개 요

‘장비관리유지’ 사업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장비·장구 등을 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87억 6,300만원 중 242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4%)되고 12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 5,500만원이 불용됨.[11)]

내역사업인 ‘현장장비구입’ 사업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장비·장구 보급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3억 600만원 중 64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1%)되고 11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내역사업인 ‘장비유지관리 운영’ 사업은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품,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59억 1,000만원 중 152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4,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장비관리유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장비관리유지	28,002	28,002	761	±94	28,763	24,286	1,222	3,255	38,189
현장장비구입	7,835	7,835	565	△94	8,306	6,407	1,174	724	15,858
장비관리운영	15,620	15,620	196	94	15,910	15,289	48	572	17,884

나. 검토의견

장비관리유지 사업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및 카트리지에 대해 안전성과 제품 성능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음에 따라 2022년 이월 예산이 불용되는 등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였는데, 제품의 안전성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1) 일반회계-장비관리유지(4231-314)(미래치안정책국)

동 사업은 2023년 예산현액 287억 6,300만원 중 32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중 7억 6,100만원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및 한국형 전자충격기 카트리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용액임.

[2023년 장비관리유지 사업 불용액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품목류	불용액	불용액 발생 사유
방독면	1,820	- 국방규격 관련 특허 문제로 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불용
정화통	285	
한국형 전자충격기	**565**	**- 2022년 이월예산으로 최종 생산품의 납품검사 미통과로 계약 해지, 업체 지급 예정 잔금 불용**
한국형전자충격기 카트리지	**196**	
집행잔액 등	389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합 계	3,255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22년 1월~6월 한국형 전자충격기 및 한국형 전자충격기 카트리지 시범 운용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형 전자충격기 및 한국형 전자충격기 카트리지 구매 여부와 구매 적정 수량을 논의하며 2022년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음. 이후 연내 구매를 위해 2022년 10월 20일에 1차 공고를 하였으나 단독 입찰에 의해 유찰되었고, 2022년 11월 2일 2차 공고를 하여 2022년 11월 10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지연 결과 2022년 예산 중 7억 6,100만원이 2023년으로 이월되었음.

그러나 2023년 7월 및 10월 2차례에 걸친 납품검사 불합격으로 더 이상 장비 보완이 불가하여 2023년 12월 계약해지 후 2022년 이월 예산을 모두 불용하게 되었고, 선금으로 기집행된 예산에 대해 소송을 거쳐 반환받을 예정임. 그 결과 한국형 전자충격기 및 한국형 전자충격기 카트리지 구매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던 시범운용 목적과 당초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기술개발의 양산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업체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하는 등 이와 유사한 비효율적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입>

9.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경찰병원): 자체수입 확보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은 경찰병원의 입원·외래환자 진료수입 및 건강검진센터 운영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295억 1,900만원 중 294억 9,900만원을 수납(수납률 99.9%)되고, 2,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12)]

[2023년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32,799	32,799	29,519	29,499	-	20	99.9	31,700

나. 검토의견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일반환자 외래 및 입원 진료 수입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반환자 적극 유치 등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의 예산액은 당초 327억 9,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94억 9,900만원(예산액 대비 수납률 89.9%)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임.

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49-491)(경찰병원)

[연도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9	29,049	29,049	-	29,049	30,750	30,728	105.8	99.9	22	-
2020	28,192	28,912	-	28,192	31,176	31,154	110.5	99.9	22	-
2021	30,220	30,220	-	30,220	39,370	39,346	130.2	99.9	23	-
2022	30,746	30,746	-	30,746	32,799	32,778	106.6	99.9	21	-
2023	32,799	32,799	-	32,799	29,519	29,499	89.9	99.9	20	-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병원은 2020년 12월~2022년 5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일반환자 수가 감소한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도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실제 최근 5년간 병상 가동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2023년 병상 가동률이 43.6%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병상 가동률]

(단위: %,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병상 가동률	57.7		52.7		61.8		50.5		43.6	
연평균 병상수	허가	가동	허가	가동	허가	가동	허가	가동	허가	가동
	437.3	311.1	426.7	289.0	379.5	137.0	379.0	168.0	380.0	202.0

주1) 병상가동률 = (가동병상수×365)/연 입원환자수

2) '허가병상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상의 병상수를 의미하고, '가동병상수'는 허가와 관계없이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보유 병상수를 의미함.

자료: 경찰청

또한 최근 5년간 환자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전인 2019년 대비 2023년 일반환자 수 비율이 70.7% 수준으로 타 유형과 달리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환자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경찰	소방	의경	퇴직경찰	퇴직소방	일반
2019년	계	398,979	113,628	9,019	30,029	83,422	3,405	**159,476**
	외래	333,476	106,034	8,748	16,998	77,833	3,332	**120,531**
	입원	65,503	7,594	271	13,031	5,589	73	**38,945**
2020년	계	350,749	98,081	7,748	25,908	76,095	3,276	139,641
	외래	295,046	94,040	7,495	12,110	71,564	3,164	106,673
	입원	55,703	4,041	253	13,798	4,531	112	32,968
2021년	계	311,826	90,060	8,080	9,441	73,147	3,341	127,757
	외래	280,808	87,859	7,789	7,689	71,251	3,307	102,913
	입원	31,018	2,201	291	1,752	1,896	34	24,844
2022년	계	311,660	100,841	8,906	5,712	80,740	4,024	111,437
	외래	280,703	96,964	8,479	3,571	77,494	3,986	90,209
	입원	30,957	3,877	427	2,141	3,246	38	21,228
2023년	계	328,160	111,719	9,884	637	88,235	4,951	**112,734**
	외래	295,963	106,831	9,560	388	82,766	4,885	**91,533**
	입원	32,197	4,888	324	249	5,469	66	**21,201**

자료: 경찰청

그 결과, 2019년 대비 일반환자로부터 얻는 2023년 유료 진료수입은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유료 및 무료 진료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유료 진료수입	무료 진료수입(감면)
2019년	31,506	18,442
2020년	28,358	15,108
2021년	26,320	13,279
2022년	25,298	15,006
2023년	27,496	16,008

자료: 경찰청

경찰병원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의 추가 투입이 이뤄지게 되어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라는 당초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경찰·소방 환자 등의 경우 공상 여부와 무관히 진료비를 감면받아, 실제 경찰병원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환자로부터 얻는 유료 진료수입임을 고려할 때, 경찰병원은 일반환자 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억 7,000만원(△11.1%)이 적은 37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00만원(8.7%)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579	3,579	3,475	△104	4,246	4,246	3,776	△470	301
총수입	3,579	3,579	3,475	△104	4,246	4,246	3,776	△470	301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00억 700만원(△6.5%)이 적은 2,887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0억 1,400만원(21.4%)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42,563	255,296	236,760	△18,536	308,781	308,781	288,774	△20,007	52,014
총지출	242,563	255,296	236,760	△18,536	308,781	308,781	288,774	△20,007	52,014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2억 4,600만원으로 40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37억 7,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2.7%)되고 2억 9,6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246	4,246	-	4,246	4,072	3,776	-	296
합 계	4,246	4,246	-	4,246	4,072	3,776	-	296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276억 7,900만원으로, 이 중 2,887억 7,400만원 집행(집행률 88.1%)되고 286억 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2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08,781	308,781	18,898	-	-	327,679	288,774	28,645	10,260
합 계	308,781	308,781	18,898	-	-	327,679	288,774	28,645	10,260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소방청 자산은 전년 대비 1,093억 6,900만원이 증가한 6,447억 6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7,300만원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985억원, 무형자산이 106억 4,100만원 각각 증가한 것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500만원 증가한 2,300만원으로 유동부채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소방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273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8억 1,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214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억 8,0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소방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644,706	535,337	109,369	20.4
		유동자산	2,895	2,968	△73	△23.5
		투자자산	602	599	3	0.5
		일반유형자산	607,447	508,947	98,500	19.4
		무형자산	31,958	21,316	10,641	49.9
		기타비유동자산	1,804	1,507	297	19.7
	부 채		23	8	15	187.5
		유동부채	23	8	15	187.5
		장기차입부채	0	0	-	-
		장기충당부채	0	0	-	-
		기타비유동부채	0	0	-	-
	순자산		644,683	535,329	109,354	20.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27,392	149,210	△21,818	△14.6
	재정운영순원가		221,468	258,548	△37,080	△14.3
	재정운영결과		221,468	258,548	△37,080	△14.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소방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소방청은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인명보호 중심의 화재안전관리, 소방장비 보급 및 현장대응기반 구축, 국민 안전에 전념하는 조직 구현을 2023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72개 세부사업에서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의 경우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의 부단장(의사직) 채용이 지연되고 지방의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립소방병원 의사 확보를 위한 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의 경우 2단계 공사를 위한 지장물 처리가 지연될 경우 공사가 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의 경우 차량에 탑재된 기본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운용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소방청은 엄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음.

넷째,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 예산부족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지원이 미진한 지역소방본부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전용과정에서 훈련장 건립이 지연되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장비들을 과다하게 구입하였으므로, 추후 엄밀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실질적인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충청북도 음성군 혁신도시 내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소방병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29억 300만원 중 212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64.6%)되고, 1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3년도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소방 병원 건립	27,593	27,593	5,310	-	32,903	21,263	11,506	134	71,298
개원준비단 운영	1,674	1,674	-	-	1,674	1,674	-	-	19,168

자료: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은 2025년 12월말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임.

[2023년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집행 절차]

건축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기획·설계) 맞춤형 서비스약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관리) 맞춤형 서비스약정	건축공사 및 준공	소방병원 모의진료	소방병원 개원허가
소방청 (20.4.)	소방청 (20.5.)	조달청 (20.6.)	소방청 (20.10. ~ 22.7.)	조달청 (22.10.)	소방청 (22.12. ~ 25.6.)	소방병원 (25.9. ~ 25.12.)	소방병원 (25년 12월 말)

자료: 소방청

2) 일반회계-국립소방병원 건립(5431-301)(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소방청은 2023년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의 의사직 부단장이 채용되지 못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충원 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하고 의료인력 확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대병원 위탁을 통해 개원준비단을 운영 중임.[3] 개원준비단은 병원 인력배치 계획, 병원 운영 프로세스 설계, 의료장비와 병원비품의 구매 및 검토 등을 수행함.

그런데 2023년 개원준비단 부단장(의사직)의 경우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복수의 부단장 후보를 추천받았으나, 추천 후보자 본인의 고사로 채용하지 못하였으며, 당초 부단장 충원을 예상하고 편성한 12개월분 인건비 2억 5,516만원은 집행되지 못했음.[4]

[2023년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 부단장 인건비 예산 대비 집행 현황]

계획	집행
부원장급(교수) 21,264천원×1명×12월 = 255,167천원	-

자료: 소방청

[2023년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 계획 대비 인원 충원현황]

계획	세부계획	충원현황	비고
6명	부단장 1명(파견) 사무 1명 전산 1명 시설 1명(파견) 의공직 1명(파견) 간호직 1명(파견)	사무 1명 전산 1명 시설 1명(파견) 의공직 1명(파견) 간호직 1명(파견) 기술직 1명	**부단장 지원자 없음**

주) 충원현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소방청

3) 제19조(관리 · 운영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 ·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4) 2024년 7월 11일 기준으로도 의사직 부단장이 충원되지 못하였음.

소방청은 부단장이 채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립소방병원 개원업무에 적합한 인재 채용에 초점을 두고 선발을 하다보니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단장 직위 채용을 위해 개원준비단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장 부재 시 직무 대행을 담당하고 진료과 및 전문센터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부단장 채용이 더욱 늦어질 경우 정상적인 개원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소방청의 「국립소방병원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부문별 핵심 의료진 48명을 확보하여야 하나, 의료인력 확보 방안은 서울대병원장이 임용 후 파견 발령 또는 계약·수시 공모 등만 계획되어 있음.

[국립소방병원 각 진료과 확보 계획 전문의 수]

구분		계획 (명)
내과계	내과	10
	신경과	3
	정신건강의학과	2
	소아청소년과	2
	가정의학과	1
	재활의학과	2
외과계	외과	4
	정형외과	3
	신경외과	2
	성형외과	2
	산부인과	1
	이비인후과	1
진료 지원계	마취통증의학과	3
	영상의학과	4
	진단검사의학과	1
	응급의학과	4
	입원의학과	2
	직업환경의학과	1
합계		**48**

자료: 소방청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확보 계획]

신 분	확 보 방 안
임상교수	・병원법인 임상교수로 **서울대병원장 임용 후 파견 발령** ・개원 핵심인력 단계별 채용
진료교수	・**서울대병원장 임용 후 연봉제 계약** ・임상교수 미채용 정원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전국에서 진료교수를 채용
외래진료교수 및 수술지원교수	・미충원, 비상설 진료과에 대해 외래 세션, 수술 지원 등을 위한 서울대병원 그룹(본원・분당・보라매 등) 연계 진료 수행
판독지원 교수	・영상의학과, 건강검진 영상판독 지원
촉탁교수	・**우수인재 수시 공모**로 진료・교육・연구환경 구축 지원 (전현직자 추천자・퇴직의사 등)

자료: 소방청

개원준비단의 의사직 부단장이 채용되지 못하고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소방병원 의료인력 충원 계획과 방안이 더욱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5)]

따라서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이 개원과 함께 공백없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원준비단 부단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의료 인력 충원 계획을 더욱 면밀히 수립하여 실질적인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의사 결원율은 2018년 7.6%(정원 1,037명・결원 79명)에서 2023년 13.4%(정원 1,422명・결원 191명)로 증가하였음.

2.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공사 추가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은 경기도 광명시에 소방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4억 8,500만원 중 1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1.8%)되고 102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3년도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소방 박물관 건립	10,426	10,426	59	-	10,485	193	10,256	36	1,134

자료: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2026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2023년 국립소방박물관 사업 집행 절차]

지장물 이전, 부지매입	공공건축사전 검토	맞춤형 서비스 약정	설계공모 및 대상자 선정
소방청, 광명시 (2020.1. ~ 2022.12.)	국토부 (2021.3.)	조달청 (2021.5.)	조달청 (2021.6.~ 9.)

→

건축물 설계 및 공사	전시시설 설계 및 공사	건축 준공	국립소방박물관 개 관
소방청 (2021.11.~2026.2.)	소방청 (2022.5.~2026.8.)	소방청 (2026.8.)	소방청 (2026.10.)

6) 일반회계-국립소방박물관 건립(1134-305)(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은 공사 부지내 지장물 처리 문제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어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하고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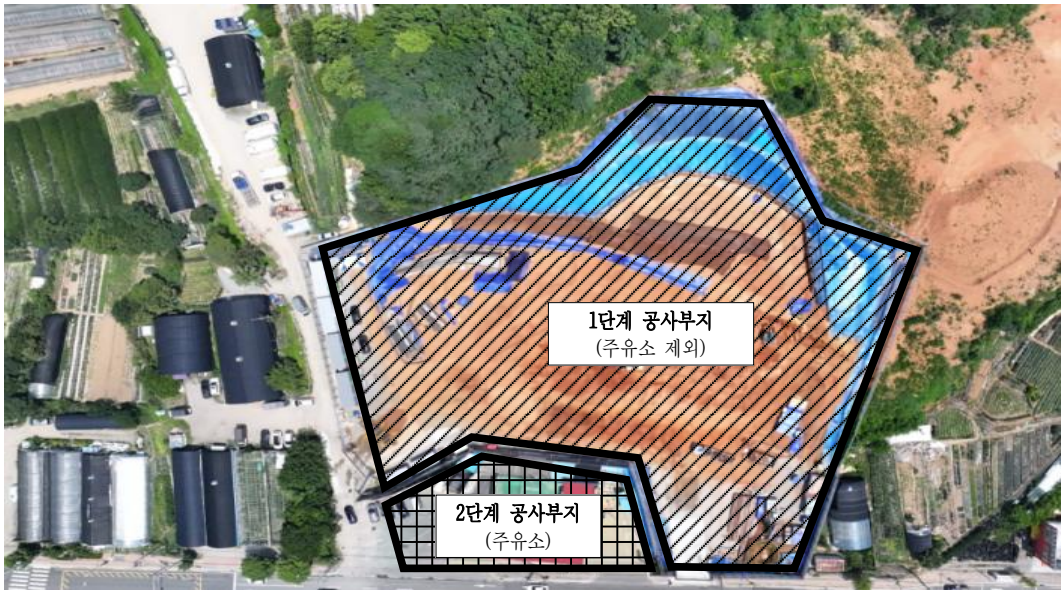
소방청이 2019년 9월 30일 광명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소방청이 사업시행 주체를 담당하고, 광명시는 사업부지가 확보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및 인·허가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2023년 소방청은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해 공사비 94억 9,300만원, 감리비 9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광명시와 국립소방박물관 부지 내 위치한 주유소 사업자의 영업손실금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방청이 조달청에 요청한 공사계약은 부지에 위치한 지장물(주유소) 미처리를 사유로 반려되었음.

이에 소방청은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1단계 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보상이 끝난 후 주유소 부지에 대한 2단계 공사를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음. 이를 위해 1억 6,000만원의 추가 실시설계비를 2023년 6월 29일 공사비로부터 세목조정(증)하여 집행하였음.

[2023년도 국립소방박물관 1~2단계 분리 공사 현황]



이후 2023년 7월 20일 1·2단계 분리 공사를 위한 재설계를 계약하고 2023년 9월 17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2023년 12월 26일 공사 및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공사 기간 부족으로 102억 5,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함.

[2023년도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비 목 (코드)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예산 현액	집행액			
실시설계비 (420-02)	-	-	23	160	183	147	160	124	-	36	-
공사비 (420-03)	9,493	9,493	-	△160	9,333		9,333	-	9,333	-	1,115
감리비 (420-04)	923	923	11	-	934	11	923	-	923	-	-
시설부대비 (420-05)	10	10	25	-	35	35	10	10		-	-
합계	10,426	10,426	59	-	10,485	193	10,426	134	10,256	36	1,115

자료: 소방청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지장물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단계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여 박물관의 건립과 개관이 추가로 지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소방청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박물관 건축 지연을 최소화하고, 예정대로 박물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 적정 규모의 장비 구입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 차량 및 장비, 개인휴대안전장비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1억 4,700만원 중 8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되고 3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3년도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지원	3,617	3,617	-	△547	3,069	2,725	-	343	9,013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1,151	1,151	-	△4	1,147	815	-	332	559
무인파괴 방수차 구입	1,045	1,045	-	-	1,045	726	-	319	-

자료: 소방청

나. 검토의견

무인파괴방수차 구입 시 차량에 기본장착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운용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방청은 엄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을 통해 소방청은 충주119화학구조센터에 무인파괴방수차를 도입하였는데, 무인파괴방수차 구입은 2022~2023년 2개년 동안 추진된 장비 구입 사업으로 총 구매예산은 15억원임. 2022년에 15억원의 30%인 약 4억 5,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15억의 70%인 약 1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음.[8)]

7) 일반회계-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장비지원(1171-302)(중앙119구조본부)

8) 무인파괴방수차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파괴기를 사용하여 외벽이나 천장을 파괴하고 노즐을 내부에 진입시켜 다량의 물이나 소화약제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차량임.

그런데 2023년 차량 및 장비 구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문제가 있었음. ① 차량의 경우 2022년 지출을 예상보다 많이 하였음에도 2023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1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9] ② 구입한 차량에 기본으로 무전기・영상송출장치・소방활동 장비 등이 장착되어있어 별도의 운용 장비가 불필요하여 2억 2,000만원이 불용됨.

[2022~2023년도 무인파괴방수차 구매 예산 및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금액	2022년(30%)		2023년(70%)		비 고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무인파괴방수차량	1,170	351	453	819	717	나라장터 고시 금액
조달수수료	9	9	-	0	6	
심의회 외부 전문위원	5	2	2	3	-	
무전기, 영상송출장치, 소방활동 장비	311	91	-	220	-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
기타 중간검사 및 소방기술원 검사 비용	5	2	-	3	3	
합 계	1,500	455	455	1,045	726	

자료: 소방청

이에 대해 중앙119구조본부는 계약이 2022년 5월에 완료되었으나, 중앙119 구조본부 예산안 작성이 이미 2022년 4월에 완료되어 소방청에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2023년 예산편성 시 반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2년 5월 6일 계약이 체결되어 구입 장비가 결정된 상태였고, 소방청 자체검토(2022.4.19.~2022.5.30.)를 거친 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자체검토 단계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조정이 가능했던 측면이 있음.

[2022년 무인파괴방수차 구입 사업추진 경과]

(22.1.12.) 2022년도 소방장비 구매 기본계획 보고
(22.2.18.~2.23.) 무인파괴방수차 도입을 위한 운용자 의견조회
(22.4.5.) 무인파괴방수차 구매 사업 일상감사 의뢰
(22.4.13.) 무인파괴방수차 구매 사업 일상감사 통보서 수신
(22.4.26.) 무인파괴방수차 구매 계획 보고
(22.4.29.) 무인파괴방수차 구매 계약 의뢰
(22.5.6.) 무인파괴방수차 구매 계약 체결
(22.5.16.) 무인파괴방수차 구매 검사검수 공무원 지정
(22.5.17.) 무인파괴방수차 제작전 사전협의
(22.5.25.) 무인파괴방수차 선금지급(4억 5,300만원)

9) 소방청은 업체의 선금 지급 요청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소방활동장비 구입 대신 2022년 차량 지출금액을 계획보다 확대하였다고 설명함.

(22.5.31.) 무인파괴방수차 선금 배분 및 수령내역서 제출(진우에스엠씨)
(22.6.7.) 무인파괴방수차 제작에 따른 검사신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22.10.28.) 무인파괴방수차 1차 중간검사

자료: 소방청

또한 도입된 장비는 이미 시흥·구미·서산·여수의 화학구조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 당초 편성한 예산이 과도한 규모였다는 것도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하였음.

[2023년 화학구조센터 무인파괴방수차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제조사	도입 일자	도입 가격	특이사항
시흥	진우SMC (국내업체)	2016.12.09.	1,089	- 차체 : 타타대우상용차(제조국 / 한국) - 특장 : 진우SMC(파괴장치 / 국산제작)
구미		2016.12.15.	1,089	
서산		2016.12.09.	1,089	
여수		2016.12.09.	1,089	
충주		2023.03.07.	1,170	
익산	EN3 (국내업체)	2015.04.15.	1,465	- 차체 : 스카니아(제조국 / 스웨덴) - 특장 : EN3(파괴장치 / 미국 그라달 社 제품)
울산		2015.04.15.	1,465	

자료: 소방청

따라서 소방청은 다년도 장비 구입 추진 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 미지급금 발생 주의 및 일부 지역 소방본부의 지원 활성화 필요

가. 개 요

‘마음건강 상담·검사 진료비 지원’ 사업은 소방관 개인의 상담·검사·진료비를 소방청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억 6,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됨.[10)]

[2023년도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3,759	3,759	-	-	-	3,759	3,752	7	4,163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사업	560	560	-	-	560	560	-	-	560

자료: 소방청

동 사업은 개인이 ① 검사나 진료를 받은 후 먼저 사비로 결제를 하고 소방청에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② 협약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검사·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병원에서 소방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해 사업 참여자들의 신뢰에 반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소방청은 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소방청은 2023년 11월 14일 각 지역소방본부에 「23년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 마감에 따른 진료비 청구 안내」 공문을 송부하여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11일 진료건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고, 2023

10) 일반회계-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기획조정관)

년 12월 12일~ 2023년 12월 31일 진료건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한달 간 진료비 청구 가능 및 2024년 1월 이후에는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함.

[2023년도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일정]

진료일	신청기한	비고
2023.1.1.~2023.12.11.	~2023.12.14	신청기한 이후에는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불가
2323.12.12.~2023.12.31.	2024.1.1.~1.31	

자료: 소방청

공문에 예산 소진 후에는 지급이 불가하니 사업 마감에 따른 청구기간 등을 개인 및 협약기관에 필히 안내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소방청 → 시·도 소방본부 → 일선 소방관서'로 공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되지 못하였고 연말 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2023년 예산 부족으로 325건의 개인 신청 건에 대해 1,823만 3,760원의 상담・검사・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11)]

[2023년도 시·도 소방본부별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예산 부족		기간 내 미신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48	5,875,600	6	346,900	54	6,222,500
부산	46	1,933,340	-	-	46	1,933,340
대구	14	673,550	1	77,660	15	751,210
인천	26	836,880	-	-	26	836,880
광주	31	724,870	-	-	31	724,870
대전	1	129,000	-	-	1	129,000
울산	10	220,420	-	-	10	220,420
세종	32	1,497,300	-	-	32	1,497,300
경기	8	464,800	4	61,100	12	525,900
강원	16	1,253,640	-	-	16	1,253,640
충북	12	725,600	-	-	12	725,600
충남	57	2,601,160	21	235,100	78	2,836,260
전북	2	32,000	-	-	2	32,000
전남	4	406,300	14	169,000	18	575,300
경북	12	673,800	-	-	12	673,800
경남	6	185,500	1	12,000	7	197,500
제주	-	-	1	16,600	1	16,600
창원	-	-	-	-	-	-
합계	325	18,233,760	48	918,360	373	19,152,120

주) 상기 신청 건은 12월 진료뿐 아니라 연중 진료 후 12월 청구임 (청구일 기준)
자료: 소방청

11) 협약병원에 지급하여야 하는 진료비는 전액 지급하였음.

소방청은 이에 대해 2022년에도 부족액이 발생하여 3,600만원을 소방시험관리운영사업 운영비에서 전용(증)(22.12.20)하여 집행하였으나, 2023년의 경우 이·전용 등을 통해 부족액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소방공무원의 경우 사고현장 지속 경험·장기간 교대 근무·위험인자 노출에 의한 신체건강 악화·폭행 및 욕설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신체리듬 불균형 (수면·음주습관장애)·감정노동 등이 누적되어 우울장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실제 2021년과 2022년 소방공무원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각각 26.3명과 31.5명으로 경찰공무원('21년 18.6명, '22년 16명)과 전체 국민('21년 26명, '22년 25.2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또한 참여자의 예상과 다르게 예산 부족으로 상담·검사·진료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신뢰 저하로 인한 상담·검사·진료 참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이 동 사업을 신뢰하고 활발하게 참여해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 미지급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마음건강 상담·검사 진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시·도 소방본부 간 지원의 편차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 간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동 사업 집행결과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부산 지역 소방본부는 전체 지원 건수 7,886건 중 25%인 1,973건을 지원 받은 반면, 울산지역 소방본부의 경우 약 0.37%인 29건을 지원받음.

상담·검사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수혜희망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고 소방본부 간 규모 차이 등의 요인이 있으나, 일부 지역 소방본부의 경우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2023년도 시·도 소방본부별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현황]

(단위: 건, 천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원건수	492	1,973	254	905	488	265	29	157	678
지원금액	20,790	175,614	15,126	70,068	33,724	12,685	2,455	4,972	32,90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합계**
635	245	215	307	325	351	202	92	273	7,886
30,589	12,486	11,494	18,637	26,985	15,545	14,214	6,725	23,727	528,745

자료: 소방청

울산지역 소방본부와 규모(소방서 개수, 소속 인원) 및 화재 현황이 유사한 시·도 소방본부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더 명확함.

[2023년 광주,대전,울산,제주,강원 본부 소방서 개수, 소속 인원 및 화재 피해 현황]

지역	지원 건수 (건)	소방서 (개)	인원 (명)	화재건수 (건)	사망 (명)	부상 (명)	피해액 (백만원)		
							부동산	동산	재산
광주	488	6	1,620	732	6	27	2,142	3,265	5,407
대전	265	6	1,631	1021	10	54	40,155	146,016	186,172
울산	29	7	1,400	794	12	72	5,581	20,917	26,499
제주	92	5	1,230	556	3	27	2,432	3,526	5,959
창원	273	4	1,128	559	3	41	2,316	8,662	10,978

주) 2023년 전국 소방서 개수는 253개, 인원은 65,960명임
자료: 소방청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 울산지역 소방본부에서 지원이 부족한 사유는 ① 일선 직원의 관심 부재, ②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소방청은 지원이 부족한 지역본부의 사업 홍보 및 운영체계 점검, 협약병원 발굴 등을 통해 건강이상자 발생 예방·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12)]

12) 지원건수와 지원금액이 가장 큰 부산지역 소방본부의 경우 22곳의 협약병원을 운영 중임.

5.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 적정 비목 예산 편성 및 계획적인 비축물자 확보 필요

가. 개 요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대규모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진대응을 위해 훈련시설과 대응장비를 확충하고 교육훈련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17억 8,200만원 중 85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2.3%)되고 11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3년도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11,225	11,225	566	△9	11,782	8,522	2,098	1,161	11,978
훈련장 건립	7,252	7,252	1	±1,550	7,253	5,073	1,601	578	3,180
비축장비 보강	2,530	2,530	565	-	3,095	2,387	174	534	7,930

자료: 소방청

내역사업인 **‘훈련장 건립’**은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특수구조대 내 유형별 지진대비대응훈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72억 5,300만원 중 50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0%)되었음.

다른 내역사업인 **‘비축장비 보강’**은 대규모 지진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특수차량 및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30억 9,500만원 중 23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되었음.

13) 일반회계-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1171-305)(중앙119구조본부)

나. 검토의견

첫째, ‘훈련장 건립’ 사업의 경우 공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전용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추후 소방청은 적정한 비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동 사업을 통해 2022~2024년 동안 호남119특수구조대 내에 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장을 신축하기로 하였음. 총사업비는 54억 8,700만원임.

그런데 당초 계획된 공사비 중 15억 5,000만원을 2023년 10월 10일 자산취득비로 전용(증)하였고, 이를 위한 현안 검토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설치 완료된 훈련시설물 없이 자산취득비 6억 5,000만원이 이월되는 문제가 있었음.

[2023년 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장 설립 추진 경과]

설계완료(5.22.) → 일상감사완료(6.20.) → 조달발주(6.22.) → **현안검토(9.21.)** → **예산전용승인(10.10.)** → 훈련시설발주(10.10.) → 사전규격공개(10.20.) → 자체공고(11.02.) → 제안서평가(11.22.) → 협상완료(11.30.) → 계약완료(12.01.)

자료: 소방청

[2023년도 호남119 특수구조대 유해화학물질대응훈련장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 (C)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11,225	11,225	566	△9	11,782	8,522	2,098	1,161	11,978
훈련장 건립	7,252	7,252	1	±1,550	7,253	5,073	1,601	578	3,180
호남119 특수구조대 유해화학 물질 대응 훈련장 구축	2,235	2,235	1	±1,550	2,236	1,565	658	13	3,180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이에 대해 공사비 비목으로 발주할 경우 간접공사비 반영(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각종 보험료)으로 소요 예산이 증가하고 당초 설계한 훈련시설의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조달청 의견을 반영해 자산취득비 비목으로 전용하여 물품 구입 방식으로 훈련시설 조성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사업추진 시 예산총액 및 간접공사비 등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절차 소요 및 사업 지연은 지진대비 대응을 위한 훈련시설 확충의 적시성 확보를 어렵게 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방청은 추후 훈련시설 조성 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훈련시설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비축장비 보강'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장비들을 과다하게 구매하였으므로, 엄밀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함.

소방청은 비축장비 보강 사업의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장비 7종 694점을 구입하였음. 기타 장비의 경우 5종 3,880점 구입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14]

일반구조장비, 개인휴대장비, 화생방장비, 기타장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3억 2,200만원(예산 대비 약 22%)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어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집행되었음.

[2023년 지진 비축기지 장비 구매 내역]

(단위: 종, 점, 백만원)

구분	예산			결산			
	장비종류	구매수량	예산액 (A)	장비종류	구매수량	계약액 (B)	집행잔액 (A-B)
일반구조장비	35	83	923	30 (7)	92 (64)	750 (142)	31
개인휴대장비	4	300	42	-	-	-	42
화생방장비	18	61	326	19	725 (630)	234 (25)	67
기타	5	3,880	182	-	-	-	182
총계	62	4,324	1,473	56	1,511	1,151	322

주) 괄호는 예산에 미계상된 장비 구매 종류 및 수량임
자료 : 소방청

소방청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것에 대해 본 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15]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구매하였다고 설명함.

14) 기타장비는 소화약제 2종(팽창질석, 폼소화약제) 및 감염병 대응장비 3종(감염보호복 세트, 소독제, 손소독제)임.

15)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의 기본계획은 최초 2020년 11월 6일 수립되었고 4년간 추진됨.

상황에 따라 계획한 장비와 다른 장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장비를 과다하게 구입하는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장비 수요와 구매단가를 명확히 파악하여 비축기지 장비 구매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국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서 동일하게 지적되었으므로 엄밀한 예산편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

따라서 소방청은 추후 계획에 근거한 체계적인 장비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소방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 투명한 계약 관리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소방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은 소방청과 시·도간 긴급구조 데이터(119신고, 출동지령, 재난영상 등)의 중단없는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사업자를 이원화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2억 7,800만원 중 2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20%)되고 10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3년도 소방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소방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화)	12,696	12,696	2,821		15,517	13,951		1,566	11,334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1,300	1,300		△22	1,278	261		1,017	3,120

자료: 소방청

나. 검토의견

사업 추진 중 소송이 제기되어 데이터망 구축이 지연되었으므로, 소방청은 계약체결 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은 소방청 전용회선을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이원화하여 특정 사업자망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망이 운영되도록 구성하려는 것임.

소방청은 당초 2023년 5~7월 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시범 운용을 목표로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음.

16) 일반회계-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1150-500)(장비기술국)

[2023년도 소방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 추진 계획]

사전 컨설팅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시범운영
23년 2월	23년 3월	23년 4월	23년 5월	23년 5~7월

자료: 소방청

그런데 기술협상 진행 도중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KT가 소방청 직원의 특정 장비 설치요구 및 특정 서비스 기간 요구 등에 불응하자, 사업 협상 불성립 통보를 받게 되었고 소방청은 3순위였던 LGU+로 협상 대상을 변경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KT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소송을 2023년 8월 7일 제기하였고 이후 소방청 사업 담당자 교체와 소송 대응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해당 가처분 소송이 2023년 12월 15일 인용됨에 따라 LGU+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고 KT가 다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음.

[2023년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추진 경과]

일자	추진내용
2023.4.18	소방 긴급급구조 데이터망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2023.5.19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 1순위 KT, 2순위 SKB
2023.5.24	기술협상 안내(정보통신과 → KT, SKB)
2023.7.24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사업 협상 불성립 통보(소방청→KT)
2023.8.7	**KT,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 제기**
2023.9.7	소방청 감사담당관실, 경찰 수사의뢰 및 직위해제
2023.10.31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서비스 개시 알림(소방청→SKB)
2023.10.31	LGU+ 완공검사 부적합 통보. 서류 보완 요청(소방청→LGU+)
2023.12.15	KT,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소송 인용

자료: 소방청

위와 같은 사유로 예산현액 12억 7,800만원 중 10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된 2억 6,100만원은 SK 브로드밴드가 11월 1일부터 서비스(내부망)를 시작함에 따라 지급한 2개월 분의 통신사회선 임대 사용료임.

소방청은 사전에 협상 불성립 및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파악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 간 이견으로 협상이 불성립되는 경우 우선협상자 변경은 발주처의 정당한 권리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우선협상자 변경이 발주처의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투명한 계약을 위해 변경 단계에서 사유나 사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법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소방청은 향후 계약단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계약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소방긴급구조 데이터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585억 1,400만원(0.8%)이 많은 19조 9,650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429억 6,700만원(13.9%)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623	6,623	6,901	278	5,962	5,962	6,306	344	△595
기 금	19,182,902	19,182,902	17,515,184	△1,667,718	19,800,576	19,800,576	19,958,746	158,170	2,443,562
총수입	19,189,525	19,189,525	17,522,085	△1,667,440	19,806,538	19,806,538	19,965,052	158,514	2,442,967

문의 : 박세경 예산결산조사관 sg.park@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413억 2,700만원(△0.6%)이 적은 25조 2,747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939억 6,100만원(9.5%)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04,514	202,523	196,159	△6,364	209,214	209,214	203,483	△5,731	7,324
기 금	22,255,942	22,978,779	22,884,581	△94,198	24,493,257	25,206,814	25,071,218	△135,596	2,186,637
총지출	22,460,456	23,181,302	23,080,740	△100,562	24,702,471	25,416,028	25,274,701	△141,327	2,193,961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9억 6,200만원으로, 63억 8,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3억 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8%)되고 7,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962	5,962	-	5,962	6,385	6,306	-	79
합 계	5,962	5,962	-	5,962	6,385	6,306	-	79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1,170억 7,500만원으로, 이 중 5조 1,112억 7,800만원은 집행(집행률 99.9%)되고 57억 9,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5,117,009	5,117,009	66	±2,803	-	5,117,075	5,111,278	-	5,798
합 계	5,117,009	5,117,009	66	±2,803	-	5,117,075	5,111,278	-	5,798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8조 9,508억 2,500만원으로, 35조 1,802억 3,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7조 3,924억 8,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4.6%)되고 21억 8,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738억 6,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28,950,825	28,950,825	35,180,239	27,392,485	2,183	73,864
합 계	28,950,825	28,950,825	35,180,239	27,392,485	2,183	73,864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8조 9,551억 7,300만원으로, 이 중 27조 3,924억 8,500만원이 지출(집행률 94.6%)되고 1,399억 4,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무원연금기금	28,950,825	28,950,825	4,348	28,955,173	27,392,485	-	139,944
합 계	28,950,825	28,950,825	4,348	28,955,173	27,392,485	-	139,944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인사혁신처 자산은 전년 대비 6,216억 8,700만원이 증가한 20조 9,590억 2,0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 234억 6,700만원, 무형자산 46억 6,000만원 및 기타비유동자산 3,295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유동자산 5,524억 1,700만원 및 투자자산 4,269억 3,900만원이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5조 6,948억 4,000만원 증가한 1,036조 9,711억 2,000만원으로, 이는 유동부채 1,525억 3,900만원 및 장기차입부채 858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장기충당부채 45조 6,212억 1,900만원 및 기타비유동부채 3,120억 1,600만원이 증가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5조 731억 5,300만원이 감소한 △1,016조 121억원임.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6조 7,082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86억 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2조 6,143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35억 3,2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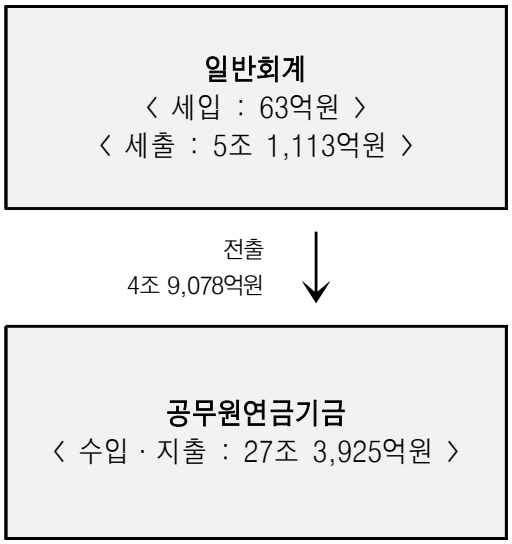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0,959,020	20,337,333	621,687	3.1
		유동자산	4,045,749	3,493,332	552,417	15.8
		투자자산	9,138,769	8,711,830	426,939	4.9
		일반유형자산	7,200,821	7,224,288	△23,467	△0.3
		무형자산	41,449	46,109	△4,660	△10.1
		기타비유동자산	532,232	861,773	△329,541	△38.2
	부 채		1,036,971,120	991,276,280	45,694,840	4.6
		유동부채	1,102,207	1,254,746	△152,539	△12.2
		장기차입부채	2,169,070	2,254,926	△85,856	△3.8
		장기충당부채	1,032,309,907	986,688,688	45,621,219	4.6
		기타비유동부채	1,389,936	1,077,920	312,016	28.9
	순자산		△1,016,012,100	△970,938,947	△45,073,153	△4.6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6,708,203	36,936,807	△228,604	△0.6
	재정운영순원가		36,533,729	36,547,372	△13,643	△0.0
	재정운영결과		32,614,388	33,567,920	△953,532	△2.8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일반회계 1개 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63억 600만원, 세출 총계는 5조 1,112억 7,800만원이며, 공무원연금기금 수입 및 지출 총계는 각각 27조 3,924억 8,500만원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4조 9,077억 9,500만원이 전출되었으며, 공무원 퇴직 급여, 재해보상 급여 등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임.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인사혁신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 있는 공무원 선발·육성,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미래 행정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재정 운용 및 기금 운용수익 제고를 2023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85개 세부사업에서 국가시험 시행,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면허료 및 수수료는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 시험별 출원인원(응시인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직선호도 감소에 따른 출원인원 감소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 및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기여금 세입항목 중 급여환수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장기 미수납 채권의 누적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급여환수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기 미수납 채권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퇴직급여·퇴직수당 사업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퇴직인원에 대한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추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액 대비 수납률 연례적 저조 문제

가. 개 요

‘면허료 및 수수료’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응시수수료 납부 등에 따른 수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3억 8,900만원 중 9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수납률 100.0%)하였음.[2)]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면허료 및 수수료	1,389	1,389	952	952	-	-	100.0	1,120

인사혁신처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에 근거하여 5급, 7급, 9급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공채·경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를 거두고 있음.[3)]

---

2) 일반회계-면허료 및 수수료(65-651)(기획조정관)

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나. 검토의견

면허료 및 수수료는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최근 시험별 출원인원(응시인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응시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의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의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2023년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80%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2020년부터 매년 수납률이 하락하고 있음.

[2018~2023년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2018	1,924	1,924	1,924	1,472	1,472	76.5	-	-
2019	1,915	1,915	1,915	1,409	1,409	73.6	-	-
2020	1,731	1,731	1,731	1,367	1,367	79.0	-	-
2021	1,915	1,915	1,915	1,445	1,445	75.4	-	-
2022	1,725	1,725	1,725	1,229	1,229	71.2	-	-
2023	1,389	1,389	1,389	952	952	68.5	-	-

자료: 인사혁신처

이처럼 연례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시험별 출원인원(응시인원)이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에 비해 매년 적게 나타나기 때문임.

최근 시험별 예산편성 기준과 실제 출원인원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 오차비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2020년 전체 공무원 채용시험의 예산편성 대비 출원인원 오차비율은 21.1%였고 일부 시험에서는 오히려 출원인원이 더 많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음. 그러나, 2023년 전체 공무원 채용시험의 예산편성 대비 출원인원 오차비율은 32.9%에 이르고 모든 시험에서 실제 출원인원이 예산편성 대비 적게 나타났음. 특히 2023년 9급 공채의 오차비율이 37.0%로 2020년 16.6%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20~2023년 시험별 예산편성 기준과 실제 출원인원 차이]

(단위: 명, %)

구 분		예산편성 기준 (A)	실제 출원인원 (B)	과부족인원 (C=A-B)	예산편성 대비 오차 비율 (C/A)
2020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5,965	12,595	3,370	21.1
	7급 공채	51,590	34,703	16,887	32.7
	9급 공채	222,088	185,203	36,885	16.6
	민간경력자 채용	5,000	6,056	△1,056	△21.1
	중증장애인 등 채용	10,000	1,890	8,110	81.1
	합계	304,643	240,447	64,196	21.1
2021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4,493	15,066	△573	△0.4
	7급 공채	66,712	38,947	27,765	41.6
	9급 공채	240,686	198,110	42,576	17.7
	민간경력자 채용	5,000	3,687	1,313	26.3
	중증장애인 등 채용	10,000	1,959	8,041	80.4
	합계	336,891	257,769	79,122	23.5
2022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3,881	13,909	△28	△0.002
	7급 공채	55,695	33,527	22,168	39.8
	9급 공채	220,998	165,524	55,474	25.1
	민간경력자 채용	4,500	3,055	1,445	32.1
	중증장애인 등 채용	9,267	1,840	7,427	80.1
	합계	304,341	217,855	86,486	28.4
2023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3,713	12,356	1,357	9.9
	7급 공채	36,292	29,086	7,206	19.9
	9급 공채	192,878	121,526	71,352	37.0
	민간경력자 채용	5,139	3,260	1,879	36.6
	중증장애인 등 채용	1,874	1,506	368	19.6
	합계	249,896	167,734	82,162	32.9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출원인원의 규모는 당해 시험별 선발인원 결정에 의해 오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최근의 채용시험제도 변화[4]·공직선호도 감소·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아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산편성 시점과 시험별 선발인원 결정 시점 간 시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민간경력자 채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별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또한 인사혁신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출원인원 감소 추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 편성 시 산출기준을 최근 2개년 출원인원의 평균으로 개선하여 최근 출원인원 감소 추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4년 5월말까지 치러진 시험별 출원인원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급 공채의 실제 출원인원이 103,597명에 불과하여 예산편성 기준 대비 39,928명이 더 적게 응시(오차비율 27.8%)하였고, 7급 공채 역시 실제 출원인원이 26,532명으로 예산편성 기준 대비 9,705명이 더 적게 응시(오차비율 26.8%)하였음. 그 결과 2024년에도 예산편성 기준과 실제 출원인원 간 오차로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이 과소수납될 것으로 여겨짐.

[2024년 시험별 예산편성 기준과 실제 출원인원 차이(2024. 5.기준)]

(단위: 명, %)

구 분	예산편성 기준 (A)	실제 출원인원 (B)	과부족인원 (C=A-B)	예산편성 대비 오차 비율 (C/A)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3,133	12,198	935	7.1
7급 공채	36,237	26,532	9,705	26.8
9급 공채	143,525	103,597	39,928	27.8
합계	192,895	142,327	50,568	26.2

자료: 인사혁신처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 편성 시 최근 채용시험별 출원인원 추이와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직선호도 감소에 따른 출원인원 감소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 및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2021년부터 7급 공채시험에 PSAT이 신규 도입되었고, 2022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서 고교선택과목 폐지 및 전문과목 필수화가 이루어짐.

2. 기타잡수입: 공직자 선물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가. 개 요

‘기타잡수입’ 은 국유재산 유상사용 관련 공공요금·공직자 신고선물 매각대금 및 교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따른 수입으로, 2023년 예산현액 3,400만원 중 1,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5)]

[2023년도 기타잡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C)	수납액 (D)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D/C)	
	본예산	추경(A)								
기타잡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34	34	-	34	15	15	-	-	100.0	25

나. 검토의견

공직자 선물 신고 건수가 전체 대상기관 수 대비 과소하므로,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선물 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 또는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인도하도록 하는 공직자선물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음.[6)]

---

5) 일반회계-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69-691)

6)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최근 5년간 기관별 공직자 선물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신고건수는 늘어났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60개 기관 중 31개 기관이 신고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542개 단체 중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4개 단체만이 신고하고 그 건수도 적어 공직유관단체의 신고비율이 낮게 나타난 문제가 있음.

[최근 5년간 기관별 공직자 선물 신고건수]

(단위: 건)

순번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65	4	2	25	127
2	감사원	1	-	-	-	-
3	방송통신위원회	1	-	-	-	-
4	공정거래위원회	-	-	1	-	-
5	금융위원회	1	-	-	-	1
6	원자력안전위원회	-	-	-	1	1
7	기획재정부	18	-	1	1	2
8	교육부	1	2	4	10	4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4	5	2	6
10	고용노동부	-	-	-	1	-
11	농림축산식품부	-	-	-	1	4
12	외교부	84	24	14	68	61
13	법무부	10	1	-	1	12
14	국방부	7	4	-	-	2
15	행정안전부	-	5	-	1	6
16	문화체육관광부	5	4	-	-	1
17	산업통상자원부	13	4	13	15	30
18	보건복지부	12	8	9	6	5
19	환경부	-	-	-	1	-
20	중소벤처기업부	-	1	-	-	1
21	여성가족부	1	-	-	-	-
22	통일부	-	-	-	-	1
23	국토교통부	4	1	2	10	49

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단위: 건)

순번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	해양수산부	-	-	-	1	1
25	인사혁신처	3	-	-	2	1
26	국세청	-	-	2	-	3
27	조달청	2	1	-	-	-
28	대검찰청	3	-	-	5	3
29	경찰청	1	-	1	-	-
30	특허청	-	-	-	1	-
31	해양경찰청	3	-	-	-	-
32	한국공항공사	2	-	-	-	-
33	한국가스공사	-	1	2	4	-
3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	-	-	1
35	공무원연금공단	-	-	-	-	1
합 계		**239**	**64**	**56**	**156**	**323**

자료: 인사혁신처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이 필요한 기관 등도 포괄하고 있어, 그 범위가 광범위함에도 542개 단체 중 4개 단체만이 신고를 하고 있음은 동 제도의 운영 및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것임.[7)]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규모나 업무 범위 차이로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7)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재출자 · 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 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재출자 · 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 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 동의 · 추천 · 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 · 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 임명 · 위촉하는 기관 · 단체

그러나 부처와 소속기관 간 신고건수의 경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외국과의 교류가 주요 업무인 기관들도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관들의 신고건수가 최근 5년간 전혀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직자 선물 신고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하 '공직자'라 함)이 신고 대상이 되는 선물 수령 시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직자의 자진신고에 의거하고 있음.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공직유관단체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 및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세 출>

3.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신규): 감리용역 미편성 및 전용을 통한 집행

가. 개 요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공채·경채 등 모든 공무원 시험정보를 단일 사이트를 통해 확인·응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을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32억 100만원 중 31억 7,6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2%)하였음.[8)]

[2023년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화)	3,201	3,201	-	±176	3,201	3,176	-	25	6,215

동 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2023년~2025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인사혁신처는 2023년 이 중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중 경력채용시스템에 시범적용할 계획임.

8) 일반회계-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1631-301)(인재채용국)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주요 내용]

구분	핵심 목표 (키워드)	적용기관
1단계 (2023)	① 경력채용시스템 온라인화 ② 어학성적 공동활용 구축 ③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일부 부처 경력채용 시범운영
2단계 (2024)	① 어학성적 공동활용 연계 확대 ② 신기술 및 RPA 도입 채용업무 자동화 ③ 공개경쟁채용시험 기능 고도화	전 중앙부처 경력채용 활용 확대
3단계 (2025)	① 공채·경채 시스템 통합 ② 공채 데이터 이관 및 시스템 전환 ③ 공인성적 공동활용 구축 및 확대	공인성적 공동활용 지자체·공공기관 확대 추진

자료: 인사혁신처

나. 검토의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을 통해 감리용역을 추진하였는데, 향후 정보화 사업 집행에 있어 감리용역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전용 등을 통해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총사업비 147억 9,500만원 규모의 사업이고,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상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에 해당함.[9] 그러나, 동 사업의

9)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

2023년 예산 중에는 감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

[2023년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내역]

세사업 명	구분	편성 근거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본예산	○ 3,201백만원 - 응용 SW 구축(일반연구비) : 2,315백만원 - HW 구입(자산취득비) : 372백만원 - SW 구입(자산취득비) : 514백만원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인사혁신처는 낙찰차액을 통해 감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동 사업의 자산취득비로부터 전용을 하여 동 사업의 감리비를 마련하고 집행하였음.

[2023년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명	코드		세부사업명	코드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1631-301)	자산취득비 (430-01)	176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1631-301)	일반연구비 (260-01)	「전자정부법」 제57조 상 의무사항인 감리용역 진행을 위해 전용

자료: 인사혁신처

감리용역이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상 필수적인 절차임은 인정됨. 그러나, 예산 편성 시 감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결과, 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국가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향후 인사혁신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감리용역이 필수적인 정보화 사업 예산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감리비를 편성하여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외한다.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기금】

<수 입>

4. 연금기여금: 급여환수금의 수납률 저조 및 미수납 채권 누적 문제

가. 개 요

‘연금기여금’ 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이나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따른 연계반납금·퇴직급여 환수금 등을 수납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6조 5,992억 8,800만원 중 6조 5,785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5,609억 1,100만원을 수납(수납률 99.7%)하였음.[10)]

[2023년도 연금기여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연금기여금	6,599,288	6,599,288	6,578,555	6,560,911	2,183	15,461	99.7	6,777,980

나. 검토의견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기여금 세입항목 중 급여환수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연례적인 미수납액 발생으로 누적된 미수납 급여환수채권에 대해 조기 환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금기여금 세입항목 중 ‘급여환수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른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이자 및 환수비용 등을 가산하여 환수하는 수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39억 3,500만원 중 293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9억 7,400만원을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54.5%)함에 그쳤음.[11)]

10) 공무원연금기금-연금기여금(55-551)(공무원연금공단)

[2023년 급여환수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도							
	계획액		이체등증감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급여환수금	13,935	13,935	-	13,935	29,336	15,974	11,179	2,18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와 같은 급여환수금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19년~2023년 중 매년 미수납 급여환수채권이 발생하고 있어 2023년 말 기준 196건, 62억 2,000만원이 5년간 누적되었음.

[최근 5년간 급여환수금 및 미수납 급여환수채권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환 수 사 유	발 생		회 수			관리잔액	
		건수	금액 (A)	건수	금액 (B)	회수율 (B/A)	건수	금액
2019	금고이상의 형	82	2,366	54	1,368	57.8	28	998
	파면·해임 후 복직	17	1,015	13	892	87.9	4	122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24	128	23	120	93.8	1	8
	정지기관 신고지연	38	98	38	98	100.0	-	-
	소 계	161	3,607	128	2,478	68.7	33	1,128
2020	금고이상의 형	76	2,428	52	1,442	59.4	24	986
	파면·해임 후 복직	49	3,826	39	3,482	91.0	10	344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32	260	30	252	96.9	2	8
	정지기관 신고지연	43	112	43	112	100.0	-	-
	소 계	200	6,626	164	5,288	79.8	36	1,338

11) 「공무원연금법」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환 수 사 유	발 생		회 수			관리잔액	
		건수	금액 (A)	건수	금액 (B)	회수율 (B/A)	건수	금액
2021	금고이상의 형	48	1,694	28	871	51.4	20	823
	파면·해임 후 복직	13	1,215	13	1,215	100.0	-	-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36	154	34	148	96.1	2	6
	정지기관 신고지연	40	120	40	120	100.0	-	-
	소 계	137	3,183	115	2,354	74.0	22	829
2022	금고이상의 형	41	1,970	27	1,441	73.1	14	529
	파면·해임 후 복직	28	1,626	19	1,128	69.4	9	498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86	2,585	83	2,550	98.6	3	35
	정지기관 신고지연	60	239	58	206	86.2	2	33
	소 계	215	6,420	187	5,325	82.9	28	1,095
2023	금고이상의 형	58	2,036	21	673	33.1	37	1,363
	파면·해임 후 복직	26	1,250	15	1,042	83.4	11	208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53	224	42	135	60.3	11	89
	정지기관 신고지연	90	522	72	352	67.4	18	170
	소 계	227	4,032	150	2,202	54.6	77	1,830
합 계							**196**	**6,220**

주) 발생금액은 각 연도별 기준이며, 이에 따른 회수 및 관리잔액은 2023년 12월말 기준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또한 전체 미수납 급여환수채권 중에는 2002년에 발생한 급여환수채권도 존재하여, 장기 미수납되고 있는 환수금이 다수 존재함. 실제 관리기간별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장기 관리되고 있는 채권 수가 37건(전체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 대비 24.8%)에 달함.

[관리기간별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관리기간	건수	금 액		
		환수원금(A)	연체이자(B)	원리금 계(C=A+B)
20년 ~	37	431	1,108	1,539(24.8%)
15 ~ 20년	26	406	613	1,019(16.5%)
10 ~ 15년	28	708	410	1,118(18.0%)
5 ~ 10년	58	1,947	577	2,524(40.7%)
계	149	3,492	2,708	6,200(100.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 중 대부분이 금고이상의 형 확정의 경우로 수감 등의 이유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고,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수납 채권은 과거 높은 연체이자율로 누적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함.

그러나 장기 미수납 채권의 누적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2021년 국정감사 시 환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을 고려하여, 공단은 급여환수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장기 미수납채권에 대한 불납결손 고려 등 장기 미수납채권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 출>

5. 퇴직급여·퇴직수당 사업: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문제

가. 개 요

‘퇴직급여’ 사업은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20조 2,506억 8,000만원 중 20조 1,373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1,133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퇴직수당’ 사업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연금급여 외에 민간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2조 8,537억 7,600만원 중 2조 8,527억 6,400만원이 집행(99.9%)되고 10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3년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퇴직급여	19,759,680	20,250,680	-	20,250,680	20,137,331	-	113,349	21,945,761
퇴직수당	2,741,776	2,853,776	-	2,853,776	2,852,764	-	1,012	2,746,498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등이 있음.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제62조[14)]에 따라 지급되며, 소요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함.

---

12) 공무원연금기금-퇴직급여(3031-311)(공무원연금공단)

13) 공무원연금기금-퇴직수당(3032-312)(공무원연금공단)

14)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4. 퇴직수당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급여종류별 지급요건]

구 분		급 여 종 류	지 급 요 건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65세에 도달하거나 기타 지급 개시요건을 충족했을 때 사망 시까지 매월지급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으로 매월지급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의 60%)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 시 ○ 장해연금, 퇴직연금수급자 등 사망 시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유족연금과 별도로 일시금 지급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시 일시금으로 별도지급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 시 유족이 원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지급
		퇴직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 시
	비공무상 장해급여	비공무상 장해연금	○ 공무 이외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당시 또는 퇴직 후 7급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때 연금지급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8급 이하 장해상태의 경우 일시금 별도지급
퇴직수당		퇴직수당	○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시 지급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검토의견

퇴직급여·퇴직수당 사업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추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은「공무원연금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주체로,「국가재정법」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자금의

소요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자금의 소요가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5][16]

공무원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5건 이상 변경해왔고, 그 중 2023년의 경우 6건의 변경이 있었음. 증액변경 기준 변경액 규모도 6,500억원~9,100억원 사이임.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 주요 내역]

(단위: 억원)

연 도	변경액 (증액)	건수	주요 내용
2019	6,530	8건	퇴직급여 4,390억원, 공무원연금대부 2,000억원 등
2020	9,076	5건	퇴직급여·퇴직수당 8,685억원,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344억원 등
2021	7,477	5건	퇴직급여 7,274억원, 임대주택건립 182억원 등
2022	8,742	6건	퇴직급여 6,868억원, 퇴직수당 1,851억원 등
2023	**7,186**	**6건**	**퇴직급여·퇴직수당 6,030억원, 주택사업관리 248억원 등**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23년 발생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중 대부분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사업에서 발생하였음. 퇴직급여 사업 및 퇴직수당 사업의 경우 구조적 제약으로 정확한 추계에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최근 4년간 기금운용계획변경의 대부분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5)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16)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부족에 따른 변경이라는 점에서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퇴직급여 사업의 경우 2023년 9월 22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1,120억원 감액 변경하였으나, 이후 2023년 11월 29일 재차 6,030억원 증액변경하여 비합리적인 기금 운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변경일시	세부사업명	당초(A)	변경(B)	증감(B-A)	증감률 ((B-A)/A)	변경사유
6/14	대여학자금 융자	316,491	395,210	78,719	24.9	계획대비 대여학자금 대부건수 증가로 예산 부족
	통화금융기관 예치	941,107	862,388	△78,719	△8.4	
8/25	기금관리비	10,423	10,423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 변경
9/22	퇴직수당	2,741,776	2,853,776	112,000	4.1	계획대비 명예·일반퇴직 증가로 예산 부족
	퇴직급여	**19,759,680**	**19,647,680**	**△112,000**	**△0.6**	
11/10	복지시설운영	48,427	48,781	354	0.7	전기료 인상 및 복지시설 정상영업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증가로 예산 부족
	지부시설관리	19,514	19,160	△354	△1.8	
11/29	**퇴직급여**	**19,647,680**	**20,250,680**	**603,000**	**3.1**	계획대비 퇴직연금·일시금 및 요양·유족·순직급여 지급 증가로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예산 부족
	재해보상급여	196,529	208,229	11,700	6.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796,901	1,182,201	△614,700	△34.2	
11/29	주택사업관리	412,371	437,171	24,800	6.0	계획대비 퇴거세대 증가 및 보증금 인하에 따른 환불로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예산 부족
	임대주택건립	24,756	20,094	△4,662	△18.8	
	통화금융기관 예치	862,388	842,250	△20,138	△2.3	

주) 기금운용계획 변경일시는 (자체변경 대상)공무원연금공단 이사회 가결일자, (기획재정부 협의 대상)기획재정부 승인일자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잦은 변경은 크게 퇴직인원과 평균연금월액 변동에 기인함. 그 중 평균연금월액 변동은 물가인상률의 반영이란 점에서 오차 발생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퇴직인원의 경우 추계방식의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2023년 계획 대비 퇴직인원 변동 내역]

(단위: 명, %)

구 분	2023년 계획(A)	2023년 재추계			증감 (B-A)	(B-A)/A
		계(B)	1~9월 실적	10~12월 추정		
정년퇴직	19,580	19,455	19,400	55	△125	△0.6
명예퇴직	12,939	15,305	14,020	1,285	2,366	18.3
일반퇴직	16,571	22,759	17,931	4,828	6,188	37.3
합 계	49,090	57,519	51,351	6,168	8,429	17.2

주)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2023.11.)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구체적으로 2023년 퇴직인원 오차가 크게 발생한 명예퇴직 및 일반퇴직의 경우, 2021년 실적치와 2022년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추정치를 반영할 경우 오차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산출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단기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최근 2개년 평균값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추이를 반영하기 어려움.

[2023년 퇴직인원 유형별 산출근거]

(단위: 명)

구분	인원	산출근거
정년퇴직	19,580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정년예정자 전산발췌 후 정년 도달 前 퇴직률(3년 평균) 반영
명예퇴직	12,939	**최근 2년 평균 실적 반영(2021년 실적치, 2022년 추정치)**
일반퇴직	15,877	
사망	694	

주) 2023년 계획 수립 기준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처럼 연례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당초 계획액과의 차이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이 반복되고 있음은 당초부터 퇴직인원에 대한 재정소요 추계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예측할 수 없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시에도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부터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이에 대해 2020회계연도~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시 반복적으로 시정요구가 있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추계방식 개선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사업 관련 최근 결산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2020	(10) 퇴직급여· 퇴직수당 계획액 산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인사혁신처는 퇴직급여·퇴직수당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계방식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
2021	(9) 퇴직수당 계획액 산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인사혁신처는 예상 퇴직자 수와 퇴직수당 단가를 면밀하게 예측하여 퇴직수당 사업에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기금운용 계획변경을 최소화할 것	주의
2022	(6)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 공무원연금공단은 효율적인 정부 예산 집행을 위해 정확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추계방식을 개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양할 것	주의

자료: 인사혁신처

따라서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인원에 대한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계할 수 있도록 직종별・재직기간별 특성 반영 등 추계방식을 개선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고덕 8단지 재건축 사업: 연례적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 문제

가. 개 요

‘고덕8단지 재건축 사업’ 사업은 1984년 12월에 준공되어 노후화된 서울 고덕 8단지 공무원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12억 6,000만원 중 11억 7,100만원을 집행(집행률 92.9%)하고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17)]

[2023년도 고덕8단지 재건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임대주택 건립	20,408	15,746	4,348	20,094	19,974	-	120	18,736
고덕 8단지 재건축	2,066	15	1,245	1,260	1,171	-	89	230

동 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이 토지소유자로 직접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규모는 1,807세대, 총사업비는 3,167억 9,500만원임.

[고덕8단지 재건축 사업 당초 사업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규모	1,807세대(건립평형 및 세대수는 사업계획승인 후 확정)	재건축 전 700세대
연 면 적	186,045㎡	지상(138,935㎡) + 지하(47,110㎡)
총사업비	3,167억 9,500만원	평형: 9, 12, 14, 18(전용면적 기준)
사업기간	2018년 12월 ~ 2026년 8월	-
예비타당성조사 (KDI)	・조사기간: 2017.6.14. ~ 2018.11.28.(1년 6개월) ・조사결과: 종합평가(AHP) 평점 0.571(사업타당)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17) 공무원연금기금-임대주택건립(3151-361)(공무원연금공단)

나. 검토의견

고덕8단지 재건축 사업은 복합사업 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로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이 지연되어 연례적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동 사업의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연례적으로 저조한데, 2020년 1.9%, 2021년 9.3%, 2022년 20.2%, 2023년 56.7%에 불과함. 또한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률도 2020년 △97.7%, 2021년 △90.7%, 2022년 △21.0%, 2023년 △99.3%로 매년 감액변경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집행되고 있음.

[2020~2023년 고덕8단지 재건축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변경액 (B-A)	변경률 ((B-A)/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C)	집행률 (C/A)
	당초 (A)	수정 (B)						
2020	2,227	51	△2,176	△97.7	-	51	42	1.9
2021	590	55	△535	△90.7	-	55	55	9.3
2022	2,376	1,876	△500	△21.0	-	1,876	481	20.2
2023	2,066	15	△2,051	△99.3	1,245	1,260	1,171	56.7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처럼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하고 대규모 감액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복합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LH 등 관계기관 간 이견과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3년 이상 장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동 사업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4년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복합개발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 기준 2030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총사업비도 크게 증가하였음. 당초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계획상 총사업비는 2,664억원 가량이었으나, 사업 지연 과정에서 2024년 기준 3,168억원으로 증가됨.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되는데,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 증가로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경우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임.[18)]

18)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업지연 최소화를 위해 LH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공기 단축을 위해 2023년 중 석면공사를 우선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설명함.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당시 재건축사업 관련 연례적 기금계획변경 및 집행부진 최소화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공단은 이에 대해 철저한 사업관리 추진 및 2023년 예산 수립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사업일정을 고려한 적정 편성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완료하였다고 하였으나, 2024년까지도 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음.

[2021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연도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2021	(11)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연례적인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 최소화 필요	○ 인사혁신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의 적극적인 사전협의에 따른 계획수립을 통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례적인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을 최소화할 것	주의

자료: 인사혁신처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및 조율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고덕8단지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800만원(0.9%)이 많은 8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800만원(△87.0%)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035	4,035	6,679	2,644	863	863	871	8	△5,808
총수입	4,035	4,035	6,679	2,644	863	863	871	8	△5,808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67억 3,300만원(△1.7%)이 적은 3,999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99억 2,500만원(△52.4%)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72,594	870,615	839,892	△30,723	406,700	406,700	399,967	△6,733	△439,925
총지출	872,594	870,615	839,892	△30,723	406,700	406,700	399,967	△6,733	△439,925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억 6,300만원으로 21억 8,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억 7,100만원을 수납(수납률 40.0%)되고 1,6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12억 9,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863	863	-	863	2,180	871	16	1,293
합 계	863	863	-	863	2,180	871	16	1,293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068억 2,200만원으로, 이 중 3,999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3%)되고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8억 5,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06,700	406,700	122	±3,673	-	406,822	399,967	1	6,855
합 계	406,700	406,700	122	±3,673	-	406,822	399,967	1	6,855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379억 900만원이 증가한 7,524억 5,2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32억 60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328억 2,000만원 증가하고 기타비유동자산이 84억 7,7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5억 4,700만원 감소한 95억 1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34억 6,7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14억 5,600만원이 증가한 7,429억 5,1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88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32억 4,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142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35억 5,9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52,452	714,543	37,909	5.3
		유동자산	3,206	6,632	△3,426	△51.7
		투자자산	27	15	12	80.0
		일반유형자산	728,045	695,224	32,820	4.7
		무형자산	9,336	9,312	24	0.3
		기타비유동자산	11,837	3,360	8,477	252.3
	부 채		9,501	13,048	△3,547	△27.2
		유동부채	3,495	3,575	△80	△2.2
		장기차입부채	6,006	9,473	△3,467	△36.6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742,951	701,495	41,456	5.9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88,851	572,098	△483,247	△84.5
	재정운영순원가		414,269	877,828	△463,559	△52.8
	재정운영결과		414,269	877,828	△463,559	△52.8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역량 강화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목표로 제시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에 있어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징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위법행위 예방단속' 사업은 위법행위 예방단속 인력과 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민주시민 의식함양 지원' 사업은 예산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당초 계획 대비 운영실적이 축소되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를 정확히 하는 한편, 오프라인 교육 수요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넷째,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사업은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선거보전비용 반환금의 미수납액 과다 발생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공직선거후보자 기탁금·선거보전비용 국고귀속액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등이 수납되는 세입으로, 2023년에는 징수결정액 17억 2,900만원 중 4억 7,600만원이 수납(수납률 27.5%)되고 미수납액 12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음.[2)]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B)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D/C)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710	710	-	710	1,729	476	-	1,253	27.5	9,565

나. 검토의견

선거보전비용 국고귀속액 중 미반환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이 당선무효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3)]

2)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기획조정실)

2023년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402명이고, 반환명령액은 439억 9,300만원임. 이 중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한 사람은 325명이고 반환액은 249억 1,800만원이며, 반환하지 않은 사람 77명의 미반환액은 190억 7,500만원임.

[당선무효자 등 선거보전비용 반환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	반환명령액(인원)	반환액(인원)	미반환액(인원)
2013년 이전	19,843(171)	12,335(165)	7,508(6)
2014	1,155(16)	891(14)	264(2)
2015	7,833(76)	4,049(60)	3,784(16)
2016	1,431(8)	1,147(5)	284(3)
2017	3,464(22)	1,814(14)	1,650(8)
2018	1,703(16)	985(10)	718(6)
2019	2,126(37)	1,293(26)	833(11)
2020	2,369(16)	785(9)	1,584(7)
2021	1,000(9)	726(8)	274(1)
2022	304(4)	214(2)	90(2)
2023	2,765(27)	679(12)	2,086(15)
계	43,993(402)	24,918(325)	19,075(77)

주 1) 당선무효자 등은 당선무효자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사람을 말함.
2) 미반환액 190억 7,500만원 중 11억 6,400만원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보전금으로 국비이고, 179억 1,1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보전금으로 지방비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전비용 미반환금의 소멸시효(5년)를 중단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연장 재판청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4)5)] 그러나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소멸시효 완성 현황을 살펴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50명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35억 3,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3)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소멸시효 연장 재판청구(2023.12.31. 기준): 24건, 35억 61만원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소멸시효 완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소멸시효완성 인원	소멸시효 완성된 미반환액
2014년 이전	48	3,376
2015년	2	162
2016~2023년	-	-
합 계	**50**	**3,53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미반환이 다수 발생하는 사유에 관해 당선무효가 된 사람 등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징수 위탁하는 이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보전비용반환의 실효적 법규정이 없으며, 징수를 위탁한 경우에도 선거비용반환대상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선거비용 미반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국민의 세금이 선거비용 보전금의 미반환으로 인하여 당선무효자 등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전비용 환수율 제고를 위해 실효적 법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채권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위법행위 예방단속: 적정 인력과 기간 산정을 통한 예산 불용 방지 필요

가. 개 요

‘위법행위 예방단속’ 사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한 홍보·신고제보·조사단속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수행인력 운영에 관한 경비로, 2023년도 예산현액 9억 2,500만원 중 5억 9,600만원이 집행(64.4%)되고 3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3년 위법행위 예방단속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회의원선거관리	3,800	3,800	-	△233	3,567	2,932	-	635	280,992
위법행위 예방단속	925	925	-	-	925	596	-	329	34,642

나. 검토의견

위법행위 예방단속 사업은 주요선거 직전연도의 예산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단계에서 적정인원과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산정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임.[7)] 최근 치러진 주요선거 전년도에

6) 일반회계-국회의원 선거관리(1131-301)(선거정책실)

7)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편성된 인력이 과다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021년 41.0%, 2023년 35.6%에 이르고 있음.

[주요 선거관리 사업의 전년도 위법행위 예방단속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차년도 예산액
	본예산	추경								
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4,514	4,514	-	△2	-	4,512	2,661	-	1,851	27,477
202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25	925	-	-	-	925	596	-	329	34,64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년 기준 위법행위 예방단속 인력운영 기간은 17일로(12.12.~12.31.) 1개월이 채 되지 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편성 기준 인력으로 2023년 운영인력을 축소하고, 기간 또한 20일에서 17일로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주요 선거관리 사업의 전년도 위법행위 예방단속 결산 내역]

구 분	편 성	집 행
인 원	459명 (17시·도 × 27명)	385명 (17시·도 × 약 23명)
근무일수	20일	17일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위법행위 예방단속 인력운영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2023년에는 공휴일 제외에 따라 실근무일수가 감소하였고, 2024년 고용인원과의 연속성 확보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8)]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시 ·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예산과 동일하게 시·도위원회별 27명 운영으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심의·확정 과정에서 시·도위원회별 24명으로 감액편성되었는데, 동 업무가 2023. 12. 12.~2024. 4. 10.까지 운영되어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부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임.

동 사업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온라인 상 선거부정행위를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의 단속인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같이 2021년과 2023년 모두 예산편성 대비 축소하여 운영한 것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음. 특히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인원조정 상황은 2021년 예산 편성 당시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2023년 예산 편성 시에도 공휴일이나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불용규모가 최소화되도록 편성할 수 있었을 것임.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편성하는 위법행위 예방단속 인력과 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민주시민 의식함양 및 지원: 계획된 프로그램의 원만한 추진과 오프라인 교육수요 발굴을 통한 예산 불용 방지 노력 필요

가. 개 요

‘민주시민 의식함양 및 지원’ 사업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연수 및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4억 1,400만원 중 14억 8,400만원이 집행(61.5%)되고 9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3년 민주시민 의식함양 및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민주시민의식함양및 지원	2,414	2,414	-	-	2,414	1,484	-	930	1,266

나. 검토의견

민주시민 의식함양 및 지원 사업은 예산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점 및 연초에 수립한 연수과정 계획 대비 운영실적이 축소되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를 정확히 하는 한편, 오프라인 교육 수요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민주시민 의식함양 및 지원사업은 선거, 정당 관계자 및 유권자 대상 교육과 강사 양성 및 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사업임.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2019년은 매우 높은 집행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 예산 집행이 60%대로 낮아졌음. 2023년 또한 코로나19 기간 수준의 집행률보다 낮은 61.5%로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였음.

9) 일반회계-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선거연수원)

[최근 6년간(2018~2023)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8	3,828	3,828	-	±339	-	3,828	3,741	97.7	97.7	-	87
2019	3,623	3,623	-	±178	-	3,623	3,498	96.6	96.6	-	125
2020	3,321	3,121	-	±1	-	3,121	2,070	66.3	66.3	-	1,051
2021	3,521	3,521	-	-	-	3,521	2,252	64.0	64.0	-	1,269
2022	3,147	2,900	-	-	-	2,900	1,822	62.8	62.8	-	1,078
2023	2,414	2,414	-	-	-	2,414	1,484	61.5	61.5	-	93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 사업의 연도별 교육 횟수와 인원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인원 실적이 대폭 감소한 이후, 2022년에는 계획 대비 교육인원 실적이 상회하였으나, 2023년 다시 교육인원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났음.

[연도별 교육과정 수 및 계획, 실적의 횟수와 인원 내역]

(단위: 회, 명)

연도	과정 수	계 획		실 적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9	17	2,315	131,920	2,845	198,682
2020	17	4,631	594,030	1,297	64,025
2021	18	3,902	555,900	3,149	450,191
2022	17	4,214	571,400	4,529	594,243
2023	14	3,466	512,480	3,474	433,92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년 교육과정별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교육과정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이는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새내기유권자연수'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음.

[2023년 교육과정별 계획 대비 실적]

구 분	과 정 명	대 상	계 획		실 적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 계	14개 과정		3,466	512,480	3,474	433,928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 (2)	정당사무처당원연수	정당사무처 간부·직원 등	30	2,400	**17**	**2,163**
	일반당원연수	일반당원등	50	4,000	34	4,960
유권자 과정 (4)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유권자	1	40	1	40
	여성정치참여연수	여성유권자·단체회원·정치지망생	30	1,000	49	2,366
	시민사회단체등협업연수	기관·단체 회원 등	60	1,800	92	3,364
	대학생등정치참여연수	대학생·청년유권자 등	30	1,000	58	2,117
청소년 선거체험 과정 (4)	새내기유권자연수	고등학생	2,400	480,000	**1,804**	**375,301**
	민주주의선거교실	초·중학생	600	18,000	1,117	37,469
	청소년선거캠프	고등학생	2	80	2	64
	강연콘테스트	중·고등학생	1	100	**1**	**27**
선거참여 도움과정 (3)	다문화가족연수	다문화가족	150	2,300	151	2,449
	북한이탈주민연수	북한이탈주민	10	100	21	115
	장애인유권자연수	장애인유권자	100	1,500	126	3,445
선거정치 교육강사 과정 (1)	선거정치교육강사양성 과정	외부 초빙교수및 선거정치교육강사 등	2	160	**1**	**4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기간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거 전환되면서 2023년에도 여전히 온라인 교육 진행이 많아 장소 임차료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이 부진하였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당관계자 연수 수요가 2019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았으나 예상보다 연수 신청이 저조했으며, 강연 콘테스트 과정을 일부 축소하여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10)]

10) 사업 내 강연 콘테스트 과정은 2024년부터 폐지됨.

그러나 온라인 교육 전환에 따라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예산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던 요소로 적절치 않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편성 및 당초 계획 대비 운영실적이 축소되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를 정확히 하는 한편, 오프라인 교육 수요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수의계약 체결 지양 필요

가. 개 요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사업은 토론제도 연구 및 민주시민 토론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유권자 대상 유권자토론회(민주시민 토론교실)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2,000만원 중 2억 1,300만원이 집행(96.8%)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3년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선거방송토론	474	474	-	-	474	460	-	14	358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220	220	-	-	220	213	-	7	99

나. 검토의견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사업은 연례적인 수의계약이 발생되고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계약방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중 ‘열린 토론대회 개최’ 사업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와 민주주의 관련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자를 선발하고 토론회를 제작하여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업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제작과 방송송출을 목표로 방송사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열린 토론대회 개최’ 사업을 추진하였음.

11) 일반회계-선거방송토론(1135-314)(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8~2023년 열린토론대회 수의계약 내역]

내역사업명	일반용역비 예산 (각목명세서 기준)	일반용역계약 내역					계약 유형	수의 계약 사유
		계약명	발주금액 (입찰공고서 기준)	계약금액 (계약서 기준)	수탁기관	계약기간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0	'2018 대한민국 열토론대회' 결승전 프로그램 제작·방송 계약	45 (210-01)	45 (210-01)	Jtbc	18.9.-18.10.	수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
	0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 프로그램 제작·방송 계약	40 (210-01 에서 210-14로 세목변경)	40 (210-01 에서 210-14로 세목변경)	Jtbc	19.9.-19.10.	수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
	45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준)결승전 프로그램 제작·방송 계약	26	26	OBS	21.10.-21.11.	수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 자목
	34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준)결승전 프로그램 제작·방송 계약	34	34	OBS	22.10.-22.11.	수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 자목
	30	'2023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 프로그램 제작·방송 계약	23	23	Jtbc	23.07.~23.10	수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 가목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고, 예산규모상 입찰공고를 낼 경우 참여하는 방송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과거 협업한 경험이 있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부득이하게 특정 방송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임.[12)]

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사가 1개뿐인 경우(제2호자목)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제5호가목)라 보기 어려움. 특히, 2018년~2019년 수탁기관과 2021년~2022년, 2023년 수탁기관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단일 방송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적어 보임.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동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방송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 원가계산 ·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3,000만원을 징수하여 총수입은 3,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	-	-	-	-	-	-
총수입	-	-	-	-	-	-	30	30	30

문의 : 박세경 예산결산조사관 sg.park@assembly.go.kr (02-6788-5698)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6억 2,100만원(△13.7%)이 적은 164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2,100만원(23.4%)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3,777	13,741	13,335	△406	19,077	19,077	16,456	△2,621	3,121
총지출	13,777	13,741	13,335	△406	19,077	19,077	16,456	△2,621	3,121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이 없어 세입결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수납률 100.0%)하였음.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	-	30	30	-	-
합 계	-	-	-	-	30	30	-	-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93억 5,000만원으로, 이 중 164억 5,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0%)되고 12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억 1,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9,077	19,077	273	-	-	19,350	16,456	1,281	1,614
합 계	19,077	19,077	273	-	-	19,350	16,456	1,281	1,614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7억 6,600만원이 증가한 42억 9,2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4억 1,700만원 감소하였고 일반유형자산이 3억 600만원 감소, 무형자산이 9,500만원 감소하였으나 기타비유동자산이 15억 8,5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600만원 증가한 1억 1,0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5,6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억 1,000만원이 증가한 41억 8,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5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66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8,4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292	3,526	766	21.7
		유동자산	1,514	1,931	△417	△21.6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765	1,071	△306	△28.6
		무형자산	428	523	△95	△18.1
		기타비유동자산	1,585	-	1,585	-
	부 채		110	54	56	37
		유동부채	-	-	-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110	54	56	37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4,182	3,472	710	20.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596	2,323	273	11.8
	재정운영순원가		16,615	13,731	2,884	21
	재정운영결과		16,615	13,731	2,884	2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직제, 예비비가 2020년 12월 1일에 승인되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제시하고,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20,092건의 진실규명 사건을 신청받았고, 진실규명 조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총 3개 세부사업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기본경비를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는 예산현액 193억 5,000만원 대비 164억 5,600만원(85.0%) 집행을 하였음. 이중 이월액 12억 8,100만원은 연구용역 관련 추가사항 반영 및 계약체결 시기로 인해 발생하였고, 불용액 16억 1,400만원은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음.